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
시정권고 사례집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중재위원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등 위원회의 2015년 주요 업무성과를 담은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15년 5,227건의 조정사건 및 26건의 중재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조정 처리 건수는 2014년의 19,048건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이지만, 2014년의 경우 ‘세월호’ 사건 여파로 16,117건의 대량사건이 접수된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대량사건의 접수는 2015년에도 이어져 1,908건이 추가로 접수되었으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건수는 2014년 2,931건 보다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5년 조정사건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88.7%에 비해 다소 하락한 77.9%를 기록했으나, 2014년의 경우 대량사건이 일괄적으로 피해구제된 데 따른 특수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2015년 피해구제율 또한 여전히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조정 사건은 전체 사건의 68.0%를 차지, 꾸준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한데 따른 결과로, 향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언론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전파와 복제로 인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성이 있는데다, 복제기사의 전파나 기사덧글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향후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복제전파된 언론기사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피해구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편,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심의대상 전 매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식적·내용적·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심의한 결과 지난 한해 모두 95건의 기사형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무분별한 기사형 광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담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을 E-Book 형태로 발간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처리한 전체 사건 중에서 시의성이 있거나 법리적인 의미가 있는 29건의 사례를 엄선하여 그 상세한 내용과 처리결과를 수록했습니다.

그 밖의 사건은 목록을 별도로 실어 연구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사건의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사건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쟁점 및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별도의 장으로 게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위원회 활동 및 언론분쟁 해결절차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단체, 언론계, 법조계 등에 유익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CONTENTS

제1부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13
언론조정·중재사건 현황	19
제1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21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30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1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7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78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80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82
제8장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85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86
시정권고 현황	89

제2부 대량사건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대량사건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97
1. 청구권별, 중재부별 현황	100
2. 매체 유형별 현황	101
3. 처리결과 현황	102
4. 매체별 조정신청 현황 및 처리결과	103
5. 대량사건 처리기준	115

제3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119

사례 1 공무원인 신청인이 임야 개발 및 폐기물처리장 용도 변경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송○○ 對 주식회사 시티저널 (2015대전조정2·3 추후·손배청구) 121

사례 2 KBS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비를 10년 전과 똑같이 주거나 절반만 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한국방송공사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2015서울조정695·696, 2015
서울조정697·698(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125

사례 3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소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조○○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2015서울조정1476·1477, 2015서울조정1478·1479(병합) 각 정정·손배청구) 131

사례 4 모 골프업체가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 對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2015서울조정2197 정정청구) 136

사례 5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 폭발 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담배 상표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주식회사 ○○코리아 외 1인 對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2015서울조정2883·2884 정정·손배청구) .. 139

사례 6 신청인 방송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의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의 대표와 보도국장이 착복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 對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2015광주조정81 반론청구) 143

사례 7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와 연루되어 불법 수수료를 받는다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對 대한변호사협회 (2015서울조정2971, 2015서울조정2972 (병합) 각 정정청구) 148

사례 8 신청인 언론사가 모 연예인의 트위터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에 대해 부도덕한 짓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주식회사 소셜뉴스 對 주식회사 헤럴드 (2015서울조정3438·3439·3440 정정·반론·손배청구) ... 152

CONTENTS

- 사례 9**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의 제복 사진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장○○ 對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2015서울조정3536·3537 정정·손배청구) 157
- 사례 10** 인천시가 민간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주식회사 ○○○산업 對 인천광역시 남동구 (2015경기조정134 정정청구) 161
- 사례 11** 신청인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신청인과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김○○ 對 주식회사 와이티엔 (2015서울중재5·6 정정·손배청구) 166
- 사례 12**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이 위생상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유○○ 對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2015서울조정3677, 2015서울조정3678(병합) 각 정정청구) 170
- 사례 13**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 직원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주식회사 ○○○여행사 외 1인 對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2015경기조정139·140 정정·손배청구) 174
- 사례 14** 공무원인 신청인이 비닐하우스 설치 평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對 주식회사 내외일보 (2015전북중재1 추후청구) 181
- 사례 15** 구청 공무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3년 만에 두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 對 주식회사 뉴스1 (2015서울조정4009·4010 정정·손배청구) 188
- 사례 16**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을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접견녀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로스쿨 외 5인 對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2015서울조정4101~4106, 2015서울조정4143~4147, 2015서울조정4165, 2015서울조정4172~4173(병합) 각 정정청구) 194
- 사례 17** 모 지역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강사인 신청인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최○○ 對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2015대구조정79·80 정정·손배청구) 200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205

사례 18 신청인이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임○○ 對 주식회사 세계닷컴 (2015서울조정754 손해청구) 207

사례 19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과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동○○ 對 외 1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2015서울조정2803·2804 정정·손배청구) 212

사례 20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사고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박○○ 對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2015서울조정3006 손해청구) 215

사례 21 박원순 시장의 가든파이프 방문 당시 항의하던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신○○ 對 주식회사 채널에이 (2015서울조정3065 손해청구) 218

사례 22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박○○ 對 주식회사 매일방송, 네이버 주식회사,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2015서울조정3587~3590 각 손해청구) 221

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 227

사례 23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이○○ 對 주식회사 케이엔엔,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엔 (2015부산조정26, 27 각 손해청구) 229

사례 24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 음성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박○○ 對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하브(주) (2015서울조정2237, 2238 각 손해청구) 231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235

사례 25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박○○ 對 한국방송공사, 케이비에스미디어(주) (2015서울조정3463, 3464 각 손해청구) ... 237

CONTENTS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241

사례 26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김○○ 對 한국방송공사 (2015서울조정2574·2575 정정·손배청구) 243

사례 27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김○○ 對 한국방송공사, 케이비에스미디어(주), 주식회사 매일방송, (주)조선방송, 주식회사 케이엔엔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경남조정17, 18 각 손배청구) 246

제6장 기타 사례 255

사례 28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동과 호수 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박○○ 對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 (2015경기조정145, 146 각 손배청구) 257

사례 29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이 친권자 동의 없이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

오○○ 외 2인 對 (주)문화방송 (2015서울조정4071 손배청구) 260

제4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1장 사생활 침해 265

사례 1 제2015-12호(e머니투데이) 267

사례 2 제2015-72호(경남일보) 268

사례 3 제2015-191호(더팩트) 270

사례 4 제2015-222호(매일신문) 272

제2장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275

사례 5 제2015-4호(인터넷 시사주간) 277

사례 6 제2015-224호(경찰투데이) 278

제3장 범죄수법 묘사	279
사례 7 제2015-5호(뉴스타운)	281
사례 8 제2015-75호(주간동아)	282
사례 9 제2015-409(일요신문)	283
제4장 자살 관련 보도	285
사례 10 제2015-43호(고성인터넷뉴스)	287
사례 11 제2015-206호(휴먼누리)	288
사례 12 제2015-227호(조선일보)	291
사례 13 제2015-269호(인터넷 씨티21뉴스)	292
사례 14 제2015-330호(매경닷컴)	294
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295
사례 15 제2015-44호(국민일보)	297
사례 16 제2015-64호(인터넷 인천일보)	298
사례 17 제2015-92호(인터넷 문화일보)	299
사례 18 제2015-209호(대경일보)	300
사례 19 제2015-421호(인터넷 헤럴드경제)	301
제6장 기사형 광고	303
사례 20 제2015-253호(대구광역일보)	305
사례 21 제2015-356호(뉴스컬처)	307

CONTENTS

제5부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311
서울중재부	313
지역중재부	529
〈부산〉	529
〈대구〉	537
〈광주〉	545
〈대전〉	557
〈경기〉	569
〈강원〉	599
〈충북〉	603
〈전북〉	610
〈경남〉	618
〈제주〉	625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629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1 부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언론조정·중재 및 시정권고 주요 현황

조정사건 5,227건 접수처리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5,227건의 조정사건을 처리하였다. 2014년의 19,048건 대비 13,821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대량사건이 2014년 16,117건에서 2015년 1,908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하 ‘일반사건’)은 2014년의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88.7%보다 감소한 77.9%를 기록했다.

대량사건 1,908건 접수·처리, 누적 건수 18,025건 기록

위원회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총 1,908건의 대량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2014년 권윤자 씨와 기독교복음침례회가 모두 16,117건을 신청한데 이어, 2015년에도 권윤자 씨가 1,210건, 기독교복음침례회가 698건을 각각 신청했으며, 누적 건수는 18,025건을 기록하였다.

단일 매체로는 TV조선이 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TV조선 283건, 인터넷 국민일보 90건 순이었다. 2014년, 2015년 누적 건수로는 TV조선 1,156건, YTN 1,044건, 인터넷 TV조선 987건, 인터넷 YTN 893건 순이었다. 중재부는 대량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언론사별, 쟁점별로 사건을 정리하여 일괄 처리하였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청구, 47.6% 역대 최고

2015년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청구건수가 2,490건으로 매체별 전체 청구건의 47.6%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청구건수 중 46.4%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건수를 기록했던 지난 2013년에 비해 1.2%p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 등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청구건수는 3,553건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68.0%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4년의 72.1%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나 여전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일반사건,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최다. 팟캐스트도 6건 접수

2015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중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일간지 중에는 한국일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은 JTBC 48건, MBC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노컷뉴스가 55건,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가 46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했다.

한편 위원회는 발뉴스, 트위터매거진새가날아든다, XSFM 등 새로운 형태의 유사 뉴스서비스인 팟캐스트에 대해서도 6건의 조정사건을 접수·처리하였다.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에 주력

2015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거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러한 복제기사나 댓글 등에 대한 완전한 피해구제가 어렵더라도 양 당사자간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의 미비로 새로운 형태의 피해에 대한 구제에 한계가 있어, 향후 법률 개정 등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배상사건 조정액 평균 160만원, 최고 4백만원

2015년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12,582만원이었으며,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나타났다.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60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최저액은 2013년 10만원, 2014년 5만원보다 크게 높아진 반면, 최고액은 2013년 2천만원, 2014년 3천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일반사건의 금전배상 인용 건수는 2014년의 112건보다 다소 감소한 100건으로 전체 손해배상청구건수 1,210건 대비 8.3%를 기록했다.

■ 피해구제보도문 [정정보도]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2월 9일 2면에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사 외압 발언을 담은 녹취록과 관련하여 언론외압 및 인사개입 대상 언론사가 KBS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이 후보자가 말한 대상 언

론사가 아니었고, KBS 기자는 점심식사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녹취록을 야당에 넘긴 사실도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해구제보도문 [반론보도]

‘영화진흥위원회 사전검열’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3월 19일자 문화면〈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손들’ 제하의 기사에서 “영진위가 ‘등급제’ 개정을 추진하고, 영화제 사전심의 방식을 바꾸며 영화제 출품작을 사실상 ‘사전검열’하려고 시도하다 영화계의

반발에 꼬리를 내렸다”고 보도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등급제’ 및 영화제 ‘사전심의’ 업무를 하고 있지 않으며 영진위가 운영 개선을 위해 검토 중인 ‘영화상영등급분류면제추천제도’는 사전검열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피해구제보도문 [영상 삭제]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본 방송은 지난 2월 21일 1회 방송에서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성이 “연봉 5천만 원 이상”, “외제 차” 등을 언급하는 주제MCR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작진의 연출에 따라 재연된 화면으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발언은 출연자들의 가치관과 일절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방송 관련 영상(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시정권고소위원회, 기사형 광고 등 총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

시정권고소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각종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 438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2014년 302건과 비교해 136건(45.0%)이 증가했다. 이는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이 신설되면서 기사형 광고 위반으로 9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보도, 범죄수법상세묘사, 자살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는 대폭 감소한 반면, 마약 및 약물 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2014년 12월 인격영역의 보호를 강화할 목적으로 사생활 보호 관련 시정권고 심의 기준을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4년 25건에서 2015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사생활 침해의 경우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해 촬영·보도한 사례가 많았으며, 일반인의 경우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가 많았다.

기사형 광고심의 가이드라인 마련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법익 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 1월 한 달 동안 심의 대상 전 매체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통해 기사형 광고의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심의규정과 사례, 외국의 법령과 기준 등을 참고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기사형 광고’ 심의는 형식적 기준, 내용적 기준, 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졌는데 명백한 사안을 위반한 기사 총 9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매체 유형별로는 인터넷신문이 70건, 뉴스통신 15건, 중앙일간지 6건 등의 순이었다.

언론조정·중재사건 현황



제1장 조정사건 접수현황

1. 연도별 현황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5,227건의 조정사건을 접수하여 처리했다. 2014년의 19,048건 대비 13,821건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구원파’로 알려진 특정 종교집단과 개인이 대량으로 청구한 대량사건이 2014년 16,117건에서 2015년 1,908건으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은 2014년의 2,931건에 비해 13.2% 증가한 3,319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위원회 조정 신청 건수가 2010년 처음으로 2천 건을 넘어선 데 이어 5년 만에 3천 건을 돌파한 것이다.

표 1-1 최근 5년간 조정사건 접수현황

(2011. 1. 1. ~ 2015. 12. 31.)

구 분 \ 연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청구 건수	2,124	2,401	2,433	19,048	5,227
전년대비 증감	-81	277	32	16,615	-13,821

2. 청구권별 현황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5,227건의 청구권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3,098건(59.3%) 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해배상청구 1,560건(29.8%), 반론보도청구 419건(8.0%), 추후보도청구 150건(2.9%) 순이었다. 지난 3년 간 청구권별 조정청구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가 전체 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 또한 다소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청구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다. 한편 대량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58건(81.7%), 손해배상청구 350건(18.3%) 순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월등히 많았으며, 일반사건은 정정보도청구 1,540건(46.4%), 손해배상청구 1,210건(36.5%), 반론보도청구 419건(12.6%), 추후보도청구 150건(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정 정	1,195(49.1)	12,888(67.7)	3,098(59.3)	17,181(64.3)
반 론	274(11.3)	305(1.6)	419(8.0)	998(3.7)
추 후	180(7.4)	130(0.7)	150(2.9)	460(1.7)
손 배	784(32.2)	5,725(30.1)	1,560(29.8)	8,069(30.2)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안의 숫자는 %

3.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5년 조정청구현황을 신청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에 의한 조정청구가 3,123건(59.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종교단체 728건(13.9%), 일반단체 570건(10.9%), 기업체 379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의 조정청구는 권운자가 신청한 1,210건(63.4%)과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신청한 698건(36.6%)이었다.

일반사건은 개인 1,913건(57.6%), 일반단체 570건(17.2%), 기업체 379건(11.4%), 지자체 117건(3.5%), 언론사 87건(2.6%), 국가기관 85건(2.6%), 교육기관 84건(2.5%), 공공단체 54건(1.6%) 순이었으며, 전체 조정청구 현황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4년에 비해 개인의 청구건수가 줄어들었으며, 단체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반단체, 기업체 등의 청구는 증가한 반면 공공단체와 언론사의 청구는 감소하였다.

표 1-3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신청인				
개 인	1,395(57.3)	13,021(68.4)	3,123(59.7)	17,539(65.7)
국가기관	36(1.5)	71(0.4)	85(1.6)	192(0.7)
지 자 체	103(4.2)	81(0.4)	117(2.2)	301(1.1)
공공단체	85(3.5)	103(0.5)	54(1.0)	242(0.9)

일반단체	255(10.5)	315(1.7)	570(10.9)	1,140(4.3)
종교단체	31(1.3)	4,954(26.0)	728(13.9)	5,713(21.4)
기업체	383(15.7)	331(1.7)	379(7.3)	1,093(4.1)
언론사	64(2.7)	90(0.5)	87(1.7)	241(0.9)
교육기관	81(3.3)	82(0.4)	84(1.6)	247(0.9)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안의 숫자는 %

4. 매체 유형별 현황

매체 유형별 전체 청구건수는 인터넷신문 2,490건(47.6%), 방송 892건(17.1%), 인터넷뉴스서비스 799건(15.3%), 일간신문 619건(11.8%), 뉴스통신 264건(5.1%), 주간신문 138건(2.6%) 순이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문의 경우 중앙일간지가 전체 신문 신청건의 50.9%인 3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 일간지는 30.9%인 234건, 주간신문은 18.2%인 138건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이 전체 방송 신청건의 63.6%인 5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상파TV는 26.7%인 238건, 종합유선방송이 9.7%인 87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17.0%를 차지했던 지상파TV의 신청 비율이 대폭 증가한 반면, 36.6%였던 종합 유선방송의 비율은 대폭 급감하였다. 매체 유형별 지난 3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청구에서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 청구의 비중이 45.1%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뉴스서비스(20.0%), 방송(18.6%), 일간신문(8.9%)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도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뉴스통신,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조정청구 비중은 2014년 72.1%에서 2015년 68.0%로 다소 감소했으나 인터넷신문이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치인 47.6%를 기록했다.

2015년 대량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724건(37.9%), 방송 477건(25.0%), 인터넷뉴스서비스 427건(22.4%), 일간신문 187건(9.8%), 뉴스통신 79건(4.1%)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 매체에 대한 청구가 인터넷신문 다음으로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일반사건의 매체 유형별 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신문 1,766건(53.2%), 일간신문 432건(13.0%), 방송 415건(12.5%), 인터넷뉴스서비스 372건(11.2%), 뉴스통신 185건(5.6%), 주간신문 133건(4.0%)순이었다. 2014년에 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뉴스통신, 주간신문의 비중이 다소 감소한 반면, 인터넷신문, 일간신문, 방송의 비중은 소폭 증가하였다.

표 1-4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매체유형	일간신문	380(15.6)	1,378(7.2)	619(11.8)	2,377(8.9)
	주간신문	142(5.9)	139(0.7)	138(2.6)	419(1.6)
방 송		288(11.8)	3,776(19.8)	892(17.1)	4,956(18.6)
잡 지		10(0.4)	25(0.1)	18(0.3)	53(0.2)
뉴스통신		112(4.6)	1,117(5.9)	264(5.1)	1,493(5.6)
인터넷신문		1,130(46.4)	8,436(44.3)	2,490(47.6)	12,056(45.1)
인터넷뉴스서비스		369(15.2)	4,177(21.9)	799(15.3)	5,345(20.0)
기 타		2(0.1)		7(0.1)	9(0.0)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안의 숫자는 %

표 1-5 2015년도 매체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매체 유형 청구 건수	신문			방송			잡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기타
	중앙 일간지	지방 일간지	주간 신문	지상파 TV	종합 유선 방송	종합 편성 채널					
5,227	385	234	138	238	87	567	18	264	2,490	799	7
(100)	(7.4)	(4.5)	(2.6)	(4.6)	(1.7)	(10.8)	(0.3)	(5.1)	(47.6)	(15.3)	(0.1)

※ () 안의 숫자는 %

5. 침해 유형별 현황

2015년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청구가 4,891건으로 나타나 전체의 93.6%를 차지했으며 초상권 침해는 205건(3.9%), 사생활 침해 56건(1.1%), 재산상 손해 51건(1.0%), 음성권 침해 14건(0.3%), 성명권 침해 10건(0.2%)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명예훼손의 청구 비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며,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건수가 다소 증가하였다. 초상권 침해로 인한 조정청구 비율이 증가한 것은 구원과 소속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상권 침해로 다건의 조정을 별도로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 등의 청구로 이어진 사건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살인, 폭력 등의 보도에 상호명 등이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량사건은 1,908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으며, 일반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2,983건(89.9%), 초상권 침해 205건(6.2%), 사생활 침해 56건(1.7%), 재산상 손해 51건(1.5%), 음성권 침해 14건(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2013	2014	2015	합계
침해유형				
명예훼손	2,252(92.6)	18,793(98.7)	4,891(93.6)	25,936(97.1)
초상권 침해	82(3.4)	208(1.1)	205(3.9)	495(1.9)
음성권 침해	5(0.2)	5(0.0)	14(0.3)	24(0.1)
성명권 침해	23(0.9)	8(0.0)	10(0.2)	41(0.2)
사생활 침해	45(1.8)	14(0.1)	56(1.1)	115(0.4)
재산상 손해	26(1.1)	17(0.1)	51(1.0)	94(0.4)
기 타		3(0.0)		3(0.0)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안의 숫자는 %

6.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침해유형 중 명예훼손과 재산상 손해, 기타 사항을 제외한 인격권(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사생활 등) 침해를 원인으로 청구된 285건을 그 원인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초상이나 음성을 공표한 경우가 전체의 96.1%인 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도 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한 경우가 6건(2.1%), 그리고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보도 5건(1.8%)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7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2015. 1. 1. ~ 2015. 12. 31.)

기타 인격권 침해 세부분류	청구건수
동의 없이 무단공표	274(96.1)
동의를 범위를 벗어난 보도	5(1.8)
보도내용과 무관한 자료화면으로 이용	6(2.1)
계	285(100)

※ () 안의 숫자는 %

7.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5년 접수·처리된 사건을 조정대상보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2014년과 마찬가지로 사건·사고·고발 등을 다룬 사회 분야가 4,423건으로 가장 많은 84.6%를 차지했고, 정치·선거 분야가 182건으로 3.5%를 차지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연예 분야 118건(2.3%), 경제·산업 분야 103건(2.0%), 종교 분야 90건(1.7%), 보건복지 분야 85건(1.6%) 순으로 나타났다. 스포츠·연예 분야의 청구건수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예년과는 다른 양상으로, 이는 한 연예기획사의 소속 작곡가 임금 체불 논란 건과 관련해 다수사건이 청구되었기 때문이다.

표 1-8 조정대상보도의 분야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조정대상보도 분야	청구건수
정치·선거	182(3.5)
국방·외교	33(0.6)
경제·산업	103(2.0)
사회(사건/사고/고발)	4,423(84.6)
보건·복지	85(1.6)
스포츠·연예	118(2.3)
레저·생활	21(0.4)
환경	38(0.7)
종교	90(1.7)
노동	22(0.4)
교육	38(0.7)
미디어	74(1.4)
계	5,227(100)

※ () 안의 숫자는 %

8.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5년 조정사건 중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대상보도를 유형별로 살펴 본 결과, 스트레이트 기사가 3,093건으로 86.3%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98.0%를 차지했던 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탐사·심층·기획보도가 273건(7.6%), 오피니언 103건(2.9%), 사설 46건(1.3%), 인터뷰 2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9 조정대상보도의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조정대상 보도 유형	청구건수
스트레이트	3,093(86.3)
사설	46(1.3)
오피니언	103(2.9)
인터뷰	22(0.6)
탐사·심층·기획보도	273(7.6)
만화·만평	2(0.1)
사진	11(0.3)
가십	
기타	32(0.9)
계	3,582(100)

※ () 안의 숫자는 %

*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은 제외됨

한편,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보도를 세부 장르별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뉴스 관련 보도가 전체 사건의 92.9%인 1,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시사고발 관련 프로그램이 68건(4.1%), 교양정보 프로그램이 35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표 1-10 조정대상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의 유형별 현황

(2015. 1. 1. ~ 2015. 12. 31.)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방송 및 방송 관련 포털 유형	청구건수
뉴스	1,529(92.9)	다큐멘터리 및 토론	7(0.5)
시사고발	68(4.1)	연예·스포츠 및 드라마	6(0.4)
교양정보	35(2.1)	계	1,645(100)

※ () 안의 숫자는 %

9. 중재부별 현황

2015년 중재부별 접수 현황을 보면, 4,225건을 접수·처리한 서울중재부가 전체의 80.8%를 차지했고, 이어 경기중재부 259건(5.0%), 광주중재부 214건(4.1%), 대전중재부 84건(1.6%), 대구중재부 80건(1.5%) 등의 순을 보였다.

대량사건은 서울 소재 매체가 대부분인 관계로, 1,908건 중 97.1%인 1,853건이 서울중재부에서 접수·처리되었으며, 55건만이 지역중재부에서 접수·처리되었다.

일반사건은 서울의 8개 중재부가 전체 사건의 71.5%인 2,372건을 접수·처리했으며, 경기중재부 244건(7.4%), 광주중재부 214건(6.4%), 대전중재부 80건(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 가운데 광주 중재부의 청구건수가 2014년 83건에서 2015년 214건으로 2.6배 가까이 급증하였는데, 이는 특정 시장 상인회 2곳에서 52건의 조정을 청구하는 등 다수 신청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북중재부, 강원중재부, 제주중재부의 청구 건수가 다소 증가한 반면, 경기중재부와 경남중재부의 청구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부산중재부, 대구중재부, 대전중재부는 소폭 감소하였다. 경기중재부는 2014년에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이 343건이 접수된 반면 2015년에는 15건만이 접수되었다. 일반사건의 청구건수만 놓고 보면 2014년 205건, 2015년 244건으로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경남중재부의 경우 2014년 언론사간 분쟁에 따른 다수 신청이 많았던 반면, 2015년에는 다수 신청이 없는데 따른 것으로 2013년의 63건과 비교할 때 청구건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11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2013	2014	2015	합 계
중 재 부				
서울중재부	1,806(74.2)	17,750(93.2)	4,225(80.8)	23,781(89.0)
부산중재부	69(2.9)	138(0.7)	78(1.5)	285(1.1)
대구중재부	48(2.0)	113(0.6)	80(1.5)	241(0.9)
광주중재부	78(3.2)	83(0.4)	214(4.1)	375(1.4)
대전중재부	75(3.1)	96(0.5)	84(1.6)	255(1.0)
경기중재부	195(8.0)	548(2.9)	259(5.0)	1,002(3.8)
강원중재부	20(0.8)	16(0.1)	42(0.8)	78(0.3)
충북중재부	37(1.5)	71(0.4)	71(1.4)	179(0.7)

연 도 중 재 부	2013	2014	2015	합 계
전북중재부	39(1.6)	53(0.3)	78(1.5)	170(0.6)
경남중재부	63(2.6)	150(0.8)	62(1.2)	275(1.0)
제주중재부	3(0.1)	30(0.2)	34(0.7)	67(0.3)
계	2,433(100)	19,048(100)	5,227(100)	26,708(100)

※ () 안의 숫자는 %

10. 접수 유형별 현황

2014년에 이어 2015년도에도 위원회 전자문서(Eye-Net)을 이용한 조정신청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4년 87.9%였던 이용률은 2015년에는 53.0%로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년 구원과 대량사건 대부분이 전자문서로 접수된 데 따른 것으로, 대량사건을 제외하면 여전히 전자우편을 통한 접수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접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문서(Eye-Net)에 의한 조정신청은 총 2,772건이었으며, 뒤이어 전자우편 1,913건(36.6%), 방문 409건(7.8%), 우편 130건(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술에 의한 신청은 단 1건밖에 없었다. 대량사건 대부분은 전자문서(Eye-Net)에 의해 접수된 바, 대량사건 또는 다수사건 신청 시에 매우 유용하고 편리한 방법임이 확인되었다.

표 1-12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구 분 연 도	방문	우편	전자우편	전자문서	구술	기타	합계
2013	336 (13.8)	137 (5.6)	1,196 (49.2)	750 (30.8)	12 (0.5)	2 (0.1)	2,433 (100)
2014	392 (2.1)	136 (0.7)	1,742 (9.1)	16,738 (87.9)	40 (0.2)		19,048 (100)
2015	409 (7.8)	130 (2.5)	1,913 (36.6)	2,772 (53.0)	1 (0.0)	2 (0.0)	5,227 (100)

※ () 안의 숫자는 %

제2장 조정사건 처리현황

1. 연도별 처리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대량사건 1,908건을 포함한 5,227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 2,904건(55.6%), 조정성립 940건(18.0%), 조정불성립결정 710건(13.6%), 기각 322건(6.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표에서는 ‘직권조정결정’으로 표기함) 319건(6.1%), 각하 32건(0.6%) 순으로 나타났다. 대량사건의 대부분(1,645건)이 취하로 처리되어 전체 사건에서 취하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2015년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의 88.7%에 비해 10.8%p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대량사건 대부분이 정정 또는 반론보도 되거나 기사삭제 혹은 기사수정 되는 등 예외적으로 피해구제율이 높았던 것으로, 2015년 피해구제율은 2013년의 77.6%와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정성립률은 2014년 6.1%에 비해 3배 가까운 18.0%를 기록하였으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역시 2014년의 1.3%보다 높은 6.1%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5.8%에서 13.6%로 대폭 증가했으며, 기각 및 각하 비율 역시 2014년 1.0%에서 2015년에는 6.8%로 높아졌다. 이처럼 기각 및 각하 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구원파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조정 청구를 했다가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경우 3,319건이 접수되어 2014년 대비 388건이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934건이 조정성립 되었고, 취하된 1,259건 중 1,008건이 피해구제되었다.

표 2-1 최근 3년간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피해 구제율
			동의	이의					
2013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	37.6	2.2	2.4	12.1	0.8	0.1	44.8	
2014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	6.1	0.7	0.6	5.8	0.6	0.4	85.8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피해 구제율
			동의	이의					
2015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18.0	4.2	1.9	13.6	6.2	0.6	55.6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피해구제율 = $\frac{\text{피해구제건수(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 중 동의+그 외 보도 등 피해구제된 건 *)}}{\text{전체 조정청구건수-(기각+각하)}} \times 100$

* 신청접수 후 심리실 외에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중재부의 권유에 따라 이루어진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의미함

2. 피해구제율

피해구제율은 전체 조정청구건수에서 기각 또는 각하된 건수를 제외한 청구 요건 적합 사건 중 조정심리 개최 여부나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의 비율을 뜻한다. 즉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사건, 조정불성립 또는 취하되었으나 정정보도나 손해배상 등이 이루어진 사건을 합한 것이다.

피해구제율은 2010년 79.2%를 기록했다가 위원회가 피해구제보도문의 위치·크기의 격상 등 피해구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한 2011년을 기점으로 71%대까지 하락하기도 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피해구제보도문 개선 사항과 그 필요성에 대해 피신청인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대언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피해구제보도문 개선의 당위성을 전파했다. 이에 2012년 71.5%, 2013년 77.6%로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4년은 역대 최고인 88.7%를 기록했다. 이는 대량사건 중 취하된 15,245건 가운데 14,511건을 포함하여 취하된 전체 16,350건 중 94.3%인 15,420건이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등으로 피해구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5년의 피해구제율은 77.9%로 2014년에 비해 10.8%p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사건 5,227건 중 대량사건이 차지하는 비율(36.5%)이 2014년의 84.6%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다, 2015년에 접수된 대량사건들의 피해구제율(85.9%)이 2014년의 대량사건 피해구제율(92.1%)보다 훨씬 낮은 데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2 최근 3년간 피해구제율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 도	구 분	청구건수(A)	기각, 각하 건수(B)	청구요건 적합건수 (A-B)	피해구제건수 (C)	피해구제율 C/(A-B)
2013		2,433	22	2,411	1,870	77.6%
2014		19,048	182	18,866	16,728	88.7%
2015		5,227	354	4,873	3,797	77.9%
계		26,708	558	26,150	22,395	85.6%

3.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청구권별로 살펴보면, 추후보도청구의 피해구제율이 94.2%로 가장 높았으며, 정정보도청구 79.4%, 반론보도청구 77.6%, 손해배상청구 73.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청구별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정정보도청구 15.2%,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17.2%로, 2014년에 비해 정정보도청구 조정성립률(4.9%)은 10.1%,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성립률(6.9%)은 10.3% 각각 상승했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3,319건의 청구별 조정성립률은 정정보도청구 30.3%, 반론보도청구 40.1%, 추후보도청구 22.0%, 손해배상청구 22.1%로, 2014년 일반사건 2,931건의 조정성립률과 비교할 때 정정보도청구는 2.9%, 손해배상청구는 5.4%, 추후보도청구는 0.3% 각각 하락한 반면, 반론보도는 4.7% 상승했다.

표 2-3 최근 3년간 청구권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정정	1,195	511	29	39 (2)	155 (8)	11	2	448 (335)	74.9	
	반론	274	129	8	1	18	3		115 (93)	84.9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추후	180	18		2	1			159 (156)	96.7	
	손배	784	258	17	15	121 (6)	6		367 (300)	74.7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정정	12,888	626	59	62 (1)	629 (7)	22	36	11,454 (10,904)	90.4	
	반론	305	108	12	10 (1)	39 (2)	1	4	131 (117)	80.0	
	추후	130	29	18	1	23	3		56 (49)	75.6	
	손배	5,725	393	44	49 (1)	414 (7)	80	36	4,709 (4,350)	85.5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정정	3,098	470	88	48	420 (2)	63	17	1,992 (1,836)	79.4	
	반론	419	168	23	12 (1)	44	37	3	132 (102)	77.6	
	추후	150	33	13	2	1	12	1	88 (83)	94.2	
	손배	1,560	269	94	39 (1)	245 (2)	210	11	692 (612)	73.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신청인 유형별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57.2%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15.2%였던 반면, 종교단체 사건은 취하 비율이 79.0%, 조정성립률은 2.1%에 불과했다. 일반단체 사건은 취하 47.7%, 조정성립률은 28.4%를 기록했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 취하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24.8%를 보였다. 종교단체의 경우 취하 및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각각 30.0%를 차지하였고, 조정성립률은 36.7%를 기록했다.

한편 피해구제율은 2014년 36.6%로 가장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던 국가기관이 88.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종교단체 81.2%, 일반단체 80.3%, 개인 79.4%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55.1%로 비교적 낮은 피해구제율을 기록했던 지자체·공공단체의 피해구제율은 2015년에도 63.7%를 기록, 가장 낮았다.

표 2-4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개 인	1,395	481	20	25 (1)	154 (10)	11	2	702 (588)	79.6	
	단체	국가기관	36	28		1	1			6 (6)	94.4
		지자체 공공단체	188	96	15	3	14			60 (48)	84.6
		일반단체	255	105	5	4 (1)	65 (4)	9		67 (44)	64.6
		종교단체	31	5	2	1	1			22 (16)	74.2
		회사	447	172	12	14	58			191 (149)	74.5
		교육기관	81	29		9	2			41 (33)	76.5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개 인	13,021	579	78	45 (3)	677 (15)	97	44	11,501 (10,877)	89.7	
	단체	국가기관	71	19	1	12	26			13 (6)	36.6
		지자체 공공단체	184	60	3	40	16		28	37 (23)	55.1
		일반단체	351	142	22	16	24 (1)	5	3	103 (61)	73.6
		종교단체	4,954	206	8		292	4	1	4,443 (4,250)	90.2
		회사	421	121	17	9	61			213 (172)	73.6
		교육기관	82	29	4		9			40 (31)	78.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구분 연도	신청인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5	개 인	3,123	476	122	48 (2)	369 (2)	295	27	1,786 (1,621)	79.4	
	단체	국가기관	85	47	13	2	4	1		18 (14)	88.1
		지자체 공공단체	171	55	15	16	25			60 (39)	63.7
		일반단체	570	162	38	34	66 (2)	16	2	272 (241)	80.3
		종교단체	728	15	3		131	2	2	575 (570)	81.2
		회사	466	149	25	19	94	8	1	170 (128)	66.1
		교육기관	84	36	2	2	21			23 (20)	69.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5.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서 접수한 조정청구건을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로 구분해 보면 무직¹⁾이 1,3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원 324건, 개인사업가 272건, 교육자 101건, 국회의원 100건 순으로 나타났다.²⁾

이 가운데 공공기관장의 피해구제율이 100.0%를 기록했으며, 회사원(88.7%), 언론인(86.6%), 무직(86.1%), 주부(81.3%), 시민활동가(80.0%) 등이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반면 피해구제율이 낮은 직업군을 살펴보면 기초광역단체장·의원과 금융업종사자가 각각 가장 낮은 50.0%를 보였으며, 이 밖에도 법조인(51.8%), 의료인(59.0%), 조합대표협회장(63.2%), 국회의원(63.6%)이 신청한 사건의 피해구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1) 구원파 대량사건 신청인인 유병언 전 회장의 부인이 신청한 사건은 모두 무직으로 분류됨

2) 기타 188건 및 알 수 없음 116건을 제외한 건수임

표 2-5 신청인 개인의 직업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분 직업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국회의원	100	35	6	6	20	1		32 (23)	64.6
법조인	56	3		12 (2)				41 (24)	51.8
공무원	41	19	2	2	7			11 (9)	73.2
군인·경찰	39	25	4	4	4			2 (2)	79.5
기초광역 단체장·의원	18	7			3			8 (2)	50.0
정당정치인	15	10		2				3	66.7
의료인	46	10		4	8	3	4	17 (13)	59.0
문화예술인	55	24			10			21 (18)	76.4
종교인	69	13		2	19			35 (34)	68.1
회사원	324	51	26	4	12	121		110 (103)	88.7
언론인	88	41	9		10	4	2	22 (21)	86.6
교육자	101	43			16	4		38 (26)	71.1
개인사업가	272	83	13	8	39	21		108 (95)	76.1
금융업종사자	10	4			5			1 (1)	50.0
연예인									
학 생	57	7				6		44 (33)	78.4
시민활동가	5	2						3 (2)	80.0
공공기관장	16	4						12 (12)	100.0
조합대표 협회장	57	7			17			33 (29)	63.2
주부	67	2	9		12 (2)		3	41 (39)	81.3
무직	1,383	33	48		165	25	2	1,110 (1,086)	86.1
알 수 없음	116	15	3		6	11	7	74 (32)	51.0
기타	188	38	2	4	16	99	9	20 (17)	71.3
계	3,123	476	122	48 (2)	369 (2)	295	27	1,786 (1,621)	79.4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6.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매체 유형별 피해구제율을 살펴보면 2014년 73.9% 가장 낮았던 잡지의 피해구제율이 93.8%로 가장 높았으며, 뉴스통신(86.8%), 인터넷뉴스서비스(80.1%), 인터넷신문(79.3%), 방송(78.8%)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68.1%로 가장 낮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는 2013년 89.1%, 2014년 87.2%에 이어 2015년에도 80.1%로 3년 연속 80%대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다.

조정성공률을 살펴보면 잡지 61.1%, 주간신문 35.5%, 일간신문 28.1%, 인터넷 신문 19.4%, 뉴스통신 17.0%, 방송 13.0%, 인터넷뉴스서비스 7.9%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주간신문 26.1%, 일간신문 22.9%, 방송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각 12.4%, 인터넷신문 12.3%, 뉴스통신 6.1% 순이었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조정성립률을 살펴보면 잡지 77.8%, 일간신문 40.3%, 주간신문 36.1%, 방송 28.0%, 인터넷신문 27.2%, 뉴스통신 24.3%, 인터넷뉴스서비스 16.9% 순으로 나타나,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와 방송의 조정성립률이 인터넷에 기반을 둔 매체보다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11.8%와 14.0%로 일간신문의 17.1%, 방송의 17.8%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표 2-6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신 문	522	236	23	16	80 (3)	4		163 (105)	71.0
	방 송	288	136	7	6	41 (4)	10	1	87 (49)	70.8
	잡 지	10	5		3	1			1 (1)	60.0
	뉴스통신	112	32	2	2	19 (1)		1	56 (49)	75.7
	인터넷신문	1,130	420	20	29 (1)	139 (2)	5		517 (443)	78.8
	인터넷뉴스서비스	369	85	2	1	15 (4)	1		265 (237)	89.1
	기 타	2	2							100.0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구분 연도	매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4	신 문	1,517	216	20	7	243	7	2	1,022 (957)	79.1
	방 송	3,776	99	16	19	152 (5)	18	3	3,469 (3,219)	88.9
	잡 지	25	6	4	2		2		11 (7)	73.9
	뉴스통신	1,117	70	4	7	28	22	4	982 (957)	94.5
	인터넷신문	8,436	665	60	77 (3)	473 (4)	45	52	7,064 (6,799)	90.3
	인터넷뉴스서비스	4,177	100	29	10	209 (7)	12	15	3,802 (3,481)	87.2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신 문	757	223	43	18	178	11	4	280 (239)	68.1
	방 송	892	116	27	15	111	72	5	546 (499)	78.8
	잡 지	18	11	2				2	3 (2)	93.8
	뉴스통신	264	45	10	4	16	21		168 (156)	86.8
	인터넷신문	2,490	482	91	55 (2)	306 (4)	108	21	1,427 (1,293)	79.3
	인터넷뉴스서비스	799	63	45	8	99	110		474 (444)	80.1
	기 타	7			1				6	0.0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7.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년 위원회에서 처리된 조정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성명권 침해(100%)와 재산상 손해(86.0%), 음성권 침해(85.7%) 등이 비교적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인 반면, 초상권 침해(78.4%), 명예훼손(77.8%), 사생활 침해(75.0%) 등은 70%대의 피해구제율을 나타냈다. 명예훼손

손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89.1%에 비해 10% 이상 하락한 반면, 초상권 침해는 2014년 42.2%에서 2015년 78.4%로 대폭 상승하였다.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취하가 2,852건(58.3%)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866건(17.7%), 조정 불성립결정 683건(14.0%),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68건(5.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상권 침해 사건의 경우는 기각이 130건(63.4%)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28건(13.7%), 조정성립 25건(12.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1건(5.4%) 순이었다.

대량사건 1,908건은 전부 명예훼손 사건으로 1,675건(87.8%)이 취하되었으며, 221건(11.6%)이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일반사건 3,319건의 침해 유형별 조정성립률은 재산상 손해를 이유로 한 조정신청 사건이 가장 높은 60.8%를 보였으며, 음성권 침해 50.0%, 성명권 침해 40.0%, 명예훼손 28.8%, 사생활 침해 12.5%, 초상권 침해 12.2% 등의 순이었다. 또한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은 사생활 침해 25.0%, 명예훼손 14.5%, 재산상 손해 5.9%, 초상권 침해 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명예훼손	2,252	841	50	52 (2)	287 (14)	14	2	1,006 (812)	76.9
	초상권 침해	82	32	2	3	4	1		40 (33)	82.7
	음성권 침해	5	4						1 (1)	100.0
	성명권 침해	23	7						16 (15)	95.7
	사생활 침해	45	25	2	1	2			15 (12)	86.7
	재산상 손해	26	7		1	2	5		11 (11)	85.7
	기 타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명예훼손	18,793	1,111	118	112 (3)	1,035 (16)	45	71	16,301 (15,387)	89.1
	초상권 침해	208	25	13	8	66	57	4	35 (24)	42.2

연도	구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음성권 침해	5	2	1					2 (2)	100.0
	성명권 침해	8	5	1					2 (1)	87.5
	사생활 침해	14	8		2			1	3 (1)	69.2
	재산상 손해	17	4			4	2		7 (5)	60.0
	기 타	3	1				2			100.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명예훼손	4,891	866	169	99 (2)	683 (4)	191	31	2,852 (2,591)	77.8
	초상권 침해	205	25	11		10	130	1	28 (22)	78.4
	음성권 침해	14	7	2					5 (3)	85.7
	성명권 침해	10	4						6 (6)	100.0
	사생활 침해	56	7	34		14			1 (1)	75.0
	재산상 손해	51	31	2	2	3	1		12 (10)	86.0
	기 타									-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8.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³⁾

매체별 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지면을 기반으로 한 매체의 경우 전체 574건 중 일간지 413건, 주간신문 130건, 잡지 8건 등 96.0%인 551건이 명예훼손이었으며, 재산상 손해 16건(2.8%), 초상권 침해가 7건(1.2%)으로 나타났다. 일간지 432건 중 조정성립은 174건으로 40.3%를 차지

3) 대량사건을 제외한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임. 대량사건의 매체별 처리결과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설명

했으며, 취하 140건(33.9%), 조정불성립결정 74건(1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간신문 133건 중 조정성립이 48건(36.1%)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 36건(27.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8건(21.1%), 취하 18건(13.5%) 순이었다.

방송은 415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313건(75.4%), 초상권 침해 70건(16.9%), 성명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 23건(5.5%), 재산상 손해 9건(2.2%)을 차지했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조정성립이 116건(28.0%)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106건(25.5%), 조정불성립결정 74건(17.8%), 기각 72건(17.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2건(10.1%) 순이었다. 다른 매체보다도 기각 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구원파 개인 신도들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다건의 조정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뉴스통신은 2,323건의 청구건수 중 명예훼손이 2,112건(90.9%), 초상권 침해 128건(5.5%), 기타 인격권 침해 57건(2.5%), 재산상 손해 26건(1.1%)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987건(42.5%)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589건(25.4%), 조정불성립결정 277건(11.9%), 기각 237건(10.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12건(9.1%)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이 비교적 낮고 취하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기각이 많은 것은 세월호 관련 대량 사건이 일괄적으로 취하되거나 조정불성립결정, 또는 기각되었기 때문이다. 전체 2,323건 중 1,766건의 청구건수를 기록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는 취하가 804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481건(27.2%), 조정불성립결정 209건(11.8%),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45건(8.2%), 기각 106건(6.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72건이 접수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는 기각이 110건(29.6%)으로 가장 많았고, 취하 94건(25.3%), 조정성립 63건(16.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3건(14.2%), 기각 52건(14.0%)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2015년도 세부 매체별 침해유형 및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매체유형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일 간 지	중앙일간지	170	165	3				2	52	24	46	10	2	36
	지역일간지	228	217					11	104	5	26			93
	경제지	18	17	1					9	1	2			6
	스포츠지	5	5						4					1
	특수일간지	6	5	1					3					3

매체유형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주간지·주간신문	외국어일간지	2	1	1						1				1
	무료일간지	3	3						2	1				
	소계	432	413	6				13	174	32	74	10	2	140
	시사주간신문	7	7						4					3
	지역주간신문	66	63					3	21	16	21		2	6
	특수주간신문	35	35						11	5	11			8
	시사주간지	25	25						12	7	4	1		1
	소계	133	130					3	48	28	36	1	2	18
	잡지	9	8	1					7					2
	소계	9	8	1					7					2
방송	중앙방송	138	111	15	1	1	4	6	37	21	32	15	2	31
	지방방송	34	32	2					7	4	10			13
	지역민방	28	25		1		1	1	17	1	2			8
	케이블tv	62	34	25	2		1		8	7	5	27	1	14
	종합편성채널	153	111	28	3	3	6	2	47	9	25	30	2	40
	소계	415	313	70	7	4	12	9	116	42	74	72	5	106
뉴스통신		185	171	7		3	2	2	45	14	16	21		89
인터넷신문		1,766	1,703	34	1	2	7	19	481	145	209	106	21	804
인터넷뉴스서비스		372	238	87	6	1	35	5	63	53	52	110		94
기타		7	7							1				6
총계		3,319	2,983	205	14	10	56	51	934	315	461	320	30	1,259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중 통신인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단일매체로는 가장 많은 청구 건수를 기록했다. 일간지 중에는 한국일보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의 경우 JTBC 48건, MBC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신문은 노컷뉴스가 55건, 그리고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가 46건으로 해당 부문에서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차지했다.

매체별로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 일간지 중 한국일보가 34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을 기록했으며, 이어 조선일보 24건, 동아일보 23건, 한겨레와 경향신문 각 19건, 중앙일보 18건, 문화일보 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조선일보, 한겨레는 조정성공률이 높은 반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조정불성립결정률이 다소 높았다.

지역 일간지 중에서는 광주일보 16건, 인천일보 15건, 전북일보 11건, 부산일보 10건 등 지역의 대표적인 정론지들을 상대로 한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광주일보의 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모 시장상인회에서 10건의 조정청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며, 16건 중 12건이 취하되고, 4건은 조정성립 되었다.

기타 일간지 가운데는 파이낸셜뉴스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경제 5건, 매일경제 및 에너지경제 각 3건, 머니투데이,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디지털타임스, 코리아타임스, 메트로 각 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송의 경우 JTBC가 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MBC-TV 45건, KBS-1TV, SBS-TV 각 42건, 채널A 38건, MBN 37건, TV조선 30건, 연합뉴스TV 24건, YTN 2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BS-1, 2TV를 합칠 경우(지역 계열방송사 제외) 모두 51건으로 JTBC보다도 많은 건수를 보였다. 주요 방송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의 청구건수가 방송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 청구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 방송에서는 지역민방인 KBC-TV가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주 KBS-1TV 7건, 청주KBS-1TV, G1강원민방 각 5건, KNN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BS의 경우 조정성립률 31.4%, 조정불성립결정률 9.8%를 보인 반면, MBC는 조정성립률 17.8%, 조정불성립결정률이 33.3%로 다소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SBS의 경우는 조정성립률 30.9%, 조정불성립결정률 28.6%를 보였다. 종합편성채널 중 가장 많은 청구건수를 기록한 JTBC는 조정성립률 33.3%, 조정불성립결정률 14.6%를 기록했다.

뉴스통신의 경우 뉴스1코리아가 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합뉴스 46건, 뉴시스 39건, 아시아뉴스통신 21건 등의 순이었다. 뉴스1코리아의 경우 조정성립률은 20.6%, 조정불성립결정률은 11.1%인 반면 취하율이 44.4%로 비교적 높았으며, 연합뉴스 역시 취하율이 52.2%로 매우 높았고, 조정성립률은 15.2%였다.

일간지를 제외한 주간신문, 주간지, 잡지 등 기타 지면 매체 가운데는 시민의소리가 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시사저널 7건, 한려투데이, 충청리뷰 각 5건, 남해시대, 유교신문, 주간경향 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소리에 대한 청구건수가 많은 것은 모 시장상인회에서 10건의 조정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신문은 노컷뉴스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닷컴 45건, 온라인 중앙일보 44건, 인터넷

경향신문 42건, 인터넷 한국일보 40건, 동아닷컴 37건, e머니투데이가 32건, 인터넷 한겨레 31건, 세계닷컴 30건, 인터넷 국민일보 23건, 인터넷 미디어오늘 22건, 아시아경제닷컴 19건, 오마이뉴스 18건, 아시아투데이닷컴 17건, 인터넷 문화일보 16건, 인터넷 헤럴드경제, 아주뉴스 각 15건, 매경닷컴, 인터넷 일요시사, 인터넷 일요신문 각 14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 인터넷신문으로는 인터넷 인천일보 17건, 인터넷 광주일보와 인터넷 시민의소리가 각 16건을 기록했다. 노컷뉴스의 경우 조정성립률이 18.2%로 조정불성립결정률 27.3%보다 낮았다.

한편, 인터넷뉴스서비스는 KBS미디어가 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 연합뉴스TV 39건, SBS 콘텐츠허브 및 인터넷 MBN 각 38건, 인터넷 JTBC 35건, 인터넷 채널A 28건, 인터넷 TV조선 26건, 인터넷 YTN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KBS미디어의 경우 직권조정결정이 32.6%로 가장 높았고, 취하 23.9%, 기각 19.6% 순이었다. 포털사이트의 경우 네이버 13건, 다음 12건, 네이버, 줌 각 7건 등의 순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표 2-9 매체별 침해 유형 및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9	19						8	2	6			3
	국민일보	5	5						2	1	2			
	내일신문	1	1							1				
	동아일보	23	23						6	4	6	1		6
	매일일보	4	4								3			1
	문화일보	14	12	2					2	5	2	2		3
	서울신문	4	4						4					
	세계일보	5	5											5
	조선일보	24	23	1					6		5	7		6
	중앙일보	18	18						5	1	6		2	4
	한겨레	19	19						9	3	5			2
	한국일보	34	32					2	10	7	11			6
	소계	170	165	3				2	52	24	46	10	2	36
지역 일간지	강원도민일보	4	4						2					2
	강원일보	5	5						1					4
	경기도민일보	1	1											1
	경기일보	6	6						1					5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역 일 간 지	경기일보	6	6						1					5
	경남도민신문	5	5						3		2			
	경남도민일보	2	2											2
	경남매일	1	1						1					
	경남신문	1	1											1
	경북도민일보	2	2						2					
	경북매일	6	6						4					2
	경북일보	1	1						1					
	경인매일	1	1						1					
	경인일보	6	6						1	2	3			
	경인종합일보	1	1						1					
	광남일보	8	2					6	8					
	광주매일신문	1	1						1					
	광주일보	16	16						4					12
	국제신문	2	2											2
	금강일보	1	1											1
	기호일보	2	2						1					1
	내외일보	3	3						2					1
	대경일보	2	2											2
	대구광역일보	3	3								3			
	대전일보	1	1											1
	대전투데이	2	2						2					
	동양일보	2	2								2			
	매일신문	3	3						2					1
	무등일보	3						3	3					
	부산일보	10	10											10
	새전북신문	6	6						1		2			3
	서울매일	1	1											1
	서울일보	2	2						2					
	세종매일	5	5						5					
	수도권일보	1	1						1					
	신아일보	2	2						2					
	아시아타임즈	3	3						2					1
	아시아투데이	3	3						3					
	영남일보	7	7								2			5

제 1 부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 역 일 간 지	우리일보	1	1						1					
	영남일보	7	7								2			5
	우리일보	1	1						1					
	인천일보	15	15						9					6
	일간뉴스경남	2	2								2			
	전남도민일보	7	7						6					1
	전남매일	2	2						2					
	전남일보	9	7					2	8					1
	전라매일	3	3						2					1
	전라일보	2	2						1					1
	전북매일신문	2	2						1					1
	전북일보	11	11						2	2	3			4
	전북중앙신문	1	1						1					
	전주매일	6	6						4					2
	전주일보	2	2											2
	제주매일	1	1							1				
	제주신문	2	2								2			
	중도일보	2	2											2
	중부매일	2	2								2			
	충남일보	3	3						1					2
	충북일보	5	5						3		1			1
	충청매일	2	2						1		1			
	충청신문	2	2						1					1
	충청투데이	5	5						1					4
	한남일보	2	2						1					1
	한라일보	3	3								1			2
	현대일보	2	2						2					
	호남매일	3	3											3
	소계	228	217						11	104	5	26		
경 제 지	뉴스토마토	1	1						1					
	매일경제	3	2	1					1		1			1
	머니투데이	2	2								1			1
	파이낸셜뉴스	7	7						4					3
	한국경제	5	5						3	1				1
	소계	18	17	1					9	1	2			6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스 포 츠 지	스포츠동아	2	2						2					
	스포츠서울	2	2						1					1
	스포츠조선	1	1						1					
	소계	5	5						4					1
특 수 일 간 지	디지털타임스	2	2						2					
	소년조선일보	1		1										1
	에너지경제	3	3						1					2
	소계	6	5	1					3					3
외 국 어 일 간 지	The Korea Times	2	1	1						1				1
	소계	2	1	1						1				1
무 료 일 간 지	메트로	2	2						1	1				
	이데일리	1	1						1					
	소계	3	3						2	1				
중 앙 방 송	KBS-1·2TV	2		2								2		
	KBS-1TV	42	33	3			1	5	11	8	4	6		13
	KBS-2TV	7	6					1	5		1	1		
	MBC-TV	45	37	6		1	1		8	9	15	1	2	10
	SBS-TV	42	35	4	1		2		13	4	12	5		8
	소계	138	111	15	1	1	4	6	37	21	32	15	2	31
지 방 방 송	MBC강원 영동-TV	1	1											1
	MBC경남 (진주,창원)	3	3								3			
	경인KBS-1TV	2	2						1					1
	광주KBS-1TV	1	1						1					
	광주MBC-TV	3	3						2					1
	대구MBC-TV	2	2											2
	부산KBS-1TV	2	2						1					1
	부산MBC-TV	1	1											1
	전주KBS-1TV	3	2	1					1					2
	전주MBC-TV	1	1								1			
	제주KBS-1TV	7	6	1						4	1			2
	제주MBC-TV	1	1						1					
	창원KBS-1TV	2	2											2
	청주KBS-1TV	5	5								5			
	소계	34	32	2					7	4	10			13

제 1 부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지역민방	CJB-TV	1	1								1			
	G1 강원민방-TV	5	5						2					3
	JIBS-TV	2	2						2					
	KBC-TV	11	11						10					1
	KNN	4	2		1			1	1					3
	OBS경인TV	3	2				1		2	1				
	TBC-TV	1	1											1
	TJB-TV	1	1								1			
	소계	28	25		1		1	1	17	1	2			8
케이블 TV	CBS TV	3	3								3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2	2											2
	e채널	3	3											3
	NIB 뉴스	1	1						1					
	SBS Sports	1	1										1	
	YTN	22	15	4	2		1		6	3	2	3		8
	연합뉴스TV	24	4	20					1	1		22		
	티브로드-TV	3	3							3				
	현대홈쇼핑	1		1										1
	현대HCN관악방송	2	2									2		
종합 편성 채널	소계	62	34	25	2		1		8	7	5	27	1	14
	JTBC	48	33	10	3	1	1		18	3	7	10		10
	MBN	37	26	8		1	1	1	11	4	4	8		10
	TV조선	30	19	6		1	3	1	6		5	6		13
	채널A	38	33	4			1		12	2	9	6	2	7
	소계	153	111	28	3	3	6	2	47	9	25	30	2	40
뉴스 통신	NSP통신	2	2								2			
	국제뉴스	12	12						3		3			6
	내외뉴스통신	1	1											1
	뉴스1코리아	63	54	6		3			13	5	7	10		28
	뉴시스	39	39						10	3	1	5		20
	서울뉴스통신	1	1						1					
	아시아뉴스통신	21	21						11					10
	연합뉴스	46	41	1			2	2	7	6	3	6		24
소계	소계	185	171	7		3	2	2	45	14	16	21		89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시 사 주 간 신 문	일요서울	1	1						1					
	일요시사	3	3						3					
	일요신문	2	2											2
	중앙Sunday	1	1											1
	소계	7	7						4					3
지 역 주 간 신 문	강화섬소식	1	1						1					
	경북자치신문	2	2						2					
	광양신문	1	1						1					
	남해시대	4	4								4			
	반월신문	2	2								2			
	북경기신문	2	2								2			
	서라벌신문	2	2								2			
	시민의소리	16	16						2	14				
	안성신문	1	1						1					
	연수신문	2	2							2				
	열린순창	2	2										2	
	영암신문	3						3						3
	원주신문	2	2								2			
	전남타임스	2	2											2
	주간 노령	3	3						3					
	주간당진시대	2	2						2					
	중원신문	2	2						2					
	청양신문	1	1						1					
	충청리뷰	5	5						2		2			1
	콩나물신문	1	1						1					
	하동군민신문	1	1						1					
	한길뉴스	2	2								2			
	한려투데이	5	5								5			
	해남신문	2	2						2					
	소계	66	63					3	21	16	21		2	6
특 수 주 간 신 문	가스신문	2	2											2
	대한변협신문	1	1						1					
	더스쿠프	2	2											2
	미디어오늘	2	2							2				
	소상공인신문	3	3								1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해 유형						처리 결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특수주간신문	씨네21	2	2											2
	유교신문	4	4								4			
	장로신문	2	2								2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노보	1	1							1				
	전남기독신문	1	1						1					
	제주불교신문	2	2								2			
	주간침례신문	1	1						1					
	치과의사신문	2	2							2				
	치의신보	2	2								2			
	크리스찬타임	2	2						2					
	한국기독신문	3	3						3					
	한국대학신문	3	3						3					
시사주간지	소계	35	35						11	5	11			8
	시사뉴스	2	2							2				
	시사저널	7	7						5	2				
	시사IN	1	1											1
	주간경향	4	4								4			
	주간조선	1	1									1		
	한겨레21	10	10						7	3				
	소계	25	25						12	7	4	1		1
잡지	경제풍월	1	1						1					
	맘&양팡	1		1										1
	시사매거진	2	2						2					
	여성조선	2	2						2					
	월간중앙	2	2						2					
	차의세계	1	1											1
	소계	9	8	1					7					2
인터넷신문	CBC뉴스	2	2											2
	CNN25	2	2											2
	닥터스뉴스	7	7								1			6
	e-시사통신	3	3											3
	뉴스앤조이	4	4						1	1				2
	e머니워크	6	6						1					5
	e머니투데이	32	28	4					3		4	9		16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e수원뉴스	1	1										1	
	e시사코리아저널	2	2						2					
	K신문	1	1											1
	kidok.com	2	2											2
	SSTV	4	4											4
	TK TIMES	2	2											2
	UGN경북뉴스	2	2											2
	(주)티비리포트	1	1											1
	게임플	1	1											1
	검툐	2	2											2
	경기중앙신문	3	3											3
	경기IN	3	3											3
	경북장애인뉴스	1	1											1
	경인투데이뉴스	4	4						1					3
	경제투데이	2	2											2
	경찰투데이	2	2											2
	고발뉴스닷컴	2	2											2
	광명매일신문	2	2											2
	광명투데이신문	4	4						4					
	광양뉴스	1	1						1					
	광주투데이	2	2											2
	광주in	1	1						1					
	교회와신앙	1	1						1					
	굿데이뉴스	1	1						1					
	굿모닝논산	2	2						2					
	금융소비자뉴스	1	1								1			
	기독인 뉴스	1	1											1
	깊게 보는 개미뉴스	2	2						1					1
	남도타임즈	2	2									2		
	남원포유	2	2						2					
	남해타임즈	4	4								4			
	내외통신뉴스	2	2											2
	노컷뉴스	55	53	2					10	2	15	5		23
	뉴데일리	9	9						4	2				3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뉴데일리경제	8	8						2	2				4
	뉴민주신문	1	1											1
	뉴스셀	2	2						2					
	뉴스1스타	1	1											1
	뉴스미션	3	3											3
	뉴스뷰	3	3								3			
	뉴스웨어	2	2						2					
	뉴스스토리	2	2											2
	뉴스천지	7	6	1					2	2		1		2
	뉴스캔	2	2											2
	뉴스코어	2	2											2
	뉴스퀵	2	2											2
	뉴스타운	3	3						1		2			
	뉴스타워	2	2											2
	뉴스타파	6	5		1				3	1	2			
	뉴스투데이24	2	2											2
	뉴스투데이한국	5	5						3			2		
	뉴스파워	2	2						2					
	뉴스핍	4	4											4
	뉴스호남	3	3						3					
	대전시티저널	7	7							2	1			4
	대한뉴스통신	4	4											4
	대한장애인신문은뉴스	3	3										1	2
	더코리아프레스	2	2											2
	더팩트	8	7	1								1		7
	데일리게임	2	2							2				
	데일리덴탈	2	2								2			
	데일리메디	2	2								2			
	데일리메일	2	2						2					
	데일리안	7	7						1			2		4
	데일리한국	3	2	1								1		2
	데일리환경	1				1								1
	돌직구뉴스	2	2											2
	디지털포천신문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디지털데일리	1	1						1					
	디지털함께걸음	1	1											1
	디트news24	2	2											2
	라포르시안	2	2						2					
	리폼드뉴스	1	1											1
	마로니에방송	1	1											1
	마이씨네	1	1											1
	매경닷컴	14	12	2					2	1	1	1	2	7
	메디칼타임즈	4	4						1			1		2
	메디컬투데이	2	2											2
	메디파나뉴스	2	2											2
	메디포뉴스	2	2											2
	몬스터짐	1	1								1			
	문화저널21	1	1											1
	문화투데이	1	1							1				
	미디어광명	2	2						2					
	미디어리포트	2	2									2		
	미디어스	13	12			1			8	1	3			1
	미디어와이	3	3											3
	미디어제주	2	2						2					
	미디어펜	8	8						4			2		2
	미디어하남	2	2						2					
	민족의 소리 서울의 소리	5	2				3		3		1			1
	민중언론참세상	2	2								2			
	민중의소리	3	3							1				2
	반론보도닷컴	4	4								4			
	법률정보신문	2	2											2
	복지TV한국웰 페어뉴스	4	4											4
	부천매일	3	3							1				2
	불교닷컴	11	11						2		6			3
	불교포커스	2	2								2			
	불교플러스	2	2								2			
	불만닷컴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뉴스앤뉴스	6	6						5					1
	브레이크뉴스	9	9							2				7
	브레이크뉴스 대전충청	2	2											2
	블랙먼데이	1	1											1
	비마이너	9	9						8					1
	비전코리아 뉴스	2	2											2
	사건의내막	1	1											1
	사람일보	1	1											1
	서울일보닷컴	2	2											2
	세계닷컴	30	29	1					4	3	4	4		15
	세종데일리	1	1											1
	세종in뉴스	1	1						1					
	취핑데일리	1	1						1					
	스카이데일리	1	1											1
	스타뉴스	1	1											1
	스타엔	1	1											1
	스타투데이	2	2											2
	시민방송국Y	2	2						2					
	시사메디in	8	8							8				
	시사위크	3	3						1					2
	시사포커스신문	7	7											7
	시사N Live	5	5								2			3
	시크뉴스	1	1											1
	씨네21뉴스서비스	2	2											2
	씨씨티브이뉴스	1	1						1					
	씨앤비뉴스	6	6											6
	아시아경제닷컴	19	18	1					5			1		13
	아시아엔	4	4							2				2
	아시아투데이닷컴	17	14	3					5		2	5		5
	아웃소싱타임스	2	2											2
	아이뉴스24	1	1											1
	아이크레뉴스	1	1											1
	아주뉴스	15	15						4					1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안산저널	3	3											3
	업다운뉴스	1	1											1
	업코리아	3	3								3			
	에듀인뉴스	2	2							2				
	에스티브이	3	3								1			2
	에이블뉴스	12	12						5		2			5
	엑스포초뉴스	2	2											2
	엔디엔뉴스	4	4						2					2
	여성종합뉴스	7	7						6					1
	연합통신넷	2	2							2				
	예장뉴스	3	3						3					
	오마이뉴스	18	18						4		2	2		10
	오산인터넷뉴스	1	1						1					
	오에스이엔	4	4											4
	온라인중앙일보	44	42					2	8	6	7	1		22
	울인코리아	2	2											2
	우리들뉴스	3	3						2					1
	울산조은뉴스	6	6						6					
	월드투데이	1	1											1
	웰빙코리아뉴스	2	2									2		
	웰페어뉴스	5	5											5
	위키투리	1	1											1
	유앤앤	5	5						3					2
	의약뉴스	1	1											1
	의정부뉴스	2	2											2
	이헬스통신	1	1											1
	이뉴스투데이	7	7											7
	이슈타임	4	4											4
	이타임즈	1	1											1
	이투데이	8	6	1					1	1		1		6
	익산인터넷뉴스	2	2							1				1
	익산제일뉴스	2	2							1				1
	인권오름	2	2								2			
	인사이트	3	2	1										3
	인천뉴스	1	1								1			

제 1 부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가스신문	2	2											2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4	4						2					2
	인터넷 건설경제	1	1							1				
	인터넷 경기도정신문	3	3											3
	인터넷 경기리포트	3	3						3					
	인터넷 경기일보	13	13						3					10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5	5						3		2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2	2											2
	인터넷 경남매일	1	1						1					
	인터넷 경남신문	1	1											1
	인터넷 경남일보	1	1									1		
	인터넷 경양일보	3	3											3
	인터넷 경인매일	2	2											2
	인터넷 경인일보	10	9	1					2	2	3		1	2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3	3											3
	인터넷 경제풍월	1	1						1					
	인터넷 경향신문	42	41	1					12	2	9	5		14
	인터넷 광남일보	8	2					6	8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1	1						1					
	인터넷 광주일보	16	16						4					12
	인터넷 국민일보	23	23						3	3	6	3		8
	인터넷 굿모닝충청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금강신문	2	2						2					
	인터넷 금강일보	2	2											2
	인터넷 금이성	1	1											1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2	2											2
	인터넷 기독일보	1	1											1
	인터넷 기자협회보	3	3						3					
	인터넷 길림신문해외판	2	2											2
	인터넷 김해뉴스	1	1											1
	인터넷 내외일보	6	6						3					3
	인터넷 뉴스토마토	7	7						6					1
	인터넷 대경일보	2	2											2
	인터넷 대구광역일보	2	2								2			
	인터넷 대전일보	5	5						1					4
	인터넷 대전투데이	2	2						2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1	1						1					
	인터넷 더데일리포커스	1	1											1
	인터넷 더스쿠프	2	2											2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	2	2											2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3	3											3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3	3						1					2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10	10						8					2
	인터넷 매일신문	3	3						1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매일일보	3	3											3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2	2											2
	인터넷 무등일보	3						3	3					
	인터넷 무예신문	1	1											1
	인터넷 물향기신문	1	1						1					
	인터넷 반월신문	2	2								2			
	인터넷 법보신문사	1	1							1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2	2											2
	인터넷 병원신문	1	1						1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5	5								2			3
	인터넷 부천신문	1	1								1			
	인터넷 북경기신문	2	2								2			
	인터넷 불교신문	1	1											1
	인터넷 새만금일보	3	3						2					1
	인터넷 새전북신문	3	3						1					2
	인터넷 서울경제	8	8						1	2				5
	인터넷 서울매일	1	1											1
	인터넷 서울신문	12	10	2					4			2		6
	인터넷 세종매일	4	4						2					2
	인터넷 소상공인신문	2	2											2
	인터넷 수도권일보	4	4						4					
	인터넷 수원일보	5	5						3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스페셜경제	1	1											1
	인터넷 스포츠경향	6	6						2			2		2
	인터넷 스포츠동아	4	4						2					2
	인터넷 스포츠서울	4	4						2	2				
	인터넷 스포츠조선	7	7						1	2				4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1	1											1
	인터넷 시민의소리	16	16						2	14				
	인터넷 시민일보	4	4											4
	인터넷 시사뉴스	3	3						1	2				
	인터넷 시사매거진	2	2						2					
	인터넷 시사상조	4	4						3				1	
	인터넷 시사인천	3	3											3
	인터넷 시사저널	11	10	1					4	3	2			2
	인터넷 시사주간	1	1											1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2	2							2				
	인터넷 신동아	2	2						2					
	인터넷 신아일보	4	4						2					2
	인터넷 아시아일보	2	2						2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7	7						6					1
	인터넷 안성신문	1	1						1					
	인터넷 에너지경제	8	8						2	1				5
	인터넷 여성신문	2	2									2		

제 1 부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영암신문	3						3						3
	인터넷 용인시민신문	2	2								2			
	인터넷 울진신문	1	1											1
	인터넷 위클리오늘	1	1											1
	인터넷 유교신문	4	4								4			
	인터넷 의정부신문	1	1											1
	인터넷 의학신문	1	1						1					
	인터넷 이데일리	6	5	1					1	2		1		2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2	2						2					0
	인터넷 천일보	17	17						5					12
	인터넷 일간뉴스경남	3	3						1		2			
	인터넷 일간스포츠	6	6						1	2				3
	인터넷 일요서울	11	11						2		4			5
	인터넷 일요시사	14	14						10			1		3
	인터넷 일요신문	14	14						3	1		4	2	4
	인터넷 일요저널	2	2											2
	인터넷 장애인생활신문	1	1										1	
	인터넷 전국매일	1	1											1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	7						6					1
	인터넷 전남매일	2	2						2					
	인터넷 전남일보	8	6					2	8					
	인터넷 전남타임스	2	2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제주신문	1	1								1			
	인터넷 주간 고양신문	2	2						2					
	인터넷 주간 당진시대	2	2						2					
	인터넷 주간경향	3	3											3
	인터넷 주간현대	1	1											1
	인터넷 중도일보	1	1											1
	인터넷 중앙Sunday	1	1											1
	인터넷 충원신문	2	2						2					
	인터넷 청년 의사	5	5						1					4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2	2							2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1	1											1
	인터넷 콩나물신문	1	1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3	3											3
	인터넷 태권도신문	1	1											1
	인터넷 태권라인	1	1						1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	3	3											3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1	11						4					7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1	1						1					
	인터넷 팝콘뉴스	2	2											2
	인터넷 포천뉴스	4	4						1		2			1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1	1						1					
	인터넷 한겨레	31	31						13	4	3	5		6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타 넷 신 문	인터넷 한겨레21	11	11						7	3				1
	인터넷 한국일보	40	37	1				2	11	10	13			6
	인터넷 한길뉴스	2	2								2			
	인터넷 한남일보	3	3						1		1			1
	인터넷 한려투데이	4	4								4			
	인터넷 한익신문	1	1							1				
	인터넷 해남신문	2	2						2					
	인터넷 환경스포츠포신문	2	2								2			
	인터넷 후생신보	1	1						1					
	인터넷 PD저널	3	3						3					
	인터넷 The Korea Times	2	1	1						1				1
	인터넷 강원일보	6	6						2					4
	인터넷 경북매일	3	3						3					
	인터넷 국제신문	3	3											3
	인터넷 기호일보	12	12						8					4
	인터넷 내일신문	3	3											3
	인터넷 뉴스신문고	5	5									2		3
	인터넷 데일리경제	1	1											1
	인터넷 동양일보	2	2								2			
	인터넷 메트로	8	7	1					1	1	2	3		1
	인터넷 문화일보	16	14	2					1	7	2	2		4
	인터넷 미디어오늘	22	22						5	8	4	4		1
	인터넷 부산일보	11	11											1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인터넷 영남일보	7	7								2			5
	인터넷 용인신문	1		1					1					
	인터넷 원주신문	2	2								2			
	인터넷 인천일보	3	3						1					2
	인터넷 전라일보	2	2						1					1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1	1						1					
	인터넷 전주매일	4	4						3					1
	인터넷 제주매일	1	1							1				
	인터넷 주간경향	5	4	1							4			1
	인터넷 주간동아	5	4	1					2				3	
	인터넷 주간조선	1	1									1		
	인터넷 중부매일	3	3						1		2			
	인터넷 중부일보	6	6						2	1	3			
	인터넷 충북일보	6	6						3		1			2
	인터넷 충청매일	3	3						1				2	
	인터넷 충청일보	2	2											2
	인터넷 충청투데이	3	3								2			1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3	3						3					
	인터넷 한라일보	3	3								1			2
	인터넷 한려투데이	2	2						1		1			
	인터넷 헤럴드경제	15	15						5			2		8
	장애인뉴스	2	2											2
	전국뉴스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장애인뉴스	2	2											2
	전국뉴스	1	1											1
	전남인터넷신문	3	3											3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4	4							2				2
	전자신문인터넷	1	1											1
	제주의소리	2	2											2
	제천뉴스저널	2	2								2			
	제천사랑뉴스	2	2						2					
	조갑제닷컴	1		1					1					
	조선닷컴	45	44				1		9	4	4	9		19
	조선비즈닷컴	9	9						2	2	1			4
	조세일보	3	3							2				1
	종교신문	1	1											1
	주간 노령	2	2						2					
	중부미디어	2	2											2
	중부투데이	2	2						1					1
	지뉴스데일리	2	2											2
	지케이뉴스	2	2											2
	천안시민신문	2	2											2
	충남뉴스	2	2											2
	충북인뉴스	3	3								2			1
	칸투데이	1	1											1
	컨슈머타임스	2	2						2					
	코나스	1	1											1
	쿠키뉴스	14	13	1					2			3		9
	타임뉴스	3	3						2					1
	투데이코리아	2	2											2
	트래블데일리	2	2								2			
	티브이데일리	2	2											2
	파인뉴스	9	9									2	7	
	파인피플뉴스	2	2											2
	포천일보	2	2											2
	폴리뉴스	3	3											3
	푸드투데이	3	3								1			2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작권조정 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신 문	푸른한국닷컴	2	2								2			
	풋볼리스트	2	2						2					
	프라임경제	10	10						2	2				6
	프레스인	9	9						2					7
	하키뉴스코리아	1	1											1
	한강타임즈	4	4											4
	한경닷컴	6	6						3	1				2
	한국기독일보	2	2											2
	한국디지털뉴스	2	2											2
	한국무예신문	2	2						2					
	한국장애인뉴스	2	2											2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2	2									2		
	헤럴드TV	1	1											1
	헬스코리아뉴스	6	6											6
	화순투데이	2	2									2		
인 터 넷 뉴 스 서 비 스	소계	1,766	1,703	34	1	2	7	19	481	145	209	106	21	804
	iKNN	4	2		1			1	1					3
	iMBC	17	12	5					5	2	4	4		2
	KBS미디어	46	31	7			6	2	5	15	6	9		11
	SBS콘텐츠허브	38	33	3			2		7	5	8	8		10
	wow한국경제TV	5	4	1								1		4
	가자아이뉴스	1	1											1
	구글	4	4									4		
	네이버	13	12	1					3			4		6
	네이트	7	7									4		3
	다음	12	11	1					1			4		7
	인터넷 광주MBC	2	2						2					
	인터넷 서울신문 STV	1	1											1
	인터넷 연합뉴스TV	39	11	24			4		2	7		24		6
	인터넷 채널A	28	15	7			6		3	8	9	8		
	인터넷 평화방송	1	1											1
	인터넷 현대 HCN충북방송	1	1											1

매체 유형	매체명	청구 건수	침 해 유 형						처 리 결 과					
			명예 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사생활 침해	재산상 손해	조정 성립	직권조 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인 터 넷 뉴스 서 비 스	인터넷 BBS불교방송	2	2											2
	인터넷 CTS기독교 TV	2	2								2			
	인터넷 G1 강원민방-TV	1	1						1					
	인터넷 KBC	9	9						8					1
	인터넷 OBS경인TV	4		3			1		2		2			
	인터넷 TBS	3	3									2		1
	인터넷 TV조선	26	10	7			8	1	3		15	6		2
	인터넷 JTBC	35	14	15	3	1	2		10	3		15		7
	인터넷 MBN	38	27	8			2	1	8	5	6	9		10
	인터넷 YTN	24	13	5	2		4		2	8		4		10
	중	7	7									4		3
	풀빵닷컴	2	2											2
	소계	372	238	87	6	1	35	5	63	53	52	110		94
기 타	남동사람들	1	1							1				
	발뉴스	2	2											2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2	2											2
	XSFМ	2	2											2
	소계	7	7							1				6
계		3,319	2,983	205	14	10	56	51	934	315	461	320	30	1,259

9. 중재부별 처리결과

서울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90.0%보다 10%p 이상 하락한 77.4%를 기록한 반면, 지역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70.0%보다 10%p 가까이 상승한 79.8%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중재부의 경우 서울제7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이 9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제6중재부 81.2%, 서울제1중재부 80.6%, 서울제8중재부 7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중재부에서는 광주중재부가 100.0%로 가장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였으며, 강원중재부 90.5%, 대전중재부 85.7%, 경기중재부 82.5%, 부산중재부 7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제7중재부의 피해구제율이 94.0%를 기록한 것은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상당건이 보도 또는 기사삭제 혹은 수정 등으로 일괄 타결되면서 피해구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은 13.8%로 지역중재부의 35.7%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조정불성립 결정률은 서울중재부 13.8%, 지역중재부 12.7%로 큰 차이가 없었다.

서울중재부의 취하율은 58.5%로, 지역중재부의 43.1%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이는 구원과 대량사건 상당건이 일괄 타결되면서 신청인이 청구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중재부의 기각율은 7.3%로, 지역중재부의 1.5%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 역시 세월호 관련 구원과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조정청구를 했다가 기각결정된 사건 대부분이 서울 지역 매체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재부 가운데 서울 제2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이 23.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제3중재부 19.6%, 서울제8중재부 17.2%, 서울제5중재부 16.3% 등의 순이었다. 지역중재부 가운데 광주중재부의 조정성립률은 53.7%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중재부 42.9%, 충북중재부 36.6%, 전북중재부 35.9%, 경기중재부 34.4% 등의 순이었다.

표 2-9 최근 3년간 중재부별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3	서울1	186	108		4		1		73 (58)	89.7
	서울2	158	69		2	25			62 (44)	71.5
	서울3	228	72	5	10	16 (1)	3		122 (108)	82.7

연도	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3	서울4	272	92	8	7	4		1	160 (142)	89.3	
	서울5	188	48	6	13 (1)	22 (9)	2	1	96 (79)	77.3	
	서울6	286	146	6	3	4	8		119 (112)	95.0	
	서울7	16	7						9 (4)	68.8	
	서울8	472	132	11	8	117 (4)	5		199 (173)	68.5	
	소 계	1,806	674	36	47 (1)	188 (14)	19	2	840 (720)	81.0	
	부산	69	29	2		6			32 (14)	65.2	
	대구	48	12		1	10			25 (13)	52.1	
	광주	78	29	4	1	10			34 (29)	79.5	
	대전	75	44			2	1		28 (9)	71.6	
	경기	195	78	6	7	49			55 (51)	69.2	
	강원	20	9			4			7 (6)	75.0	
	충북	37	19	4		4			10 (4)	73.0	
	전북	39	9	2	1 (1)	7			20 (9)	53.8	
	경남	63	13			13			37 (29)	66.7	
	제주	3				2			1	0.0	
	소 계	627	242	18	10 (1)	107	1		249 (164)	67.9	
	계	2,433	916	54	57 (2)	295 (14)	20	2	1,089 (884)	77.6	
2014	서울1	2,014	73	19		6	21	2	1,893 (1,846)	97.3	
	서울2	251	77	18	13	33 (1)	3	1	106 (80)	71.3	
	서울3	354	109	21	16	74			134 (102)	65.5	
	서울4	396	132	18	54	12		29	151 (137)	78.2	
	서울5	2,201	145	18	20	453 (7)	19	34	1,512 (1,492)	77.4	

연도	구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4	서울6	2,586	76	3	4	50	1	1	2,451 (2,381)	95.2	
	서울7	7,243	64	7	1	27	1		7,143 (7,061)	98.5	
	서울8	2,705	102	21	14 (3)	267 (8)	55	3	2,243 (1,807)	73.3	
	소 계	17,750	778	125	122 (3)	922 (16)	100	70	15,633 (14,906)	90.0	
	부산	138	54			4			80 (51)	76.1	
	대구	113	32			11		1	69 (60)	82.1	
	광주	83	29			23		3	28 (14)	53.8	
	대전	96	46	4					46 (30)	83.3	
	경기	548	118			55	2		373 (270)	71.1	
	강원	16	4			4			8 (8)	75.0	
	충북	71	22			9			40 (36)	81.7	
	전북	53	15	2		8	4		24 (12)	59.2	
	경남	150	48			68		2	32 (21)	46.6	
	제주	30	10	2		1			17 (12)	80.0	
	소 계	1,298	378	8		183	6	6	717 (514)	70.0	
	계	19,048	1,156	133	122 (3)	1,105 (16)	106	76	16,350 (15,420)	88.7	
2015	서울1	554	84	50	23 (2)	58	45	4	290 (271)	80.6	
	서울2	232	54	16	12	42	11		97 (67)	62.0	
	서울3	311	61		9	68	51	6	116 (78)	54.7	
	서울4	353	43	17	12	37	70		174 (152)	74.9	
	서울5	455	74	39	20	192 (2)	2	4	124 (104)	48.8	
	서울6	543	68	7		69	5		394 (362)	81.2	
	서울7	1,115	84	7	3	29	19	1	972 (938)	94.0	

구분 연도	중재부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 하	
				동의	이의					
2015	서울8	662	114	37	11	88	104	2	306 (288)	79.0
	소 계	4,225	582	173	90 (2)	583 (2)	307	17	2,473 (2,260)	77.4
	부산	78	18			7 (2)			53 (41)	78.2
	대구	80	17			15			48 (41)	72.5
	광주	214	115	28			8	7	56 (56)	100.0
	대전	84	25	2		4			53 (45)	85.7
	경기	259	89	7	5	20	4	4	130 (111)	82.5
	강원	42	18			4			20 (20)	90.5
	충북	71	26			29		2	14 (14)	58.0
	전북	78	28	6		8	2	2	32 (23)	77.0
	경남	62	15			32	1		14 (13)	45.9
	제주	34	7	2	6	8			11 (9)	52.9
	소 계	1,002	358	45	11	127	15	15	431 (373)	79.8
	계	5,227	940	218	101 (2)	710 (4)	322	32	2,904 (2,633)	77.9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제3장 손해배상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1. 손해배상사건수 및 처리결과

2015년 손해배상청구건수는 모두 1,560건으로, 전체 조정청구건수 대비 29.8%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이래 매년 30%대의 비율을 유지하던 것이 처음으로 20%대로 떨어진 것으로, 2011년 37.8%였던 청구 비율은 2012년 33.1%, 2013년 32.2%, 2014년 30.1%를 기록한데 이어 2015년도에는 20%대를 기록하는 등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조정성립 17.2%,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8.5%, 조정불성립 결정 15.7%, 취하 44.4%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조정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한 반면, 취하율은 30%p 이상 감소했다. 이처럼 취하 비율이 낮아진 것은 2014년의 경우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4,670건 중 4,389건이 취하된 반면, 2015년의 경우 구원과 관련 대량사건 중 손해배상청구사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 중 손해배상사건은 1,210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에서 267건(22.1%)은 조정성립, 132건(10.9%)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182건(15.0%)은 조정불성립결정, 209건(17.3%)은 기각, 그리고 409건(33.8%)은 취하되었다. 구원과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사건 상당수가 기각된데 따른 기각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3-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사건수 및 비율

(2013. 1. 1. ~ 2015. 12. 31.)

연도 \ 구분	전체 조정 청구건수	손해배상청구건수
2013	2,433	784 (32.2)
2014	19,048	5,725 (30.1)
2015	5,227	1,560 (29.8)

※ () 안의 숫자는 %

표 3-2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784 (100)	258 (32.9)	17 (2.2)	15 (1.9)	121 [6] (15.4)	6 (0.8)		367 [300] (46.8)	74.7
2014	5,725 (100)	393 (6.9)	44 (0.8)	49 [1] (0.9)	414 [7] (7.2)	80 (1.4)	36 (0.6)	4,709 [4,350] (82.3)	85.5
2015	1,560 (100)	269 (17.2)	94 (6.0)	39[1] (2.5)	245[2] (15.7)	210 (13.5)	11 (0.7)	692 [612] (44.4)	73.0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2. 청구액 및 조정액 현황

2015년의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은 평균 약 12,958만원으로 2014년에 비해 세 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3년도에 비해서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는 특정인이 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평균액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 최저액은 2원이며, 중앙액은 2천만원으로 2014년과 동일했다.

중재부의 조정액은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분포되었으며, 중앙액은 100만원이었고 평균액은 약 160만원이었다. 중앙액은 2014년과 같았으나, 평균액은 2014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 이후 운영하던 손해배상청구사건 전담중재부 지정을 해제하였으나, 적정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손해배상액 산정 가감표’를 통해 손해배상 사건의 공평한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그간 손해배상 전담중재부에서 축적하였던 처리 노하우를 모든 중재부가 공유함으로써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자고 하였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의 2015년 손해배상청구 1,210건 가운데 금전배상이 인용된 사건은 100건으로 8.3%를 차지하였다.

표 3-3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3		100,000	5,815,000,000	60,756,386	20,000,000
2014		20,000	10,000,000,000	36,789,730	20,000,000
2015		2	60,000,000,000	129,582,591	20,000,000

표 3-4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단위 : 원)

연 도	구 분	최 저 액	최 고 액	평 균 액	중 앙 액
2013		100,000	20,000,000	2,532,000	1,750,000
2014		50,000	30,000,000	1,953,000	1,000,000
2015		500,000	4,000,000	1,602,000	1,000,000

표 3-5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조정액 분포 현황

(2013. 1. 1. ~ 2015. 12. 31. 단위 : 원)

연 도	구 분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합계
2013		13 (14.9)	27 (31.0)	35 (40.2)	7 (8.1)	5 (5.8)	87 (100.0)
2014		43 (38.4)	32 (28.6)	27 (24.1)	8 (7.1)	2 (1.8)	112 (100.0)
2015		23 (23.0)	28 (28.0)	49 (49.0)	—	—	100 (100.0)

■ 손해배상사례 1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A방송사는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ㄱ 씨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ㄱ 씨는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하지 않았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드러나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중재부는 ㄱ 씨의 피해를 인정하여 직권으로 손해배상액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고, 양 당사자의 동의로 결정이 확정되었다.

■ 손해배상사례 2 [성명권 침해]

B언론사는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피해와 관련된 방송에서 ㄴ 씨의 실명과 나이가 명시된 판결문을 노출시켰다. 이에 ㄴ 씨는 성명권이 침해되었고 해당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심리결과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침해 유형별 손해배상 조정액을 보면, 명예훼손의 경우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145만원, 초상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4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약 157만원, 음성권 침해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175만원이었다. 또한 성명권 침해의 경우는 한 건이 15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사생활 침해는 최고 300만원, 최저 50만원, 평균 약 163만원이었다. 또한 재산상 손해의 경우 최고 300만원, 최저 200만원, 평균 약 233만원으로 침해법의 유형중 가장 높은 평균 조정액을 보였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의 최저 손해배상액이 50만원으로 동일하였다.

표 3-6 2015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조정액 현황 (2015. 1. 1. ~ 2015. 12. 31. 단위 : 원)

침해유형	조정액 인용 빈도	최저액	최고액	평균액	중앙액	최빈액
명예훼손	15	500,000	3,000,000	1,450,000	1,000,000	1,000,000
초상권 침해	27	500,000	4,000,000	1,572,000	1,000,000	500,000
음성권 침해	4	500,000	3,000,000	1,750,000	1,750,000	
성명권 침해	1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사생활 침해	47	500,000	3,000,000	1,625,000	1,000,000	1,000,000
재산상 손해	6	2,000,000	3,000,000	2,333,000	2,000,000	2,000,000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명예훼손이 81.1%인 1,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상권 침해 200건(12.8%), 사생활 침해 53건(3.4%), 재산상 손해 21건(1.3%) 등의 순이었다. 명예훼손의 경우 2014년의 95.9%에 비해 10%p 이상 하락한 반면, 초상권 침해의 경우 2014년 3.5%였던 비율이 무려 10%p 가까이 상승하였다.

명예훼손 사건의 처리결과는 취하가 51.5%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17.4%, 조정불성립결정 17.2% 등의 순이었다. 명예훼손 사건의 취하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 모두 명예훼손 사건으로 조정신청 후 또는 심리를 통해 정정 또는 반론보도 게재 혹은 기사삭제나 기사수정이 이뤄지는 매체에 대해서는 즉시 취하했기 때문이다.

초상권 침해 사건의 처리결과는 기각이 65.0%로 가장 많았고, 취하 13.0%, 조정성립 12.0% 순이었다. 기각 비율이 높은 것은 세월호 관련 구원과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청구한 사건 대부분이 기각된데 따른 것이다.

재산상 손해 사건의 처리결과는 조정성립이 52.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강력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호 등이 노출돼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3-7 2015년도 손해배상청구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 분 침해유형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명예훼손	1,265 (100)	220 (17.4)	85 (6.7)	218 (17.2)	80 (6.3)	10 (0.8)	652 (51.5)
초상권 침해	200 (100)	24 (12.0)	9 (4.5)	10 (5.0)	130 (65.0)	1 (0.5)	26 (13.0)
음성권 침해	14 (100)	7 (50.0)	2 (14.3)				5 (35.7)
성명권 침해	7 (100)	3 (42.9)					4 (57.1)
사생활 침해	53 (100)	4 (7.5)	34 (64.2)	14 (26.4)			1 (1.9)
재산상 손해	21 (100)	11 (52.4)	3 (14.3)	3 (14.3)			4 (19.0)
계	1,560 (100)	269 (17.2)	133 (8.5)	245 (15.7)	210 (13.5)	11 (0.7)	692 (44.4)

※ () 안의 숫자는 %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개인이 신청한 건은 894건, 단체가 신청한 건은 666건으로 개인 신청이 훨씬 많았다. 개인의 경우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구원과 신도 개인들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청구한 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단체의 경우 종교단체가 355건으로 전체 신청의 22.8%, 단체 신청의 53.3%를 차지했는데 이 역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 단체가 대량으로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일반단체가 150건, 기업체 92건, 지자체 22건, 언론사 및 공공단체 각 16건 등의 순이었다.

개인 신청의 경우는 취하가 279건(31.2%)로 가장 높았고, 기각 204건(22.8%), 조정성립 172건(19.2%), 조정불성립결정 125건(14.0%) 등의 순이었다.

종교단체의 경우는 취하가 284건(80.0%)로 가장 높았고, 조정불성립결정이 65건(18.3%)로 뒤를 이었다. 일반단체 역시 취하가 75건(50.0%)로 가장 높았고, 조정성립 41건(27.3%), 조정불성립결정 23건(15.3%) 등의 순이었다.

표 3-8 2015년도 손해배상청구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2015. 1. 1. ~ 2015. 12. 31.)

구 분 신청인 유형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조정 성립	직권조정 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개인	894(100)	172(19.2)	104(11.6)	125(14.0)	204(22.8)	10(1.1)	279(31.2)
지자체	22(100)	8(36.4)	3(13.6)	6(27.3)			5(22.7)
공공단체	16(100)	2(12.5)	7(43.8)				7(43.8)
일반단체	150(100)	41(27.3)	9(6.0)	23(15.3)	1(0.7)	1(0.7)	75(50.0)
종교단체	355(100)	4(1.1)	1(0.3)	65(18.3)	1(0.3)		284(80.0)
기업체	92(100)	31(33.7)	3(3.3)	16(17.4)	4(4.3)		38(41.3)
언론사	16(100)	4(25.0)	5(31.3)	7(43.8)			
교육기관	15(100)	7(46.7)	1(6.7)	3(20.0)			4(26.7)
계	1,560(100)	269(17.2)	133(8.5)	245(15.7)	210(13.5)	11(0.7)	692(44.4)

※ () 안의 숫자는 %

제4장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인터넷신문은 지난 2005년 시행된 언론중재법에 따라 조정·중재 대상 매체에 새로 포함되었다.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하는 조정신청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1년부터는 모든 매체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15년의 경우 전체 청구사건 중 47.6%인 2,490건이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으로 2014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만을 살펴보면 2014년의 1,501건보다 대폭 증가한 1,766건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하였다.

인터넷신문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57.3%(1,427건)로 가장 높았으며, 조정성립 19.4%(482건), 조정불성립결정 306건(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의 피해구제율은 2014년의 90.3%보다는 다소 하락한 79.3%였으며, 2013년의 78.8%보다는 다소 높았다.

표 4-1 최근 3년간 인터넷신문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1,130 (100)	420 (37.2)	20 (1.8)	29 [1] (2.5)	139 [2] (12.3)	5 (0.4)		517 [443] (45.8)	78.8
2014	8,436 (100)	665 (7.9)	60 (0.7)	77 [3] (0.9)	473 [4] (5.6)	45 (0.5)	52 (0.6)	7,064 [6,799] (83.7)	90.3
2015	2,490 (100)	482 (19.4)	91 (3.7)	55 [2] (2.2)	306 [4] (12.3)	108 (4.3)	21 (0.8)	1,427 [1,293] (57.3)	79.3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제5장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9년 개정 언론중재법의 시행으로 인터넷 포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해서도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해졌다.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신청건수는 2011년 510건을 기점으로 2012년 454건, 2013년 369건 등 최근 3년간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4년에는 4,171건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에는 799건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이는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신청이 줄어든데다, 네이버,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급감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14년 21.9%를 기록했던 점유 비율은 2015년에는 15.3%로 낮아졌으며, 이는 2013년의 15.2%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량사건을 제외한 일반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 2012년 18.9%, 2013년 15.2%, 2014년의 14.8%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조정신청은 감소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아웃링크⁵⁾ 기사의 경우 기사제공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게시하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도 자동으로 이를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아웃링크 기사에 대해 별도로 조정을 신청할 실익이 없다고 여기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의 인링크⁶⁾ 기사에 대해서만 조정을 신청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위원회가 접수·처리한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취하가 474건(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세월호 관련 대량사건 상당수가 보도 내지 기사삭제 혹은 수정 후 취하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기각 110건(13.8%), 조정불성립결정 99건(12.4%), 조정성립 63건(7.9%)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율은 2014년 87.2% 보다 감소한 80.1%를 기록했다. 비록 감소세에 있기는 하나 전체 매체유형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80%대의 높은 피해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포털 등의 전자간행물을 의미하며, 언론중재법 시행령에서는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에 의한 분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은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제외시켰다.

5) 아웃링크 :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기사제공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에 링크를 시켜줌

6) 인링크 : 기사제공언론사가 제공한 보도를 포털이 자사의 뉴스섹션에 별도로 게재함

표 5-1 최근 3년간 인터넷뉴스서비스 대상 조정사건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구분 연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2013	369 (100)	85 (23.0)	2 (0.5)	1 (0.3)	15 [4] (4.1)	1 (0.3)		265 [237] (71.8)	89.1
2014	4,177 (100)	100 (2.4)	29 (0.7)	10 (0.2)	209 [7] (5.0)	12 (0.3)	15 (0.4)	3,802 [3,481] (91.0)	87.2
2015	799 (100)	63 (7.9)	45 (5.6)	8 (1.0)	99 (12.4)	110 (13.8)		474 [444] (59.3)	80.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 () 안의 숫자는 %

제6장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2005년 언론중재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된 중재제도는 당사자 합의를 우선시 하는 조정과는 달리 중재부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재결정을 내려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도입 이후 2008년까지 위원회가 처리한 중재건수는 모두 31건으로 제도 활용이 다소 미진했으나 2009년부터 위원회 중점추진과제로 중재제도 활성화를 선정하고 중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111건, 2010년 77건, 2011년 113건, 2012년 59건, 2013년 190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15년의 경우 중재로 전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 접수건수는 26건을 기록하였다. 2014년의 11건에 비해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2014년 이전에 비하면 최근 2년간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중재제도는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발생 이전에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맺거나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는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용되나 언론분쟁은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거의 없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재로 전환이 용이한 사건은 추후보도사건 등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나 언론사가 스스로 오보를 인정한 사건, 유사한 내용이 여러 인터넷 매체에 동시에 보도된 사안을 중심으로 청구되는 경향이 있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침해 유형별 신청 현황을 보면 26건 모두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표 6-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명예훼손	신용훼손	초상권 침해	성명권 침해	음성권 침해	사생활 침해
2013		190	188					2
2014		11	11					
2015		26	26					

2. 청구권별 현황

중재사건의 청구권별 신청 현황을 보면 11건(42.3%)이 정정보도였으며, 반론보도 7건(26.9%), 추후보도 6건(23.1%), 손해배상 2건(7.7%)였으며, 26건 모두 중재결정되었다.

표 6-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및 처리결과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청구명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2013		정정	77	77			
		반론	59	59			
		추후	33	33			
		손배	21	19	2		
		계	190	188	2		
2014		정정	11	8			3
		반론					
		추후					
		손배					
		계	11	8			3
2015		정정	11	11			
		반론	7	7			
		추후	6	6			
		손배	2	2			
		계	26	26			

3. 매체 유형별 현황

중재사건의 매체 유형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15건(57.7%), 신문 5건(19.2%), 방송 4건(15.4%) 등의 순이었다. 2014년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의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는 단 1건만을 기록했다.

표 6-3 매체 유형별 중재신청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청구건수	인터넷 뉴스서비스	인터넷신문	신 문	뉴스 통신	방 송
2013		190	72	104	2	8	4
2014		11	10	1			
2015		26	1	15	5	1	4

제7장 자동소제기 현황

2015년 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이의가 신청되어 자동소제기가 된 사건은 모두 100건으로 2014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4년의 경우 특정 기관이 한 매체를 상대로 다량의 조정청구를 하였으며 이 가운데 40건이 자동소제기 된 데 따른 건수가 반영된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2015년의 자동소제기 건수는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다.

자동소제기된 100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1심 재판 결과 인용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또는 조정 성립된 사건이 2건, 취하된 사건이 31건,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이 67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현재 계속 중에 있다.

표 7-1 최근 3년간 자동소제기 현황 및 1심 법원 판결결과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2013	60	38	1	19	2	10	45	5	37	17	6	
2014	119	60	10	48	1	9	62	48	17	27	14	61
2015	100	52	11	36	1	39	50	11	2	31		67
계	279	150	22	103	4	58	157	64	56	75	20	128

※ 화해권고결정 및 조정성립은 인용에 포함하였음

자동소제기된 사건을 매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신문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앙방송 11건, 일간지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각 10건 등의 순이었다.

매체별로는 MBC-TV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겨레, 한국일보, 제주KBS-1TV, 노컷뉴스, 뉴스1코리아, 인터넷 한국일보, iMBC가 각 4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표 7-2 2015년도 매체별 자동소제기현황

(2015. 1. 1. ~ 2015. 12. 31.)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 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중앙 일간지	경향신문	1	1				1						1
	문화일보	1	1				1						1
	한겨레	4	2	1	1		1	3					4
	한국일보	4	2		2			4			4		
지역 일간지	경인일보	2			1	1	2						2
주간지	시사뉴스	2	1		1		2						2
	한겨레21	2	1	1			2						2
특수 주간 신문	치과의사신문	2	1		1			2					2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보	1	1					1					1
중앙 방송	KBS-1TV	3	1	1	1				3				3
	MBC-TV	6	5		1			3	3		2		4
	SBS-TV	2	1		1			2					2
지역 방송	제주 KBS-1TV	4	2		2			2	2		2		2
종합 편성 채널	MBN	2	1		1			2		1			1
인터넷 신문	남동사람들	1	1				1						1
	노컷뉴스	4	1	1	2			2	2		2		2
	뉴스1코리아	4	2		2		2	2			2		2
	데일리게임	2	1		1			2			2		
	미디어스	1	1				1						1
	민중의소리	1	1					1			1		
	시사메디인	2	1		1			2					2
	에너지경제	2	1		1			2			2		
	연합통신넷	2	1		1		2						2
	온라인 중앙일보	2	1		1		2				2		
	인터넷 문화일보	1	1				1						1
	인터넷 법보신문	3	1	1	1		2	1					3
	인터넷 스포츠서울	2		1	1		2				2		
	인터넷 스포츠조선	2		1	1		2				2		
	인터넷 시사뉴스	2	1		1		2						2
	인터넷 시사저널	1	1					1					1
	인터넷 이데일리	2		1	1		2				2		

매체 유형	매체명	건수	청구명				이의신청인			1심결과			
			정정	반론	손배	추후	신청인	피신 청인	신청인 피신청인	인용	취하	기각· 각하	계속
	인터넷 일간스포츠	2		1	1		2				2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2	1		1			2					2
	인터넷 한겨레	3	1	1	1		1	2					3
	인터넷 한겨레21	2	1	1			2						2
	인터넷 한국일보	4	2		2			4			4		
	인터넷 한의신문	1	1					1					1
	조선비즈닷컴	2	2				2						2
	조세일보	2	1		1		2						2
	프라임경제	2	1		1		2						2
인터넷 뉴스 서비스	iMBC	4	4					3	1				4
	KBS미디어	2	1		1			2					2
	SBS 콘텐츠허브	2	1		1			2					2
	인터넷 MBN	2	1		1			2		1			1
계		100	52	11	36	1	39	50	11	2	31	0	67

제8장 복제기사 및 댓글 피해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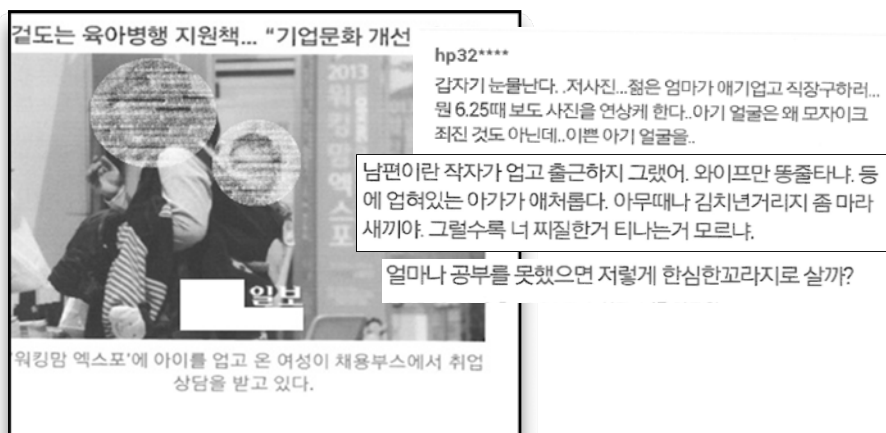
2015년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언론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조정청구로 이어졌다. 특히 원 언론보도가 포털의 블로그·카페 등에 전파되어 피해가 확산되거나 댓글로 인한 피해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언론중재법상 이러한 복제 기사나 댓글 등에 대한 완전한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양 당사자간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합의 의사가 있다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다.

아래 사례는 당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권리침해를 방지하고자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한 것이며, 이 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사건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사건 대부분이 위원회의 적극적 피해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언론중재법상 미비점으로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향후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취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 사례의 심리 시 당사자에게 권고하고 합의 및 결정 문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률 보완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복제기사, 댓글 피해구제



신청인은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원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였고, 특히 이를 매개한 포털에 악의적 댓글이 게재되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였다. 중재부는 원 언론사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액 150만원을 지급하고, 원 언론사는 포털 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라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은 양 당사자의 동의로 확정되었고, 포털은 원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댓글을 삭제하였다.

연도별 언론조정·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표 1 조 정

(1981. 3. 31. ~ 2015. 12. 31.)

연도	구분 청구 건수	처 리 결 과							피해 구제율(%)
		조정 성립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동의	이의					
1981	44	9			12(5)	1	2	20(2)	39.0
1982	50	19			19(5)		2	10(4)	58.3
1983	71	21			22(7)	1	1	26(8)	52.2
1984	54	12			29(8)	3		10(5)	49.0
1985	59	12			28(5)	4		15(7)	43.6
1986	49	14			10(2)	1		24(11)	56.3
1987	47	10			9(4)	1		27(2)	34.8
1988	55	16			12(5)		1	26(13)	63.0
1989	121	29			35(10)		6	51(21)	52.2
1990	159	42			43(10)	1	2	71(40)	59.0
1991	220	52			48(9)	3	1	116(43)	48.1
1992	381	81			79(12)	19		202(107)	55.2
1993	423	132			96(16)	8	2	185(84)	56.2
1994	541	162			127(10)	7		245(128)	56.2
1995	528	111			150(25)	26	3	238(124)	52.1
1996	556	129	2	7(1)	169(21)	9	1	239(137)	53.1
1997	490	161	10	5(1)	79(13)	8	4	223(108)	61.3
1998	602	226	14	10(2)	97(8)	5		250(106)	59.6
1999	641	244	11	18(2)	102(17)	24	5	237(92)	59.8
2000	607	198	10	15(2)	66(10)	14	2	302(156)	63.6
2001	659	229	6	23(3)	132(27)	18	2	249(133)	62.3
2002	511	182	18	17(3)	62(9)	8	1	223(101)	62.4
2003	724	287	15	15(1)	101(11)	27	3	276(158)	68.0
2004	759	283	46	22(6)	140(12)	13		255(148)	66.4
2005	883	334	31	20(4)	181(1)	19	15	283(160)	62.4
2006	1,087	356	29	28	226(2)	22	13	413(250)	60.6
2007	1,043	359	22	32(2)	194(5)	42	6	388(257)	64.8
2008	954	402	35	17	125(3)	21	4	350(237)	72.9
2009	1,573	538	66	39	88	257	10	575(361)	73.9
2010	2,205	630	109	40(2)	157(5)	137	1	1,131(891)	79.2
2011	2,124	725	65	40(3)	285	44	14	951(680)	71.3
2012	2,401	805	76	66	427(10)	44	11	972(787)	71.5
2013	2,433	916	54	57(2)	295(14)	20	2	1,089(884)	77.6
2014	19,048	1,156	133	122(3)	1,105(16)	106	76	16,350(15,420)	88.7
2015	5,227	940	218	101(2)	710(4)	322	32	2,904(2,633)	77.9
계	47,329	9,822	970	694(39)	5,460(321)	1,235	222	28,926(24,298)	77.3
	100%	20.8%	2.0%	1.5%	11.5%	2.6%	0.5%	61.1%	

※ () 안의 숫자는 조정성립·직권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표 2 중 재

(2005. 7. 28. ~ 2015. 12. 31.)

구분 연도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중재화해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2005	0						
2006	7	7					
2007	14	14					
2008	10	10					
2009	111	65	46				
2010	77	76		1			
2011	113	107				6	
2012	59	59					
2013	190	188	2				
2014	11	8				3	
2015	26	26					
계	618	560	48	1		9	
	100%	90.6%	7.8%	0.2%		1.5%	

시정권고 현황



시정권고 현황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제32조에 따라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법익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보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언론사의 자율규제나 조정·중재절차로 해결할 수 없는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의 역할을 해왔다.

위원회는 2014년 12월 15일 기사 형태로 광고를 게재하는 ‘기사형 광고’의 법익침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하였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는 201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 동안 심의 대상 전 매체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 유형, 지면, 광고 대상 상품 유형, 바이라인(기자명이 적시된 기사) 기재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조사결과, 대상 매체 중 기사형 광고는 총 3,329건이 확인되었으며, 일간지의 경우 주로 신제품 소개형태로 게재되고 있었고, 인터넷신문의 경우 유통업체나 신상품 소개형 기사와 기존 상품 홍보가 대부분이었다. 특이한 점은 모두 바이라인을 명시한 상태로 게재되고 있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유관기관 심의규정과 사례, 외국의 법령과 기준 등을 참고해 ‘기사형 광고’ 심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심의는 형식적 기준, 내용적 기준, 업종별 기준을 모두 고려해 이루어졌으며 명백한 사안을 위반한 기사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총 1,300여 개 매체를 심의해 438건의 법익 침해 보도에 대해 시정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2014년 12월 성폭력 피해자 보호기준 강화, 여론조사 공표기준 개정, 기사형 광고 심의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정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적용한 결과로, 2014년의 302건에 비해 136건(45.0%)이 늘어났다. 특히 기사형 광고 위반으로 95건의 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함에 따라 시정권고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1. 침해 유형별 현황

2014년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108건으로, 2014년 46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사생활 침해 시정권고 건이 2014년 25건에서 2015년 92건으로 늘어난데 기인한다. 이처럼 사생활 침해 건수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위원회가 2014년 12월 인격영역의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시정권고 심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공인의 사적인 생활영역까지 침범해 촬영, 보도한 사례 및 일반인의 초상을 그대로 보도한 사례에 대해 대거 시정권고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피의자·피고인 신원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보도는 2013년 35건에서 2014년 16건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5년에는 단 5건에 그치는 등 대폭 감소하였다. 위원회의 지속적인 시정권고로 언론사도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 건수는 2015년 330건으로, 2014년의 256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범죄수법을 상세하게 묘사한 보도 및 자살 관련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는 다소 감소한 반면 마약 및 약물보도 관련 시정권고 건수가 2014년 75건에서 2015년 135건으로 크게 증가한데다, 기사형 광고에 대한 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면서 2015년 한해 95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마약류 관련 보도가 급증한 이유는 일선 수사기관에서 마약류 사건 수사 발표를 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용량·용법 및 특징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공개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정권고한 덕분에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죄수법의 상세묘사에 관한 시정권고 건수는 2014년 60건에서 2015년 16건으로 대폭 감소하였고, 자살 관련 보도도 2014년 73건에서 2015년 62건으로 줄어드는 등 시정권고로 인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충격 및 혐오감을 주는 보도는 2014년 13건에서 2015년에는 14건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표 1 최근 3년간 침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국가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기타	재난 보도	범죄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마약 및 약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기타	
2013	289 (100)	23 (8.0)	35 (12.1)	1 (0.3)		31 (10.7)	78 (27.0)	89 (30.8)	32 (11.1)			
2014	302 (100)	25 (8.3)	16 (5.3)	5 (1.7)	29 (9.6)	60 (19.9)	73 (24.2)	75 (24.8)	13 (4.3)		6 (2.0)	
2015	438 (100)	92 (21.0)	5 (1.1)	11 (2.5)		16 (3.7)	62 (14.2)	135 (30.8)	14 (3.2)	95 (21.7)	8 (1.8)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2014년 한 해 동안 내려진 438건의 시정권고 결정을 매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터넷신문이 297건(67.8%)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간지 84건(19.2%), 뉴스통신 44건(10.0%), 주간지 10건(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인터넷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58.9%에서 67.8%로 대폭 증가한 반면, 중앙 일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15.6%에서 8.0%로 다소 낮아졌다.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비중이 높은 것은 전체 심의대상 매체 중 인터넷신문의 수가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인터넷신문 가운데 다수를 이루는 신생 매체가 각종 법익 침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하거나 지면 제한이 없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한 선정적인 보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페이지뷰를 늘이기 위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도 있었으며, 어부지랑 기사도 많아 이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졌다.

표 2 최근 3년간 매체 유형별 시정권고 현황

(2013. 1. 1. ~ 2015. 12. 31.)

연도	구분	총 계	매체별 시정권고 현황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통신
			중앙 일간지	지역 일간지			
2013		289 (100)	29 (10.0)	44 (15.2)	2 (0.7)		27 (9.3)
2014		302 (100)	47 (15.6)	37 (12.3)	4 (1.3)		36 (11.9)
2015		438 (100)	35 (8.0)	49 (11.2)	10 (2.3)	3 (0.7)	44 (10.0)
							297 (67.8)

※ () 안의 숫자는 %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표 1 연도별 시정권고 현황

(1981. 3. 31. ~ 2015. 12. 31.)

구분		침해 유형														종 별					
		개인적 법익 침해						사회적 법익 침해													
		사생활 침해 등	피의자 피고인 신원 공개	피해자 목격자 신원 공개	성폭력 피해자 신원 공개	정신 질환자 신원 공개	고소 고발 보도	재난 보도	범죄 수법 상세 묘사	자살 관련 보도	미약 및 악물 보도	충격 혐오감	기사형 광고	기타	국가적 법익 침해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인터넷 신문	방송
연도	계																				
1981																					
1982																					
1983	3												3		1	2					
1984																					
1985																					
1986	3	3															3				
1987	6	4			2										3	2	1				
1988	37	16	3		9								9		29	2	2	4			
1989	180	36	92		52										173	1		6			
1990	311	67	169	12	63										301	1		9			
1991	264	34	140	16	70					1			3		247	8	3	6			
1992	390	34	227	3	123								3		379			11			
1993	344	10	228		106										336	1		7			
1994	204	7	132		58					7					195	1		8			
1995	282		131		29					121			1		271	1		10			
1996	310	11	122	22	26	8				4	117				304		1	5			
1997	469	2	76	182	21	78					109			1	461	1		7			
1998	348		29	151	16	14				1	137				336	2	2	8			
1999	240		20	126	17	11					66				234			6			
2000	234	2	8	67	54	6					97				213	4		17			
2001	231	1	9	70	22	10					119				211	7		13			
2002	142	1		88	9						44				129	1		12			
2003	237	2	41	153	13	1					20			7	219	2		16			
2004	283	2	114	68	7	1				21	52			18	247	14	1	21			
2005	278	10	88	24	11					85	47			13	246	8	1	19	3	1	
2006	190	3	69	23	4	2			6	73	10			1	150	9		15	16		
2007	202	14	80	21	1	2				44	30	7		3	127	11	1	20	43		
2008	289	30	48	8	4				62	97	27	4		9	124	19	1	31	112	2	
2009	253	14	97	6		1			2	93		2		37	57	15		20	132	29	
2010	284	10	49	2	2				17	199	4			1	96	14	5	20	149		
2011	426	36	100		2				4	189	95				106	20	1	41	253	5	
2012	259	5	40		5	3			40	49	116			1	74	3	1	21	160		
2013	289	23	35			1			31	78	89	32			73	2		27	187		
2014	302	25	16		5			29	60	73	75	13		6	84	4		36	178		
2015	438	92	5			10	1		16	62	135	14	95	8	84	10	3	44	297		
계	7,728	494	2,168	1,042	731	148	1	29	238	1,068	1,518	72	95	124		5,510	165	26	460	1,530	37
	100%	6.4%	28.1%	13.5%	9.5%	1.9%	0.0%	0.4%	3.1%	13.8%	19.6%	0.9%	1.2%	1.6%		71.3%	2.1%	0.3%	6.0%	19.8%	0.5%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2 부

대량사건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 대량사건이라 함은 개별 권리주체별 청구건수가 1,000건 이상인 사건을 의미한다.
- 대량사건 신청인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과 유 전 회장이 관여한 종교단체로 알려진 세칭 구원파인 기독교복음침례회였음을 밝혀둔다. (기독교복음침례회가 2015년 신청한 조정건수는 698건이나 편의상 대량사건으로 분류하였다.)

대량사건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대량사건 조정신청 및 처리현황

위원회는 2015년도에도 2014년도와 마찬가지로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이하 기복침)와 유병언의 부인인 권운자가 대량으로 신청한 조정청구 1,908건(116개 매체¹⁾, 기복침 698건, 권운자 1,210건)을 접수해 처리하였다.

구원과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조정청구 대부분이 검찰소환조사 등에서 초상이 공개된 데 따른 초상권 침해를 다투는 사안인데 비해 기복침과 권운자가 청구한 1,908건 모두 명예훼손을 다투는 신청이었다.

청구권별 조정청구 건수를 보면 정정보도청구는 기복침 350건, 권운자 1,208건 등 1,558건이며, 손해배상청구는 기복침 348건, 권운자 2건 등 350건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손해배상청구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중재부별 청구건수는 서울중재부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기복침의 경우는 서울중재부 660건, 지역중재부 38건, 권운자의 경우는 서울중재부 1,193건, 지역중재부 17건이었다.

매체별 신청은 인터넷신문 및 방송사 닷컴 등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포함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신청이 전체의 60.3%로, 2014년도의 66.3%에 비해 다소 낮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터넷신문이 전체 사건의 37.9%인 724건이었으며, 방송 25.0%(477건), 인터넷 뉴스서비스 22.4%(427건), 일간신문 9.8%(187건) 순이었다. 단일매체로는 TV조선이 36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인터넷 TV조선 283건, 인터넷 국민일보 90건, 국민일보 68건, 노컷뉴스 58건, e머니투데이 55건, KBS미디어 45건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는 취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908건 중 취하가 86.2%인 1,645건을 기록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249건(13.1%), 조정성립 6건(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건, 기각 및 각각 2건 순이었다. 취하가 많은 이유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중재부가 신청사건별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건별 세부기준을 정한 후 매체별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체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일괄논의한 후 취하를 받는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중재부는 ①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②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실여부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③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은 추후 보도 하는 것으로, 그리고 ④ 신청인과 언론인 사이에 기사삭제 또는 수정 등의 협의 의사가

1) KBS-12TV, KBS-1TV로 분류된 것을 KBS 한 매체로 볼 경우 전체 매체수는 115개 매체가 된다.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취하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에 권고하여, 매체별 일괄 처리했다. 또한 사전에 양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게재하거나 기사수정 내지는 기사 삭제 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취하하였다. 한편 2014년과 비교할 때 조정불성립결정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3.8%→13.1%), 이는 국민일보, 인터넷 국민일보, KBS-1TV, KBS미디어를 상대로 한 조정 청구가 일괄적으로 불성립결정되었기 때문이다.

1. 청구권 및 중재부별 현황

기복침은 모두 698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는 350건, 손해배상은 348건으로 엇비슷했으며, 서울중재부는 660건, 지역중재부는 38건을 처리했다.

권윤자는 모두 1,210건의 조정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 중 정정보도는 1,208건, 손해배상은 2건으로 정정보도청구가 월등히 많았다. 서울중재부는 1,193건, 지역중재부는 17건을 처리했다. 권윤자의 손해배상청구 건수가 적은 이유는 아들과 함께 법원에 유병언의 재산상속 포기 신청서를 제출(2014.11.4.)한 이후 조정신청 건부터는 손해배상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고 정정보도 청구만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중재부별 조정청구는 서울중재부가 1,853건으로, 지역중재부의 55건에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 1 청구권 및 중재부별 조정신청 현황

(2014. 1. 1. ~ 2015. 12. 31.)

연 도	신청인	청구명	접수건수	중재부	
				서울	지역
2014	권윤자	정정	9,006	8,780	226
		손배	2,300	2,239	61
	기독교복음 침례회	정정	2,441	2,318	123
		손배	2,370	2,254	116
	소 계	정정	11,447	11,098	349
		손배	4,670	4,493	177
		계	13,817	13,352	465
2015	권윤자	정정	1,208	1,191	17
		손배	2	2	-

연 도	신청인	청구명	접수건수	중재부	
				서울	지역
	기독교복음 침례회	정정	350	331	19
		손배	348	329	19
	소 계	정정	1,558	1,522	36
		손배	350	331	19
		계	1,908	1,853	55
		총 계		18,025 (100)	17,444 (96.8)

* () 안의 숫자는 %

2. 매체 유형별 현황

대량사건의 매체유형별 청구현황을 보면 인터넷신문이 전체 사건의 37.9%인 724건(기복침 262건, 권윤자 4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방송 25.0%(477건), 인터넷뉴스서비스 22.4%(427건), 일간신문 9.8%(18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 일간 신문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2015년의 경우에는 방송을 상대로 한 조정청구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합한 인터넷 매체를 상대로 한 조정청구는 전체의 60.3%로 2014년의 66.3%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게 온라인 기반의 기사에 대한 피해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인터넷신문의 경우 종속형 신문의 청구가 517건으로, 전체 청구건의 27.1%를 차지해, 207건으로 10.8%를 차지한 독립형 신문에 비해 높았으며, 방송의 경우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신청이 414건으로, 공중파 38건, 케이블TV 25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표 2 매체 유형별 조정신청 현황

(2014. 1. 1. ~ 2015. 12. 31.)

구분		계	일간신문		주간 신문· 주간지	월간지	뉴스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
			종합 일간	특수 일간				공중파	종합 편성	케이블	독립형	종속형	
2014	기독교 복음 침례회	4,811	216	56	6	14	220	131	533	365	554	1,666	1,050
	권윤자	11,306	562	190	13	—	708	362	1,090	972	1,076	3,645	2,688
	소계	16,117	778	246	19	14	928	493	1,623	1,337	1,630	5,311	3,738
	(%)100	4.8	1.5	0.1	0.1	5.7	3.1	10.1	8.3	10.1	33.0	23.2	
2015	기독교 복음 침례회	698	68	6	—	8	6	16	164	4	62	200	164
	권윤자	1,210	93	20	5	1	73	22	250	21	145	317	263
	소계	1,908	161	26	5	9	79	38	414	25	207	517	427
	(%)100	8.4	1.4	0.3	0.5	4.1	2.0	21.7	1.3	10.8	27.1	22.4	
총계		18,025	939	272	24	23	1,007	531	2,037	1,362	1,837	5,828	4,165
		(100)	(5.2)	(1.5)	(0.1)	(0.1)	(5.6)	(2.9)	(11.3)	(7.6)	(10.2)	(32.3)	(23.1)

* () 안의 숫자는 %

3. 처리결과 현황

대량사건의 처리결과는 취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1,908건 중 취하가 86.2%인 1,645사건을 기록했으며, 조정불성립결정 249건(13.1%), 조정성립 6건(0.3%),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건, 기각 및 각하 각 2건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취하의 비율(94.6%→86.2%)이 다소 낮아지고, 조정불성립결정의 비율(3.8% → 13.1%)이 크게 높아졌다.

기복침은 전체 신청 698건 중 81.1%인 566건이 취하되었으며, 조정불성립결정은 17.5%인 122건, 조정성립은 0.6%인 4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취하 비율(91.0% → 81.1%)로 크게 낮아진 반면, 조정불성립결정 비율(5.4% → 17.5%)로 크게 높아졌다. 권윤자는 전체신청 1,210건 중 취하가 89.2%인 1,079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은 10.5%인 127건, 조정성립 및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각 2건 순이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취하 비율(96.1% →

89.2%)로 다소 낮아진 반면, 조정불성립결정 비율(3.1% → 10.5%)은 크게 높아졌다.

표 3 처리결과 현황

(2014. 1. 1. ~ 2015. 12. 31.)

연 도	신청인	청구 건수	조정 성립	직권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결정	기각	각하	취하
2014	권윤자	11,306	90		348			10,868
	기독교복음 침례회	4,811	160	8	262	4		4,377
	소 계	16,117	250	8	610	4		15,245
2015	권윤자	1,210	2	2	127			1,079
	기독교복음 침례회	698	4	2	122	2	2	566
	소 계	1,908	6	4	249	2	2	1,645
총 계		18,025	256	12	859	6	2	16,890
		(100)	(1.4)	(0.1)	(4.8)	(0.0)	(0.0)	(93.7)

* () 안의 숫자는 %

4. 매체별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1) 중앙 및 지방종합일간지

경북일보, 국민일보 등 7개 매체를 상대로 모두 161건(기복침 68건, 권윤자 93건)을 청구했다. 국민일보가 68건으로 가장 많으며, 동아일보 37건, 서울신문 24건, 세계일보 20건, 천지일보 6건, 매일신문 4건, 경북일보 2건 순이다.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27건, 손해배상청구 34건이었다.

종합일간지를 상대로 청구한 161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 68건 순이었다.

2) 특수전문일간지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모두 5개 매체를 상대로 모두 26건(기복침 6건, 권윤자 20건)을 신청했다. 파이낸셜뉴스가 15건으로 가장 많으며, 머니투데이 5건, 이데일리 4건, 매일경제, 서울경제 각 1건 순이었다.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23건, 손해배상청구 3건이었으며, 26건 모두 취하하였다.

3) 주간신문 및 주간지

중앙SUNDAY 3건, 주간조선 및 한겨레21 각 1건 등 5건 모두 권윤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으로, 처리결과는 취하 3건, 조정성립 1건, 직권조정결정 1건(동의) 순이었다.

4) 월간지

종교전문지인 현대종교를 상대로 모두 9건(기복침 8건, 권윤자 1건)을 청구했다.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는 6건, 손해배상청구는 3건이며, 처리결과는 조정성립 4건, 직권조정결정 2건(동의), 각하 2건, 조정불성립결정 1건 순이었다.

5) 뉴스통신

연합뉴스 41건, 뉴시스 38건 등 79건(기복침 6건, 권윤자 73건)을 청구했으며,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76건, 손해배상청구 3건으로, 79건 모두 취하하였다.

6) 공중파방송

KBS 계열 35건, MBC-TV 2건, SBS-TV 1건 등 38건(기복침 16건, 권윤자 22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30건, 손해배상청구 8건 이었다. 이 가운데 KBS 계열 35건이 일괄 조정불성립결정되었으며, 3건은 취하하였다.

7) 종합편성채널방송

TV조선 360건, 채널A 30건, JTBC 24건 등 3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두 414건(기복침 164건, 권윤자 250건)의 조정을 청구했으며,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331건, 손해배상청구 83건 이었다. 이 가운데 412건이 취하되었으며, 2건은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8) 케이블 TV

연합뉴스 TV 18건, YTN 7건 등 25건(기복침 4건, 권윤자 21건)을 청구했으며,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23건, 손해배상청구 2건이었으며, 25건 모두 취하하였다.

9) 인터넷신문(독립형)

그린포스트코리아, 노컷뉴스 등 26개 매체를 상대로 207건(기복침 62건, 권윤자 145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컷뉴스 58건, 시사플러스신문 22건, 더팩트 20건, Korea Joongang Daily 13건, 데일리한국 12건, 레디앙 10건, 아이뉴스 24건 및 시사위크 각 9건 순이었다.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176건, 손해배상청구 31건이었다. 207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면 취하 200건, 조정불성립결정 7건 순이었다.

10) 인터넷신문(닷컴, 종속형)

뉴스천지, 동아닷컴, 매경닷컴 등 50개 매체를 상대로 517건(기복침 200건, 권윤자 317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국민일보 90건, e머니투데이 55건, 동아닷컴 44건, 인터넷 경제풍월 37건, 인터넷 서울신문 34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1건, 인터넷 시민일보 25건, 이데일리 인터넷 24건, 세계닷컴 20건 순이었다.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417건, 손해배상청구 100건이었다.

517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불성립결정 90건, 조정성립 1건, 직권조정결정 1건(동의) 순이었다. 인터넷 국민일보를 상대로 조정청구 한 90건이 모두 조정불성립결정되었다.

11)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 KTV국민방송, 인터넷 OBS경인TV 등 13개 매체를 상대로 427건(기복침 164건, 권윤자 263건)을 청구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인터넷 TV조선 283건, KBS미디어 45건, 인터넷 채널A 28건, 인터넷 JTBC 24건, 인터넷 연합뉴스TV 12건, 인터넷 YTN 8건, 인터넷 OBS경인TV 8건 순이었다. 청구별로는 정정보도청구 345건, 손해배상청구 82건이었다. 처리결과를 보면, 취하가 409건이었으며, 조정불성립결정이 18건이었다.

표 4 매체별 조정신청 및 처리결과 현황

(2015. 1. 1. ~ 2015. 12. 31.)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중앙 및 지방 종합 일간지	경북일보	2	정정			1							1
			손배			1						1	
	국민일보	68	정정					19				30	49
			손배					19				19	
	동아일보	37	정정			5					27	32	
			손배			5						5	
	매일신문	4	정정			2						2	
			손배			2						2	
	서울신문	24	정정			4					16	20	
			손배			4						4	
	세계일보	20	정정			2					16	18	
			손배			2						2	
	천지일보	6	정정			1					4	5	
			손배			1						1	
	소 계	161	정정			15		19			63	30	127
			손배			15		19					34
특수 전문 일간지	매일경제	1	정정								1	1	
			손배										
	머니투데이	5	정정			1					3	4	
			손배			1						1	
	서울경제	1	정정								1	1	
			손배										
	이데일리	4	정정								4	4	
			손배										
	파이낸셜뉴스	15	정정			2					11	13	
			손배			2						2	
소계	26	정정			3					20		23	
		손배			3							3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주간 신문 주간지	주간조선	1	정정						1				1
			손배										
	중앙Sunday	3	정정								3		3
			손배										
	한겨레21	1	정정							1			1
			손배										
월간지	현대중교	9	정정										
			손배										
	소 계	9	정정										
			손배										
	소 계	9	정정	2	1		2					1	6
			손배	2	1								3
통신	뉴스스	38	정정			2					34		36
			손배			2							2
	연합뉴스	41	정정			1					39		40
			손배			1							1
	소 계	79	정정			3					73		76
			손배			3							3
공중파 방송	KBS-1·2TV	2	정정					1					1
			손배					1					1
	KBS-1TV	33	정정					7				19	26
			손배					7					7
	MBC-TV	2	정정								2		2
			손배										
	SBS-TV	1	정정								1		1
			손배										
	소 계	38	정정					8			3	19	30
			손배					8					8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종편 방송	채널A	30	정정			5					20		25
			손배			5						5	
	JTBC	24	정정			1					22		23
			손배			1						1	
	TV조선	360	정정			76					206	1	283
			손배			76						1	77
	소계	414	정정			82					248	1	331
			손배			82						1	83
케이블 TV	연합뉴스TV	18	정정			2					14		16
			손배			2							2
	YTN	7	정정								7		7
			손배										
	소 계	25	정정			2					21		23
			손배			2							2
인터넷 신문 (독립형)	그린포스트코리아	1	정정								1		1
			손배										
	노컷뉴스	58	정정			7					44		51
			손배			7							7
	대구경북CNB뉴스	1	정정								1		1
			손배										
	더블유스타	3	정정								3		3
			손배										
	더팩트	20	정정			3					14		17
			손배			3							3
	데일리한국	12	정정			3					6		9
			손배			3							3
	레디앙	10	정정			2					6		8
			손배			2							2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운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독립형)	리뷰스타	3	정정			1					1		2
			손배			1						1	
	미디어스	6	정정								6		6
			손배										
	민중언론참세상	3	정정								3		3
			손배										
	뷰스앤뉴스	1	정정								1		1
			손배										
	시사위크	9	정정			1					7		8
			손배			1							1
	시사플러스신문	22	정정			2					18		20
			손배			2							2
	아이뉴스24	9	정정			1					7		8
			손배			1							1
	업코리아	7	정정			2					3		5
			손배			2							2
	에너지경제	5	정정								5		5
			손배										
	이투데이	2	정정			1							1
			손배			1							1
	Korea Joongang Daily	13	정정			4					5		9
			손배			4							4
	제주의 소리	1	정정								1		1
			손배										
	코나스	2	정정								2		2
			손배										
	쿠키뉴스	7	정정					1				5	6
			손배					1					1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독립형)	키즈맘	2	정정			1							1
			손배			1						1	
	팩트TV	3	정정			1					1		2
			손배			1							1
	한강타임즈	2	정정								2		2
			손배										
	EBN	4	정정			1					2		3
			손배			1							1
	M0 코노미 News	1	정정								1		1
			손배										
소 계	207	정정			30		1			140	5	176	
		손배			30		1					31	
인터넷 신문 (닷컴)	뉴스천지	12	정정			2					8		10
			손배			2							2
	동아닷컴	44	정정			7					30		37
			손배			7							7
	매경닷컴	10	정정			2					6		8
			손배			2							2
	세계닷컴	20	정정			4					12		16
			손배			4							4
	온라인 중앙일보	1	정정								1		1
			손배										
	이데일리인터넷	24	정정			2					20		22
			손배			2							2
	인터넷 경남신문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경북매일	2	정정			1							1
			손배			1							1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운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경북일보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경제풍월	37	정정			12					13		25
			손배			12							12
	인터넷국민일보	90	정정					25				40	65
			손배					25					25
	인터넷 국제신문	6	정정			3							3
			손배			3							3
	인터넷 기자협회보	7	정정			1					5		6
			손배			1							1
	인터넷 기호일보	7	정정								7		7
			손배										
	인터넷 대구일보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매일신문	4	정정			2							2
			손배			2							2
	인터넷 미디어워치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법률신문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불교신문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서울경제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서울신문	34	정정			4						26	30
			손배			4							4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스포츠동아	10	정정								10		10	
			손배											
	인터넷 시민일보	25	정정			5					15		20	
			손배			5							5	
	인터넷 신동아	3	정정			1					1		2	
			손배			1							1	
	인터넷 신아일보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8	정정								8		8	
			손배											
	인터넷 일간스포츠	8	정정			2						4		6
			손배			2								2
	인터넷 전북도민일보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주간동아	8	정정			1						6		7
			손배			1								1
	인터넷 주간조선	2	정정						1			1		2
			손배											
	인터넷 중소기업신문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중앙Sunday	3	정정									3		3
			손배											
	인터넷 청년의사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충남일보	4	정정			2								2
			손배			2								2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운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인터넷 총청매일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총청일보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5	정정			2					1		3	
			손배			2							2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1	정정			4					23		27	
			손배			4							4	
	인터넷 한겨레21	1	정정							1 (동의)			1	
			손배											
	인터넷 환경비즈니스	3	정정			1					1		2	
			손배			1							1	
	인터넷 한국기독교공보	3	정정			1					1		2	
			손배			1							1	
	인터넷 한라일보	2	정정			1							1	
			손배			1							1	
	인터넷 CNB저널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Mmoney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PD저널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The Korea Herald	16	정정			2					12		14	
			손배			2							2	
	조선비즈닷컴	6	정정			1					4		5	
			손배			1							1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윤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신문 (닷컴)	한경닷컴	2	정정								2		2
			손배										
	e머니투데이	55	정정			6					43		49
			손배			6							6
	소 계	517	정정			75		25	1	1	274	40	416
손배					75		25			1		101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인터넷 KTV국민방송	5	정정								5		5
			손배										
	인터넷 OBS경인TV	8	정정								8		8
			손배										
	인터넷 TV조선	283	정정			64					153	1	218
			손배			64						1	65
	인터넷 아리랑TV	6	정정								6		6
			손배										
	인터넷 연합뉴스TV	12	정정			3					6		9
			손배			3							3
	인터넷 채널A	28	정정			5					18		23
			손배			5							5
	인터넷 평화방송	1	정정								1		1
			손배										
	인터넷 JTBC	24	정정			1					22		23
			손배			1							1
	인터넷 YTN	8	정정								8		8
			손배										
	iKNN	2	정정			1							1
			손배			1							1
	iMBC	1	정정								1		1
			손배										

구분	매체명	계	청구명	기독교복음침례회					권운자				소계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기각 각하	조정 불성립 결정	조정 성립	직권 조정 결정	취하	조정 불성립 결정	
인터넷 뉴스 서비스	KBS미디어	45	정정					8			29		37
			손배					8					8
	SBS 콘텐츠허브	4	정정								4		4
			손배										
	소 계	427	정정			74		8			261	2	345
			손배			74		8					82
계		1,908	정정	2	1	284	2	61	2	2	1,106	98	1,558
			손배	2	1	284		61			1	1	350
			소계	4	2	568	2	122	2	2	1,107	99	1,908

5. 대량사건 처리기준²⁾

기복침 및 권운자가 신청한 사건은 크게 기복침 및 유병언의 오대양 사건과의 연관성 여부, 청해진 해운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유병언의 도피와 관련된 의혹, 유병언의 과거사에 관한 의혹 및 주변인물 관련 사항, 유병언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구원과 교리에 관한 사항, 기복침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것이다. 조정심리 결과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검찰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사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반론 보도 혹은 기사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당시 중재부는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 밝혀진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로,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사실여부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은 추후보도하는 것으로 그리고 신청인과 언론인 사이에 기사수정 등의 협의 의사가 있는 경우 기사수정 혹은 기사삭제하는 것으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한 다음 이를 당사자들에 권고하여, 매체별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처리기준에 따른 처리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대부분의 매체가 이 기준에 따라 조정을 진행했으며, 다만 국민일보, KBS-1,2TV 일부, 쿠키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KBS 미디어 일부의 경우는 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2) 2014년 조정사건에 적용한 기준으로, 2015년도 대량사건에도 그대로 적용하였음

표 5 대량사건 처리 기준

처리결과	처리 기준
정정보도 ³⁾	- 재판결과나 검찰수사결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항 - • 기독교복음침례회 또는 유병언이 오대양사건과 관련이 있다. •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 설립에 참여하였다. • 유병언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목사 또는 교주이다. • 유병언이 제5공화국의 전두환 일가 등과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 • 유병언이 중앙정보부 또는 전 전북부지사 등을 통해 장관계에 로비를 하였다. • 유병언이 밀항하였거나 밀항 혹은 해외망명을 기도하였다. • 세월호 선장이 구원파이다. • 세월호 직원 대다수가 구원파이다.
반론보도	- 현재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진위를 분별할 수 없는 사항 - •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 및 교회(금수원 포함) 운영 관련 사항 일체 • 유병언이 프랑스에서의 사진 전시회 관련 기부금 제공하였다. • 김○○이 유병언의 비서였다. • 통합도산법이 유병언 때문에 추진되었다. • 김엄마가 유병언의 도피를 도왔다. • 기타 각종 추측성 의혹보도 등
추후보도	-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항 - • 청해진 해운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사항 • 유병언 재산 및 각종 회계 관련 사항 •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소유 및 경영에 관한 사항
기사수정 또는 기사삭제	- 신청인과 언론사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

3) 위 기준과 무관하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로 게재되는 경우도 많았음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3 부

주요 언론조정·중재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제1장 명예훼손 사례

사례 1

공무원인 신청인이 임야 개발 및 폐기물처리장 용도 변경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대전조정2·3 정정·손배청구 → 추후·손배청구
신 청 인	송○○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시티저널 (대전시티저널)
중 재 부	대전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05.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추후보도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임야 개발 허가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 변경 과정에서 업자로 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며 경찰 보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정정보도 및 5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해당 사안은 추후 보도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자 신청인이 심리 중 청구명을 추후보도로 변경하였으며, 중재부는 뇌물수수 혐의 부분에 대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대전시티저널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토지 개발 허가 관련해 뇌물을 주고 받은 기자와 공무원, 업자 등의 범행 행각이 경찰에서 모두 밝혀졌다.

대전 지방 경찰청 지능 범죄 수사대는 8일 대전 동구의 한 임야 개발 허가와 폐기물 처리장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가를 내주겠다고, 수천만원 상당의 돈을 업자로부터 받은 인터넷 언론 기자 육모(55) 씨를 제3자 뇌물 교부와 변호사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업자에게 이와 관련 300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대전 ○구청 공무원 송모(56) 씨를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모 건설 대표 주모(48) 씨와 중간에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김모(44·여) 씨를 뇌물 공여와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육모 기자는 업자 주모 씨에게 친구인 공무원 송모 씨를 통해 허가를 내주겠다고, 2012년 7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2회에 걸쳐 500만원을 받고, 이어 송 씨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고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무원 송 씨는 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김 씨는 송 씨에게 돈을 전달해 주겠다고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후 이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서 업자 주 씨는 기자에게 공무원 송모 씨에게 전달해 달라며 5,000만원을 줬다고 진술했고, 육모 기자는 생활비조로 돈을 받은 것은 있지만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무원 송 씨 역시 기자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에 불구속 입건된 ○구청 공무원 송모 씨는 6·4 지방 선거 기간 이와 관련된 기사를 최초로 게재한 <시티저널>을 상대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원의 손해 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추후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 가. 제목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0월 8일자 사회면에 “주고 받고 배달사고 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공무원 송 씨는 이와 관련해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와 “3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 (주)대전시티저널은 이 결정이 확정 된 후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대전시티저널(<http://www.gocj.net>)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하단에 [별지]의 추후보도문의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72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의 추후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별지]의 추후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72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 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 다음날로부터 이행이 이루어

지는 날까지 1일당 50만원의 금액을 지급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 한 경우 신청인은 이 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 하여 피신청인측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01. 23.

〈별 지〉

가. 제목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에서 대전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대전 동구의 한 임야 개발 및 폐기물 처리장 용도 변경 허가와 관련 300만원 상당의 주류 등 향응을 수수한 대전 ○구청 공무원 송모 씨를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 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송모 씨는 이 건과 관련 2014년 10월 27일자로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문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심리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 대전시티저널 - 『“주고 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 내 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2

KBS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비를 10년 전과 똑같이 주거나 절반만 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695·696, 2015서울조정697·698(병합) 각 정정·반론청구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사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2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KBS 등 지상파가 외주제작사에게 10년 전과 똑같은 제작비를 주거나 드라마의 경우 제작비를 절반만 주면서 저작권을 독식하고 있고,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거나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을 하고 있으며, 방송윤리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외주사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하면서도 모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사태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등 외주사 관리에 소홀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KBS는 교양이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하고 있는데다 외주제작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며, 드라마의 경우 저작권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므로 방송사와 외주사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공유하고 있으며, 과태료 문제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정한 계약에 따른 것으로 KBS가 외주사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2014년부터는 외주사의 수익 배분율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외주사 지원책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도 확인되지 않은 보도로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신청인 측의 입장 확인 절차 없이 보도된 점을 감안해 반론보도를 수용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1

- 조선일보 -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헐값에 외주社 저작권 獨食』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면, 조선닷컴 1월 12일자 사회면)

■ 내 용

전체 프로그램의 절반 이상을 외주(外注) 제작사에 맡기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하도급업체에 대한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제작비를 10년 전 수준에서 거의 올려주지 않는가 하면, 외주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KBS의 경우 최근 5년간 외주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의 93.7%에 해당하는 저작권을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외주 제작사의 60%가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73%가량은 “아무런 법적 대응을 취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외주 제작사들은 ‘지상파에 잘못 보였다가 밥줄 끊길까 봐’ 일절 항의조차 하지 못한 채 지상파의 ‘갑(甲)질’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다. 방송 관계자들은 “지상파가 경영 부실을 개선하지 않고 외주 제작사만 쥐어짜고 있다”며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조정대상보도 2

- 조선일보 -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외주社가 받은 협찬금 떼가고 과태료 떠넘기기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0면, 조선닷컴 1월 12일자 TV·방송면)

■ 내 용

“지상파 방송사에서 지급하는 제작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사정을 토로해도 편성권을 쥐고 있는 지상파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교양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찍는 외주 제작사 대표 이모(46) PD는 “지상파용 다큐를 찍을 때마다 빚만 늘다”고 말했다. 2005년 지상파 다큐멘터리 편당 제작비가 3000만원이었는데, 이 씨는 지난해에도 KBS와 MBC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았다. 인건비, 식비, 차량 대여비 등 제작비를 제하면 남는 게 없다. 이 PD는 “방송 시장이 한계에 달하자 방송국이 군소 제작사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드라마 외주사 본부장 역시 “미니시리즈 편당 제작비가 3억~4억원으로 올랐지만, 방송국에선 1억5000만~2억원만

준다. 나머지는 제작사가 온갖 협찬으로 때워야 하니 드라마가 PPL(간접광고)로 도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제작비는 절반만, 저작권은 독식

보통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작권을 갖거나 방송사와 공동 보유하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내 외주사 대부분은 지상파에 저작권을 넘긴다. KBS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가 제작사에 비해 경영이 투명하고 해외 방송국과 협상할 수 있는 능력도 더 크기 때문에 저작권을 방송사가 갖고 있어야 해외 수출도 더 수월하다”고 말했다. KBS는 2009년부터 5년간 외주사가 만든 1561편의 프로그램 중 1464편(93.7%)의 저작권을 갖고 있다. 외주사에 저작권을 모두 넘긴 경우는 2편에 그쳤다. 한국독립제작사협회 관계자는 “영화 틀어주는 극장이 저작권을 모두 갖겠다고 하면 납득하는 제작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나마 드라마는 수출 등 부가 판매로 생기는 이익을 외주 제작사와 5대5로 공유하는 관행이 있지만, 교양 분야는 그조차 없다. 저작권법 전문 권○○ 변호사는 “방송사가 돈을 댔더라도 외주사가 실제 제작을 맡았다면 공동 제작인 만큼 저작권도 공동 소유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주사가 직접 기업의 협찬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해도 지상파는 협찬금 일부를 떼가거나, 외주사가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해외에 드라마를 판매해도 지상파 자회사에 15% 정도의 대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반면 촬영 지연, 해외 촬영 등으로 추가 비용 발생 시 부담은 모두 외주사가 진다. 심지어 방송 내용 탓에 심의에 걸리면 과태료를 외주사가 내게 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협회 박○○ 사무국장은 “지상파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힘없는 제작사만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 “갑에 항의? 밥줄 잘릴 일 있나”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가 573개 외주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44개 업체(60%)가 “지상파로부터 불공정 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했다. 그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 제작사는 17개 업체(5%)에 그쳤다. 대부분 업체(73.3%)는 갑(지상파)과의 관계를 고려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계약서가 없어 대응 자체를 못한 경우도 13.3%에 달했다. 2013년 참여연대가 48개 외주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38개 업체가 “방송사의 불합리한 행위에 항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응답했다. ○○○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노○○ 교수는 “콘텐츠 산업은 각 창작자가 가진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방송 시장은 그 반대”라고 말했다.

▶ 시청률엔 목매면서 외주 제작사 관리 소홀

작년 5월, 30년 전통의 엑스트라 인력업체 ‘○○○○’이 도산했다. KBS ‘○○○○’의 출연료 미지급이 결정타가 됐다. 이 업체는 외주 제작사 ○○○○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끝내 받지 못했다. KBS는 “외주 제작사에 출연료를 지급했으니 우리 책임은 없다”고만 했다. 관계자들은 “KBS가 외주 제작사 선정 주체로서 어느 정도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년 각 방송사의 외주 제작 편성 비율이 높아지면서 우후죽순으로 외주 제작사가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검증 노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상파 PD는 “톱스타나 스타 작가만 섭외되면 업체의 경력이나 재정 상황은 고려치 않고 일단 일을 맡기는 지상파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 ○○○○○노조 ○○○ 위원장은 “지상파가 외주사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일을 처리하다 보니 출연료 미지급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지상파가 계속 이런 현실을 외면 하면 결국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부터 말라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10면 상단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의 제목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보도하며,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조선닷컴(<http://news.chosun.com>)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 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월 12일 1면 및 10면에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지상파, 외주사가 받은 협찬금 떼 가고 과태료 떠넘기기도〉라는 제목으로 KBS 등 지상파가 외주제작사에게 10년 전과 똑같은 제작비를 주거나 드라마의 경우 제작비를 절반만 주면서 저작권을 독식하고 있고,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 하거나 표준계약서를 무시하고, 방송윤리 규정 위반 시 과태료를 외주사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갑질’을 하면서도 ‘갑격시대’ 출연료

미지급 사태 때는 책임을 회피하는 등 외주사 관리와 검증에는 소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BS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2005년 제작비가 2,600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3,5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미니시리즈 드라마의 경우 10년 전 외주제작비 지급액은 약 1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억원 이상이며, 모든 외주제작 계약 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2013년 10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KBS는 교양·다큐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은 외주사가 기획, 제작한 완제품을 방송사가 구매하는 형태가 많고 제작비의 일부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공유하기도 하나, KBS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 전반에 관여하고 직접제작비에 간접제작비·일반관리비·이윤까지 더해 외주제작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가지는 것이고, 반면 저작권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방송사와 외주사가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저작권을 공유하며, 방송권으로 구매하는 드라마는 주된 저작권을 외주사가 갖고 있고, 과태료는 귀책사유 있는 쪽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는데 대부분이 협찬과 간접광고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외주사가 과태료를 부담하였던 것이며, 외주제작계약은 도급이므로 방송사가 외주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나 KBS는 제작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하여 제작비 조달계획을 받거나 건전한 제작사와의 공동제작을 유도하는 등 미지급 사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외주사와의 상생과 협력을 위하여 2014년부터는 교양·다큐의 경우에도 방송권·포맷권 해외 판매 수익 및 영화화권 국내외 판매수익의 50~60% 배분, 촬영원본을 활용한 신규 저작물 작성권 부여 등 혁신적인 외주사 지원책을 도입하였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 1월 12일자 A1면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제하 기사 등과 관련,

KBS는 평균 제작비를 10년 전보다 많게는 2배까지 올려 지급하였고, 외주제작 계약 시 서면계약을 해왔으며, 2013년 10월부터 표준계약서를 쓰고 있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과태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5년 2월 9일까지 조선일보 종합면에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합의사항 이행직후 가장 빨리 도래하는 날 오전 10시부터 24시간동안 조선닷컴 홈페이지 연예/TV·방송면에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보도문의 제목은 [] 안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 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2.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7일자 A8면, 조선닷컴 2월 4일자 연예면)
- 내 용 -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3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소위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 건	2015서울조정1476·1477, 2015서울조정1478·1479(병합) 각 정정·손배 청구
신 청 인	조○○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SBS 콘텐츠허브)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30.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소위 ‘땅콩회항’ 사건 관련 당사자인 대한항공 여 승무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면서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나타난 것은 회사의 회유 및 교수직 제안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와 교수직 제안을 받아 검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으며,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포털사이트 및 SNS, 블로그 등에 개인 신상이 낱알이 공개되어 지탄을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각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해당 보도로 신청인이 회사의 회유와 교수직 제안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며, 신청인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를 받거나 교수직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은 보도에 신청인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으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SBS-TV -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0일자 23시, SBS콘텐츠허브 1월 10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 ▷ 진행자 : 지난달 12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한마디로 용서를 구했던 조현아 전 부사장, 그런데
- ▷ (압수한 USB녹취파일 중) 남성 : 그거를 어떻게 빠져나가야할지 모르겠네, 신문기사가 다 나갔는데 뭘 그걸 어떻게든지 바꿔야 되는데
- ▷ 진행자 :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이었을까?
- ▷ (통화녹취파일) 남성 : 대신에 이번 일이 잘 수습이 되고 하면 내가 잊지 않을게
- ▷ 진행자 : 사건 발생 10일 째 되던 날,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 한 여승무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던 당시의 모습입니다.
- ▷ 기자 : 대한항공 맞으세요?
- ▷ 기자 : 어떤 조사 때문에 오셨나요?
- ▷ 진행자 : 기자들의 질문공세에도 그녀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에 선 그녀의 표정이 어딘가 묘합니다.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검찰조사를 받으러 온 상황에서 이 웃음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온 여승무원은 취재진을 피해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그녀를 실은 승용차 안에 있는 일행들. 그들은 다름 아닌 대한항공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사건현장의 주요 참고인이자 목격자인 여승무원이 대한항공 관계자들과 함께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타났다. 이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근데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은 미결수 신분으로 남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그녀의 범죄혐의가 드러나고 있지만 일단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향후 그녀의 거취는 사건을 목격했던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진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욱 일만 잘 수습이 되면 잊지 않겠다며 거짓진술을 지시하는 이 USB 속의 남자의 말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승무원들과 같은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연치 않은 기회로 회사오너의 범법행위를 알게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회사 측은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결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

리가 입수한 이 USB 안에는 앞서보신 남자들의 수상한 대화 외에 또 다른 파일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놀랍게도 대한항공 사건에 관해 조사를 벌였던 국토교통부 조사실 안에서 녹음된 것으로 보입니다.(중략)

- ▷ 대한항공 관계자 : 조현아 부사장이 기내에서 다소 언성을 높인 것은 사실이지만 승무원을 비하하거나 욕설한 것은 없었고요. 이것은 해당 승무원들의 진술입니다.
- ▷ 진행자 : 대한항공 측은 당시에 기내에서 조금 언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 전원이 같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조사 당시 녹취파일을 들어보겠습니다.
- ▷ (통화녹취파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 부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좀 얘기해주세요. 뭐라고 들으셨어요?
- ▷ (통화녹취파일) 박○○ : 해당 승무원이 서비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서비스에서 배제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 진행자 :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 답을 하고 있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박○○ 사무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진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 ▷ (통화녹취파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 욕설 없었어요? 고함 없었어요?
- ▷ (통화녹취파일) 박○○ : 없습니다.
- ▷ (통화녹취파일) 국토교통부 조사관 :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비행기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 (통화녹취파일) 박○○ : 네
- ▷ 진행자 : 지금은 언론에 자신의 피해상황을 말하고 있는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당시에는 조 전 부사장의 욕설이나 고함을 들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것도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사건발생 20일째 되던 날, 우리는 박○○ 사무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 ▷ 기자 : 국토부 조사받을 때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셨는데 진실이 뭡니까?
- ▷ 진행자 : 한참 동안 망설이던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 ▷ 박○○ :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를 받고 나가서 너는 답변을 하면 된다. 다수의 간부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끝까지 못하겠다고 할 만한 힘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짠 시나리오대로 진술을 하면 뒷일은 자신들이 무마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던 건 사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 진행자 :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여승무원들의 경우는 어떨까.

- ▷ 박○○ : 지금 명품가방 들고 저 웃고 있는 여승무원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승무원이에요. 여승무원들이다...
- ▷ 진행자 :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욕설도 듣고 그런 파일로 맞기는 했지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회사에서) 이 일이 잠잠해지고 끝나고 나면 모기업이 주주로 돼 있는 대학교에 교수자리로 이동시켜주겠다. 당시 현장에 목격했던 여승무원들 모두가 폭언이나 폭행은 없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땅콩 서비스의 장본인인 여승무원에게는 회사 측이 대학교수 자리까지 제안을 했었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그 또한 이런 지시에 따라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상황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고 합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SBS콘텐츠허브(<http://www.sbs.co.kr>)의 홈페이지 교양 섹션 내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초기화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검찰 참고인 승무원 모자이크 관련 영상에 관한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10일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에서 “땅콩회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하러 간 승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아 묘한 웃음을 지으며 검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참고인 자격으로 12월 15일 검찰조사 받은 승무원의 자료 영상은 박○○ 사무장의 주장과 SBS 프로그램의 방송 의도와는 달리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교수직 회유를 받은 바 없는 동시에 검찰에 거짓 진술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각 금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별지]의 보도문을
 - 가.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끝 부분에 진행자 육성으로 빠르지 않은 속도로 낭독하되, 그 동안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자막으로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영상을 방영한다.
 - 나. SBS(<http://www.sbs.co.kr/>) 홈페이지 <그것이 알고 싶다>의 해당 다시보기 서비스 뒷 부분에 게재하여 제공하고,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2015. 03. 02.

〈별 지〉

- 가. 제목 :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 편』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1월 10일 『백화점 모녀와 땅콩회항』편에서,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묘한 웃음을 지으며 검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진술을 하러 간 여승무원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았고, 국토해양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 결과, 참고인 자격으로 12월 15일 검찰조사를 받은 승무원은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회유 및 교수직 제안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며,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4

모 골프업체가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2197 정정청구
신	청	인
주	식	회
사	○	○
○		
피	신	청
인		
주	식	회
사	스	포
츠	서	울
(	인	터
네	트	스
포	츠	서
울	)	
중	재	부
서	울	제
6	중	재
부		
접	수	일
2	0	1
5	.	0
2	.	1
0		
처	리	결
과		
조	정	성
립	(	기
사	수	정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스크린골프 업체가 국내업체로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골프 박람회인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신청인은 2015년 박람회를 포함하여 지난 5년간 연속 해서 미국 골프박람회에 참여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음에도 경쟁업체만이 골프박람회에 참여한 국내업체인 것처럼 잘못 보도돼 스크린골프 점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명예가 심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신청인 업체도 2015년 미국 골프박람회에 참여했다는 수준에서 기사 수정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 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스포츠서울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스포츠면)
- 내 용
토탈골프문화기업 (주)□□□(대표이사 김○○)은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개최된 2015

PGA 머천다이즈 쇼(PGA MERCHANDISE SHOW)에서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 사업자인 △△△과 MOU를 21일 저녁(현지시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는 골프존의 김○○ 회장, ○○○○ CEO와 양사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은 이번 MOU를 통해 앞으로 두 회사가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양사 간의 기술적인 협력도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 200여개에 이르는 △△△의 수준 높은 골프 레슨 노하우와 골프존의 최첨단 기술력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은 더욱 수준 높은 레슨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은 △△△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제휴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

□□□은 이번 협력으로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 향상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에 대해 세계 시장의 인정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 마케팅본부장 임○○ 상무는 “세계 골프인들의 축제인 2015 PGA 머천다이즈 쇼에서 골프 아카데미의 글로벌 리딩 기업인 △△△과 협력 관계를 맺게 된 것은 □□□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시물레이션 골프 기술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골프 한류 ‘K-GOLF’를 실현시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PGA 머천다이즈 쇼는 매년 1월 미국 플로리다주의 올랜드 오렌지카운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골프 박람회로 전 세계 유명 골프 업체들이 모두 참가한다. PGA 머천다이즈 쇼에서는 최신 골프 용품들의 정보와 트렌드를 한 눈에 읽을 수 있다. 이번 PGA 머천다이즈쇼에는 국내 스크린 골프 관련 업체로는 □□□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스포츠서울(<http://www.sportsseoul.com>) 스포츠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2일자 스포츠면 초기화면에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시장 진출”라는 제목으로 □□□은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했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허위 유포이며, 당사는 매년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그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임으로써 스크린 골프와 관련된 기술 한국의 위상을 드높여 왔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주)○○○은 막대한 금원을 들여 세계시장 공략을 위해 세계 최대 골프 박람회인 PGA MERCHANDISE SHOW에 국내 스크린 골프 업체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대규모로 참가 중으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년 4월 3일까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서울 홈페이지 2015년 1월 22일자 라이프면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 체결 북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하단에 ‘이번 머천다이즈 쇼에는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과 ○○○이 참가했다.’를 첨부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3. 2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스포츠서울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5일자 라이프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5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 폭발 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담배 상표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883·288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코리아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5. 07.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 제품의 상표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자료화면으로 내보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보도 대상인 저가 중국산 제품과 달리, 신청인 회사 제품은 이중보호 회로장치가 있어 폭발과는 무관한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상표가 드러난 제품을 여과없이 보도해 제품의 안정성에 의혹이 제기됐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정정보도 수준에서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신청인 회사의 제품은 불량 중국산 저가 상품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정정보도 및 사과보도를 방송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 『저가 전자담배 충전 실험해보니... 불과 8분 만에 ‘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 내 용

- ▷ 진행자 : 값싼 중국산 전자담배가 폭발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불량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여성 종업원이 손님에게 잔돈을 거슬러 주려는 순간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 ▷ 기자 : 미국의 한 작업장에서도 탁자 위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갑자기 폭발합니다.
- ▷ 기자 : 국내에서도 지난 1월 경북 경산과 경기 양평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모두 중국산 저가 제품이었습니다.(신청인 회사 제품 노출)
- ▷ 기자 : 국내 한 대학 연구팀이 실제 저가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충전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험 시작 5분 만에 표면온도가 120도까지 올라가고 3분 뒤엔 평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합니다.
- ▷ 기자 : 실험에 사용된 저가 전자담배 7종은 충전을 시작한지 25분 안에 모두 폭발했습니다. 전자담배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돼 폭발하거나 불이 붙는 것을 방지해주는 보호회로가 불량이거나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 ▷ 기자 : 때문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보호회로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 조○○ 교수 : 비정상적인 것 (과충전)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회로 안전회로가 있어야 하거든요.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안 해요.
- ▷ 기자 :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연구원은 실험 조건이 다소 극단적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전자담배 폭발”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4월 23일 아침& 프로그램에서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의 폭발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품에 사용된 상표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방송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코리아의 ○○제품은 이중보호회로장치가 있어 전자담배 폭발 실험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저가 전자담배 폭발」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지난 4월 23일 「저가 전자담배 충전 실험해보니... 불과 8분 만에 “펑”」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주식회사 ○○코리아의 전자담배 ○○를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이중보호 회로장치가 있어 불량 중국산 저가 상품과는 무관해 바로잡습니다. 이번 보도로 주식회사 ○○코리아 측에 피해를 끼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2015년 5월 22일까지 ‘JTBC news 아침&’ 프로그램 말미에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5.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JTBC - NEWS 아침 & 프로그램 『‘저가 전자담배 폭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0일자)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6

신청인 방송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의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의 대표와 보도국장이 착복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광주조정81 반론청구
신 청 인	광주문화방송 주식회사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시민의소리)
중 재 부	광주중재부
접 수 일	2015. 05. 1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광주MBC와 모 건설사 사이에 맺은 협찬 협약과 관련해 협찬금 중 일부를 광주MBC사장과 보도국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공무원이 거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타언론의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MBC에서 해고된 전 직원의 일방적인 주장과 타언론 보도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한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도의 취재나 반론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도돼 신청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반론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사실확인을 위한 피신청인 측의 충분한 취재가 없었다고 판단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반론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시민의소리 -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1일자 10면)

■ 내 용

광주MBC가 민원 ‘한 방’에 D건설로부터 거액의 협찬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욱이 이 민원의 중간다리 역할을 광주시 공무원이 했다는 의혹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D건설은 지난해 8월께 Y건설로부터 광주 남구 월산동 일부의 땅 소유권을 획득하고 149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건설 현장과 마주하고 있는 광주MBC는 이 사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내세운 명분은 아파트 주 진입로가 광주MBC쪽으로 향해 있어 중계 차량의 통행 등 방송사 업무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광주MBC는 착공 승인권이 있는 광주 남구청에까지 “MBC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결국 D건설은 광주 MBC와 3~4개월가량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지난해 11월 12일 후면도로 개설 등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광주MBC와 D건설의 건축 협약 문건(‘○○동 ○○○○ 건축 협약’)에 따르면 광주MBC가 D건설과 지난해 11월에 협약한 조항들이 적시돼 있다. 이 문건에는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 방송선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건립동들의 옥탑층 고도 조정과 별도의 후면도로 개설에 양측이 합의한다고 쓰여 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문건에 “D건설은 광주MBC에 광고·협찬금으로 2억원(부가세 별도)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다는 점이다. 협찬금 1억원은 2014년 11월에 집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올해 11월에 집행한다는 것이다.

광주MBC가 노골적으로 착공을 방해하자 건설사 측에서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협찬금을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광주MBC는 해당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최초 건축심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았다.

광주MBC는 S건설(이후 Y건설에서 D건설로 소유권이 넘어감)이 2012년 말께 건축 심의를 받을 당시 남구청이 광주MBC와 한 건축심의 협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음해 1월 회신을 통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줬다.

이와 함께 S건설로부터 2013년 5월께 소유권을 넘겨받은 Y건설이 아파트를 짓지 않고 바로 그해 8월 D건설로 소유권을 넘긴 이유도 광주MBC의 압박 때문이었다는 뒷말도 무성하다. Y건설에 대한 검찰 조사는 6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이○○ 광주MBC ○○국장은 지난달 27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비록 5층 건물이나 구조물이 들어서면 중계차 통행 문제나 방송 송출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거 인근에 건물이 건립될 때도 주택재건축조합 등과 (이러한 조건을) 합의하고 상의해왔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협찬금에 대해 “건설사 입장에서든 (입주자를 위해) 광고가 필요했을 것이고, 처음에 건설사 측에서 광고·협찬금 3억원 얘기가 나왔으나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주 출입로가 회사 앞으로 뚫리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이 사안과 관련 더 큰 문제는 광주MBC가 받은 협찬금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다.

전직 광주MBC ○○국장이었던 송모 씨는 올해 초 “최○○ 광주MBC 사장과 이○○ ○○국장이 D건설에 착공의 대가로 처음 10억원을 요구했다가 8억원으로 낮췄고,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것 같으니까 결국 5억원으로 합의한 후 2억원은 방송사 협찬으로, 나머지(약 3억원)는 비공식적으로 직원들을 속이고 둘이서 착복했다”며 최 사장과 이 국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송 씨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녹취록 몇 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송 씨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의혹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송 씨는 광주MBC와 실무 협상을 담당했던 D건설 직원 A 씨의 아버지 B 씨와 모 대학 관계자 C 씨와 이 문제를 놓고 통화를 했다.

두 녹취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광주MBC 측이 맨 처음 10억을 요구하고 나중에 5억원으로 D건설과 합의를 봤다는 정황이다. 이에 따르면 3억원의 행방이 묘연해진다. 송 씨가 최 사장과 이 국장이 착복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다.

녹취록에 등장한 B 씨는 여수 고위직 등을 거친 지역 유력 인사로 D건설-광주MBC 협약과 관련해 아들 A 씨의 자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송 씨에게 “당초 거기서(광주 MBC) 10억을 요구했었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D건설)가 제시한 것이 한 3억에서는 많게는 5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 B 씨는 “5개(5억원 추정)는 확실한데 2개는 정식으로 협약했고, 3개는 누구를 통해서 건너갔는지 진실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C 씨의 녹취록 발언에 따르면 ○○시청 ○○○○본부 ○○ 담당 S 씨가 MBC와 건설사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정황이 엿보인다. 검찰이 해당 공무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사실도 확인됐다.

C 씨는 지인인 S 씨에 대해 “(D건설사의) 브레인 역할을 한다”, “(S계장이 D건설사 측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C 씨와의 녹취록에서도 광주MBC가 “(D건설 측에) 10억을 요구해서 8억, 5억까지 깎았다”는 발언을 확인할 수 있다.

C 씨는 ‘협약이 어떻게 진행됐냐는 송 씨의 질문에 “언더테이블(비공식)로 해결이 됐다고 그런다”, “(S계장이 협약 타결과 관련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돼 말할 수 없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현재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S 씨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이 말의 진위여부는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과 관련 송 씨는 “언론의 힘을 이용한 부정이 이 지역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바람으로 고소를 하게 됐다”며 “착공계는 광주MBC가 ‘이래라 저래라’할 수 없는 ○구청의 권한 인데 20년 기부채납인 광주시 소유 도로의 통행문제를 이유로 사적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언론의 횡포”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광주MBC 아래에 아파트가 건립될 때도 협찬금이 들어왔지만, 2~3년에 걸쳐 7천 만원 정도였다”며 “이처럼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협찬금은 경영국이나 사업국에서 담당하는 업무인데 ○○국장이 협상 TF팀장을 맡은 것을 보면 건설사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읽히는 대목이다”고 덧붙였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시민의소리 머릿면에 아래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과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의 각 활자크기와 같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반론보도문〉

가. 제목 :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시민의소리’는 지난 5월 7일과 8일 이틀 동안 송모 씨가 광주MBC 사장과 보도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발 내용을 보도하면서 광주MBC와 A건설사 사이에 맺은 협찬 협약과 관련해 광주MBC 사장과 ○○국장이 3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했고 공무원이 거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MBC는 “사장과 ○○국장이 3억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고, ‘시민의소리’의 기사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고가 확정된 광주MBC 전 ○○국장 송모 씨의 일방적인 주장과 ‘미디어 오늘’에 보도된 내용을 통째로 인용해서 짜깁기한 데다 고발장과 녹취록에 언급된 관계자들에 대한 사실 확인 취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광주MBC 관계자에게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아 광주MBC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광주MBC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나. 내용 : 시민의소리는 지난 5월 7일자 <광주MBC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광주MBC가 모 건설사와 협찬협약을 맺으면서 당시 협상을 주도했던 사장과 ○○국장이 협찬금의 일부를 착복한 의혹이 있다’는 송모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주MBC 측은 “모든 협상은 개인이 아닌 비상대책위 차원에서 진행되었기에 협찬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고 밝히고, “송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MBC 측은 “협찬금을 착복했다고 주장한 송 씨는 광주MBC 전 간부로 재직하다 비위사실이 적발돼 해고된 자인데 시민의소리는 그의 일방적 주장만을 대서특필해 보도하면서도 광주MBC 측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광주MBC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강하게 유감을 밝혀왔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 5. 28.까지 주간신문 시민의소리 10면에 위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개인 착복 의혹에다 광주시 공무원이 거간(?))의 제목 및 본문 활자크기와 같게 한다.

2015. 05.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시민의소리 - 『[반론문]광주MBC,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5일자 언론계뉴스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7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와 연루되어 불법 수수료를 받는다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2971, 2015서울조정2972(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피	신	청	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신문,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02.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만평에서 손해사정사를 파리로 비유하며,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및 불법수수료에 관련된 것처럼 묘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든 손해사정사들을 파리에 비유하고, 보험사기 및 불법 수수료에 관련된 것으로 만평을 게재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손해사정사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비록 일부 손해사정사들의 비위를 풍자적으로 표현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만평만 놓고 보면 손해사정사 전체를 비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만평은 의견의 일종이므로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 수준에서 협의할 것을 권유하자, 피신청인이 이를 수용하여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대한변협신문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제하의 만평 (2015년 5월 11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5월 11일자 만평면)

■ 내 용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대한변협신문 제542호 변협신문 3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근 리스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1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의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만평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라는 제목으로 전국의 모든 8,000명 손해사정사를 톱파리로 비유하였으며 더 나아가 보험사기 및 불법수수료에 관련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손해사정제도는 보험업법 186조에 근거한 전문 국가자격사로 보험소비자 권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손해사정사들이 톱파리처럼 비유한 것과 보험사기 및 불법 수수료에 관련된 것으로 만평을 게재한 것은 잘못된 표현으로 이에 해당 만평의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2015년 5월 11일 만평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라는 제목으로 손해사정사를 파리로 비유하며, 전체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 및 불법수수료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손해사정사회는 "일부 손해사정사가 불법행위 등에 관련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손해사정사는 일선에서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위 제1항의 보도문을 2015년 6월 29일까지

가. 피신청인이 발행하는 대한변협신문 3면에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대한변협신문 5월 11일자 3면 "개인정보보호 분야, 최근 리스크 분석에서 가장 중요" 기사의 부제목(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나.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의

- (1) ‘뉴스’면 초기화면에 기사순서 상위 5번째 이내(업데이트에 따라 순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음)로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 및 본문의 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보도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 (2) 조정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조정대상기사 본문 바로 아래에 이어서 게재하여 함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되, 제목 및 본문활자크기, 활자체는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각각 같게 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1일에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2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대한변협신문 -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7월 6일자 뉴스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8

신청인 언론사가 모 연예인의 트위터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에 대해 부도덕한 짓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438·3439·3440	정정·반론·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소셜뉴스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헤럴드 (인터넷 헤럴드경제)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8. 27.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 및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배우가 자신의 SNS에 동료 배우들에 대해 남긴 글을 사전 동의 없이 위키트리에서 기사화하였으며, 모 배우가 이를 문제삼자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을 사용한 것이라는 위키트리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위키트리를 발행하는 신청인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임베드 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본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며, 현행 트위터 이용약관에 따라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게재된 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잘못된 보도로 인해 신청인 언론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과 트위터 이용약관에 대한 피신청인 측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 측의 요구 사항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로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인터넷 헤럴드경제 -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연예·스포츠면)

■ 내 용

배우 김○○이 동료 배우들에 대해 남긴 글을 위키트리가 기사화하면서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김○○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1○○○○○○○○○○)를 통해 최근 영화 촬영 중 만난 이정재, 전지현, 김혜수, 유해진 등 배우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남겼다. 이를 SNS 기반 뉴스 매체인 위키트리는 ‘배우 김○○이 트위터에 풀어놓은 동료배우 썰’이라는 제목으로 곧장 기사화했다. 이는 페이스북을 통해 80만 건 이상, 트위터를 통해 30만 건 이상 노출되며 화제를 모았다.

이에 김○○은 해당 트윗을 삭제한 뒤, “트위터라고 하는 공간이 공개된 장소이고 일정 정도 공론화를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이라며 “촬영장에서 만난 동료배우들의 소소한, 게다가 농담까지 섞여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는 잡담들을 끌어 모아 그것만으로 기사를 내다니”라고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어 그는 “사전에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심지어 사후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삭제해달라는 부탁을 했음에도 기사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 본인이 싫다는데 본인에 대한 기사가 아닌 본인의 글 자체 만으로 쓴 기사를 못 내리겠다는 배짱은 도대체 뭘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일자 위키트리 측은 ‘포스팅을 임베드할 때는 포스팅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한다’며 트위터가 제공하는 임베드(Embed,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트윗을 옮겼기에 문제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여러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배우이신지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트위터에 쓴 트윗글을 기사화하는 게 무리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 내용 자체도 기사화할만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은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가 남긴 트윗이 온전히 공개된 글이라고 보긴 어렵다. 게다가原作者의 삭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인용한 측에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도의적인 대응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면 원글이 삭제되면 인용글도 삭제되는 것이 맞지만 김○○이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비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위키트리는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인터넷 헤럴드경제(<http://biz.heraldcorp.com>)의 홈페이지 메인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

- 가. 제목 :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 나. 본문 : 본보는 위키트리가 8월 19일자 보도한 「배우 김○○이 트위터에 풀어 놓은 “동료배우 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이튿날인 8월 20일자 연예·스포츠면에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위키트리가 배우 김○○ 씨에 대해 “사전에 한마디 동의도 구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인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위키트리는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트위터와 같은 공개된 공간에서 행한 말이나 글은 당연히 뉴스 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또한 본보의 기사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첫째, 본보는 “트위터 계정은 팔로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김○○ 씨)가 남긴 트윗은 온전히 공개된 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도했으나, 트위터는 팔로워 여부를 떠나 누구든지 특정 계정에 접속하거나 심지어 검색을 이용해서도 누구라도 모든 트윗을 아무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완전히 공개된 공간입니다.
둘째, 본보는 “일각에선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기도 했다.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면 원글이 삭제되면 인용글도 삭제되는 것이 맞지만 김○○이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있었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보도해, 마치 위키트리가 임베드 기능을 쓰지 않았으면서 썼다고 거짓말을 한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작성했더라도 이미 임베드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텍스트(글씨) 부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는 트위터의 기능이자 정책입니다.

셋째, 본보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위키트리는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고 보도했으나, 위키트리는 해당 기사를 삭제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본보는 김○○ 씨의 주장에 기반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함으로써 위키트리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 잡는 바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위키트리의 배우 김○○ 트윗 기사화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헤럴드경제는 지난 8월 19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에서, 배우 김○○이 자신의 트윗을 삭제한 이후에도 글이 남아 있으므로 위키트리가 임베드 기능을 사용했다는 위키트리 측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고, 위키트리가 해당 기사를 뒤늦게 삭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트위터의 임베드 기능은 트윗 작성자가 해당 트윗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임베드 된 부분에서는 그 내용 가운데 텍스트(글씨) 부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위키트리는 원 기사를 삭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위키트리에서는 현행 트위터 이용약관은 “본 서비스에서 혹은 본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를 제출, 게시 또는 게재함으로써 귀하는 모든 미디어 또는 배포 방식을 통해 해당 콘텐츠를 전 세계에서 이용, 복사, 복제, 처리, 각색, 변경, 공개, 전송, 게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무상의 라이선스(2차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는 권리 포함)를 당사에게 허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라는 내용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년 9월 11일(금) 18:00까지의 기간 중 24시간동안 헤럴드 경제 인터넷 홈페이지 (<http://biz.heraldcorp.com>) 연예·스포츠(연예)섹션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24시간 게재 이후에는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게재한 이후, 피신청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 제1항의 보도문을 즉시 전송하여 각 포털을 통해 검색되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9. 0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키트리의 배우 김○○ 트윗 기사화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연예·스포츠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9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숨진 의경의 제복 사진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536·3537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장○○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10.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발생한 모 의경의 권총 사망 사건을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카드를 넘겨보는 형식의 기사로 전하면서, 숨진 의경의 피 묻은 제복 사진을 함께 사용해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은 모 경찰서 근무 당시 응급 환자 구조시 지혈에 사용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신청인 제복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카드뉴스 형식의 조정대상기사가 최근 SNS에서 쉽게 매개되고 있어 신청인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이미지 교체 등 피신청인 측의 신속한 후속조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상징적인 수준의 손해배상 외에 정정보도 및 유감표명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권유하였으며, 양 당사자 모두 중재부의 권유를 수용해 유감표명을 포함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닷컴 -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카드뉴스)

■ 내 용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조선닷컴(www.chosun.com)의 홈페이지 카드뉴스 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경찰 총기 사고의 피 묻은 제복 사진은 사건과 관련없는 사진임이 밝혀졌습니다.
- 나.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카드뉴스면에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기사고로 사망한 의경의 제복인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 묻은 제복 사진은 충남 ○○서에 근무하는 장○○ 경찰관이 근무 중 출혈이 심한 시민을 발견하고 자신의 제복을 벗어 지혈을 하여 시민의 생명을 구해내는데 사용했던 장면을 촬영한 사진으로 이미지를 무단으로 차용한 것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015. 10. 02.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 가. 제목 : ‘[카드뉴스]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관련 정정보도
- 나. 본문 : 지난 2015년 8월 28일자 「[카드뉴스]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애초 사용된 피 묻은 경찰 제복 사진은 지난 8월 25일 오후 4시52분께 ○○구 ○○○군경합동검문소 총기 사고로 숨진 박모 상경의 제복 사진이 아니라 충남 ○○

서 소속 장○○ 경찰관이 근무 중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착용했던 제복 사진임이 확인돼 교체했습니다. 편집 과정의 착오로 잘못된 사진을 사용해 장○○ 경찰관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조선닷컴(www.chosun.com) 홈페이지 사회일반면 기사목록 앞부분에 제1항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2015년 10월 7일 09:00부터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제1항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3.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14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거나 제3항과 같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5. 피신청인이 위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0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조선닷컴 - 『[카드뉴스]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사회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0

인천시가 민간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법률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경기조정134 정정청구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사람들)
중	재	부
접	수	일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민간업자의 인천대공원 캠핑장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인천시가 민간업자에게 인천대공원 캠핑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잘못된 법률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캠핑장의 임대료가 타 캠핑장보다 비싼데다 야영장 내 각종 소란 행위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야영장 유상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재결 결과 신청인 회사의 운영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해당 지자체가 일반 야영장업 등록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부대설비 시설비를 별도로 받는 타 캠핑장과 임대료를 단순히 계산해 비싸다는 인상을 주는 등 악의적인 보도로 심각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의 경우 일반 언론이 아닌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정 홍보지임을 감안, 야영장 등록신청의 반려사유를 밝히는 수준에서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내용이 상세히 게재되지 않은 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남동사람들 -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1면)

■ 내 용

최근 MBC 시사매거진 2580 등 일부 언론이 인천대공원 야영장 『○○○○ 캠핑장』의 야영장 업 등록신청 반려건에 대하여 편파적인 보도를 함에 따라 구민여러분께 올바른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남동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야영장 등록신청 반려 경위와 이유

인천시는 2013. 9월 인천대공원 야영장을 민간업체에 유상사용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공원시설이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2015. 4월 민간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코자 남동구에 신청하였으나, 남동구는 인천시가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민간사업자에게 영리목적으로 유상사용 허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조성을 위해 국비 31억여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인천대공원 야영장이 민간사업자의 영리목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 텐트 등 포함 임대기준

구 분	인천대공원 야영장	부천야인시대 야영장	서울대공원 야영장
사용료(원)	50,000~150,000	33,000	15,000
운영방식	민간업체	시설관리공단 위탁	서울시 직영

또한 야영장 인근에 780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가 불과 100여 미터밖에 떨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허가는 영리만을 내세운 방만한 운영과 야영장내 각종 소란과 무질서로 이어져 구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입니다.

■ 인천대공원 야영장 운영 방향 개선

남동구가 인천시에 바라는 것은 인천대공원 야영장에 대해 2015. 10월에 도래하는 유상사용 허가기간 만료를 끝으로 더 이상 민간 사업자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중단하고, 인천시 또는

인천시로부터 위·수탁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 야영장이 공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동구의 야영장 등록처분의 반려는 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함이었으며, 남동구는 앞으로도 공공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 이후 처음 발행하는 남동구청 반사회보 <남동사람들> 1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제목인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보도문〉

가. 제목 :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 민간 사업자에게 유상사용 허가를 중단하고, 인천시 또는 인천시로부터 위수탁을 받은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여야 야영장이 공원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

야영장업 등록거부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결과, ‘남동구청의 ○○○○ 캠핑장의 일반 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의 사용·수익 허가 일반조건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산업이 야영장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일반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등록주체가 되어야 하므로 야영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산업이 등록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인천광역시 등이 등록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동구청은 ○○○○ 캠핑장의 일반야영장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캠핑장과 타 캠핑장의 사용료 비교 관련

○○○○ 캠핑장과 타 캠핑장의 임대료 비교를 통해 ○○○○ 캠핑장이 타 캠핑장보다 비싸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이는 텐트만 대여하는 타 캠핑장과 임대료를 단순 비교한 것으로 유료임대 장비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인근 아파트와의 거리 및 야영장 내 각종 소란과 무질서로 인한 구민 피해 관련

야영장 내 각종 소란과 무질서로 인한 공식 접수된 민원은 2건에 불과하며, 야영장 인근 780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와의 거리는 100여 미터가 아닌 250미터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 이후 처음 발행하는 남동구청 반상회보 <남동사람들> 1면에 [별지]의 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조정대상보도 제목인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야영장 등록반려”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하고, 본문 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 크기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피신청인이 위 게재방법과 동일하게 보도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은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제1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침착하게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9. 24.

<별 지>

가. 제목 : “남동구청의 야영장 등록신청 반려사유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나. 본문 : 남동구청이 인천대공원 ○○○○ 캠핑장의 등록을 반려한 사유는 1.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인천광역시가 청소년야영장조성사업을 목적으로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청소년 활동진흥법상 청소년야영장으로 계획하여 직접 조성한 곳이므로, 청소년야영장으로 인·허가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을 한 것은 부적합하고, 2. 인천대공원 야영장은 인천광역시 내지 인천광역시장이 국비를 지원받아 청소년활동진흥법령 등에 의하여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설치한 것이므로, 인천광역시 등이 등록신청의 주체가 되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 옳으며, 3.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와 신청인 사이에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있는 기간은 2015. 10. 6.까지 대략 4개월 남짓밖에 남아있지 않으므로 등록을 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4. 신청인이 캠핑객들을 상대로 유료 영리 영업을 하면서 얻는 이익에 비하여 화재위험, 범죄 발생의 우려, 고성방가 등 인천대공원의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 저해 등 공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산업 측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015년 6월 1일 남동구청이 ○○○산업에 대하여 한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11

신청인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신청인과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중재5·6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와이티엔 (YTN)
중	재	부	서울제4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26.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순천 지역에서 발생한 인질극을 보도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이 함께 살기로 해놓고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인질극을 벌였다는 경찰의 브리핑 내용을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인질극의 피해자인 신청인은 피의자와 사귀는 사이도 아니며, 함께 살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14,4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 (2015서울조정3605·3606)을 신청했다.
- 이후 조정사건 진행중에 담당 조사관을 매개로 양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보도 문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여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반론보도를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 YTN - 뉴스만만 프로그램 『아파트 인질극 무사히 종료… 애정 문제가 발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사회면)
- 내 용
 - ▷ 앵커 : 전남 순천에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두 시간 반 만에 무사히 인질이 풀려났고 인질범도 검거됐는데요. 인질범과 피해 학생 어머니 사이에 애정 문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나○○ 기자입니다.

- ▷ 기자 :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경찰에 끌려 나오고 이어 아이도 무사히 현관을 빠져나옵니다. 전남 순천시 ○○동에 있는 한 아파트 11층에서 57살 위모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붙잡아 흥기로 인질극을 벌인 것은 오전 7시쯤. 경찰이 아파트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설득한 결과 두 시간 반 만에 흥기를 내려놓고 아이를 무사히 풀어 줬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아이는 아동보호기관에 인계돼 심리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 ▷ 위모 씨(전남 순천 초동생 인질범) : “여러모로 죄송합니다. 같이 살기로 해놓고 자꾸만 잠적하니까... 방 안에서도 (아이를) 감싸고 있었지 아이를 해치려 한 건 아니에요.”
- ▷ 기자 : 인질범 위 씨는 피해 아이의 어머니 44살 김모 씨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둘 사이 갈등이 있었고 김 씨가 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 최○○(전남 순천경찰서장) : “피의자가 현금을 빌려주면서 연정을 품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자신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 ▷ 기자 : 인질극에 앞서 위 씨는 새벽까지 김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김 씨를 의자에 묶고는 김 씨의 집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위 씨에 대해 인질 강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중재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YTN <뉴스만만>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중재대상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 목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 문 : 본 방송은 지난 9월 1일 <뉴스만만> 프로그램 등에서 ‘순천아파트 인질극’에 대해 보도하면서 위모 씨가 김모 씨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잘 만나주지 않자 초동학생인 김모 씨의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피해여성 김 씨는 피의자(인질범)와 내연의 관계도 아니고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도 아니며, 또한 3,500만원의 금전거래도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4,4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 21시에 방송되는 <뉴스만만> 프로그램 종료 직전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반론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중재대상보도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반론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이 결정 확정일로부터 7일 안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7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매일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신청인이 제 1항을 이행할 경우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하고 중재대상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그 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YTN 2015. 9. 1. <뉴스만만> 프로그램에서 「아파트 인질극 무사히 종료... 애정 문제가 발단」 제목으로, ‘사귀던 여성이 같이 살기로 해놓고 잘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의 초등학교 아들을 잡고 일질극을 벌였다는 50대 남성 피의자의 진술’을 보도했다.

나.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였던 신청인은, 피의자와 같이 살기로 한 사실이 없고, 사귀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 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후 양 당사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을 따르기로 하고 중재신청으로 전환하였다

2. 판단

가. 피신청인은 중재대상보도에 대해, 신뢰도가 높은 수사당국 또는 국가기관의 공식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여, 설령 그 발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언론이 그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제하의 방송에서 경찰의 브리핑 등을 토대로 보도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주장 등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만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보도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양 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 진행 중에 담당 조사관을 매개로 한 상호간 협의를 통해 보도할 문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바 있고, 담당 조사관이 서로 협의한 보도문에 대해 각 당사자의 이견이 없음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기로 재차 확인하였기에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협의된 문안대로 중재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 양 당사자의 상호이익, 원 기사의 보도방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26.

〈별 지〉

1. 제목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반론보도문
2. 본문 : YTN은 지난 9월 1일 ‘뉴스만만’ 등의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아파트 인질극 무사히 종료… 애정 문제가 발단’ 등의 리포트에서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피의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잘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피의자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사이가 아니며 이는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일 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당시 피해자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레스토랑’으로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YTN - 뉴스만만 프로그램 『‘순천 아파트 인질극 보도’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30일자)

■ 내 용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2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이 위생상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3677, 2015서울조정3678(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유○○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2.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24.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흠쇼핑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히말라야 핑크 소금 중 공업용을 가공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식용암염 판매업자인 신청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핑크소금은 위생상 문제가 없다며 잘못된 보도로 소비자들의 신뢰가 저하 되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문제가 된 업체가 특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선의의 업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입장을 반론보도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뉴스로 프로그램 『[꼼꼼한 경제] 값비싼 '히말라야 핑크소금', 실상 알고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1일자)

■ 내 용

- ▷ 앵커 : 한 달 전 꼼꼼한 경제에서는 일부 천일염 생산과정의 위생 문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번엔 수입산 고급 소금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핑크 소금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 습니다. 오늘(21일) 꼼꼼한 경제에선 그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이○○○ 기자입니다.

- ▷ 기자 : 천일염 보도 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는 제보가 제작진에게 도착했습니다. 건축이나 실내장식용 자재로 사용되는 핑크소금이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15년째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수입하고 있는 제보자를 만나봤습니다.
- ▷ 김모 씨(핑크소금 수입업체) : 홈쇼핑에서 고가로 판매되는데 제가 제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 ▷ 기자 : 핑크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도가 낮은 소금으로 알려지면서 명품 소금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까진 홈쇼핑에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핑크소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 ▷ 소비자1 : 굉장히 비싼 거라고...
- ▷ 소비자2 : 각설탕 같아. 예쁘다.
- ▷ 소비자3 : 히말라야 산이니까 비싸지 않을까요?
- ▷ 기자 : 바다에서 나는 천일염이나 소금을 끓인 뒤 재결정시킨 꽃소금과 달리 핑크소금은 파키스탄이나 몽골 등에 있는 이런 소금광산에서 바로 채취합니다. 과거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면서 남아있던 바닷물의 소금이 암석처럼 굳어서 만들어진 것이 암염입니다. 불순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공업용과 홈쇼핑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5백 그램씩을 물에 녹여봤습니다. 소금을 녹인 지 6시간이 지났는데요. 붉은색 침전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를 보시면 더 많은 불순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국가인 파키스탄에선 핑크소금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을까요.
- ▷ 김○○(무역업자) : 소금 살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그런 것을 광산 근처에서 주워서 소금 대신 먹고 있는데 식용으로 권장은 안 하죠.
- ▷ 기자 : 핑크소금은 제가 서 있는 찜질방 벽면이나 바닥재, 장식용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소금을 분쇄만 해서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수입·유통업체들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 ▷ 핑크소금 수입·유통사 : 그걸 캐서 크기만 조절해서 그냥 가져온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만고의 세월에서 만들어진 거라 어떤 공정도 하지 않았어요.
- ▷ 핑크소금 온라인판매사 : (정제 과정 없이 그냥 넘어온다는 건가요?) 네. (홈페이지에 엄격한 정제를 거쳤다고 나오던데요?) 어디에...

- ▶ 기자 : 식약처가 지정한 식품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한 결과 공업용에선 오히려 세균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식용에선 그램당 75CFU의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암염을 기타 소금의 규격에 맞게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소금을 둘러싼 논란 속에 과도한 소금 사용을 비판해온 영국 올프슨 예방의학연구소 ○○○ ○○○○ 교수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 ▶ ○○○ ○○○○ 교수(퀸메리 대학) : 핑크소금의 핑크색은 명백히 산화철에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은 히말라야 소금이 건강하다고 주장하지만 비도덕적이고 범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 기자 : 소금 위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결국 선택의 책임은 소비자가 떠안아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JTBC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통상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되, 멘트가 진행되는 동안 아래의 기재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아래자막으로 계속 표시하며, 멘트 중 배경화면은 조정대상보도의 자료화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인터넷 JTBC(<http://jtbc.joins.com>)의 홈페이지 경제면 초기화면의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히말라야 핑크소금 충격 위생실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9월 21일 8시 JTBC 뉴스룸 2부 ‘꿈꾸는 경제’프로그램에서 “히말라야 핑크소금 충격 위생실태”라는 제목으로 국내 유통 판매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핑크소금)이 짬짬방 등 공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아무런 정제 과정 없이 분쇄만 해서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핑크소금을 포함한 히말라야 식용암염은 채취지역과 생산과정에서 공업용과 다르고 수입 통관 시에도 식용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 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국내 유통될 수 있어 ‘식용 암염’으로 정식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은 위생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핑크소금’ 관련 알림

나.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9월 21일자 <JTBC 뉴스룸> ‘꼼꼼한 경제’ 프로그램에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핑크소금의 위생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위 보도는 현재 흡쇼핑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핑크소금 중 공업용을 가공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업체는 수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유통하고 있어 위생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2015년 10월 23일까지 JTBC 홈페이지 경제면에 제1항의 보도문의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제1항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고, 홈페이지 조정대상기사(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9085 및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39647)의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며, 이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함으로써 조정대상기사 검색 시 함께 검색되도록 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JTBC - 『‘핑크소금’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 경제면)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13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 직원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경기조정139·14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주식회사 ○○○여행사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아시아뉴스통신 (아시아뉴스통신)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01.
처 리 결 과	취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의 직원이며 현지 여행 중 가이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항의를 해도 여행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사람은 피해자로 보도된 사람의 지인으로 신청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것일 뿐 신청인 여행사의 직원이 아니며, 모 여행사의 민원 제기 건을 보도하면서 해당 보도와 무관한 신청인 여행사의 로고를 사용해 마치 고객 관리가 엉망인 여행사인 것처럼 보도돼 심각한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결과, 중재부가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로 신청인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지적하자,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3,000,000원 및 정정보도 게재, 해당 기사 삭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인과 협의한 후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신청인이 조정을 취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 아시아뉴스통신 -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 대행』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뉴스면)

■ 내 용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해주겠다고 속인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 A 씨(여)가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수수방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논란 일 전망이다. 경기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65)는 지난 5월, 큰 지진이 일어난 네팔에 후원을 하기 위해 동료 5명과 네팔 방문을 계획하고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인 A 씨를 통해 5명 본인 700만원(1인, 14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

그러나, 네팔행을 계획했던 동료 2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취소하게 돼 김 씨는 A 씨에게 2명 본인 280만원을 환불을 요청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것.

김 씨는 이 같은 상황을 ○○○여행사 측에 설명해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책임한 태도에 불만을 호소했다.

김 씨는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을 믿고 돈을 입금했는데, 현재는 전화도 안 받는다”며 “답답하기만 하다. ○○○ 여행사 측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데,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행사 관계자는 “A 씨에게 항공권 판매 목적으로 수수료를 준 것은 맞지만 A 씨도 고객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도 피해를 입고 있고, 잘 모르는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인터넷 상에서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 대행 해주겠다고 총 8명으로부터 1억1,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반 씨(47·여)가 구속되는 등 항공권 구매 대행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현재 피해자들도 ○○○여행사와 A 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보도 2

- 아시아뉴스통신 -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김 씨 일행은 지난달 ○○투어를 통해 4박5일 괌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현지로 떠났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던 김 씨 일행의 여행은 가이드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낭패를 봤다. 현지에서 만난 가이드는 개인적인 일을 본다는 이유로 1시간정도 여행객들을 길거리에서 기다리게 했다. 늦는다는 연락도 주지 않았다.

가이드가 현지 ○○투어 협력사와 제휴돼 있는 쇼핑·마사지 가게에 가자고 강요했고, 가지 않겠다고 하자 눈치를 주며, 김 씨 일행의 질문에 통명스럽게 대응했다.

더불어 돌아오는 날 출국 수속조차 해주지 않았다. ‘공항 안에는 들어갈 수 없다’며 짐도 꺼내주지 않은 채 알아서 짐을 챙겨 떠나라라는 식으로 응대했다.

불성실한 가이드의 태도에 화가 잔뜩 났던 김 씨는 가이드에게 불만을 토로했다. ○○투어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돌아오는 답은 더 가관이었다.

가이드는 “어차피 ○○투어에 말해 봤자, 보상받기 힘들 것이다. 그냥 내가 환불해주겠다”며 “○○투어와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 가이드 비만 뺀다면 된다. 내가 받았던 비용을 주겠다. 그냥 이렇게 받아라”라고 말했다.

받지 않겠다는 김 씨 일행에게 가이드는 “안 받겠다고요? 그럼 잘 쓰게요”하면서 비아냥댔다. 그렇게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김 씨 일행은 ‘한국에 가서 ○○투어에 불만을 제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참았다.

여행에서 돌아온 김 씨는 ○○투어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홍보팀의 대응에 다시 한번 기분이 상했다.

김 씨는 “○○투어 홍보팀에 전화해 따졌더니, 직영이거나 본사 직원이었으면 처벌이나 징계를 줬을텐데, 그 가이드와는 사업상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기막혀 했다.

이어 김 씨는 “○○투어라는 브랜드를 믿고서 계약했는데, 가이드 본연의 임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로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스케줄대로만 움직이려한 모습에 화가 났다.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 다시는 이용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고 격앙했다.

최근 해외 여행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이드 불친절,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택 관광을 강요 등 서비스 관련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업체별로 접수된 민원 건은 ○○투어(32건) ○○○○여행사(23건) △△투어(20건) ○○관광(12건) ○○○투어(11건) ○○○여행(7건) △△관광(7건) 기타(20건)

순이다.

이 같은 가이드관련 피해 사례가 많은 경우는 현지 가이드가 대부분 여행사 정직원이 아닌 계약된 가이드업체 직원이나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일정한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쇼핑 및 옵션으로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다보니 가이드들은 서비스는 뒷전으로 던져 놓고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투어 홍보팀 관계자는 “가이드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객의 주관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부부터 확인하고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일 경우, 가이드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한편 ○○투어는 최근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의 포상휴가 협찬 비용을 현지 교민 여행사들에게 떠넘겼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조정대상보도 3

- 아시아뉴스통신 -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 내 용

여행사 구매대행 A 씨로부터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여행사와 A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시아뉴스통신은 ○○○여행사 구매대행 피해사례(2015년 9월10일자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제하)를 보도한 바 있다. 고소장에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65)가 “지난 5월, 큰 지진이 일어난 네팔에 후원을 하기 위해 동료 5명과 네팔 방문을 계획하고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인 A 씨를 통해 5명 분인 700만원(1인, 140만원)을 계좌로 입금했다”고 담겨있다. 이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료 2명이 취소하게 돼 김 씨는 “A 씨에게 2명 분인 280만원 환불을 요청했지만 환불해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다”며 “○○○여행사측에 설명해 수차례 환불을 요구했지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 소 장

1. 고소인

성명 (양호대표자)	김 ○ ○ ○	주민등록번호 (별인주식번호)	○○○○○○○○○○
주소 및 통대전화	경기 안산시 ○○○○ ○○○○		
가타사상			
대리인에 대한 고소	☐ 법률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 고소대리인 (성명 : , 연락처 :)		

2. 피고소인 (총 2인)

성명	김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주소) (직장주소) ○○○○ ○○○○		
전화	(통대전화) (일반전화) ○○○○ ○○○○		
가타사상	라나도 여행사 설립		

성명	김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주거주소) (직장주소) ○○○○ ○○○○		
전화	(통대전화) (일반전화) ○○○○ ○○○○		
가타사상	라나도 여행사 설립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김 ○ ○ ○ 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범죄사실

가. 피고소인 김 ○ ○ ○ 주회경리 사기죄 전

1. 고소인은 김 ○ ○ ○ 에 평소 대면적 후원을 하고 있었
으며 급변에 대항해 구 제원이 있어 평소대 밀린 김 ○ ○ ○ 대
후원을 목적으로 대면 명 을 계획하고 라나도 여행사 김 ○ ○ ○ 설립을 통
하여 비영리 디렉을 확보하고자 총회에게 의했습니다.

2. 김 ○ ○ ○ 일장은 2015. 5. 15. 대면명 유치확보를 이유로 5명 분
7,000,000원(1,400,000원 * 5명)을 입금 하라고 하여 김 ○ ○ ○ 가 물리수는 조
금 김 ○ ○ ○ 에 계좌로 돈내 통틀 투입 12시 30분에 여액 회원을
니다(금에 제 1호장).

3. 그런데 본인 동정 12 대면명을 계획하였던 인원 중 2명이 참가지하
제 취소하게 되어 김 ○ ○ ○ 에게 취소 사정을 설명하고 2명 분 2,800,000원에
대해서는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환불 하여 준다고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김 씨는 “○○○여행사 측은 A 씨가 직원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 여행사가 세금 안내려고 구매대행을 이용한 것은 아닌지, 국세청에 진정서도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사의 나쁜 행위들 때문에 피해자들이 생기는 것이고, 다시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 위해 고소하기로 했다. 끝까지 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했다”며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꼼꼼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월 인터넷 상에서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총 8명으로부터 1억 1,8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반 씨(47·여)가 구속되는 등 항공권 구매 대행을 빌미로 한 사기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주)아시아뉴스통신(<http://www.anewsa.com>)의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의 기사 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정정보도문 제목을 []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주)○○○여행사 구매대행’ 기사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나. 본문 :

- 1) 지난 9월 10일 보도된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주)○○○여행사 구매대행 기사에 A 씨가 마치 (주)○○○여행사 소속직원처럼 보도하고 (주)○○○여행사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사실과 다르기에 기사를 정정합니다.

A 씨는 지인인 김 씨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주)○○○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한 것일 뿐이며 (주)○○○여행사와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여행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 지난 9월 15일 보도된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 이용에 ‘불만족’ 기사에 본 기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여행사의 로고를 사용하여 (주)○○○여행사가 관련된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주)○○○여행사와 이번 기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기사를 정정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여행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3) 지난 9월22일 보도된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경찰 수사 나서”에 대한 기사에 피해자 김 씨는 항공권을 구매해 준 A 씨와 발권을 진행해 준 ○○○여행사 팀장을 동시에 피고소인으로 고소한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A 씨는 고소장에 올라간 사진 상의 ○○○여행사 실장도 아니며, ○○○여행사 팀장의 실명을 노출시킨 점 사과드립니다.

경찰수사 담당자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지만 김 씨가 A 씨에게 돈을 받지 못하자 ○○○여행사를 통해 받으려 했던 것이며 A 씨는 문제가 되지만 ○○○여행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여행사가 사기행각을 벌인 것처럼 보도가 되었으나 사실과 다르기에 기사를 정정합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본 (주)○○○여행사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 정정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5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기사삭제, 손해배상 3백만원)

취하 후 보도

- 아시아뉴스통신 -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 대행” 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 뉴스면)

■ 내 용

본 아시아뉴스통신은 2015. 9. 10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 대행” 제목의 기사에서 김모 씨 등 5명은 해외여행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겠다는 ○○○여행사 구매대행 직원에게 700만원을 입금하고 네팔 항공권을 구매한 후 사정 변경으로 인해 2명의 항공권을 취소하고자 140만원의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구매대행 직원은 돈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하였고, ○○○여행사 측에도 수차례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김모 씨 등이 항공권 구매를 의뢰한 지인(A 씨)은 ○○○여행사의 구매대행 직원이 아니라 단순히 김모 씨 등의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발권한 고객일 뿐이므로 ○○○여행사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해당 내용을 바로잡습니다.

또한 9. 15.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목의 기사에서 ○○투어를 이용했던 곱 여행객들이 가이드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본사에 불만을 제기했으나 가이드는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하면서 ○○○여행사의 로고를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사는 ○○○여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9. 22. “(주)○○○여행사 구매대행... 경찰수사 나서” 제목의 기사에서 고소장을 게재하면서 여행사 팀장의 실명을 노출시킨 데 대해 유감이며 (주)○○○여행사와 조○○ 팀장과는 무관한 사건이기에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례 14

공무원인 신청인이 비닐하우스 설치 평수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	건	2015전북중재1 추후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내외일보 (인터넷 내외일보)
중	재	부	전북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16.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추후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중재대상기사에서 모 공무원이 모친을 포함해 타인 명의로 비닐하우스 및 관련 시설 설치 명목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했으며, 군이 매입한 대량의 농지를 아들 명의로 임대받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모친의 비닐하우스 보조금 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비닐하우스 환풍시설 및 무인방제시설 관련 보조금 불법 교부 부분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으로,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해 추후보도를 청구하는 조정(2015전북조정64)을 신청했다.
- 이후 1차 조정기일 전에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이루어졌고, 담당 중재부는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추후보도로 게재하라는 취지의 중재결정을 내렸다.

중재대상보도 1

- 인터넷 내외일보 - 『고창 공무원, 억대보조금 편법수령 강력 수사촉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뉴스면)

■ 내 용

고창군 공무원이 모친 등 타인명의로 억대의 보조금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주민 탄원서나 언론에 공개되며 고창군 농민들은 “순수 농민에 가야할 보조금을 공직자가 편법 수령한 사건으로 수사 기관의 철저한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면사무소 관련업무 담당으로 재직 중에 고령의 모친 명의로 보조금을 받아 다른 공무원의 묵인과 방조 속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고창군은 뒤늦게 무려 1억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으나 탄원서 제출 주민은 편법 수령 보조금은 이 보다 엄청날 것이라며 감사원과 검경의 감사 및 수사를 촉구했다.

고창군 ○○면 ○○리 김모 씨가 청와대, 감사원, 검찰 등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면사무소 공무원 K모 씨가 모친 등 타인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이 빼곡히 적혀 있다.

이에 고창군은 뒤늦게 공무원 K모 씨의 모친인 유모 씨(70·여)에 지급한 09년 특화품목(수박) 육성 명품화 하우스 지원 사업 명목으로 ‘7,915만원’, 2012년 시설원예(수박) 품질개선사업 환풍 시설 ‘980만원’, 무인방제시설 2,450만원을 합친 ‘3,430만원’ 등 총 1억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를 올해 10월 23일 통보했다는 것.

이는 ○○면 ○○리 ○○○○ 외 4필지 3천여 평의 특작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지급된 보조금으로 09년 지급된 7,915만원은 아들인 공무원 K모 씨가 ○○면 ○○계에서 해당업무 맡을 당시에 지급돼 충격이고 6백 평의 면적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한 같은 토지에 2012년 지급된 환풍기 및 무인방제시설 명목의 3,430만원 보조금은 모친인 유모 씨가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 고창지사는 이 토지를 다시 3km 떨어진 ○○면 ○○리 정모 씨에 임대했는데도 고창군은 전 소유주인 유모 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황당함도 연출됐다.

그러나 탄원인은 “정모 씨가 임차해 오모 씨와 공동 경작한다”는 고창지사의 말은 전혀 사실 무근으로 정모 씨는 공무원 K모 씨의 대리인일 뿐, 실제 경작자 K모 씨가 오모 씨에 임대료를 받고 재임대 한 것”며 “이는 표면상 임대자가 정모 씨인데 이미 토지를 고창지사에 매각한 고령의 은퇴농인 유모 씨(모친)에 고창군이 3,4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환수조치를 내린 것에서도 알 수 있다”며 강력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09년과 2012년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 고창군 ○○○○과 ○○특작담당 L모 계장은 2013년 2월 지역전략과에 발령을 받았는데 뒤늦게 보조금 환수조치 등 사태가 악화되자 명예 퇴직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현재 병가를 내고 출근을 안 해 의혹이 증폭된다.

아울러 탄원인과 일부 언론은 “공무원 K 씨가 해당 지역 면사무소 등에 근무하며 타인 및 가족 등 차명으로 ○○면 ○○리 일대 30여 필지에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느티나무 등 엄청난 나무를 식재하며 다른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공개해 충격이다.

더욱 현직 공무원이 70대에 가까운 모친 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 편법수령은 L모 계장만 연루된 것인지, 아니면 당시 서류에 결재한 상급공무원 등이 K모 공무원의 모친인 것을 과연 모르고 지급했는지 엄중 수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에 고창 주민들은 “만약 해당공무원이 모친이나 타인명의로 각종 작물 및 수목을 재배하며 보조금 등을 편법 수령한 것이 사실이라면 순수 농민에 돌아가야 할 자금을 공무원이 차지하는 것으로 고창군 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한 전반적 감사 및 강력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고창군은 뒤늦게 역대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에 들어갔으나 K모 씨가 이의제기를 하며 법적싸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짙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정모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환풍기 및 무인방제시설을 철거토록 통보했다.

중재대상보도 2

- 인터넷 내외일보 - 『고창 보조금 편법수령 공무원, 대량의 토지임대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7일자 뉴스면)

■ 내 용

현직 공무원이 모친 등 타인 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고창군이 뒤늦게 총 1억 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 소동을 벌이는 상황에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이하 ○○지사) 매입비 축농지를 당시 학생인 해당 공무원 아들 명의로 대량 임대받은 사실도 밝혀져 충격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은 농지원부를 보유한 큰 아들 및 작은 아들과 함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하 ○○사무소)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마쳐 ‘○○지사’가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등록 등을 근거로 대량의 토지를 학생에 임대한 배경과 농지원부 발급 및 농업경영체 등록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창군 ○○면사무소 공무원 K모 씨가 모친 명의로 천문학적 보조금을 편법 수령한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의 탄원서 제출 이후, 고창군은 뒤늦게 K모 씨 모친인 유모 씨(70·여)에 지급한 09년 특화품목 육성 명품화 하우스 지원 사업 명목의 ‘7,915만원’, 2012년 시설원예(수박) 품질

개선사업 환풍 시설 ‘980만원’, 무인방제시설 2,450만원을 합친 ‘3,430만원’ 등 총 1억1,345만원의 보조금 환수에 나서는 소동을 벌였다.

‘○○지사’도 문제가 불거지자 탄원인이 “정모 씨는 표면상 임차인일 뿐 실제 임차인 K모 공무원이 오모 씨에 재임대한 것이다”고 주장하는 3천여평의 해당토지에 대한 정모 씨와의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내년 2월 28일까지 환풍기 및 무인방제시설을 철거토록 통보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그러나 ‘○○지사’는 이 토지 외에도 정모 씨에 ○○면과 □□면 일대에 무려 13필지 토지를 경영회생이나 장기 임대차, 임대수탁 등의 방법으로 임대를 해줬을 뿐 아니라 K모 공무원의 큰 아들(학생) 명의로는 ○○지사가 매입해 보유한 토지 6필지를 임대해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에 ○○지사 관계자는 “K모 공무원의 큰 아들 명의로 임대한 6필지에는 벼와 콩을 비롯 일부 다년생 나무를 심었는데 이는 임대차 기간이 2012년부터 2017년으로 임대차 기간 내에 옮길 수 있는 나무도 심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2012년 K모 씨 큰 아들에 6필지의 매입비축 토지를 임대한 것은 큰 아들이 ○○면 사무소에서 발급한 ‘농지원부’를 보유해 임대했다”고 밝혔으나 상세 취재에 들어가자 “○○사무소에 2012년 K모 공무원과 큰 아들 및 작은 아들이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돼 임대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다른 지사 관계자나 인근 농민들은 “임차인이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할 뿐 아니라 제3자와 농사를 지으면 계약해지 사항으로 농지원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나 학생은 농업인이 아니어 농지원부를 만들어주지 않으며 공무원과 학생 신분인 두 아들을 포함한 3명의 농업경영체 등록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혀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고창지역 농민들은 또한 “○○지사가 정모 씨에 임대한 대량의 토지도 필지별로 실제 임차인이 누구인지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2012년에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도 고교생 등 학생 신분인데 농업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는 농지원부 발급도 이해가 안 되며 농업경영체 등록은 더욱 이해가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파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해당 K모 공무원이 4년 6개월이나 근무한 ○○면에서 농지원부를 발급한 것으로 그 배경에 대한 철저 조사와 함께 이들 토지에 계약대로 작물을 재배하는지와, 나무 식재의 적법성 여부 및 나무 식재로 다른 기관의 특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농민들의 의혹을 풀어 줘야 한다”고 강력 주장해 파문이 확산된다.

중재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내외일보 홈페이지 지역면(광주/호남) 상단에 아래의 추후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추후보도문〉

가. 제 목 : ‘고창군 공무원 K모 씨’ 관련 추후보도문

나. 본 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8일 및 12월 27일에 걸쳐 고창군 ○○면 ○○리에 사는 고창군 공무원인 K모 씨(53)가 모친 등 타인명의로 비닐하우스 등 설치 명목으로 억대의 보조금을 불법으로 수령하였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본지 보도 중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수령과 관련해서, 지난 4월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보조금 신청인인 모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K모 씨가 해당 필지의 평수를 부풀려서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중재결정

중재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본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내외일보 홈페이지 지역면(광주/호남) 상단에 〈별지〉 추후보도문을 48시간 이상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추후보도문이 표시되게 하며 게재 후에는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에게 지체한 날로부터 매일 금 10만원씩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기자 등 다른 임직원에게 조정대상기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단, 신청인이 현재 항소심 법원 형사재판 중인 사안(보조금 부분에 한한다)에 대해서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2015년 3월 12일 합의에 따라 추가적인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다시 위원회의 중재적인 중재를 받도록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위 사건 당사자들은 2015년 3월 12일 2015전북조정5, 6(정정·손배청구) 사건 심리 결과 원 조정대상기사 3건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제외하고 행정, 민사, 형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해서 승소(일부 승소 포함) 및 승소와 동일한 효과를 얻는 경우 또는 무혐의 결정(검찰, 일부 무혐의 포함, 확정시) 또는 무죄 판결(법원, 일부 무죄 포함, 확정시)을 받는 경우 피신청인이 해당 승소, 무혐의 결정, 무죄 판결 사실을 보도하기로 하고, 보도의 구체적인 내용 및 원 조정대상기사 3건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양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의 중국적인 중재를 통해 판단받도록 하고, 이를 전제로 신청인은 피신청인 및 기자 등 다른 임직원에게 대해 조정대상 기사를 이유로 민·형사상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나. 이 사건 신청인은 2015년 4월 30일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원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설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인 바, 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 2건에 언급된 여러 혐의 중 무혐의 처분이 난 부분에 대해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추후보도 청구를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위원회에서 보건대, 3월 12일 합의는 유효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이를 위원회의 중국적인 중재결정에 따라 해당 무혐의 사실을 주문과 같이 보도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3월 12일 합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 혐의사실에 대한 재판이 신청인에게 무죄(일부 무죄 포함)로 종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인 보도 및 손해배상 부분도 다시 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상당해 보인다.

나. 다만, 3월 12일 합의 중 행정, 민사 등 다른 쟁송 절차까지 모두 피신청인이 보도하게 하는 것은 기존에 피신청인이 반론 및 정정보도를 낸 점과 원 조정대상기사 3건을 인터넷에서 모두 삭제한 점 및 이번 일부 무혐의 결정에 대해 추후보도를 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도 및 손해배상 부분은 현재 법원에서 형사재판 계류 중인 사안으로서 환풍 시설 및 무인방제시설의 보조금 관련 혐의에 한정함이 적절해 보인다.

3. 결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6.

〈별 지〉

1. 제목 : ‘고창 공무원 보조금 불법 편취’ 추후보도
2.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8일 및 12월 27일에 걸쳐 고창군 ○○면 ○○리에 사는 고창군 공무원인 K모 씨(53)가 고창군 ○○면 ○○리 등 4필지 논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실면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불법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김모 씨의 비닐하우스 농지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와 같이 추후보도합니다.

중재결정사항 이행결과

- 인터넷 내외일보 - 『고창 공무원 보조금 불법 편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뉴스면)
- 내 용
〈중재 결정서의 별지 참조〉

사례 15

구청 공무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3년 만에 두 계급 초고속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사 건	2015서울조정4009·401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뉴스1 (뉴스1코리아)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5. 11. 23.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 및 반론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해당 공무원은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특별 승진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를 받는 중 특정 증인에게만 발언 기회를 주는 등 공정하지 않은 의사진행을 문제삼아 정당하게 이의제기한 것으로 난동을 피운 사실이 없으며, 승진 소요기간은 3년이 아닌 10년 10개월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포털사이트에 신청인을 비방하는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3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이 서울시 의회 감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욕설을 직접 들은 관계자들도 있어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의 승진 시기가 잘못된 점을 감안해 피신청인이 일부 내용을 정정 및 반론보도하고,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조정대상 기사 하단의 댓글 게시판 차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 직권으로 결정한 내용 대부분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포털사이트의 댓글 삭제를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과잉 조치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조정대상보도 1

- 뉴스1코리아 -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내 용

서울 ○○구청 공무원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동남권국제교류복합지구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지난 12일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주윤중 강남구 부구청장, 배○○ ○○○구 ○○○○국장, 이○○ ○○○구 ○○○○○담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날 행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행감 당일 오후 2시 30분 강남구 범주민비상대책위원회 면담과 자산관리공사 양해각서(MOU) 체결, 육군제52사단 장병위문공연 참석 등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결국 이날 행감장에는 이○○ ○○○○○담당관(5급)만 모습을 드러냈고 김미경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감 불출석을 통보하는 것은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행감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자 강남구에서 홀로 출석한 이 담당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샷대질을 하면서 “아니 과장을 불러냈으면 얘기를 하고 끝내셔야지”라고 소리 질렀다.

이어 위원들이 “어디서 소란을 부리냐”고 항의하자 이 담당관은 “여러분들은 공무원들 아니냐”라며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 담당관은 위원들과 제지하는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을 향해 “이XX”라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담당관의 난동으로 행감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위원들 사이에선 “서울시 소속 공무원인 사무관에게 모욕적인 일을 당해 참담하다” “신연희 구청장의 사주를 받고 계획적으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등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위원장은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감기관 공무원이 난동을 부린 행위는 지방의회 역사를 통틀어서 전례가 없는 중대한 일”이라며 “오늘 사태에 대해 구청장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전에 예정되었던 규정주요 행사를 미룰 수 없어 사전에 불참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며 “담당 과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 질의없이 행감 중단을 선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신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들에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23일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열 방침이다.

조정대상보도 2

- 뉴스1코리아 - 『‘육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2일자 전국면)

■ 내 용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설 난동’을 부린 서울 ○○구청 공무원이 신연희 구청장 체제에서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초고속 특별승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강남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육설 난동’을 부린 ○○현 강남구 ○○○○○담당관(50·행정 5급)은 지난 2012년 7급(지방행정주사보)에서 6급(지방행정주사)으로 승진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승진시험을 치른 것이 아니라 지방공무원법상 우수공무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별승진임용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담당관은 같은 해 7월 2일자로 강남구 감사담당관(○○○○전담TF팀장)으로 발령났다.

이후 이 담당관은 지난 2월 27일부터 ○○구 ○○○○○담당관 직무대리를 맡다가 3개월도 지나지 않은 지난 5월 22일자로 또 다시 5급(지방행정사무관)으로 특별승진 해 강남구 ○○○○○담당관으로 임용됐다.

일반 행정공무원이 6급에서 5급으로 한 계급 승진하는 데만 평균 6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이 담당관은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두 계급이나 꺾충 뛴 것이다.

이 담당관은 ○○마을개발 실무 부서인 ○○과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신 구청장의 총애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구청장은 ○○마을 개발 문제를 계기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처음으로 대립했다.

이 담당관의 초고속 승진을 두고 지역 공무원사회의 눈총은 따갑다.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아무리 업무능력이 우수해도 그렇지 어떻게 3년 만에 특별승진으로 두 계급이 상승할 수가 있냐”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 담당관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이 가득한 행정 감사장에서 육설 난동을 일으켰으니 ○○구청에서는 개선장군처럼 대하지 않겠냐”며 “벌써 4급 서기관 승진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강남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 강남구 의회는 신 구청장을 상대로 한 구정질문에서

이 담당관의 특별승진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강남구의회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3년 동안 두 번이나 특별승진 시켜준 것인데 서울시 공무원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강남구 인사가 업무능력이 아닌 충성심으로 이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특별승진은 경찰을 봐도 그렇고 공무원사회 전반에서 흔한 일 아니냐”며 “이 담당관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특별승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담당관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열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행정사무감사에 신 구청장 대신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산회를 선포했다는 이유로 위원들에게 “이XX”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뉴스1(<http://news1.kr/>) 홈페이지 초기화면 1면에 기사목록 앞부분에 아래의 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168시간(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아래의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조정대상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아래의 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한다. 또한 168시간(1주일)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 가. 제목 : 「2015. 11. 18일자에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2015. 11. 22일자에 ‘욕설난동’ ○○구 공무원, 3년만에 7급→5급 초고속 특별승진」 관련 정정보도문
- 나. 본문 : 본 뉴스통신사는 지난 11월 18일자에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과 지난 11월 22일자에 ‘욕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담당관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시의원들에게 “이XX”라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다’, ‘욕설난동 ○○구 공무원 이 담당관은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특별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쓴 기사이며, 확인한 결과 ○○구 공무원 이○○ ○○○○○○담당관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장에서 시의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이 없으며, 또한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실도 없었음이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특정인(○○구 ○○○○담당관 이○○)을 2015. 11. 18.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서는 해당 일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홍○○ 단장에게는 자리배치를 하고 발언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특정 증인으로 출석한 이 담당관에게는 자리배치와 발언기회 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의 공정하지 않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 담당관이 이의를 정당하게 제기한 것이며, 또한 이 담당관은 7급에서 5급까지 2계급 승진을 함에 있어 3년만이 아닌 10년 10개월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되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일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보도문을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09:00부터 48시간 동안 <뉴스1> 사회 섹션 주요뉴스목록 상단에 [별지] 기재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제목 및 본문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별지] 기재 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한다. 또한 [별지] 기재 보도문을 조정대상기사의 각 본문 하단에도 이어서 게재하고, <네이버>, <다음> 등 조정대상기사가 검색 제휴(계약)된 포털사이트에도 전송하며, 피신청인의 기사 DB에 보관하여 상시 검색되도록 한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다음(www.daum.net)> 및 <네이버(www.naver.com)>에 게재된 아래 조정대상기사(「육설난동’ 강남구 공무원, 3년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하단에 게시된 네티즌 의견(댓글) 게시판을 삭제 또는 차단하여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 및 <네이버>에 요청한다.

• [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nation/seoul/newsview?newsid=20151122070026078>

• [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746860>

- [네이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74746>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2. 01.

〈별 지〉

가. 제목 : ‘육설난동 ○○구 공무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본문 : 본지는 지난 11월 18일자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및 22일자 「육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제하의 기사에서 강남구 이○○ ○○○○○담당관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에게 육설을 하고 난동을 부렸고, 3년 만에 7급에서 5급으로 초고속 특별 승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해당 공무원 이 담당관은 2004. 8. 1.자 7급 승진, 2012. 1. 1.자 6급 승진, 2015. 5. 22.자 5급 승진 등 7급에서 5급까지 2계급 승진하는 데 10년 10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 담당관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음에도 자리배치 및 발언기회를 주지 않아 불공정한 의사진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뿐, 시의원들에게 육설하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사례 16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을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접견녀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4101~4106, 2015서울조정4143~4147, 2015서울조정4165, 2015서울조정4172~4173(병합) 각 정정청구		
신	청	인	○○로스쿨 외 5인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조선일보) 2. 주식회사 디지털조선일보 (조선닷컴)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17.(2015서울조정4101~4106) 2015. 12. 23.(2015서울조정4143~4147) 2015. 12. 24.(2015서울조정4165, 2015서울조정4172~4173)	
처	리	결	과	각 기각결정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법률 자문 대신 구치소 접견실에서 단순히 재소자와 시간을 보내는 접견 변호사들로 인해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접견실 공간이 부족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접견 변호사 대다수가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 신청인들은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한 서울구치소 자료를 근거로 접견 횟수 상위 10위까지 변호사들의 성별 비율 및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등 구치소 재소자 접견과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와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출신 여 변호사들이 재소자 접견에만 치중하는 것처럼 보도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당 했으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보도에 신청인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가 전혀 없고, 설사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신청인들과는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모두 기각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조선일보 -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5일자 B3면, 조선닷컴 12월 5일자 카드뉴스면)

■ 내 용

‘배고픈 변호사는 굶주린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 유래된 속담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사기·횡령 등 잡범(雜犯)으로 추락하는 변호사가 속출하고 있고, 구치소에서 법률서비스 대신 웃음을 파는 변호사까지 생겨났다. 변호사가 2만명에 이르는 시대, 그 그들도 점점 넓어지는 셈이다.

부장판사 출신 정보 씨는 개업 4년 차 변호사다. 2013년 서울동부지법의 한 사기 사건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그는 피해자를 만나 3억원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내 재판부에 냈다. 합의서 덕분에 피의자는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피해자가 정 변호사와 피의자를 찾아가 약속한 3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오히려 정 변호사와 피의자는 “3억원을 갚아야 하기는 커녕 우리에게 오히려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까지 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정직 6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이뿐 아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증인신문 비용, 출장비, 재판진행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하다 과태료 200만원,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장하고 의뢰인에게 승소를 장담하다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2년 새 세 차례 징계를 받게 된 그는 법무부에 징계가 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수일 전 강원도 춘천에선 유모 변호사가 사기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모 종종 토지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맡은 그는 승소하면 수임료 명목으로 일부 토지를 받기로 했다면서 그 땅을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 3억원을 챙겼다. 하지만 그는 소송에서 졌고, 땅 매입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사무장이 한 일로 나는 모르겠다”고 버텼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춘천지법은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춘천 인근에선 유 변호사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의 비리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법원에 낸 보석금이나 공탁금은 확정 판결이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 몰래 이를 챙기는가 하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가 구속된 변호사도 있었다. 한 변호사는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세금을 받아 자신의 용돈과 미국에 사는 아내 생활비로 썼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비리 유형이 사기, 횡령, 배임, 주가 조작, 성추행 등 일반 잡범들과 크게 다를 게 없다”고 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비위가 접수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 징계 개시신청 건수는 2013년 73건, 2014년 185건이었고, 올 들어 지난 11월 현재 245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중엔 수입료만 챙기고 일은 하지 않는 ‘먹튀’ 변호사도 있었다. ‘성실의무 위반’ 징계 받은 변호사는 2008년 3건에 그쳤으나 2010년 8건, 2012년 8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1건이었다. 변호사 2만명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속칭 ‘접견녀’의 출현이다. 일부 로펌들이 용모 단정한 여자 변호사를 뽑아 피의자 접견권을 이용해 구치소 접견실에서 재소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다. 과거에도 기업인 재소자와 회사를 오가며 심부름을 맡았던 ‘집사 변호사’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젊은 여자 변호사들이 집사 변호사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일부 중소 로펌은 아예 로스쿨 출신의 여자 변호사들만 채용한다고 한다. 접견 변호사들은 구치소에서 의뢰인과 하루 종일 이른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시간 보내주는 게 주된 업무라 사건 내용은 몰라도 된다고 한다. 이들은 때로 의뢰인이나 로펌 요구에 따라 짙은 화장을 하거나 짧은 스커트를 입기도 한다. 일부 재력가 재소자들은 여러 명을 면접한 뒤 자신을 전담할 접견 변호사를 선택하기도 한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룸살롱에서 여종업원 파트너 선택하듯 접견 변호사를 고르는 사례까지 있다”면서 “한 젊은 변호사는 로펌 입사 후 한 달간 사무실에 가지 않고 구치소에서 재소자들 접견만 했다”고 했다.

그렇다고 이들의 보수가 다른 변호사보다 많은 것도 아니다. 이들 급여는 대략 월 250만~3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이 안 되는 점을 이용한 일부 로펌과 재력가들에게 떠밀려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들이 말하기도 민망한 업무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들이 접견실을 차지하다 보니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정도다.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여름 대한변협에 10여 명의 변호사 명단을 통보하고 징계를 의뢰했다. 일부 접견 변호사들은 재소자에게 사탕이나 과자, 초콜릿 등 금지 물품을 전달하다 적발됐으며, 이런 물건들은 부적절한 접견 과정에 사용된 일종의 ‘데이트 용품’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법조브로커에게 고용된 이른바 ‘머슴 변호사’도 늘어나고 있다. 법조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아닌 자는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 때문에 변호사를 ‘바지 사장’으로 앉히고 여러 명의 젊은 변호사들을 고용해 실질적인 로펌 사주 역할을 한다. 검찰·법원에 발 뉘은 브로커가 사건을 가져와 자신의 부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나눠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가 브로커의 을(乙)이 되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감이 없는 변호사들은 아예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챙긴다. 최근 인천지검은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해 480억원을 챙긴 법조브로커 77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준 변호사 57명도 적발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명의 대여료로 매달 500만원 가량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커들은 변호사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파산·회생이나 등기 사건을 자신들이 수임해서 처리했다고 한다. 로스쿨 출신 박모 변호사는 “불법인 줄 알지만 월 500만원만 준다면 명의를 빌려줄 변호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변호사들의 비리와 탈선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내 변호사는 1906년 3명으로 출발해 2008년 1만명을 넘어섰다. 1만명 돌파에 102년 걸렸다. 하지만 2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9월 16일이었고, 11월 말 현재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2만406명이었다. 7년 만에 다시 1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2004년부터 사법시험 합격자를 1000명으로 늘린데다, 2012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1500명 이상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2050년 변호사 수는 7만명을 넘게 된다.

변호사업계는 지금도 변호사 포화 상태라고 아우성이지만, 변호사의 보릿고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초동에서 개업한 8년 차 변호사는 “한 해가 다르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배고픈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호사 한 명이 맡는 사건은 20년 전만 해도 한 해 평균 50건이었으나, 요즘은 20건대로 떨어졌다. 여기에 최소 300만원 받던 수임료도 이제 100만원 대로 툭 떨어졌다.

지방변호사회에 매달 5만원씩 내는 회비를 체납하는 변호사가 1000명에 육박하고, 그 회비 내기도 아까워 아예 휴업 신고를 내는 변호사도 400명이 넘는다. 로스쿨 출신 이모 변호사는 “변호사라고 하면 주변에서 다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지만 막상 동기들 중 상당수가 취업을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범죄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면 어쩔 수 없이 비리를 저지르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보니 의뢰인을 부추겨 억지 소송을 유도하는 기획 소송이 늘어나고, 변호사 불법 과장 광고도 판을 치고 있다.

지난 7월 취임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법조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최근엔 법원과 검찰, 변호사 단체 등 이른바 법조 3륜(輪)이 모여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만들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맑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불법·탈선을 저지르는 변호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그럴수록 징계 수위를 더 높이는 등 자체 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조선일보 Why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변호사 2만명 시대의 불편한 자화상”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신청인들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접견 변호사’ 관련 정정보도문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5일자 Why면에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라는 제목으로,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재소자들에게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속칭 ‘접견녀 변호사’로 전락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접견 변호사’ 문제는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만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보도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본 기사가 인용했던 서울구치소 변호사 접견 통계자료에 따르면, 접견횟수 상위 10위까지의 변호사들은 성비도 반반이고,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이 골고루 섞여 있는 등, 오히려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와 유의미한 관계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사건처리결과

각 기각결정

결정사항

주 문

신청인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및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에서 법률 자문 대신 구치소 접견실에서 단순히 재소자와 시간을 보내는 접견 변호사들로 인해 실제 접견이 필요한 재소자를 위한 접견실 공간이 부족

하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러한 접견 변호사 대다수가 로스쿨을 졸업한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라는 취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 인용한 서울구치소 자료에 따르면 접견 횟수 상위 10위까지 변호사들의 성별 비율 및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비율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등 이 사건 보도에서 지적하고자 했던 접견 변호사 문제는 비단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와 상관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로스쿨 재학생들의 명예가 심각히 훼손당했다.

2. 판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피해를 입은 자’라 함은 그 보도내용에서 지명되거나 그 보도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보도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러한 규정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문제의 보도와 일반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자에게 까지 정정보도 청구권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언론사에 대해 상당한 언론의 자유의 제한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보도에서 신청인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전혀 없고, 가령 이 사건 보도로 인해 로스쿨 출신 여성 변호사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 하더라도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신청인과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신청인은 추후 신청인 대부분이 보도에 언급된 ‘로스쿨 출신 여자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 사건 보도와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우리나라 전체 여성 변호사들 개개인 또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언론중재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01. 13.

사례 17

모 지역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강사인 신청인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대구조정79·80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최○○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경북매일신문 (경북매일)	
중 재 부	대구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28.	
처 리 결 과	취하 (PR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모 지역 평생학습원에 출강하는 강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잡담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노래교실 수업에 불만을 품은 수강생이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으로 사실이 아니며, 금품 수수 부분도 반강제로 걷은 돈이 아니라 명절 때 수강생들이 자발적으로 각 출하여 모은 돈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돼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정정보도 및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조정신청 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활동을 담은 내용을 인터뷰 형식으로 취재해 보도하자 신청인이 만족하여 조정을 취하했다.

조정대상보도

- 경북매일 -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5면)

■ 내 용

포항시 평생학습원이 주민복지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한 노래교실의 강사가 불성실한 태도로 자질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 일부 수강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으나 평생

학습원은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책임을 회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14일 평생학습원에 따르면 노년층의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어르신 과정’은 만 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나눠 실시되고 있다.

전 과목 무료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요가, 택견, 라인댄스 등 일반과목의 경우 1인당 2과목까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해야 수강이 가능하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공개강좌는 교육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해 수강하고 있다. 그런데 공개강좌에 포함된 노래교실의 한 강사가 지정 교육시간인 2시간에 한참 못 미치는 시간에 교육을 조기 종료하는 경우가 많고 수업내용도 부실해 일부 수강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일고 있는 것. 평소 노래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한 노인은 “10시에 수업을 시작해서 목 푼다고 10분, 잡담한다고 20분을 허비해 10시 반이 돼서야 수업을 시작하는데, 마치는 시간도 11시 10분 정도에 마친다”며 “정규 시간이 2시간인데 고작 40분 내외의 수업을 들으러 먼 길을 오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강사와 친한 일부 수강생이) 강의실 문 앞에서 다른 수강생들에게 반강제적으로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전달한 적도 있다”며 “수강생 대부분이 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들인데 이들에게 돈을 받아간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평생학습원은 전체 120분 중 강의시간 100분, 휴식시간 20분으로 나뉘어져 강사 재량으로 수업시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사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일반 과목의 경우 고정적인 인원 편성으로 해당 과목이 끝나고 나면 만족도 조사 실시를 통해 파악이 가능하지만 노래교실은 선착순 공개강의로 매일 수강 인원이 달라 수강생들의 불만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평생학습원 관계자는 “해당 노래교실은 공개 강의로 140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수업을 듣는 인기과목이다”며 “일부 수강생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강의 시간은 강사 재량껏 이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조정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경북매일 사회면에 아래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정정보도문의 제목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부제목 활자인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활자와 동일한 크기로 2단에 걸쳐 보도하며, 본문활자는 조정대상기사의 본문활자와 같게 한다.
2. 피신청인은 아래 정정보도문의 제목을 인터넷 경북매일 사회면 초기화면 기사목록 상단에 48시간 동안 보도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이 나타나게 하고, 조정

대상기사 하단에도 아래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한다. 또 최초 보도 후 48시간 이후에는 기사DB에 저장하여 검색되게 한다.

〈신청인이 요구한 정정보도문〉

가. 제목 : ‘○○시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관련 정정보도

나. 본문 : 본 신문은 지난 12월 16일자 5면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제목의 기사에서 ○○시 평생학습원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료 노래교실의 운영과 관련, 노래강사가 잡담 등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 2시간으로 예정된 수업은 실제 40여분 밖에 실시되지 않았으며,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에 (강사와 친한 수강생이)강의실 문 앞에서 반강제적으로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시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수업에 대한 불만은 140여명의 수강생 중 1명에 의해 제기됐을 뿐이며, 수업시간을 잡담으로 보냈다가, 반강제로 돈을 걷어 강사에게 제공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취하 (사유 : PR보도)

조정신청 후 보도문

■ 경북매일 - 『노래로 행복 전하는 최○○ 씨 “인기짱이라 전해라~”』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6면)

■ 내 용

14일 오전 10시. 영하를 오가는 추운 날씨에도 ○○시 평생학습원의 한 강의실에서는 노랫소리로 열기가 가득했다. 흥겨운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어르신들은 절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150석이 정원인 강의실에는 계단을 의자 삼아 앉은 어르신까지 200여명이 모여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이렇듯 어르신들의 인기를 자랑하는 수업은 최○○(46·여) 강사가 맡고 있는 ‘신나는 노래교실’. 노래로 행복과 소통을 나누는 그는 지난 2014년 12월 ○○시로부터 표창패를 받는 등 지역에서는 유명인사다. 최 강사를 직접 만나 노래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 노래강사는 언제부터 하게 됐나.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께 (사)한국가창학회 가요전문지도강사자격증을 획득하면서 부터다. 원래 노래를 좋아한 것도 있었지만 십여년 전 친구 따라 노래교실을 구경간 것을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 우연찮게 임시교사를 맡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람찬 일이라 생각했다. 서른 셋의 나이에 노래교실 수업을 들었는데 같은 장소에서 딱 십 년 만에 강사로 서게 됐을 때의 감회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신다. 몸도 마음도 외롭다 보면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 많은데, 한 어르신이 직접 감사패를 제작해 주셨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 어르신은 심한 우울증을 겪으며 노년의 삶을 힘들게 지내 오셨던 분이셨는데 우연히 노래교실을 다니게 되면서 5개월간 빠짐없이 수업을 들으셨다. 이후 노래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해냈다고 감사하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순간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 앞으로의 계획은

△멋도 부리고, 마음도 움직이고, 어르신들을 가르치는 것이 천직인 것 같다. 수업내용을 알차게 구성해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수업을 하고 싶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마음을 터 놓을 수 있는 강의를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을 비롯해 웃음치료, 노인여가 등 관련 공부도 지속하고 있다. 스스로 열심히 배워나가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제2장 초상권 침해 사례

사례 18

신청인이 아기를 업고 워킹맘 엑스포에 참석한 것을 언론사가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754 손해청구
신 청 인	임○○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세계닷컴 (세계닷컴)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1. 23.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시간선택제 워킹맘들이 고과 불이익 등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워킹맘 엑스포에서 아이를 업고 구경하고 있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해 게재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사진 촬영 및 보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조정대상기사가 이후 포털 사이트(네이버)에 메인 기사로 뜨면서 약 2,000개가 넘는 욕설, 악성 댓글이 달리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일부 피해를 인정해 상징적인 금액으로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중재부가 손해배상금 1,500,000원 및 피신청인과 제후 관계에 있는 포털에 게재된 조정대상기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하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하여 결정이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세계닷컴 -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 내 용

세계일보

동료 눈치...고과 불이익...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기사입력 2015.01.08 오후 7:18

최종수정 2015.01.08 오후 9:19

2,124

가-

가+

걸도는 육아병행 지원책... "기업문화 개선 필요"



'워킹맘 엑스포'에 아이를 업고 온 여성이 채용부스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slay****

돼지처럼 줄줄이 소세지마냥 애만 퍼지르고 부장시켜달라할
기세네..

2015.01.09 오전 12:49 신고

답글 2

2

13

azum****

조현아 조현민 정도가 아니면 보통 서민 여자들은 다 저렇게 비
참하고 힘들게 사는거다 ㅠㅠ

2015.01.09 오전 12:49 신고

답글 0

10

1

winm****

남이 나를 배려해주면 감사한거지, 당연한게 아니지. 지들이 좋
아서 애새끼는 싸질러놓고 힘들다고 남보고 책임지라는게 말
이 되냐? 배려가 의무가 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나 통하는 말
이지, 당신들 임신과 출산에 눈꼽만치도 참여하지 않은 3자가
져야할 의무는 아니지

2015.01.09 오전 12:49 신고

clou****

워킹하지마세요. 세상은 잘돌아가구요! 자기삶을위한 남들의
희생이 사회적 배려라 생각지마세요. 그러면서 남편 늦는다가
정에 소홀하다 할말은 다하시자나요 내말이 틀린가요?

2015.01.08 오후 11:14 신고

답글 0

7

11

 g1135993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저렇게 한심한꼬라지로 살까?

2015.01.08 오후 11:14 신고 리트윗

답글 1

3

27

some****

애아빠는 다 뒤졌어?? 다 흠어미야?? 이러니 아빠들이 부모취급
도 못받는거야. 싸질러놓고 나몰라라 일만해??

2015.01.09 오전 12:12 신고

답글 0

6

1

bamb****

전세값이라도 안정시켜주면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보겠어...

2015.01.09 오전 12:12 신고

답글 0

4

0

john****

한나라의 우두머리들이 국가부채를 계속 늘리니 살기가 더 힘
들구나. 다들 쥐똥 닭똥 치우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01.09 오전 12:12 신고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값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5년 1월 8일자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촬영한 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보도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3. 피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제휴 관계에 있는 네이버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2015년 1월 8일자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기사, 하단의 네티즌 의견(댓글)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어 검색되지 않도록 해당 포털사에 요청한다.
4.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세계닷컴의 DB에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에 게재된 신청인의 사진을 영구히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2. 2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500,000원 지급

사례 19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과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803·2804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동○○ 외 1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중 재 부	서울제5중재부
접 수 일	2015. 04.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20대 여성들의 남성 기준”에 관한 주제 영상을 방송하면서, 일반인 출연자인 신청인들이 남성의 조건으로 ‘외제차’, ‘연봉 5천만원’ 등을 언급하는 장면이 신청인들의 실제 의견인 것처럼 보도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들은 해당 발언은 제작진의 요구에 따른 설정된 상황임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실제 상황인 것처럼 방송되어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5,000,000원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항의를 받은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한 점, 두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한 점, 또한 방송 이후 신청인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던 점 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대신 정정보도를 게재하는 수준에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신청인이 피해를 호소하는 게시물 및 댓글이 게시된 URL을 알려올 경우 피신청인이 즉각 게시자에게 삭제 요청할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N -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15년 5월 2일자)

■ 내 용



▶ 신청인 : 하루에 놀면, 정말 제대로 놀면 20만원 정도 들어, 나는 남자 친구랑 있으면 아끼는 편은 아니야.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러면 서로 막쓰니까는 돈이 장난이 아니니까는, 기념일이나 뭐 많으니까. 오히려 나는 괜찮은데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남자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이었으면 좋겠고, 연봉도 그렇고.

▶ 다른 친구 1인 : 남자 친구가 얼마 벌었으면 좋겠다고? (웃음)

▶ 신청인 : 나 하나도 몰라 그런 거, 남자친구가 얼마를 버는지 하나도 모르고, 나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들어서기 시작할 즈음이어서. 근데 남자 친구랑 그런 얘기는 했었어. ‘한 달에 얼마를 벌었으면 좋겠냐고’

▶ 다른 친구 1인 : 언니한테 물어봤어

▶ 신청인 : 어, 결혼을 한다, 가정을 하고 한 달에 얼마쯤 벌면 괜찮을 것 같아 이랬는데, 근데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한 달에 400~500’ 이랬어.(웃음)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보도문

가. 제목 :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나.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2월 21일 1회 방송에서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과 관련하여 세 명의 여성이 “연봉 5천만원 이상”, “외제차” 등을 언급하는 주제VCR을 방송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작진의 연출에 따라 재연된 화면으로,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발언은 출연자들의 가치관과 일절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방송 관련 영상(사진)을 보관하고 계신 시청자들께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보도문을 피신청인이 방송하는 〈언니들의 선택〉 2015년 5월 2일자 방송에서 프로그램 시작 후 15분 이내에 시청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스크롤 자막으로 표시하되,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보도한다. 또한 해당 일자 프로그램 중영 5분 안에 제1항의 보도문을 상자기사로 보도하되, 통상적인 자막 활자 크기와 동일한 활자 크기로 보도한다.

3. 피신청인은 2015년 7월 31일까지 신청인들이 삭제를 원하는 URL을 제시할 경우 즉각 게시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이후 신청인들 관련 URL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삭제에 최대한 협조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제작사(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일자)

■ 내 용

〈조정성립사항 참조〉

사례 20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사고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006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SBS-TV)
중 재 부	서울제3중재부
접 수 일	2015. 06. 0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시청자들이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는 조정대상보도에서 신청인이 주차한 차량이 저절로 도랑으로 빠지는 장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 영상이 게재된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청인을 ‘김여사’ 등으로 조롱한 댓글이 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 받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방송제작 과정의 실수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의사가 있음을 확인,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에게 권유했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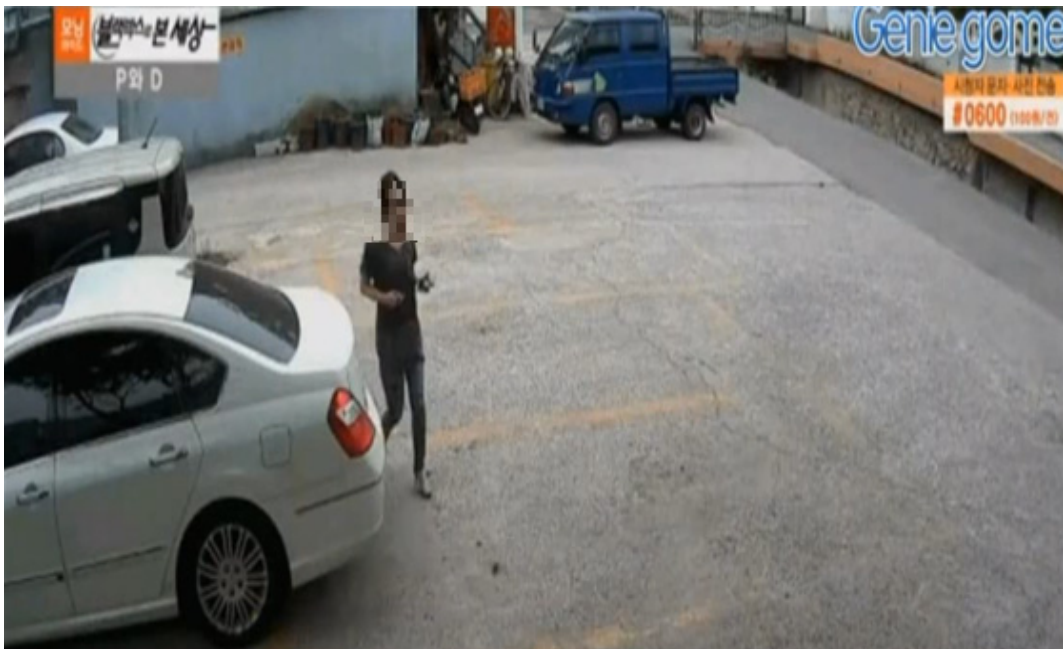
- SBS-TV - SBS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7일자)

■ 내 용

▷ 진행자 : 한 식당 앞에서 만난 제보자, 주차장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데요.

▷ 제보자 : 황당한 사고가 생겨서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주차장에 차를 댄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차가 서서히 후진을 하죠. 분명히 차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 불안한데요. 어디까지 가는 건가요. 멈출 줄 모르는데요. 아... 저 밑에는 더 이상 안되는데요. 아... 결국은 떨어지고 맙니다. 차가 떨어진 곳은 도랑이였는데요. 어이구... 한눈에 봐도 도랑이 깊어 보이네요.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년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기사와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1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례 21

박원순 시장의 가든파이프 방문 당시 항의하던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065 손해청구
신	청	인
신	청	인
신	청	인
피	신	청
인		주식회사 채널에이 (채널A)
중	재	부
부		서울제1중재부
접	수	일
일		2015. 06.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에서 서울시장의 시정 활동에 대해 보도하면서 시장에게 항의하는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공적 주제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후 모자이크 및 음성변조 처리 없이 방송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조정대상보도로 인해 악성댓글이 달리고 다른 인터넷 게시판으로 전파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3,000,000원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의 초상이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고,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보도물로 인하여 확대된 신청인의 고통을 감안해 조정대상보도를 삭제하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9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자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채널A - 채널 A 종합뉴스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프 방문... 상인들 “쇼하냐” 항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외 2건

■ 내 용

▷ 앵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박 시장의 심야 브리핑으로 동선이 공개된 35번째 메르스 환자인 의사가 식사를 했던 건물이죠. 박 시장은 당초 이 의사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려다 긴급히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5번째 메르스 환자인 30대 남성 의사가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던 가든파이프. 지난 4일 밤 박원순 시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손님이 크게 줄어든 자 박 시장이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박 시장의 브리핑으로 매출이 반토막 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요 며칠 사이에 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박 시장에게 힘내라며 격려하는 시민들도 있었지만 거세게 항의는 상인도 있었습니다.

▷ 가든파이프 상인 : “시장님이 경솔한 행동을 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다고 고객들이 여기 다시 오겠어요. 일종의 쇼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방문 도중 박 시장의 일정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애초 공개한 박 시장의 일정에는 35번 환자가 다녀간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의 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방문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급히 계획된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결국 소란 끝에 박 시장은 해당 식당에 3분 정도 들러 업주와 간단한 인사만 나눴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여러 가지로 힘드셨겠어요. 아무튼 뭐 장사 잘 하시구요. 잘 극복을 해야죠. 그렇죠.” “아휴 얘기가 다 끝난건가요.”

▷ 기자 : 박 시장은 이번 주말과 다음주 초가 최대 고비라며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황○○입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7월 3일(금)까지 9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다른 인터넷 게시공간(유튜브 및 풀빵닷컴 등)에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동영상이 게재된 경우, 신청인은 2015년 7월 3일(금)까지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피신청인은 해당 게시공간 관리자에게 위 동영상이 게시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할 경우,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6.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900,000원 지급

사례 22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587~3590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인터넷 MBN) 2. 네이버 주식회사 (네이버) 3. 주식회사 다음카카오 (다음)
중	재	부	서울제8중재부	
접	수	일	2015. 09. 21.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등)

사건개요

- 피신청인 방송사는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하고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하였고, 포털들은 해당 기사를 제공받아 업로드함과 동시에 검색화면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정지화면으로 게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건과 무관한 자신을 무단으로 촬영 후 보도하였거나 포털의 검색결과에 본인의 사진 및 동영상은 노출시켜 자신이 해당 사건의 가족으로 오인받는 등 심적인 고통이 크다며 손해배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언론사가 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조정대상보도에 나온 아파트 외관과 신청인의 가방·옷차림을 본 아파트 주민이라면 신청인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손해배상금 700,000원 및 포털의 검색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MBN - 뉴스8 프로그램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4일자, 인터넷 MBN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 앵커 :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따르는 게 미웠다는데, 이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 사는 38살 황모 씨는 5살 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청테이프로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욕조에 미리 물을 채워 놓았던 황 씨는 아들을 욕조에 앉힌 채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 넣어 살해했습니다.



▷ (인터뷰) 이웃 주민 : “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인사해도 잘 받지도 않고, 저희 남편한테 아저씨 담배 있냐고 항상 물어보고...”

▷ 기자 : 황 씨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숨진 아들의 옷을 갈아입힌 뒤 방바닥에 눕혀 자고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두 시간 뒤, 집에 돌아온 딸은 동생의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이 사실을 전화로 아빠에게 알렸고 집에 돌아온 황 씨의 남편이 119에 신고했습니다.

▷ (인터뷰) 경기 남양주경찰서 ○○과장 :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고,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기를 덜 좋아하는 것을 계기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 기자 :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잠을 자다 숨졌다고 말했지만 수사가 계속되자 욕조에서 혼자 놀다가 물에 빠져 숨졌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에 황 씨는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 기자 : 경찰은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황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뉴스 김○○입니다.

조정대상보도 2

- 네이버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NAVER 뉴스
인쇄하기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MBN | 기사입력 2015-09-14 20:22

NAVER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검색

통합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iN 이미지 동영상 어학사전 뉴스 더보기

정렬 보기 방식 유형 기간 채널 시간 출처 옵션유지 편집 편집 삭제결과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에 대한 검색결과 중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가 정확하게 일치한 상세검색 결과입니다. 일반검색 결과보기

동영상 1 / 1건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앵커멘트】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버지만...
2월 전 네이버 뉴스

조정대상보도 3

- 다음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 내 용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MBN | 입력 2015.09.14. 19:32 | 수정 2015.09.14. 20:42

댓글 0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앵커멘트】

5살 된 자신의 친아들을 욕조물 속에 넣어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들이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 아빠만 따르게 미웠다는데, 이 엄마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10일 오후 이곳에 사는 38살 황 모 씨는 5

살 된 아들을 데리러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집에 돌아온 황 씨는 갑자기 정테이프로 아들의 손을 묶고 입을 막은 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상세검색

통합검색

이미지

동영상

뉴스

블로그

카페

트위터

웹문서

동영상 전경도 확인



▷ 바로보기



▷ 바로보기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2015.09.15
출처: MBC뉴스 / AP통신 내 검색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2015.09.14
출처: MBC뉴스 / AP통신 내 검색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하라.

사건처리결과

각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보도한 점에 대해 신청인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2.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신청인에게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7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MBN 홈페이지(www.mbn.co.kr)에 게재된 이 사건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이 노출된 장면을 DB에서 영구히 삭제하여 더 이상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재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피신청인 (주)매일방송은 2015년 10월 16일(금)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URL을 전달받아, 피신청인 (주)매일방송과 계약관계에 있는 각 포털사에서 해당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도록 각 포털사에 요청한다.
4. 피신청인 네이버(주) 및 (주)카카오는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 중 신청인의 초상이 노출된 장면이 네이버 및 다음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향후 피신청인 네이버(주) 및 (주)카카오는 신청인의 이 사건 초상이 노출된 게시물의 URL에 대해 신청인의 신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이 사건 각 조정대상기사에 대해 피신청인들과 소속 임직원에게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02.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 MBN

손해배상금 700,000원 지급

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



제3장 음성권 침해 사례

사례 23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부산조정26, 27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이○○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케이엔엔 (KNN) 2. 주식회사 아이케이엔엔 (iKNN)
중	재	부	부산중재부	
접	수	일	2015. 03. 31.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삭제)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목소리를 동의 없이 녹음하고, 음성변조 없이 방영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승부조작 의혹을 제보한 자신을 항의 고객이라 표현하면서 기자와 통화한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에게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피신청인 측이 심리 전 기사를 삭제하고 신청인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이 조정 신청을 취하하였다.

조정대상보도

- KNN - 뉴스아이 프로그램 『유력 우승마의 부진, 승부조작 논란으로』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0일자, iKNN 3월 30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 내 용 -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취하 (기사 삭제)

사례 24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 음성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237, 2238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주식회사 제이티비씨 (JTBC) 2. 드라마하우스앤드제이콘텐츠허브(주) (인터넷 JTBC)
중 재 부	서울제6중재부
접 수 일	2015. 02. 13.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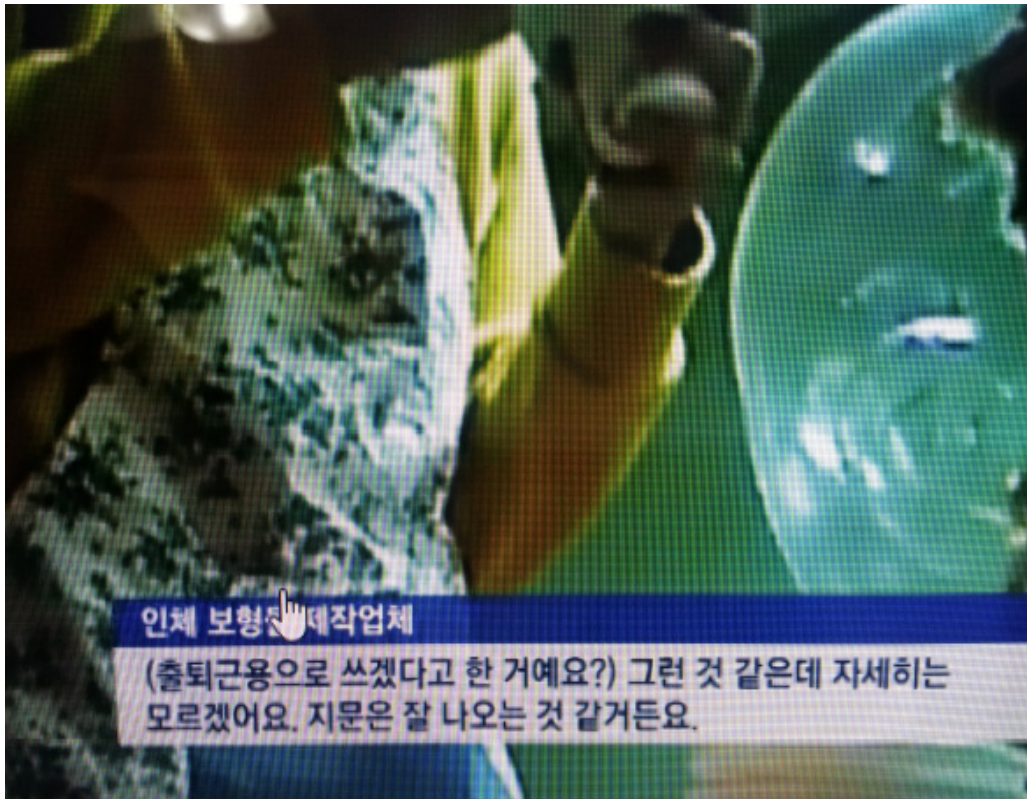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보도에서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시간을 등록하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보도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공무원들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제작하는 것 같은 뉘앙스로 보도되었을 뿐 만 아니라 보도 내용에 부합하도록 신청인이 했던 말의 순서를 임의로 바꿔 편집하였고, 불완전한 음성 변조로 인해 신청인이 누군지 주변에서 알 수 있을 정도라고 주장하며 각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청구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가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게 처리했어야 하며 피신청인은 음성이 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자,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JTBC - 저녁 9시뉴스, 오전 8시뉴스 프로그램 『제조에 25만원 ‘가짜 실리콘 손가락’ 직접 만들어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 및 12일,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저녁 9시뉴스>, 2월 12일 <오전 8시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

■ 내 용

- ▷ 앵커 :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 실리콘 손가락을 직접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지문인식기에 입력이 가능했습니다.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체에서는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 ▷ 기자 : 의료용 인체 보형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문 복제가 가능하냐고 묻자 여러 번 해봤다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 ▷ 인체 보형물 제조업체 : (출퇴근용으로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문은 잘 나오는 것 같거든요.

▷ 기자 : 가짜 손가락 제작에 드는 돈은 25만원. 실제 사람이 등록한 지문을 가짜 손가락이 대체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이 지문인식기에 등록한 저희 취재진의 손가락입니다.

[지문을 입력하여주십시오. 인증되었습니다.]

▷ 기자 : 굳게 닫혔던 문이 간단히 열립니다.

물론 지문인식기 중에 실리콘을 아예 못 읽는 것도 있습니다.

18만원에서 80만원대까지 가격도 성능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30만원대 이하 중저가 제품입니다.

▷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 (보통 공공기관에서 어떤 걸 사가요?) 보통 30만~40만원대에서 선택하는데... 오인식이 가능합니다.

▷ 기자 : 실리콘도요?

▷ 지문인식기 제조업체 : 네

▷ 기자 : ‘가짜 손가락’을 쓰는 공무원 수는 은밀하게 늘고 있습니다.

(중략)

▷ 기자 : 일부 공무원들의 이기심에 세금은 눈먼 돈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한은 2015년 4월 10일로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들은 2015년 4월 1일 10:00부터 인터넷 JTBC의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정대상방송 내용 중 신청인이 포함된 화면을 삭제한다.
4. 피신청인들이 위 3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각 1일 10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이 사건의 조정대상 기사를 게재한 행위에 대해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3. 2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제4장 사생활 침해 사례

사례 25

경비원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이 동의 없이 공개되어 신청인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3463, 3464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KBS-1TV) 2. 케이비에스미디어(주) (KBS 미디어)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5. 08. 28.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해배상 등 - 동의)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외국인들의 한국 적응기에 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에게 제작진이 촬영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 후속 촬영이 1~2분 간 계속되었음에도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고, 외국인들의 숙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의 초상을 공개했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촬영 당시 소형 카메라로 본인을 찍고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방송에 나갈 것으로 인지하지 못했고, 방송사의 사전 예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위에 알리지 않고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로 인해 지인들에게 근무 사실이 드러나 곤란을 겪고 있다며 1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신청인으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고, 신청인이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 침해 또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3,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다. 이후 양 당사자가 동의해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

조정대상보도

■ KBS-1TV -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2015년 8월 25일자, KBS 미디어 8월 25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주 문**

1. 피신청인들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연대하여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의 KBS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및 VOD 서비스에서 신청인과 관련된 영상을 삭제하여 검색되지 않도록 하며, 향후 해당 화면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한다.
3.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들은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피신청인들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9. 0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신청인·피신청인 동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3,000,000원 지급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제5장 재산상 손해 사례

사례 26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없다고 보도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574·2575 정정·손배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한국방송공사 (KBS-2TV)
중 재 부	서울제7중재부
접 수 일	2015. 03. 19.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조정대상기사에서 대학가 주변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최저임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보도하면서, 대학가의 몇몇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문을 자료 화면으로 방송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한 곳도 없다는 해당 보도의 멘트 전후로 신청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며 1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피신청인이 제작진의 단순 실수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8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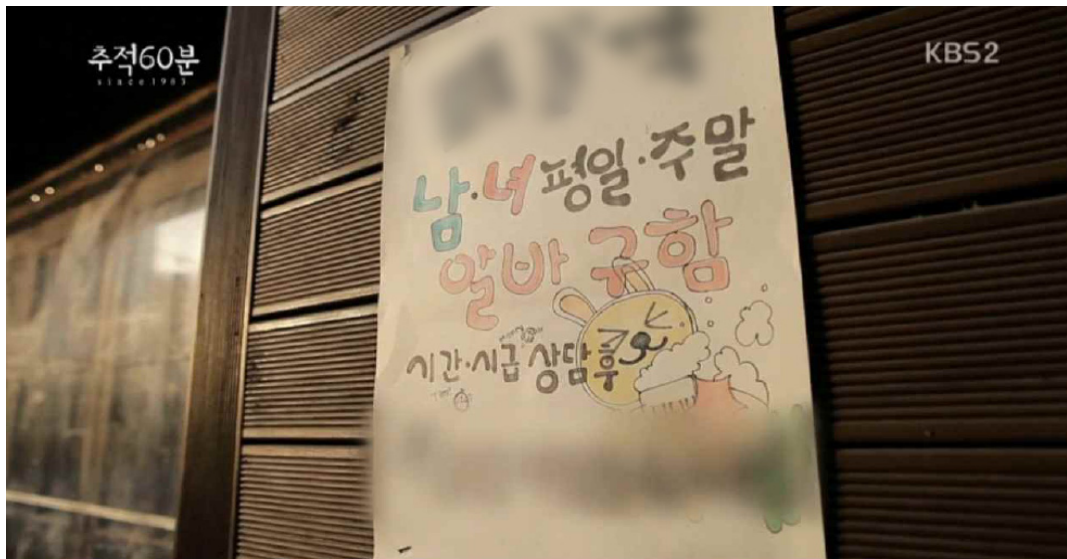
조정대상보도

- KBS-2TV - 〈추적 60분〉 프로그램 『당신의 열정을 혈값에 삽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 내 용

▷ 진행자

2015년 올해 법정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그런데 취재를 하다가 우리가 만난 청년들은 이 최저시급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시급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 대학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주변 곳곳에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붙어 있습니다.



▷ 진행자

최저시급 5,580원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 (2~3곳에 임금 문의하고 시급이 5,000원이라고 답변하는 장면)

▷ 진행자

최저시급을 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4. 30.까지 신청인에게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은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위 1항의 금액을 연 20%의 비율로 일할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1항을 이행한 경우, 본 건과 관련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고 피신청인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14.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800,000원 지급

사례 27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경남조정17, 18 각 손해청구		
신	청	인	김○○	
피	신	청	인	1. 한국방송공사 (KBS-1TV), 2. 케이비에스미디어(주) (KBS미디어), 3. 주식회사 매일방송 (MBN, 인터넷 MBN), 4. (주)조선방송 (TV조선, 인터넷 TV조선), 5. 주식회사 케이엔엔 (KNN, iKNN)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부산중재부, 경남중재부	
접	수	일	2015. 04. 03. (2015서울조정2671~2676, 2015부산조정28, 29) 2015. 04. 23. (2015경남조정17, 1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 : 손해배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MBN, 인터넷 MBN : 손해배상 - 피신청인 이의신청) 취하 (KBS-1TV, KBS 미디어)

사건개요

- 피신청인들은 조정대상기사에서 캄보디아 폭력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노출하여 방송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손님들이 해당 보도 이후 식당에 오지 않아, 영업 손실을 입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신청인별 각 5,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TV조선(및 인터넷 TV조선)과 KNN(및 iKNN)은 각각 손해배상 2,000,000원과 손해배상 2,000,000원 및 기사삭제로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또한 중재부는 MBN 및 인터넷 MBN에 대해서 해당 보도는 피신청인 측의 과실이 인정되고, 보도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 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피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KBS-1TV의 동일한 보도에 대해 서울중재부에서는 심리 전 취하가 되었고, 경남중재부에서는 조정불성립결정이 되었다.

조정대상보도 1

- KBS-1TV - 〈KBS 뉴스7〉, 〈KBS 뉴스9〉, 〈KBS 뉴스라인〉 프로그램 (2015년 4월 3일자, KBS 미디어 4월 3일자 다시보기면)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20여 명 중경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조정대상보도 2

- MBN - 뉴스 8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수십 명 패싸움... '정글도'까지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MBN 뉴스 다시보기면)

■ 내 용

- ▷ 앵커 : 도심의 한 식당에서 캄보디아인 수십 명이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흥기와 각목까지 등장했지만, 경찰은 단순 폭력 사고로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였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 기자 : 경남 김해의 한 외국인 식당. 계산대 근처에서 캄보디아인끼리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식당 안은 수십 명이 엉겨붙었고, 의자와 술병으로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내리칩니다.
싸움이 고조되자 이번에는 정글도를 잡고 상대를 위협합니다.
부산과 경남 김해지역에 거주하던 캄보디아인 20여 명이 패싸움을 벌인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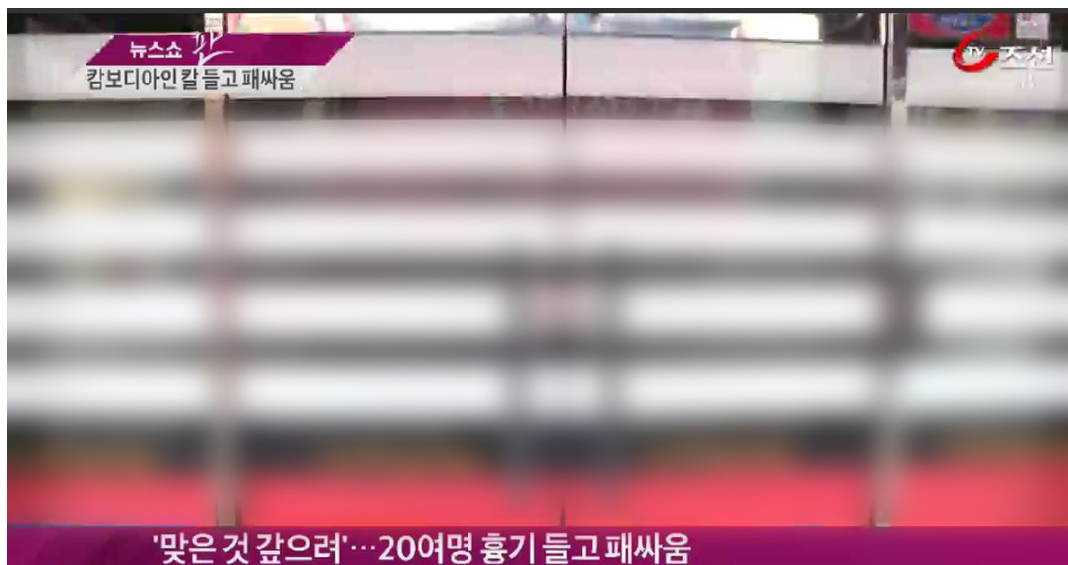


- ▷ 기자 : “주점 안에서 시작된 캄보디아인들끼리의 집단 패싸움은, 이곳 거리까지 나와서도 이어졌습니다.”
- ▷ 목격자 : “피를 흘리면서 전부 도망갔지. 피가 여기까지 흘렸어. 이게 전부 다 핏자국이야.”
- ▷ 기자 : 부산에 사는 캄보디아인이 김해에서 폭행을 당하자 보복성 원정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은 11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7명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단순 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 ▷ 인터뷰 (경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 “아직 행동강령이 있다든지 조직성을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술과 밥을 먹으러 갔다가 우연히 식당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서...”
- ▷ MBN 뉴스 강○○입니다.

조정대상보도 3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칼 들고 패싸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1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전략)



조정대상보도4

- KNN - 뉴스아이 프로그램 『파리 트는 외국인 조폭세력, 경찰대응은 제자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iKNN 2월 12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각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2015서울조정2675, 2676, 2015부산조정28, 2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서울조정2673, 2674)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17, 18)

취하 (2015서울조정2671, 2672 사유: 관할변경)

조정성립사항-TV조선, 인터넷 TV조선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조선방송은 2015년 5월 1일까지 신청인 식당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보도를 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제1항의 이행을 지체할 경우,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1일 5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5년 4월 22일까지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을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5. 피신청인이 위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15.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서-MBN·인터넷 MBN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04. 15.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후 경과

피신청인 이의신청

조정성립사항-KNN, iKNN

1.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2015년 4월 29일까지 총 금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들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들이 위 제1항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들 및 피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5. 04. 21.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2,000,000원 지급

제6장 기타 사례



제6장 기타 사례

사례 28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동과 호수 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경기조정145, 146 각 손배청구
신 청 인	박○○
피 신 청 인	오비에스 경인티브이(주) (OBS경인TV, 인터넷 OBS경인TV)
중 재 부	경기중재부
접 수 일	2015. 10. 15.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인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소유 오피스텔의 명칭과 호수 등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화면에 노출하였다.
- 이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보도로 인하여 오피스텔 임대가 되지 않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20,0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 심리 결과, 중재부는 피신청인이 1차 심리 이후 문제된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하였고, 삭제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권유하였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OBS경인TV - 뉴스 M 프로그램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 경찰 5명 주의·경고』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2일자, 인터넷 OBS경인TV 10월 12일자 다시보기면)

■ 내 용 - 〈전략〉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경찰 5명 주의·경고

2015년 10월 12일 (월) 20:38:13

박성완 ✉ bowings@obs.co.kr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4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조정대상보도는 다음의 각 프로그램(인터넷 OBS-TV 동일 프로그램을 포함한다)보도로 한다.
 - 2015. 10. 1.자 ‘뉴스M 경기-인천/뉴스라인 인천-경기’
 - 2015. 10. 2.자 ‘뉴스 740’
 - 2015. 10. 12.자 ‘뉴스M 경기-인천’
2. 피신청인은 2015년 11월 2일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은 제2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이 제 2항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본 보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및 소속 임직원, 담당 기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소사건 또는 소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묻지 아니한다.

2015. 10. 29.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사례 29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이 친권자 동의 없이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돼 피해를 입었다.

사 건	2015서울조정4071 손해청구
신 청 인	오○○ 외 2인
피 신 청 인	(주)문화방송 (MBC-TV)
중 재 부	서울제2중재부
접 수 일	2015. 12. 08.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손해배상)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일일드라마에서 세쌍둥이인 신청인들의 백일 사진을 얼굴 부분은 출연자들의 얼굴로 합성한 후, 친권자의 동의 없이 수차례 방송하였다.
- 이에 신청인들은 비록 세쌍둥이의 사진 중 얼굴 부분은 합성되어 있지만 세쌍둥이 사진은 희소성이 있어 주변에서 신청인들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또한 세쌍둥이 사진을 바닥에 내팽개치는 장면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신청인은 조정신청 후 사진의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으나, 해당 사진에는 신청인들의 붉은 색 옷과 다리 및 발의 일부분만이 노출되어 신청인들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신청인들임을 식별할 신체적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심리 결과, 중재부는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신체 부분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있지만, 문제가 된 사진은 얼굴을 제외한 나머지 신체만으로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측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는 수준에서 조정을 권유했고,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대상보도

■ MBC-TV - 『위대한 조강지처』 프로그램 (2015년 11월 2일자)

■ 내 용 - 〈전략〉



조정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오○○ 외 2인에게 각 5,000,000원씩 총 15,000,000을 지급한다.

사건처리결과

조정성립

조정성립사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2016년 1월 15일까지 금 1,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한다.
2. 피신청인이 위 내용과 동일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신청인이 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피신청인이 위 내용을 이행한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조정대상보도와 관련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피신청인 및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2016. 01. 06.

조정성립사항 이행결과

손해배상금 1,000,000원 지급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제 4 부

주요 시정권고 사례

제1장 사생활 침해



제1장 사생활 침해

사례 1

의결번호	제2015-12호
매 체 명	e머니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월 17일자 국제면
기사제목	美 필라델피아서 한인 추정 대학 신입생 추락사

1. 보도내용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 김 양(18)이 15일(현지시간) 시내 중심가의 건물 8층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략) 김 씨는 뉴저지에서 자랐으며 지난해 6월 필라델피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필라델피아 ○○대학 ○○○○대에 입학한 신입생이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망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공익과 무관한 사인의 사생활, 성명과 나이, 학력사항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

의결번호	제2015-72호
매 체 명	경남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11일자 사람16면
기사제목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1. 보도내용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긴급 이송」 제하의 사진
 「(전략) 이날 욕지도 ○○○도 거주 박모(79) 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배우자 한모 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이송되고 있는 응급환자의 초상을 모자이크 없이 게재하면서 성과 나이 등을 공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통영해경, 섬마을 70대 응급환자 이송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10일 오전 10시 35분께 통영시 욕지면 상노대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신속히 이송했다.

이날 욕지도 ~~상노대도~~ 거주 박모(79)씨는 하반신 마비증상과 팔 저림 증상이 심해져 배우자 한모씨가 119로 신고해 통영해경상황센터로 접수됐다. 신고를 접한 통영해경은 주변해역을 경비중이던 50t급 경비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함정내 설치된 원격응급의료시스템 이용해 부산대학병원과 실시간 환자상태를 확인하며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사례 3

의결번호	제2015-191호
매 체 명	더팩트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2일자 경제면
기사제목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1. 보도내용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병실에 누워있는 특정 기업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여 공표하였다. 비록 그가 공인이라 할지라도 외부접근이 차단된 병실에서 투병하는 모습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의 여지가 크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TF특종-이건희 회장 병상 투혼 포착①] '자발 호흡' 최초 확인, 사망설은 '헛소문'

입력: 2015.06.02 10:00 / 수정: 2015.06.02 10:48



'글로벌 삼성'의 총수 이건의 삼성전자 회장이 '자발 호흡'을 하면서 건재한 신체 상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이 회장이 입원 1년 여 만인 지난달 22일 일행들 삼성서울병원에서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카메라에 처음으로 잡혔다. /이호균 기자

글로벌 삼성의 총수 이건의(73) 삼성전자 회장이 '자발 호흡'을 하면서 건재한 신체 상태로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모습이 이 회장 투병 생활 1년여 만에 처음으로 확인됐다. 신개념 대중종합지 <더팩트>는 최근 이건의 회장이 평온한 상태에서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과 그룹 수뇌부들이 업무 보고를 하는 장면 등을 단독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더팩트>는 이 회장 건강 상태를 둘러싼 세간의 억측이나 악성 루머 등이 삼성은 물론 나라 경제 차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비정상적 현상이라고 판단, <더팩트> 카메라에 잡힌 이 회장의 근황을 보도한다.<편집자 주>

'사망설'은 헛소문에 불과했다. 지난 1년 여 동안 삼성 이건의 회장의 건강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과정이 진척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10일 급성 심근 경색을 일으킨 이건의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증언가 지라시(정보지)와 일부 매체에 의해 '사망설'의 대상으로 거론돼 파장을 낳았으나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달 22일 확인한 결과, 인공호흡기나 외부 의료 장치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비교적 건재한 모습으로 병상에서 휴식 및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삼성그룹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 고위 관계자들이 일상적으로 병실의 이 회장을 찾아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도 확인됐으며, 병상에서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경기를 시청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카메라 렌즈를 통해 확인됐다. 이건의 회장이 삼성 이승엽의 훈련에 반응을 보였다는 삼성 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정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으나 이로써 사실에 무게를 둘 수 있게 됐다. 삼성 측 한 관계자는 이 회장 시선에 따라 TV 위치를 이동 조절한다고 밝혔다.

사례 4

의결번호	제2015-222호
매 체 명	매일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16일자 종합1면
기사제목	○○청 공무원 1차 양성…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1. 보도내용

「○○청 공무원 1차 양성… 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제하의 도표 및 보도

2. 권고사항

언론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그 밖의 인격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의 성, 나이, 근무지, 담당 업무 외에 가족들의 직업 및 나이 등을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하여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17조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청 공무원 1차 양성...결국 대구도 메르스 뚫리나

삼성서울병원 들렀다 감염
같이 올라간 누나는 확진 판정
주민센터 사회복지요원 근무
'슈퍼 전파자' 나올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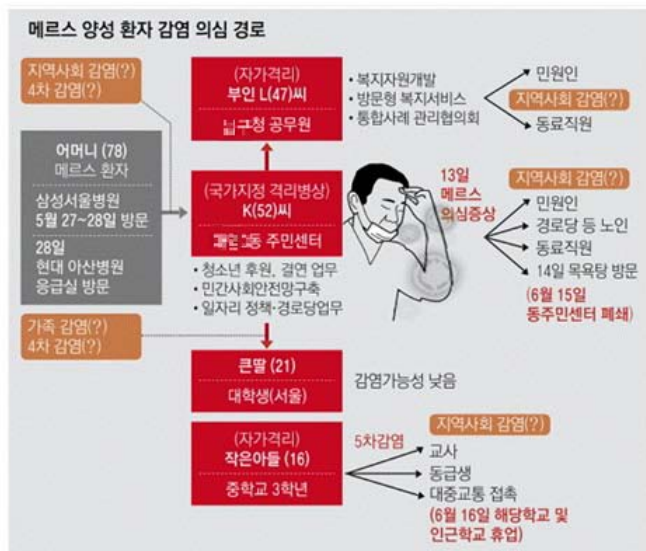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청정지역이
있던 대구도 뚫렸다. 그동안 대구는 메르
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없었지만
15일 첫 양성 판정 환자가 나온 것이다.

○2·3·4면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 청 공무원
인 K(52) 씨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메
르스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대구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K
씨의 가검물을 질병관리본부로 보내 2차
검사를 통해 확진을 위한 최종 확인 작업
에 들어갔다. K씨가 2차 검사에서도 양
성 판정을 받을 경우, 대구에서는 처음
으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게 된다.

K씨는 ▶▶▶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
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K씨는
지난달 27, 28일 어머니(78)와 함께 삼
성서울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하루 동안
이곳에서 머물렀고 이튿날 대구로 돌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K씨의 어머니는
최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K씨는 삼성서울병원 방문 이후 보름
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 등 평소대로
생활했으며 지난 13일 오후와 고열 등
의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주말·
휴일을 집에서 버틴 뒤 15일 연가를 내
고 집에 머물다 이날 오후에야 ▶▶▶ 구
보건소에 연락, 메르스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문의했다. 결국 그는 15일 오후
3시 30분쯤 대구의료원을 방문해 격리



조치됐다.

K씨는 1차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
정을 보였고, 현재 발열 등 상태는 경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의 확
진 결과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K씨와
함께 응급실을 찾은 누나(57·대전)도 확
진 판정을 받았다. 부인과 자녀 등 가족
들은 대구시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
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씨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하며 다
양한 사람들을 만났다는 점에서 대량 감
염에 대한 우려를 부르고 있다. K씨는
동 주민센터에서 청소년 후원·결연업무
와 민간사회안전망 구축, 일자리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면역력이 약한 노
인들과 자주 접촉하는 자리였다.

K씨는 또 직원들과 회식을 갖는 등 여
러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으
로 확인돼 메르스 확산 여부에 촉각이 곤
두서고 있다. 또한 K씨의 아내와 자녀
등에도 메르스가 전파됐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K씨 부인 L(47) 씨는 공무원
으로 ▶▶▶ 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시작된 병원 내
감염이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불리던 대
구경북 등도 감염시키면서 메르스 감염
사태는 건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추세
다. 특히 대구의 K씨나 경북의 확진 환
자인 교사 Y씨 등은 다수와 접촉하는 공
무원·교사여서 대구경북에서도 '슈퍼 전
파자'가 나올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제2장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제2장 피의자·피고인 신원공개

사례 5

의결번호	제2015-4호
매 체 명	인터넷 시사주간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월 3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클리닉 성형외과 김○○ 원장, ‘과실치사 혐의’ 입건

1. 보도내용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복부지방 흡입 수술을 하다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 ○○○○○○빌딩 3, 5층에 소재한 ○○○○클리닉 성형외과 (<http://www.○○○○○.net/○○○○○> 의원) 원장 김○○(51)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였으며 병원의 상호, 명칭, 홈페이지 등을 상세히 공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6

의결번호	제2015-224호
매 체 명	경찰투데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7월 8일자 경찰뉴스면
기사제목	편의점 강취 특수강도범 검거

1. 보도내용

「(전략) 부산 영도경찰서 ○○파출소는 8일 새벽 3시10분경 부산 영도구 ○○동 ○○○○ 편의점에서 홍모 군(18세/남)등 2명 중 1명은 문 앞에서 망을 보고 2명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 등 101만원 상당을 강취한 혐의로 홍모 군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중략)

도주하던 홍○○이 8층 건물 ○○엔지니어링으로 들어가면서 출입문 시정장치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경위 김○○과 순경 심○○이 현장에서 목격했다.(중략)

피혐의자 홍○○에게 ‘빨리 내려오라 별 일도 아닌데 빨리 내려와’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하고(중략) 피혐의자 홍○○은 8층에서 계속 바라만 보았고 경위 김○○이 피혐의자에게 지속적으로 ‘큰 일 아니니 빨리 내려와라’ 설득하였고, 형사 당직차량 도착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피혐의자 홍○○에게 경위 김○○이 미란다 원칙 등 고지하고 검거하게 됐다.」

2. 권고사항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혐의자, 용의자 포함. 이하 같다) 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위배하여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를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언론이 범죄 혐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3장 범죄수법 묘사



제3장 범죄수법 묘사

사례 7

의결번호	제2015-5호
매 체 명	뉴스타운
보도일시 및 위치	2014년 12월 1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 “○○○○ 만드는 법”... ‘이렇게 간단할 수가!’

1. 보도내용

「(전략) ○○○○는 ○○○○과 ○○의 연소 원리를 이용해 만드는 고체 화약의 일종을 뜻한다.

○○○○○는 ○○○○과 ○○, 전자저울, 종이컵, ○○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

○○○○○ ○○g에 ○○ ○○g을 넣고 ○○을 ○○~○○g 넣어준 뒤 끓이면 된다. 이때 타지 않게 저어서 물렁한 고체 상태가 될 때까지 가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합물에 ○○이 생겨나면 빨리 젓거나 불에서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굳기 전 ○○ 형태로 만들면 끝난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사제폭발물인 ○○○○의 재료 및 제조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8

의결번호	제2015-75호
매 체 명	주간동아
보도일시 및 위치	제981호(4/1~4/7) 사회면
기사제목	신용카드 위조 1분이면 똑딱

1. 보도내용

「(전략) ○○○를 개인용 컴퓨터와 연결하고 데이터 ○○○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준비는 거의 끝난 셈이다. 이제 신용카드 개인정보와 이를 덮어씌울 실물 ○○만 있으면 1분도 안 걸려 카드를 위조할 수 있다. (중략)」

그렇다면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 이 역시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온라인에 올라온 ○○○ 판매 글은 대부분 e메일 주소가 달랐지만 인터넷 전화 ○○○○나 통합 커뮤니케이터 ○○○○ 아이디(ID)가 같은 것으로 봐서 동일인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이나 중국 메신저 ○○ 사용을 선호했다. 이렇게 수집한 e메일 주소로 구매를 의뢰하자 한 명으로부터 답이 왔다. ○○○는 사용법을 포함해 30만원, 명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 정보가 포함된 신용카드 개인정보는 건당 2만원씩 25건 단위로 묶음 판매한다는 것.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용카드를 위조하는 범죄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9

의결번호	제2015-409
매 체 명	일요신문
보도일시 및 위치	1228호 2015년 11월 2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딥 웹으로 통하는 ‘○’ ‘○○’ 브라우저의 세계

1. 보도내용

「(전략) 어린이 음란물을 뜻하는 ‘○○·○○’ 페이지들의 링크가 수십 개 걸려 있었고 마약, 폭발물, 총기 거래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주의 사항으로 “(○○를 이용하면) 표면 웹 로그인을 자제해야 한다. IP주소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특이하게 보여 관리자의 주목을 받는다” 또는 ‘합정 피하는 법’이라는 설명을 곁들여,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과 이를 우회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적어 놓기도 했다. (중략)

하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막히지 않은 사이트’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검색창에 ‘○○’ ‘○○’ ‘○○’ 등 키워드를 차례로 입력하니 16자리 영어와 숫자로 이뤄진 사이트 목록이 나왔다. 가장 위에 검색된 사이트 몇 군데를 들어가 보니, 경고 없이 아동의 특정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된 사진들이 화면에 나타났다. (중략)

이번엔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 ‘○’ ‘○○○’ 등을 입력해 한국어 마약 거래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중략)

다만 특이한 점은 돈을 지불하는 것은 ○○○○ 등에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 화폐인 ‘○○○○’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을 입·출금을 하려면 ‘○○ ○○’ ○○○ 또는 ○○를 생성해야 하는데, 1회용으로 생성할 경우 거래 즉시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 송금수수료도 100원 이하로 낮은 편이다. 이곳에는 ○○○○을 환전하는 방법, 환전소 위치, ○○○○을 입·출금할 수 있는 ‘○○○○’ 코드 생성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모방의 우려가 있는 범행 수법을 상세히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음란물, 마약, 총기 등의 익명 거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범죄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4장 자살 관련 보도



제4장 자살 관련 보도

사례 10

의결번호	제2015-43호
매 체 명	고성인터넷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2월 4일자 고성뉴스면
기사제목	고성경찰, 자살 기도자 구조

1. 보도내용

「고성경찰, 자살 기도자 구조」 제하의 사진

「고성경찰서 ○○파출소에서는 2월 3일 오후 1시경, ○○면 ○○리 ○○빌라 2층 자택 내에서 신병을 비관 자살을 기도한 백○○ 씨(48·남)를 뛰어남 사건 대처로 설득 끝에 구조하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기도자의 성, 나이, 자택주소, 초상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자살기도자 및 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1

의결번호	제2015-206호
매 체 명	휴먼누리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5월 13일자 사건사고면
기사제목	○○동 ○○○○ 일가족 5名 변사사건

1. 보도내용

「○○동 ○○○○ 일가족 5名 변사사건」 제하의 사진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일가족 변사사건을 보도하면서 자살자의 유서 전문, 자살자 가족의 성명, 나이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공개하여 자살자와 그 가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 [가정폭력] 일가족 5명 변사사건

등록일자 [2015년05월13일 11시33분]



일가족 5명 변사사건

□ 사건개요

※ '15. 5. 13. 07:02경 해운대구 대평동 11111111111111111111 앞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부모와 누나, 조카를 폭력으로 살해하고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 신고한 것임.

□ 관련자 안적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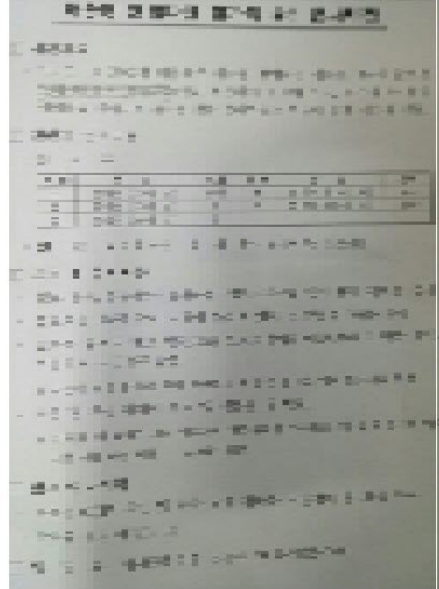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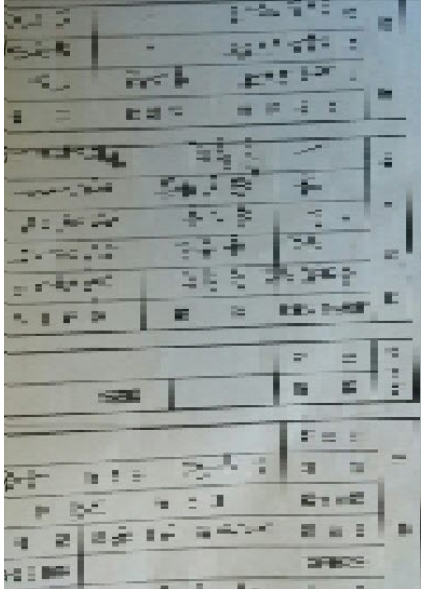
※
변 사 자

연 번	성 명	관 계	연 번	성 명	관 계
1	송00 (37세, 남)	본인	4	송00 (41세, 여)	누나
2	송00 (67세, 남)	부	5	정00 (8세, 남)	조카
3	양00 (64세, 여)	모			

※ 신고 자: 회사원 김 00 - 관리사무소 보안실장

□ 조치 및 수사사항

- ※ 신고 접수, 경찰서장·형사과장·당직·과수팀 현장 출동, 감식등 수사
- ※ 신고자는 11111111111111111111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신고한 것이라는 진술
- ※ 변사자 주머니 메모를 발견하고 현장 확인, 거실에서 시신 4구 발견
 - ※ 나란히 누운 상태로 특이 외상없고 목 둘린 흔적이 있어 질식사로 추정
- ※ 작은 방 책상 위에서 유서 및 신분증 등 발견
 - ※ '가족들 다 보내고 제가 떨어져서 발견되어야 가족들을 수습할 수 있기에 뛰어 내립니다' 라는 내용 - A4 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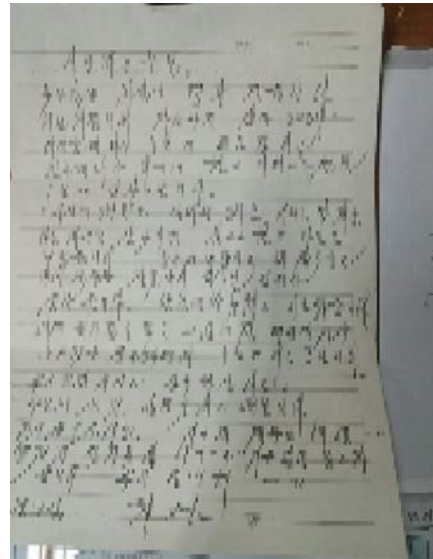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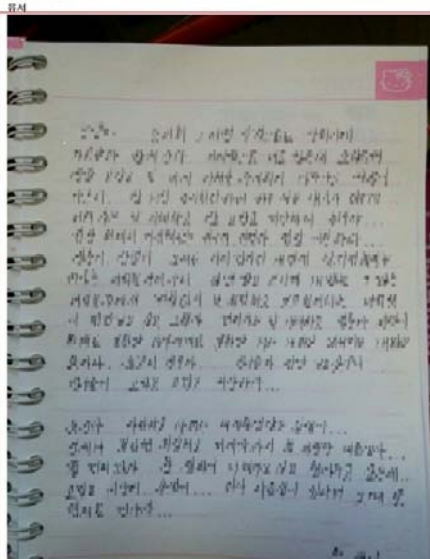


분량

□ 향후 수사계획

- 아파트 CCTV 확인 및 유족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 계속 수사
- 국과수 부검 예정(5. 14)

형사과 / 해운대



사례 12

의결번호	제2015-227호
매 체 명	조선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6월 16일자 사회A13면
기사제목	20代 남성의 ○○○ 중독死... 비밀은 ‘갈색병’

1. 보도내용

「(전략) 숨진 A 씨는 키 185cm, 몸무게 116kg의 건장한 체격으로 지병도 없었다. 부검 결과 사인(死因)이 될 만한 내상이나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사망 원인을 추정해볼 수 있는 단서는 위장과 혈액, 간 등에서 검출된 ○○○ 성분. A 씨의 혈중 ○○○ 농도는 L당 ○○mg에 달했다. 혈중 ○○○ 농도가 L당 ○○mg 이하일 때 안전한 수준이고 ○○mg 이상이면 치사량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A 씨는 치사량의 ○배 가까운 ○○○에 중독됐던 셈이다. A 씨의 시신 근처에서 발견된 작은 갈색 유리병과 컵에서도 국과수 감식 결과 ○○○ 성분이 검출됐다. A 씨가 죽기 한 달 전 친구들에게 “해외에서 산 약이 있는데 사람을 아주 빨리 죽일 수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과수는 “A 씨가 병에 담긴 액상 ○○○을 마시고 중독돼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에 사용된 약명 또는 치사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에 사용된 약명과 치사량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모방 자살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3

의결번호	제2015-269호
매 체 명	인터넷 씨티21뉴스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7월 16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 ○○읍 7급 공무원 아파트 투신 자살

1. 보도내용

「(전략) ○○시 ○○읍사무소 직원 A 씨(40·남)가 자신의 거주 아파트에서 떨어져 사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과 시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16일 오전 7시 30분께 ○○동 B아파트 옥상에서 지면으로 떨어졌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옥상으로 올라간 점을 들어 자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혼인 ○급 공무원 A 씨는 ○○읍사무소 ○○계에서 ○○보전,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했다고 다른 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업무를 봐왔다. (중략)

한 공무원은 “아버지가 ○○ ○○ 정년을 마쳤고 부모님이 서울 ○○에 살고 있다. 집과 시골에 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금전 문제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은 “아파트 관리비가 몇 달 째 밀려 있었다는데 공무원들은 보통 공과금 납부 날짜를 정확히 지키는 편”이라며 달리 봤다.

또 다른 공무원은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라며 “저 번에도 (A 씨가) ‘규정에 맞지 않아 ○○전용을 거부했더니 민원인들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 압박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원 성격의 ○○ 업무를 오래 보면서 스트레스가 컸다는 것.(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직업, 근무지, 담당 업무,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

인지 알 수 있게 하였고 충분하지 않은 정보로 자살동기를 추정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4

의결번호	제2015-330호
매 체 명	매경닷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여의도 ○○○○○증권 건물서 30대 여직원 투신

1. 보도내용

「(전략)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증권 건물 15층에서 물류회사인 ○○○○○ 직원 신모 씨(39·여)가 투신했다. 신 씨는 투신 직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자살 보도 시 자살자 또는 자살자로 추정되는 자, 미수자 및 그 유족이 누구인지 알 수 있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자살자의 성과 나이 외에 직업, 근무지 등을 공개하여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자살은 사회통념상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서 이와 같은 보도는 사자 및 유가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침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제5장 마약 및 약물 관련 보도

사례 15

의결번호	제2015-44호
매 체 명	국민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2월 26일자 사회9면
기사제목	중고생까지 ‘허브마약’을...

1. 보도내용

「(전략) ○○마약은 흰 가루 물질인 원료를 물에 섞어 ○○이나 한약 재료 등 ○○ 식물에 뿌려 말린 뒤 ○○한다. (중략)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스’ ‘○○기’ 등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해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SNS로 연락해온 구매 희망자들에게 ○g당 ○만~○만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 판매액은 총 6000여만원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신종 마약류의 명칭, 구입가격, 사용방법, 구입 경로 등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6

의결번호	제2015-64호
매 체 명	인터넷 인천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9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필로폰 버금가는 강한 환각... 유럽·美 오래전부터 규제

1. 보도내용

「(전략) 8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 잎(사진)은 아프리카 뿔(소말리아 지역)의 고산지대, 아라비아 남부와 동아프리카 해안에 걸쳐 재배되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예멘 등에서는 수세기 동안 약한 자극 성분을 내거나 기력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 잎을 씹었으며, 사회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 사람이 한 번에 ‘○○’ 잎을 씹는 양은 ○~○g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 잎에 향정신성, 환각 효과를 주는 성분인 ‘○○○’과 ‘○○’이 있으며, 그 효과가 암페타민에 견줄 정도로 강하다는 것이다.

○○○○○○은 국내에서 필로폰으로 잘 알려진 마약이다. ○○○○○○의 주성분이 ○○○○이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특정 마약류의 명칭,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등을 보도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독자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7

의결번호	제2015-92호
매 체 명	인터넷 문화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기사제목	탈런트 김○○ 씨 등 마약 투약혐의 불구속 입건

1. 보도내용

「(전략) 이 씨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캄보디아산 필로폰 판매’, ‘○○기·○○스(마약 은 어) 판매’ 등의 글을 올려 구매자를 모집, 필로폰 ○g당 ○만~○만원을 송금받은 뒤 박 씨 등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별칭, 구입가격 및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8

의결번호	제2015-209호
매 체 명	대경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5월 15일자 사회4면
기사제목	신종 마약 상승 투약 외국인 무더기 검거

1. 보도내용

「(전략) K 씨 등은 지난 2월 신원미상 캄보디아인으로부터 ‘○○’ 1정당 ○만원에 구입, 모텔과 주거지에서 ○○를 내 ○에 타 마시거나 ○○에 넣어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중략) L 씨 등은 지난해 7월께부터 최근까지 대구 ○○공단과 ○○공단, ○○공단 등지에서 신원 불상의 필리핀 선원에게서 수 차례 필로폰을 사들여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다. 이들은 ○○○○ ○○ 위에 마약을 올려놓고 ○○○로 ○을 가해 증발하는 ○○를 ○○하는 방식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신종마약인 ○○는 세계 최대 밀매조직인 ○○가 개발해 2000년부터 국내로 유입된 마약으로, 필로폰 보다 환각효과와 중독성이 더 강하며, 태국 등지에서 ○○ 형태로 생산된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의 명칭, 구입가격 및 복용방법 등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이와 같은 보도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19

의결번호	제2015-421호
매 체 명	인터넷 헤럴드경제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11월 20일자 뉴스면
기사제목	전자담배로 대마초 ○○ 신종 마약 ‘○○’ 경보… 편의성 때문 확산 빨라

1. 보도내용

「(전략) 속칭 ‘○○’라 불리는 대마 추출액을 전자담배 ○○○에 끼워 범행을 저지르는 이 같은 수법은 휴대가 간편하고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다.

‘○○’는 ○g에 약 ○만원 정도로 일반 대마초에 비해 두 배 정도 더 비싸지만, 휴대가 간편하고 숨기기가 편해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략)

법원이 인정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정문에 주차된 마약상 A 씨의 차 안에서 대마 추출액인 속칭 ‘○○’ 5그램을 구입했다. 구 씨는 구입 직후 도로에서 대마 추출액 ○g을 전자담배 ○○○에 집어넣고 ○○를 흡입했다. (이하 생략)」

2. 권고사항

언론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명칭, 사용량, 구입가격, 사용방법 또는 복용방법, 환각적 효능, 구입 경로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권고이유

위 기사는 마약류의 별칭, 사용량, 구입가격 및 사용방법 등을 보도하였다. 이는 일반 독자들에게 마약류 사용의 동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6장 기사형 광고



제6장 기사형 광고

사례 20

의결번호	제2015-253호
매 체 명	대구광역일보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7월 7일자 여성.문화면
기사제목	"여름철 기미 고민 피부과 찾는 사람 늘어"

1. 보도내용

「(전략) 한 가지 방법으로는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 피부과에서는 피부 상태에 따른 치료법을 선택하고, 효과가 뛰어난 레블라이트, 엑셀브이, 젠틀맥스 프로 등 레이저를 병행 치료해 기존에 토닝만으로도 치료가 잘 되지 않았던 기미 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략)

○○ 기미 치료 피부과인 ○○ 피부과의 관계자는 “다양한 레이저 기술 이외에도 프리미엄 관리를 통해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필링, 이온토와 비타민C 및 그 외에 줄기세포 등 세포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을 침투시켜 주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치료 전보다 전반적으로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시 ○○구 ○○정류장 앞 ○○○빌딩 4층에 위치한 ○○피부과에서는 색소질환, 여드름, 흉터, 모공, 항 노화, 주름, 탈모, 비만, 피부질환 등 다양한 피부 치료를 실시, 최신 20여종의 우수한 레이저 장비와 프리미엄 피부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 기자」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의료법시행령 제23조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 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사례 21

의결번호	제2015-356호
매 체 명	뉴스컬처
보도일시 및 위치	2015년 8월 4일자 라이프스타일면
기사제목	‘지긋지긋했던 여드름… 72시간이면 잡는다’… ○○○○○의원, ‘○○○ 스피쿨링’

1. 보도내용

「○○○ 객원기자」

「(전략) 이러한 가운데, 여드름의 근본 원인을 잡아 단기간에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법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드름에 대해 손을 놓고 있던 이들에게도 속 시원한 ‘해결법’이 등장한 것.

여드름의 네 가지 원인을 피부 재생 주기(Turn-over)에 맞춰 30일 내에 빠르게 치료하는 박피 치료법인 ‘○○○ 스피쿨링’. (중략)

치료 후 3일 후부터 울퉁불퉁한 피부표면이 탈락하며 매끈한 피부를 보여주는 빠른 효과로, 시술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 때문에 시술을 받았던 이들로부터 ‘72시간의 기적’이라는 입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다.

물리·화학적 필링이 아니라 세포 분열 촉진으로 자연스럽게 각질을 탈락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피부자극이 적고, 과다하게 늘어난 피지샘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또한 시술을 받은 이들을 만족시키는 한 부분이다.

○○○ 스피쿨링 치료법을 도입한 ○○○의원 ○○점의 최○○ 대표원장은 “염증성 여드름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이들, 광 과민제나 여드름치료제에 거부감이 있는 이들,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보고 싶은 이들에게 ○○○ 스피쿨링이 추천되며, 피부 재생 주기에 맞춰 최소 3회 시술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중략)

○○○○○역 ○○○ 클리닉은 ‘강북권 최고 뷰티메디컬센터’를 표방하고 있으며, 트렌드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각종 첨단 시스템을 갖춘 ‘합리적이며 알찬 피부과 의원’로 알려졌다. 서울대 병원 전문의 출신으로 탁월한 감각을 지닌 ‘여의사’ 2명이 운영 및 진료하는 피부과 의원이다. “1:1 맞춤진단을 통해 개개인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섬세

하고 안전성 높은 시술로 병원을 방문한 많은 환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최○○ 대표원장은 ○○대병원 전문의를 거쳐 ○○○ 의원, ○○피부과, ○○○ 의원 ○○점의 대표원장을 지냈다.

현재는 대한○○○○회, 대한○○○○학회, 대한△△△학회 등 다양한 피부 및 비만 치료 학술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주)○○○○의 ‘○○○’ 레이저, ‘○○○’ 등에 대한 임상 자문의로도 활동 중이다. 채널A, YTN 채널 등 각종 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 권고사항

언론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3. 권고이유

위 보도는 보도 제목이나 내용에 특정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을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홍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의료광고의 금지 및 금지 기준을 규정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8호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시술방법만을 부각하는 것은 광고성을 더욱 짙게 할 소지가 있다. 또한 위 보도는 바이라인을 삽입하여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였다.

독자가 일반적인 광고보다 기사 형태의 광고를 신뢰하는 배경에는 언론사 또는 기자의 이름이 제공한 권위가 있으므로, 기사형 광고는 선량한 독자를 기만하여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기사형 광고의 무분별한 게재는 언론사 입장에서 보아도 스스로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깎는 위험을 초래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시정권고 심의기준」 제20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정을 권고한다.

제 5 부

언론조정·중재사건 전체 목록

- 제5부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01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언론조정·중재사건의 전체 목록을 게재합니다. 전체 목록은 각 중재부별 접수·처리 일자의 선후를 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공인이나 국가기관(공공단체 포함) 및 사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익명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처리결과 내 부제소 조항과 이행강제금 조항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제소 조항 : 당사자 간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중재결정(이하 '결정'으로 표기함)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함
이행강제금 조항 :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중재부가 결정(쌍방 동의)한 사항을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의 비율에 의한 금액(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
- 조정 사건 전체 목록 중 사건번호가 없는 경우는 세월호 사건 관련 대량신청건으로 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제1장 조정사건 전체 목록



서울중재부

2015서울조정 4·5, 144~163	(각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외 1인 對 민중언론 참세상 ^(4·5) , 연합뉴스 ^(144·145) , 뉴데일리경제 ^(146·147) , 인터넷 서울신문 ^(148·149) , 인터넷 미디어오늘 ^(150·151) , 비마이너 ^(152·153) , 아시아투데이닷컴 ^(154·155) , 헬스코리아뉴스 ^(156·157) , 인권오름 ^(158·159) , 데일리한국 ^(160·161) , 인터넷 주간동아 ^(162·163)
조 정 대 상	• 민중언론 참세상 : 『에이즈, 그리고 건강할 권리』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3일자 오피니언면) 외 1건 • 연합뉴스 : 『시민단체 “에이즈 환자 위한 국립 요양병원 건립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사회면) 외 4건 • 뉴데일리경제 : 『에이즈 환자,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절규』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산업면) • 인터넷 서울신문 : 『에이즈 감염자 1000명 넘었는데 전문 요양병원 ‘0’』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5일자 뉴스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에이즈 환자, 병원 치료도 차별 받는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4일자 사회면) • 비마이너 : 『“에이즈 환자 요양병원 입원 거부는 장차법상 차별”』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7일자 뉴스면) 외 2건 • 아시아투데이닷컴 : 『“정부, 에이즈 환자 위한 국립 요양병원 건립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1일자 사건사고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간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치료로 에이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뉴데일리경제,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미디어오늘, 비마이너,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주간동아/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민중언론 참세상, 인권오름) • 취하 (헬스코리아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데일리한국/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경제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산업면) • 인터넷 서울신문 : 『[반론보도문] “○○○시 에이즈 장기요양시설 S병원”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 대량신청 사건은 목록에서 제외함

이 행 결 과	• 인터넷 미디어오늘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미디어면) • 비마이너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시 S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주간동아 :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6~9	(각 정정·손배청구) 손○○ 외 92인 對 매경닷컴 ^(6·7) , 채널A ^(8·9)
조 정 대 상	• 매경닷컴 : 『몸져누운 환자 지갑 털어가는 범죄… 천태만상 의약품 리베이트』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2일자 뉴스면)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약값 거품 논란… 불법 리베이트 탓』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제약회사가 의사들에게 건네는 리베이트가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10·11	(정정·손배청구) 임○○ 對 엔디엔뉴스
조 정 대 상	『경기교육청 공문도 무시하는 ○○고등학교 골프과 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종합교육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골프부장인 신청인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학 중 해외 전지훈련을 유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12	(정정청구) 진○○ 對 인터넷 아주경제
조 정 대 상	『○○고 학부모들 교육감면담 및 감사원 진상 재조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0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교사인 신청인이 학교장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 교육청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고 학부모들 교육감 면담 및 감사원 진상 재조사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3, 141	(각 손해청구) 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1) 황금펀치 프로그램 『‘현상금 1억’ 유대균 ‘미녀 보디가드’ 박○○ 정체는?』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4일자) (2) 황금펀치 프로그램 『유대균, ‘미녀 보디가드’와 도피 중… 결혼 관계는?』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과 연인사이라고 허위보도하고, 이혼 소송 관련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37~140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연합뉴스 ^(137·138) , 인터넷 연합뉴스TV ^(139·140)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검찰, 유병언 일가 재산 102억원 추가 ‘동결’』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속보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병언 일가 재산 1백억원 추가 보전명령 청구』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준 비자금으로 상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신엄매(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42	(손배청구) 강○○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주말뉴스토일 프로그램 『[이슈추적] 이○○, 열애설 인정 이후 ‘두문불출’... 외부 노출 꺼려』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유명 연예인이 거주하는 빌라 경비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143	(정정청구) 정○○ 對 메디칼타임즈
조 정 대 상	『국내 한의사 학위, 러시아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의사·개원면)
신청인 주장	국내에서 한의사 학위를 받으면 추가 과정 없이 러시아에서 의사 자격이 인정되는 것처럼 잘못 보도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164~169, 185·186, 1226~1235, 1472·1473	(각 정정·손배청구) ○○○ ○○ 의료원 對 헬스코리아뉴스 ^(164·165) , 오마이뉴스 ^(166·167) , 닥터스뉴스 ^(168·169) , 씨앤비뉴스 ^(185·186, 1232·1233) , 쿠키뉴스 ^(1226·1227, 1472·1473) , 메디포뉴스 ^(1228·1229) , 연합뉴스 ^(1230·1231) , 인터넷 청년의사 ^(1234·1235)
조 정 대 상	• 헬스코리아뉴스 : 『[성명] 위증죄로 고발된 박○○ ○○의료원장의 1억 손해 배상청구소송 규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9일자 뉴스면) • 오마이뉴스 : 『○○ 시민단체들, 박○○ ○○의료원장 사퇴 요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0일자 강원제주면) • 닥터스뉴스 : 『○○의료원장, 노조 상대 소송… “적반하장”』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9일자 뉴스면) • 씨앤비뉴스 : (1) 『보건의료 강원본부, 박○○ ○○의료원장 퇴진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전국면) (2) 『○○의료원 박○○ 원장 23일 검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전국면)

조 정 대 상	• 쿠키뉴스 : 『○○의료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연쇄 면담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뉴스면) • 메디포뉴스 : 『보건노조, 강원도지사·강원대총장 만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뉴스면) • 연합뉴스 : 『○○의료원 이사회, 노조 저지로 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뉴스면) • 인터넷 청년의사 : 『강원도, 보건의료노조 면담 요청에 ‘NO’』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8일자 의료면)
신청인 주장	○○ 의료원장이 노조파괴공작을 했고,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헬스코리아뉴스, 오마이뉴스, 닥터스뉴스, 씨앤비뉴스, 쿠키뉴스, 메디포뉴스, 인터넷 청년의사/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헬스코리아뉴스 : 『「[성명] 위증죄로 고발된 박○○ ○○의료원장의 1억 손해 배상청구소송 규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알림면) • 오마이뉴스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강원제주면) • 닥터스뉴스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의원병원면) • 씨앤비뉴스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강원도 ○○의료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뉴스면) • 메디포뉴스 : 『강원도 ○○의료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기관/단체면) • 인터넷 청년의사 : 『강원도, 보건의료노조 면담 요청에 ‘NO’』 제하의 기사 중 반론 삽입 (2015년 2월 11일자 의료면)

2015서울조정 170	(정정청구) 이○○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1) 『아리랑TV 사장 ‘내정설’ 돌았던 박○○ 씨 포함 14명 지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2) 『아리랑TV, 사장 최종 후보 방석호·이○○·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KBS 재직시 2012년 ‘MB라디오 주례연설 100회 특집’ 편성을 주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71~17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171·172) , KBS미디어 ^(173·174)
조 정 대 상	취재파일K 프로그램 『금괴를 찾아라』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월 4일자, KBS미디어 1월 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금괴브로커 감금 및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175, 176	(각 정정청구) (주)○○○○엔터테인먼트 對 YTN ⁽¹⁷⁵⁾ , 인터넷 YTN ⁽¹⁷⁶⁾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2부 프로그램 『영화 ‘기술자들’ 흥행 뒤 ‘을의 눈물’』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월 8일자, 인터넷 YTN 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영화 제작사인 신청인 회사가 영화촬영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연기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기술자들 제작사 “부당한 대처 일관은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77·178, 189·190	(각 정정·손배청구) ○○시 ○○○매매사업조합 ○○지부 對 MBC-TV ^(177·178) , NSP통신 ^(189·190)
조 정 대 상	• MBC-TV :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중고차의 거짓말』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30일자) • NSP통신 : 『나상희 의원, ○○구 ○○○○과 공무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8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상인과 짜고 ‘자동차성능점검’ 내용을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79	(손배청구) 최○○ 對 맘&양팡
조 정 대 상	『오물오물 음식을 물고만 있어요』 제하의 사진 (2015년 1월 1일자 58면)
신청인 주장	유아인 신청인의 사진을 부정적 이미지로 편집·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180~183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스포츠동아 ^(180·180) , 인터넷 스포츠동아 ^(182·183)
조 정 대 상	(1) 『‘해체 위기’ ○○○ 사장 공금유용 의혹』 제하의 기사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1일자 11면,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1일자 스포츠면) (2) 『경남체육회는 왜 ○○○ 선수통장에 돈을 부쳤나?』 제하의 기사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9일자 11면,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9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 핸드볼팀을 소유한 신청인이 공금을 유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사장 공금유용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28일자 10면, 인터넷 스포츠동아 1월 28일자 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184	(정정청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對 매일경제
조 정 대 상	『‘긴박한 경영상 이유’ 등 모호한 표현 대신 해고 요건 명시적으로 적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종합1면)
신청인 주장	노사정위원회가 근로자의 해고 요건을 문서에 명시적으로 밝히기로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매경이 만난 사람들] 노동시장 대타협 배수진 친 김대환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7일자 24면)

2015서울조정 187, 188	(각 정정청구) 대한○○○○○○○○학회 ⁽¹⁸⁷⁾ , 대한○○○○○○○○○○학회 ⁽¹⁸⁸⁾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거울방학 맞아 너도나도 성형수술…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안면윤곽수술이 치과전문의의 진료과목이 아닌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PR보도)
이 행 결 과	이브닝뉴스 프로그램 『턱 때문에 접었던 꿈 의료봉사로 ‘활짝’』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9일자)

2015서울조정 357	(정정청구) 김○○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새누리당 “세금도둑” 자료 ‘도둑 배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공개하면서, 자료발송자 명의를 특별준비위라고 사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새누리당 “세금도둑” 자료 ‘도둑 배포’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58	(정정청구) 이○○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1) 『어린이집 2살 아기 학대 논란, 두손 놓은 경찰 “증거없어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뉴스면) (2) 『어린이집 영아 학대 유일한 해결책 ‘CCTV’ 현명한 사용법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신청인이 아동을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동 어린이집 “아기 학대 사실 없다”고 밝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건면)

2015서울조정 359·360	(반론·손배청구) 최○○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뉴스플러스] 서울시 곳곳 낙하산 인사 논란… 어디에 누구 있나?』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2011년 보궐선거 당시 모 정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신청인이 박원순 후보와의 단일화 대가로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562~569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한국일보 ^(562·563) , SBS 콘텐츠허브 ^(564·565) , 인터넷 국민일보 ^(566·567) , 온라인 중앙일보 ^(568·569)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국일보 : (1) 『[단독] 제자·동료 가리지 않고… 사립여대 교수, 성희롱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2) 『[단독] 성희롱 교수 처벌, 졸업생들까지 나섰지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조교·여교수 안 가리고… 또 ‘성희롱 교수’ 추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1) 『“야동보다 하는 게 더 좋다” 서울 유명 여대 교수의 막장 성희롱』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시사면) (2) 『또 성희롱 교수, 팬티 차림에 조교 부르고 제자·동료 교수 가리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서울 사립여대 교수 학생 등 성희롱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자 및 동료 등을 성희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SBS 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한국일보)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SBS 콘텐츠허브 : 『‘서울 유명 여대 여교수 성희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서울 유명 여대 여교수 성희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시사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서울 유명 여대 교수 성희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570~573	(각 정정·손배청구) (주)전자신문사 對 미디어오늘 ^(570·571) , 인터넷 미디어오늘 ^(572·573)
조 정 대 상	『삼성 오보 인정한 전자신문, 자존심도 열정도 잃었다』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5년 1월 7일자 4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1월 8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삼성전자 비판기사에 대해 오보를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삼성 오보 인정한 전자신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5년 3월 18일자 종합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3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574	(정정청구) 김○○ 對 민중의소리
조 정 대 상	『[사설] 세월호 조사위에 흙탕물 끼얹는 ‘검은 손’』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세월호 조사를 방해할 의도로 괴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반론보도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606~609	(각 정정·반론청구) 홍문종 對 한국일보 ^(606·607) , 인터넷 한국일보 ^(608·609)
조 정 대 상	『홍문종 의원, 본인 소유 박물관에 ○○대 교직원 동원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아프리카 예술 박물관 운영에 모 대학 교직원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2월 23일자 14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610	(손배청구) 우○○ 對 소년조선일보
조 정 대 상	『피자·치킨 가라! 뱃살도 가라!! 우리는 지금 살과의 전쟁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683, 755, 756	(각 정정청구) (주)○○케어 對 연합뉴스 ⁽⁶⁸³⁾ , 인터넷 헤럴드경제 ⁽⁷⁵⁵⁾ , 에너지경제 ⁽⁷⁵⁶⁾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섹션면) • 인터넷 헤럴드경제 : 『영국,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사회면) • 에너지경제 :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부작용 증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렌즈에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 피해보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인터넷 헤럴드경제, 에너지경제/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알림』 제하의 기사 (연합뉴스 2015년 2월 4일자 뉴스섹션면)

2015서울조정 684	(정정청구) 전라북도관광협회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전북관광협회, 관광홍보는 뒷전 눈먼 예산 평평 전북도는 관리감독에 뒷짐, 방만운영 부추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행하는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685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서울경제
조 정 대 상	『김○○ 딸 이○○, 엄마 김○○ 향해 “창녀인지 여배우인지...” 충격발언 ‘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문화·Life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딸로부터 “창녀인지 여배우인지”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686, 687	(각 정정청구) 전국○○공제조합 ○○지부 ⁽⁶⁸⁶⁾ , (사)○○시○○운송사업조합 ⁽⁶⁸⁷⁾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택기기사 위해 예산 줬더니... 술 값으로 “핑핑”』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사회면) (2) 『이번엔 택시사업조합 택시기사 보험료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운전자 보험 지원금 예산 일부를 유혹에 사용했으며,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택시공제조합 및 택시사업조합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688~693	(각 정정·추후·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MBN ^(688~690) , 인터넷 MBN ^(691~693)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대학서 남학생 3명 집단 성추행』 제하의 보도 (MBN 2014년 10월 6일자, 인터넷 MBN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친구들이 집단 성추행 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5서울조정 694	(정정청구) 이○○ 외 3인 對 리폼드뉴스
조 정 대 상	『분쟁교회를 가다(5) “○○○○교회”』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모 목사가 ○○○○교회 임시당회장이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교회 장로 4인에 대한 시무투표 효력, 반론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교회면)

2015서울조정 695~698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조선일보 ^(695·696) , 조선닷컴 ^(697·698)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1) 『지상파, 헐값에 외주사 저작권 독식』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면) (2) 『지상파, 외주사가 받은 협찬금 때 가고 과태료 떠 넘기기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10면) - 조선닷컴 : (1)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외주社가 받은 협찬금 떼가고 과태료 떠넘기기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연예면) (2) 『[자구 노력없이 安住하는 지상파] 지상파, 헐값에 외주社 저작권 獨食』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KBS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비를 10년 전과 똑같이 주거나 절반만 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2월 7일자 A8면, 조선닷컴 2월 4일자 연예면)

2015서울조정 751	(반론청구) 박○○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이단 박○○ 씨 재판부 전원교체… ‘불공정한 재판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이단이고 사기사건에 연루된 업체의 고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752	(정정청구) (유)○○○○여행사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관광협회, 관광 홍보는 뒷전 ‘눈 먼 예산 평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관광협회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관광협회, 관광 홍보는 뒷전 ‘눈 먼 예산 평평’”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754	(손배청구) 임○○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동료 눈치… 고과 불이익… 시간선택제 워킹맘들 눈물』 제하의 사진 (2015년 1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기타 - 동의 후 금액 지급)
2015서울조정 757, 758, 1239, 1240	(각 손배청구) 최○○ 對 문화일보 ⁽⁷⁵⁷⁾ , 인터넷 문화일보 ⁽⁷⁵⁸⁾ (각 정정청구) 문화일보 ⁽¹²³⁹⁾ , 인터넷 문화일보 ⁽¹²⁴⁰⁾
조 정 대 상	『세월호 영웅 최○○·박○○ 희생정신 세계의 귀감』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1월 22일자 29면, 인터넷 문화일보 1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에서 인명을 구하고 사망한 승무원에 대해 보도하면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 동의 후 금액 지급)
2015서울조정 1076	(정정청구) ○○○KOREA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귀신분장’ 자전거 동호회원들 서울도심 심야 떼주행』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진행한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 취하)

2015서울조정 1115~1120	(각 정정·손배청구) 허○○ 對 한국기독일보 ^(1115·1116)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1117·1118)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1119·1120)
조 정 대 상	- 한국기독일보 : 『‘문중재산 찾아주겠다’ ‘공짜 아파트 준다’고 속여 갈취한 목사의 사기행각 충격』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뉴스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교에게서 기독교 재산 되찾겠다며 사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교계교단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협회 허모 목사 사기행각 경계해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5일자 주요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회 신도 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한국기독일보 : 『○○교회 허○○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교단교회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교회 허○○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교계교단면) - 인터넷 기독교한국신문 : 『○○교회 허○○ 목사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주요뉴스면)
2015서울조정 1121	(손배청구) 안○○ 對 데일리환경
조 정 대 상	『성형 시술 중 연이은 사망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2일자 환경신문고면)
신청인 주장	성형수술로 인한 사망사고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 상호를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성형 시술 중 연이은 사망 왜?』 제하의 기사 중 상호명 삭제 (2015년 2월 9일자 환경신문고면)
2015서울조정 1236~1238	(정정·반론·손배청구) 진○○ 對 티브로드-TV
조 정 대 상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통행로 갈등… 결국 이웃 간 소송_티브로드서울』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통행로 관련 이웃과 분쟁중인 신청인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도봉구 통행로 분쟁”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5일자)

2015서울조정 1241~1248, 1853·1854, 2254·2255	(각 반론·손배청구) 김○○ 對 이데일리 ^(1241·1242) , 인터넷 스포츠조선 ^(1243·1244) , 데일리게임 ^(1245·1246) , 인터넷 일간스포츠 ^(1247·1248) , 스포츠서울닷컴 ^(1853·1854) , 온라인 중앙일보 ^(2254·2255)
조 정 대 상	• 이데일리 : 『○○위 내부 갈등, 성희롱 폭로전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게임면)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또 다시 도마에 오른 ○○위. 성희롱인가, 내부 갈등인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사회면) • 데일리게임 : 『[기획] 추문에 흔들리는 ○○위 알력 싸움에 업계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체 역할 못하고 내부 갈등만... ○○위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사회면) • 스포츠서울닷컴 : 『석연치 못한 성희롱 추문 ○○위, 내부 갈등의 산물?』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경제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위 내부 갈등, ‘성희롱 폭로전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8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계약직 직원인 신청인이 재계약을 앞두고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간부의 성희롱을 진정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데일리, 인터넷 스포츠조선, 인터넷 일간스포츠/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데일리게임, 스포츠서울닷컴/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반론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조정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정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는데 대해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1355~1367	(각 손배청구) 박○○ 對 MBN ^(1355,1356) , 인터넷 MBN ^(1357,1358) , TV조선 ^(1359~1361) , 인터넷 TV조선 ^(1362,1363) , 연합뉴스TV ⁽¹³⁶⁴⁾ , 인터넷 연합뉴스TV ⁽¹³⁶⁵⁾ , 채널A ⁽¹³⁶⁶⁾ , 인터넷 채널A ⁽¹³⁶⁷⁾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양○○ 데려간 사람들은 누구?』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일자, 인터넷 MBN 8월 1일자 다시보기면) • TV조선 : (1) 돌아온 저격수다 프로그램 『양○○ 3차 검찰 조사』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31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31일자 사회면) (2) 황금펀치 프로그램 『양○○ ‘수상한 김새’... 무언가 숨기고 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1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TV : 뉴스1번지 프로그램 『유병언 미스테리... 양○○ “유병언 최후 몰라”』 제하의 보도 (2017년 7월 31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7월 31일자 뉴스면) • 채널A : 이동관의 노크 프로그램 『양○○ ‘금수원 은신’ 놓고 구원파 내부 갈등』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31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31일자 뉴스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운전기사의 자수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익적인 보도)

2015서울조정 1368·1369	(정정·손배청구) 신○○ 對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신엄마 딸 박○○, 유대균 호위무사 노릇... 얼굴 곳곳이 들고』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시로 신청인의 딸이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1370~1372	(손배, 정정·손배청구) 박○○ 對 동아닷컴 ^(1370, 1371·1372)
조 정 대 상	(1) 『경찰, 유대균-박○○ 은신처 추적 함께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6일자 사회면) (2) 『유대균 박○○ 검거, 신엄마 딸 박○○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하의 기사 (2014년 7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수행원인 신청인의 검거사실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초상을 공개하고, 둘의 관계가 조력자 이상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 동의 후 금액 지급)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1474, 1475	(각 정정청구) (사)○○○○○○○○○○협회○○시지회 對 매일일보 ⁽¹⁴⁷⁴⁾ , 인터넷 매일일보 ⁽¹⁴⁷⁵⁾
조 정 대 상	『김포 ○○항 어촌계 상인들 ‘뿔’났다』 제하의 기사 (매일일보 2015년 1월 28 일자 15면, 인터넷 매일일보 1월 27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회장이 항구 어판장에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1476~1479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SBS-TV ^(1476·1477) , SBS 콘텐츠허브 ^(1478·1479)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땅콩회항』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월 10일 자, SBS 콘텐츠허브 1월 1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모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허위사실을 보도한 적이 없으므로 정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1480~1539	(각 손배청구) 유○○ ^(1480~1509) 對 연합뉴스 TV ^(1480~1487) , 인터넷 연합뉴스 TV ^(1488~1496) , YTN ⁽¹⁴⁹⁷⁾ , 인터넷 YTN ^(1498, 1499) , SBS-TV ⁽¹⁵⁰⁰⁾ , SBS 콘텐츠허브 ⁽¹⁵⁰¹⁾ , KBS-1,2TV ⁽¹⁵⁰²⁾ , KBS 미디어 ^(1503, 1504) , JTBC ^(1505, 1506) , 인터넷 JTBC ^(1507~1509) 이○○ ^(1510~1539) 對 연합뉴스 TV ^(1510~1517) , 인터넷 연합뉴스 TV ^(1518~1526) , YTN ⁽¹⁵²⁷⁾ , 인터넷 YTN ^(1528, 1529) , SBS-TV ⁽¹⁵³⁰⁾ , SBS 콘텐츠허브 ⁽¹⁵³¹⁾ , KBS-1,2TV ⁽¹⁵³²⁾ , KBS 미디어 ^(1533, 1534) , JTBC ^(1535, 1536) , 인터넷 JTBC ^(1537~1539)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TV : 투나잇23 프로그램 『김엄마·양○○ ‘키맨’ 지목... ‘모르쇠’ 일 관』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9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7월 29일자 사회 면) 외 7건 • YTN : 뉴스24 프로그램 『“돈은 2번·6번 가방에서 발견”』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1일자, 인터넷 YTN 8월 11일자 사회면) 외 5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유병언 ‘권총 5정+15억’ 발견』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1일자, SBS 콘텐츠허브 8월 11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토크 프로그램 『검찰 ‘유병언 도피 지휘부’ 찾기 수사 주력』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1일자, KBS 미디어 8월 11일자 사회면) 외 1건 • JTBC : 4시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오늘 오전 10시부터 양○○ 재조사』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30일자, 인터넷 JTBC 7월 30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 측근에 대한 검찰조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익적인 보도)

2015서울조정 1662	(반론청구) ○○○○○○학회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겨울방학 맞아 ‘성형 열풍’... 피해 사례도 급증』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전문의사가 아닌 일반의가 성형시장에 뛰어들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일반 의사 성형수술 부작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5년 3월 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1663~1696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스타투데이^(1663·1664), 이뉴스투데이^(1665·1666), wow한국경제TV^(1667·1668), 한경닷컴^(1669·1670), 인터넷 파이낸셜뉴스^(1671·1672), 오에스이엔^(1673·1674), 티브이데일리^(1675·1676), 인터넷 일간스포츠^(1677·1678), 이투데이^(1679·1680), 데일리안^(1681·1682), SSTV^(1683·1684), 조선비즈닷컴^(1685·1686), 인터넷 일요신문^(1687·1688), e머니워크^(1689·1690), 인터넷 데일리스포츠월드^(1691·1692), 온라인 중앙일보^(1693·1694), 인터넷 헤럴드경제^(1695·1696)
조 정 대 상	• 스타투데이 : 『‘그것이’ 대한항공 여승무원, 소름돋는 미소의 의미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외 1건 • 이뉴스투데이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제안에 묘한 미소?... 박○○ 사무장과 다른 행보에 ‘눈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wow한국경제TV : 『대한항공 박○○ 사무장의 침통한 표정 VS 땅콩 여승무원의 환한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외 1건 • 한경닷컴 : 『대한항공 여승무원, 검찰 조사 당시 웃으며... 이유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대한항공 측 거래 받아 들였나?’ 충격적 행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오에스이엔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미소 지은 이유… 교수직 제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라이프면) - 티브이데일리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박○○ 사무장과 다른 행보 ‘모습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방송면) 외 10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모 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1697~1730	(각 손배청구) 신○○ 對 TV조선⁽¹⁶⁹⁷⁾, 인터넷 TV조선⁽¹⁷⁰⁰⁾, MBN⁽¹⁷⁰¹⁾, 인터넷 MBN⁽¹⁷⁰²⁾, 채널A⁽¹⁷⁰⁵⁾, 인터넷 채널A⁽¹⁷⁰⁶⁾, JTBC⁽¹⁷⁰⁹⁾, 인터넷 JTBC⁽¹⁷¹⁰⁾, YTN⁽¹⁷¹³⁾, 인터넷 YTN⁽¹⁷¹⁴⁾, KBS-1TV⁽¹⁷¹⁷⁾, KBS 미디어⁽¹⁷¹⁸⁾, MBC-TV⁽¹⁷²¹⁾, iMBC⁽¹⁷²²⁾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TV조선^(1698·1699), 인터넷 MBN^(1703·1704), 인터넷 채널A^(1707·1708), 인터넷 JTBC^(1711·1712), 인터넷 YTN^(1715·1716), KBS미디어^(1719·1720), 조선닷컴^(1723·1724), 인터넷 연합뉴스TV^(1725·1726), 연합뉴스^(1727·1728), SBS 콘텐츠허브^(1729·1730)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유병언 조력자들 “유병언 혼자 희생해야 했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28일자 뉴스면) 외 25건 - MBN : 시선집중 프로그램 『구원파, 유병언 도피 조직적 지원』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12일자, 인터넷 MBN 8월 12일자 뉴스면) 외 6건 - 채널A : 뉴스특보 프로그램 『‘꽃꽃’ 미녀 호위무사 박○○ 신앙의 힘?』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7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27일자 사회면) 외 9건 - JTBC : 뉴스9 프로그램 『‘유대균 조력자’ 박○○, 검거 뒤 시종일관 ‘꽃꽃’ 눈길』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7일자, 인터넷 JTBC 7월 27일자 사회면) 외 1건 - YTN : 정오뉴스 프로그램 『조력자들은 자수했지만… 해외에 자녀들이 남았다』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9일자, 인터넷 JTBC 7월 29일자 사회면) 외 1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시로 신청인의 딸이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KBS-1TV, KBS미디어, SBS 콘텐츠허브/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 채널A, 인터넷 채널A, MBC-TV, iMBC) • 각 취하 (MBN, 인터넷 MBN, JTBC, 인터넷 JTBC, YTN, 인터넷 YTN, 인터넷 연합뉴스TV/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각 취하 (조선닷컴,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KBS미디어 : 『‘신엄마(신○○)’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신엄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7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유병언 동생 유경희, 구원파 신도 집단폭행... 신도들 내동맹이 치는 영상 입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신엄마’(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유병언 장남 유대균·신엄마 딸 박○○ 검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4월 15일자 사회면) 외 2건
2015서울조정 1731~1774, 1858~1861, 2123, 2124	(각 손해청구) 박○○ 對 TV조선⁽¹⁷³¹⁾, 인터넷 TV조선⁽¹⁷³⁴⁾, MBN⁽¹⁷³⁵⁾, 인터넷 MBN⁽¹⁷³⁸⁾, 채널A⁽¹⁷³⁹⁾, 인터넷 채널A⁽¹⁷⁴²⁾, JTBC⁽¹⁷⁴³⁾, 인터넷 JTBC⁽¹⁷⁴⁴⁾, YTN⁽¹⁷⁴⁷⁾, 인터넷 YTN⁽¹⁷⁵⁰⁾, KBS-1TV⁽¹⁷⁵¹⁾, KBS 미디어⁽¹⁷⁵²⁾, MBC-TV⁽¹⁷⁵⁵⁾, iMBC⁽¹⁷⁵⁶⁾, SBS-TV⁽¹⁷⁵⁹⁾, SBS 콘텐츠허브⁽¹⁷⁶⁰⁾, 노컷뉴스⁽¹⁷⁶³⁾, 이투데이⁽¹⁷⁶⁴⁾, 조선닷컴⁽¹⁷⁶⁷⁾, 온라인 중앙일보⁽¹⁷⁷⁰⁾, 인터넷 주간경향⁽²¹²³⁾, 인터넷 시사저널⁽²¹²⁴⁾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TV조선^(1732·1733), 인터넷 MBN^(1736·1737), 인터넷 채널A^(1740·1741), 인터넷 JTBC^(1745·1746), 인터넷 YTN^(1748·1749), KBS미디어^(1753·1754), iMBC^(1757·1758), SBS 콘텐츠허브^(1761·1762), 인터넷 연합뉴스TV^(1765·1766), 조선닷컴^(1768·1769), 온라인 중앙일보^(1771·1772), 연합뉴스^(1773·1774), 인터넷 일요시사^(1858·1859), 인터넷 일요신문^(1860·1861)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박○○, 두 아들 버려두고 유대균 위해 호텔 물색”』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26일자 사회면) 외 110건 • MBN : 뉴스8 프로그램 『격파왕 박○○, 팬클럽까지 등장... ‘미화’ 안돼』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MBN 7월 28일자 사회면) 외 179건 • TV조선 : 뉴스쇼 판 프로그램 『“박○○, 두 아들 버려두고 유대균 위해 호텔 물색”』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26일자 사회면) 외 110건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격파왕 박○○, 팬클럽까지 등장… ‘미화’ 안돼』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MBN 7월 28일자 사회면) 외 179건 • 채널A : 뉴스특보 프로그램 『여신도 도움받은 유병언 부자… 도피도 부전자전?』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6일자, 인터넷 채널A 7월 26일자 사회면) 외 69건 • JTBC : 뉴스9 프로그램 『모습 드러낸 유대균과 ‘신엄마’ 딸 박○○』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8일자, 인터넷 JTBC 7월 28일자 사회면) 외 31건 • YTN : 정오뉴스 프로그램 『경찰, 유병언 아들 유대균 검거』 제하의 보도 (2014년 7월 25일자, 인터넷 YTN 7월 25일자 사회면) 외 119건 • KBS-1TV 외 2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대균의 도피를 도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MBN⁽¹⁷³⁶⁾, 인터넷 채널A⁽¹⁷⁴⁰⁾, 인터넷 JTBC⁽¹⁷⁴⁵⁾, KBS 미디어⁽¹⁷⁵³⁾, MBC-TV, iMBC, 인터넷 연합뉴스TV⁽¹⁷⁶⁵⁾, 온라인 중앙일보⁽¹⁷⁷¹⁾, 연합뉴스⁽¹⁷³⁴⁾, 인터넷 일요시사⁽¹⁸⁵⁸⁾, 인터넷 일요신문⁽¹⁸⁶⁰⁾/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MBC-TV, iMBC))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N, 인터넷 MBN^(1737·1738), 채널A, 인터넷 채널A^(1741·1742), JTBC, 인터넷 JTBC^(1744·1746), YTN, 인터넷 YTN, KBS-1TV, KBS 미디어^(1752·1754), 인터넷 연합뉴스TV⁽¹⁷⁶⁶⁾, 조선닷컴^(1767·1769), 온라인 중앙일보^(1770·1772), 연합뉴스⁽¹⁷⁷⁴⁾, 인터넷 일요신문⁽¹⁸⁶¹⁾/내용 : 손해배상-MBN 및 인터넷 MBN 3백만원, 채널A 및 인터넷 채널A 250만원, JTBC 및 인터넷 JTBC 50만원, YTN 및 인터넷 YTN 3백만원, KBS 및 KBS 미디어 2백만원, 인터넷 연합뉴스TV 1백만원, 조선닷컴 5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1백만원, 연합뉴스 1백만원, 인터넷 일요신문 50만원 - 동의 후 금액 지급) • 각 조정불성립결정 (TV조선, 인터넷 TV조선, SBS-TV, SBS 콘텐츠허브) • 각 취하 (이투데이, 조선닷컴⁽¹⁷⁶⁸⁾, 인터넷 주간경향, 인터넷 시사저널/사유 : 정정보도) • 취하 (노컷뉴스/사유 : 손해배상) • 기각 (인터넷 일요시사⁽¹⁸⁵⁹⁾/사유 : 진실보도)
이 행 결 과	• KBS미디어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4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8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7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박○○ 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뉴스홈면)

2015서울조정 1851·1852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성형수술 부작용 눈코 절반 이상 차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성형수술을 할 경우 부작용이 많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1855~1857	(정정청구) 이○○ 對 동아닷컴 ⁽¹⁸⁵⁵⁾ (정정·손배청구) 채널A ^(1856·1857)
조 정 대 상	- 동아닷컴 : 『[단독]막말 변호사, ○○변호사회 감사 후보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5일자 사회면)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막말 혐의’ 변호사, ○○변회 감사 출마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5일자)
신청인 주장	모 단체 감사 후보로 출마한 신청인이 노인에게 막말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1862·1863	(정정·손배청구) 신○○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영신속보(3) 학생회장 김○○ 외 2인 입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일자 신학교/대학교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교수와 학생을 이간할 목적으로 학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신속보(3) 학생회장 김○○ 외 2인 입원』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4일자 신학교/대학교면)

2015서울조정 2097	(정정청구) 최경환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자원펀드’ 강권 공문 발신자는 최경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1면) (2) 『책임없다던 최경환, 하베스트 현지조사 직보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3면,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 수출입은행에 ‘해외자원개발펀드’ 참여를 강권했고, 석유공사 사장으로부터 부실업체 인수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125	(정정청구) 강○○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신해철 사망 미스터리,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과거 가수 신해철 본인 또는 가족의 동의 없이 담낭제거 수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2012년 신해철 담낭제거 수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콘텐츠허브 2015년 3월 12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2126	(정정청구) 식품의약품안전처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식약처, 재검사는 없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식약처가 중국에서 수입된 닭꼬치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된 것으로 검사성적서를 조작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PD수첩 프로그램 『‘식약처, 재검사 없다’ 방송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4월 7일자, iMBC 4월 13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2193·2194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팝콘뉴스
조 정 대 상	『○○○ 침대, 美재판에서 펼쳐진 오너일가 추한 싸움… 내막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오너 일가가 불륜과 횡령 등의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침대 오너일가 美재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195, 2196	(각 정정청구) 육군본부 對 KBS-1TV ⁽²¹⁹⁵⁾ , KBS 미디어 ⁽²¹⁹⁶⁾
조 정 대 상	시사기획창 프로그램 『식물인간 이등병… “사실대로 말해줘”』 제하의 보도 (KBS-1TV 2014년 11월 11일자, KBS 미디어 11월 11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식물인간이 된 이등병 사건과 관련해 헌병 수사가 부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197, 2198	(각 정정청구) (주)○○○ 對 스포츠서울 인터넷 ⁽²¹⁹⁷⁾ , 인터넷 일간스포츠 ⁽²¹⁹⁸⁾
조 정 대 상	- 스포츠서울 인터넷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 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라이프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 글로벌 No.1 골프아카데미 ‘○○○’과 MOU 체결』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3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업체가 국내 스크린골프 관련 업체로는 유일하게 2015 PGA MERCHANDISE SHOW에 참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스포츠서울 인터넷 : 『○○○, 글로벌 리딩 골프 아카데미와 MOU체결 북미 시장 진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3월 25일자 라이프면) - 인터넷 일간스포츠 : 『○○○, 글로벌 No.1 골프아카데미 ‘○○○’과 MOU 체결』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3월 26일자 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2199·2200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1) 『○○○과 ○○학교, 식당운영 놓고 갈등』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오피니언면) (2) 『장애인거주시설 ○○○의 세습과 족벌화』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오피니언면) (3) 『장애학생 부모들, ○○○ 권익위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오피니언면) (4) 『○○○ 거주인들은 불모이자 인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오피니언면) (5) 『○○○ 공화국 어버이수령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7일자 오피니언면) (6) 『순탄치 않은 광주시의 ○○○ 관련 합의 이행』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회복지법인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시설 운영 과정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201, 2202	(각 손해청구) 신○○ 對 채널A ⁽²²⁰¹⁾ , 인터넷 채널A ⁽²²⁰²⁾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김○○ 동양화 작가 모욕... 명예훼손한 혐의』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1월 30일자, 인터넷 채널A 1월 3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모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된 화가의 작품을 신청인의 작품이라고 소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 작가 관련 양해 말씀』 제하의 기사 (인터넷 채널A 2015년 3월 4일자 메인화면)

2015서울조정 2203~220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일요시사 ^(2203·2204) , 동아닷컴 ^(2205·2206)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시사 : 『‘클라라 스캔들’ ○○그룹 회장의 두얼굴 추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차세대전투기-잠수함 사업참여... 비리의혹 끊이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연예인과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신청인이 방산비리에 관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시사/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동아닷컴/내용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인터넷 일요시사 : 『바로잡습니다] 이○○ ○○그룹 회장 관련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07, 2208	(각 정정청구) 이○○ 對 이슈타임 ⁽²²⁰⁷⁾ , 인사이트 ⁽²²⁰⁸⁾
조 정 대 상	- 이슈타임 : 『체험 허브농장 대표, 성범죄 전과 숨긴 채 버섯이 농원운영』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생활문화이슈면) - 인사이트 : 『유명 체험농장 대표, 성범죄 전과 숨긴 채 농원 운영』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성범죄 전과사실이 있는 신청인이 체험 허브농장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209·221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주간동아
조 정 대 상	『‘유병언 죽음 미스터리’ 풀 수 없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 호위무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2211~2213	(손배청구) 신○○ 對 인터넷 주간동아 ⁽²²¹¹⁾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일요신문 ^(2212·2213)
조 정 대 상	- 인터넷 주간동아 : 『‘유병언 죽음 미스터리’ 풀 수 없나』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유병언 도피 컨트롤타워 총력추적』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병언 도피 컨트롤타워라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2214·2215	(정정·손배청구) 태백시 對 e시사코리아저널
조 정 대 상	『김연식 태백시장 특정업체와 결탁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기획면)
신청인 주장	태백시장과 공무원이 특정 업체와 결탁하여 부당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연식 태백시장 특정업체와 결탁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4일자 기획면)

2015서울조정 2216, 2217	(각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이데일리 ⁽²²¹⁶⁾ , 인터넷 이데일리 ⁽²²¹⁷⁾
조 정 대 상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제하의 기사 (이데일리 2015년 2월 9일자 2면, 인터넷 이데일리 2월 9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모 언론사 소속 기자가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언론사 외압 관련 발언을 녹음해 야당의원에게 녹취록을 넘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걱정되는 총리 후보자의 언론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이데일리 2015년 3월 6일자 2면, 인터넷 이데일리 3월 6일자 사설면)

2015서울조정 2218	(정정청구) 대한○○○○협회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저렴한 조무사를 합법적으로 쓰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치과의사, 돈 아끼려고 치위생 무자격자 활용 합법화 추진? “꼼수”가 눈에 보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19·2220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월간중앙
조 정 대 상	『“무면허 제조, 원료 밀수의혹 방사청·경찰청은 모르쇠?”』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호 14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면허도 없이 최루탄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최루탄 제작업체 D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28면)

2015서울조정 2221	(정정청구) 이○○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사립대 교수, 제자 논문 상습적으로 가로채』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자 논문을 상습적으로 가로채 실적 부풀리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2222, 2223	(각 손배청구) 박○○ 對 뉴시스 ⁽²²²²⁾ , 인터넷 시민일보 ⁽²²²³⁾
조 정 대 상	- 뉴시스 : (1) 『검찰, 유병언 공소권없음 처분·유대균 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2일자 사회면) (2) 『검, ‘세월호 재판’ 10명 징역형·3명 집행유예 구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민일보 : 『유병언 공소권 없음… 장남 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신청인의 개인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기각 (뉴시스/사유 : 공적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인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224	(정정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집단폭행하고 남친들은 협박, 학교는 ‘쉬쉬’』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중학교가 학내 집단폭행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집단폭행하고 남친들은 협박, 학교는 ‘쉬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25~2231, 2241, 2258~2260	(각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서울신문 ⁽²²²⁵⁾ , 종교신문 ⁽²²²⁶⁾ , 매경닷컴 ⁽²²²⁷⁾ , 인터넷 국민일보 ⁽²²²⁸⁾ , 노컷뉴스 ⁽²²²⁹⁾ , 이헬스통신 ⁽²²³⁰⁾ , 헤럴드TV ⁽²²³¹⁾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²²⁴¹⁾ , KBS미디어 ⁽²²⁵⁸⁾ , 세계닷컴 ⁽²²⁵⁹⁾ , 월드투데이 ⁽²²⁶⁰⁾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서울신문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사회면) - 종교신문 : 『영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 매경닷컴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 인터넷 국민일보 : 『英 인공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 독일산 렌즈 안전성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시사면) - 노컷뉴스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인공렌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232, 2233	(각 정정청구) ○○○○(주) 對 YTN ⁽²²³²⁾ , 인터넷 YTN ⁽²²³³⁾
조 정 대 상	뉴스출발 프로그램 『12시간 밤샘 근무... 길 위의 노동자』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월 16일자, 인터넷 YTN 1월 1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청소 대행업체인 신청인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12시간 밤샘 근무... ‘길 위의 노동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3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34~2236	(각 손해청구) 윤○○ 對 인터넷 연합뉴스TV ⁽²²³⁴⁾ , 인터넷 채널A ⁽²²³⁵⁾ , 인터넷 JTBC ⁽²²³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대균·전양자·박○○… ‘눈물바다’ 법정』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8일자 뉴스면) - 인터넷 채널A : 『희생자 위해 재산 반환 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8일자 뉴스면) 외 3건 - 인터넷 JTBC : 『김○○ 조사 이틀째, 혐의 부인… 유대균 징역4년 구형』 제하의 사진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237, 2238	(각 손해청구) 박○○ 對 JTBC ⁽²²³⁷⁾ , 인터넷 JTBC ⁽²²³⁸⁾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제조에 25만원 ‘가짜 실리콘 손가락’ 직접 만들어보나…』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JTBC 2월 11일자 9시 뉴스 및 8시 뉴스 프로그램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들이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허위 초과근무 시간을 등록한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실리콘 보형물 제조업자인 신청인의 초상, 음성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239, 2240	(각 반론청구) ○○유치원 對 SBS 콘텐츠허브 ⁽²²³⁹⁾ , SBS-TV ⁽²²⁴⁰⁾
조 정 대 상	취재파일 프로그램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1월 26일자, SBS 콘텐츠허브 1월 2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치원이 부모로부터 원아의 건강상태를 사전 확인하고도 부주의로 사망케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5살 아이 혼수상태 유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42~2245, 2256·2257, 2299·2300, 2487~2490, 2497·2498, 2502·2503, 2507·2508	(각 정정·손배청구) ○○○ ○○의료원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2242~2245, 2256·2257, 2502·2503), 연합뉴스^(2299·2300), 인터넷 청년의사^(2487·2488), 메디컬투데이^(2489·2490), 아웃소싱타임즈^(2497·2498), 닥터스뉴스^(2507·2508)
조 정 대 상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1) 『○○의료원이 해야 할 것은 반론보도가 아니라 협상』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자 칼럼면) (2) 『강원도 경영개선대책 이유로 지방의료원 버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기획연재면) (3) 『○○의료원 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3일자 노동뉴스면) - 연합뉴스 : 『보건노조 ○○의료원 지부장 단식농성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3일자 전국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중노위,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기관/단체면) - 메디컬투데이 : 『보건의료노조 “박○○ ○○의료원장, 부당행위 명백... 스스로 용퇴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의료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원장이 노사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해 공공의료를 후퇴시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매일노동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인터넷 청년의사, 메디컬투데이, 아웃소싱타임즈, 인터넷 매일노동뉴스^(2502·2503), 닥터스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 『강원도 ○○의료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노사이슈면) - 인터넷 청년의사 : 『중노위,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9일자 기관/단체면) - 메디컬투데이 : 『보건의료노조 “박○○ ○○의료원장, 부당행위 명백... 스스로 용퇴해야”』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20일자 의료면) - 아웃소싱타임즈 : 『중앙노동위원회, ○○의료원 부당노동행위 인정』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18일자 인적자원면) - 닥터스뉴스 : 『○○○○병원 등 6곳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제하의 기사 중 반론보도 삽입 (2015년 3월 18일자 보험/제도면)

2015서울조정 2246·2247	(정정·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뒷돈’ 등장에 ○○농협 상임이사 선거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처남이 모농협 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농협 상임이사직에 출마한 신청인의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248	(정정청구) ○○○○○○○○공사 노동조합 외 1인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관’ 조직적 반대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환경부와 연대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인천 이관을 반대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인천 이관’ 조직적 반대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49	(정정청구) 양천구청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1) 『못 믿을 중고차』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30일자) (2) 『인허가는 나의 힘』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양천구청 공무원이 중고자동차매매센터와 유착하여 불법사항을 눈감아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TV속의 TV 프로그램 『중고차 매매센터 관련 양천구청 반론』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7일자)

2015서울조정 2250~2253	(각 정정·반론청구) 백○○ 對 인터넷 연합뉴스TV ^(2250·2251) , SBS 콘텐츠허브 ^(2252·2253)
조 정 대 상	• 인터넷 연합뉴스TV : 『초등생 식칼 들고 등교 강제전학 요구에 고심 外』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뉴스면) • SBS 콘텐츠허브 : 『식칼 들고 등교한 초등학생!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1일자 모닝와이드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생인 신청인이 다수의 학생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등교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261	(정정청구) (재)○○○○○연구원 對 JTBC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감쪽같이 사라진 희귀 유물...』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연구원이 ○○○○랜드 개발현장에서 발굴된 비파형동검의 출토 사실을 숨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랜드 출토 비파형동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3월 17일자 뉴스홈면)

2015서울조정 2262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JTBC
조 정 대 상	(1) 『“돈 값아라” 무허가 대부업자, 방망이 테러... 경찰 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8일자 사회면) (2) 『“돈 값아라” 불법 대부업자, 야구 방망이 휘두르며 위협』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무허가 불법 대부업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돈 값아라” 불법 대부업자, 야구 방망이 휘두르며 위협』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263~2266, 2396~2399	(각 정정·손배청구) (주)○○○코퍼레이션 對 TV조선 ^(2263·2264, 2396~2399) , 인터넷 TV조선 ^(2265·2266)
조 정 대 상	(1) 7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공영-기무사·방사청 유착 의혹』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2월 12일자) (2) 뉴스쇼판 프로그램 『[TV조선 단독] 군피아, ○○공영에 대거 취업… 고문에 대표까지』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2일자 다시보기면) (3) 뉴스쇼판 프로그램 『○○공영, 인건비 부풀려 단가 뺄튀기 의혹』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2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의 전직 군 출신 고위인사 채용이 군 비리와 연결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267~2298	(각 정정·손배청구) 조○○ 對 뉴스1코리아 ^(2267·2268) , 인터넷 서울신문 ^(2269·2270) , 인터넷 서울경제 ^(2271·2272) , 엑스포츠뉴스 ^(2273·2274) , 인터넷 스포츠경향 ^(2275·2276) , 인터넷 스포츠동아 ^(2277·2278) ,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2279·2280) ,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2281·2282) , 인터넷 헤럴드경제 ^(2283·2284) , e머니투데이 ^(2285·2286) , 뉴스핌 ^(2287·2288) , 조선닷컴 ^(2289·2290) , 아시아경제닷컴 ^(2291·2292) , 한강타임즈 ^(2293·2294) , CBC뉴스 ^(2295·2296) , 세계닷컴 ^(2297·2298)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대한항공 여승무원의 웃음, 사무장의 눈물… ‘그것이 알고 싶다’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신문 :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 제안에 검찰 조사서 입장 바꿔』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뉴스면) 외 1건 - 인터넷 서울경제 : 『대한항공, 박○○ 사무장 내쫓으려 짜라시 작업? 동료 여승무원 섬뜩한 미소 ‘경악’』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엑스포츠뉴스 : 『“그것이” 대한항공 승무원, 미소에 누리꾼 ‘악마의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박○○ 사무장 ‘뒷통수’ 친 대한항공 女승무원의 ‘소름 돋는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동아 :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직 제안에 양심 팔았나 ‘똥 모를 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베리타스알파 : 『대한항공 여승무원 교수 제안 ‘의미심장 미소’… 그것이 알고 싶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뉴스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301	(정정청구) (사)○○○○○협회 對 인터넷 청년의사
조 정 대 상	『○○협 김○○ 회장, 한방병원 아닌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의료면)
신청인 주장	한 의사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촉구하며 단식하던 신청인 협회장이 악화되자 양방병원 응급실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 회장 단식』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1일자 의료면)

2015서울조정 2304	(손배청구) 정○○ 對 MBN
조 정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육아업체 대표 잠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육아앨범 제작 환불 관련 분쟁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상호를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모자이크 등 주의의무 이행)

2015서울조정 2305, 2306	(각 반론청구) 국립경찰병원 對 KBS-1TV ⁽²³⁰⁵⁾ , 헬스코리아뉴스 ⁽²³⁰⁶⁾
조 정 대 상	• KBS-1TV : (1) 뉴스9 프로그램 『“소아환자 안돼요!” 응급환자 가려받는 경찰 병원』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6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경찰병원서 응급환자 이송 후 사망”... 누구 책임?』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0일자) • 헬스코리아뉴스 : 『경찰병원, 총체적 난국... 응급실 찾은 환자 진료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의사면)
신청인 주장	경찰병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 소아환자의 진료를 거부했고, 응급환자를 타 병원으로 이송하다 숨지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KBS-1TV/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헬스코리아뉴스/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경찰병원 응급환자 진료 거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4월 13일자)

2015서울조정 2307~2319	(각 손해청구) 권 ○ 對 JTBC ⁽²³⁰⁷⁾ , 인터넷 JTBC ⁽²³⁰⁸⁾ , 인터넷 MBN ⁽²³⁰⁹⁾ , 인터넷 TV조선 ⁽²³¹⁰⁾ , MBN ⁽²³¹¹⁾ , TV조선 ⁽²³¹²⁾ , 연합뉴스TV ^(2313·2314) , 인터넷 연합뉴스TV ^(2315·2316) , 채널A ⁽²³¹⁷⁾ , 인터넷 채널A ⁽²³¹⁸⁾ , 더팩트 ⁽²³¹⁹⁾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현장 프로그램 『유대균 “계열사 돈, 구원파 자금으로 써”… 일부 혐의 부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JTBC 8월 27일자 뉴스홈면) 외 3건 • MBN : 뉴스8 프로그램 『유대균 첫 재판… 73억 횡령 일부 부인』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MBN 8월 27일자 뉴스면) 외 1건 • TV조선 : 뉴스1 프로그램 『유대균 등 ‘일시 석방’ 여부 이르면 오늘 결정』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8일자, 인터넷 TV조선 8월 28일자 다시보기면) 외 6건 • 연합뉴스TV : 뉴스와이 프로그램 『‘꽃꽃’ 박○○ 재판 내내 ‘한숨’만… 유대균 ‘긴장’』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8월 27일자 다시보기면) 외 10건 • 채널A : 뉴스특보 프로그램 『‘거구’ 유대균 초취… ‘꽃꽃 무사’ 박○○ 체념』 제하의 보도 (2014년 8월 27일자 인터넷 채널A 8월 27일자 다시보기면) 외 2건 • 더팩트 : 『‘서둘러 법원 빠져나가는 오○○ 전 대사’』 제하의 사진 (2014년 8월 27일자 TF포토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공판을 참관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320, 2321	(각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동아일보 ⁽²³²⁰⁾ , 동아닷컴 ⁽²³²¹⁾
조 정 대 상	『도넜은 선거공신 행기』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2월 16일자 18면, 동아닷컴 2월 16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세종축제 운영업체로 지방선거당시 이춘희 시장 캠프와 관련되었던 특정 업체를 선정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2322	(추후청구) 송○○ 외 5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투자금 돌려달라... 조폭 동원 감금』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조폭 동원해 투자자 감금 협박』 송모 씨 등 5명 무혐의』 제하의 기사 (KBS 미디어 2015년 3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323~2330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공항공사 對 한국일보 ^(2323·2324) , 인터넷 한국일보 ^(2325·2326) , 더스쿠프 ^(2327·2328) , 인터넷 더스쿠프 ^(2329·2330)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김포공항 아웃렛 상인들 생존권을 보장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9일자 사회면) - 더스쿠프 : 『김포공항 아울렛 상인들의 눈물, 희망은 사라지고 빚만 남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26~27면, 인터넷 더스쿠프 2월 12일자 Current Economy면)
신청인 주장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입점 대형마트 상인들과 운영업체 사이에 발생한 판매 대금 관련 분쟁에 책임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로 적합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 - 각 취하 (더스쿠프, 인터넷 더스쿠프/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331	(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황사 막는 이색 상품 ‘인기’』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황사 관련 보도를 하면서 자녀와 함께 외출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5서울조정 2332~2337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문화방송 對 한겨레21 ⁽²³³²⁾ , 인터넷 한겨레21 ⁽²³³³⁾ (각 정정·반론청구) 한겨레21 ^(2334·2335) , 인터넷 한겨레21 ^(2336·2337)
조 정 대 상	(1) 『치밀하고 교묘한 MBC ‘해고 프로젝트’』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4년 12월 2일자 14면~18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일자 표지이야기면) (2) 『MBC 인사평가, 상호성과 공정성 대신 일방성만 강화』 제하의 기사 (한겨레21 2014년 12월 8일자 26면~28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MBC가 경영진이나 보도내용을 비판하는 사원에게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사평가에 객관성이 없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338, 2339	(각 정정청구) 인○○ 對 불교닷컴 ⁽²³³⁸⁾ , 인터넷 불교신문 ⁽²³³⁹⁾
조 정 대 상	• 불교닷컴 : 『인○○ 목사 사육에 국립공원 훼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3일자 불교뉴스면) • 인터넷 불교신문 : 『“인○○ 목사 사육으로 지리산 일대 훼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개인적인 욕심으로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의 근대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불교닷컴/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불교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인○○ 목사 사육에 국립공원 훼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불교닷컴 2015년 3월 16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340·2341	(정정·손배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KBS에 이완구 보도 막는 세력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KBS 내부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를 막는 세력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346~2359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매경닷컴 ^(2346·2347) , e머니투데이 ^(2348·2349) , 뉴시스 ^(2350·2351) , 시사포커스신문 ^(2352·2353) , 인터넷 시민일보 ^(2354·2355) , SSTV ^(2356·2357) , 인터넷 일요서울 ^(2358·2359)
조 정 대 상	• 매경닷컴 : 『[속보] 검찰 “신엄마 지시로 구원파 신도 박모 씨가 보관”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띠지·만년필 수십개 발견』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뉴시스 : 『[종합]檢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가방 포함』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시사포커스신문 : 『[속보] 검찰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현금無, 만년필 30여 개 등 발견”』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민일보 : 『검찰, 유병언 가방 ‘1번’ 포함 3개 또 찾아』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SSTV : 『유병언 가방 추가 발견, 현금은 없었다… 의혹단서는 확보 못 해』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서울 : 『검찰, 유병언 가방 또 발견… 도피자금·정관계 로비장 부는 없어』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 신도에게 유병언의 도피용 가방을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e머니투데이, 시사포커스신문, 인터넷 시민일보, 인터넷 일요서울/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매경닷컴, 뉴시스, SSTV/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e머니투데이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띠지·만년필 수십 개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포커스신문 :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현금無, 만년필 30여개 등 발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민일보 : 『검찰, 유병언 가방 ‘1번’ 포함 3개 또 찾아』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서울 : 『검찰, 유병언 가방 또 발견… 도피자금·정관계 로비장 부는 없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360~2395, 2400, 2611~2616, 2750~2759	(각 손해청구) 박○○ 對 인터넷 TV조선 ^(2360~2366) , 인터넷 채널A ^(2367~2371) , 인터넷 YTN ^(2372~2374) , 뉴스1코리아 ^(2375~2377, 2611, 2616) , 연합뉴스 ^(2378, 2379) , 인터넷 연합 뉴스TV ^(2380~2382, 2400) , 인터넷 서울신문 ^(2383, 2384) , KBS미디어 ^(2385, 2386, 2750~2752) , 인터넷 이데일리 ⁽²³⁸⁷⁾ , 아시아투데이닷컴 ^(2388, 2613, 2757) , e머니투데이 ^(2389, 2612, 2753, 2754) , 뉴스천지 ⁽²³⁹⁰⁾ , 데일리한국 ⁽²³⁹¹⁾ , SBS 콘텐츠허브 ⁽²³⁹²⁾ , 인터넷 JTBC ⁽²³⁹³⁾ , 매경닷컴 ⁽²³⁹⁴⁾ , 온라인 중앙일보 ⁽²³⁹⁵⁾ , 아시아경제닷컴 ⁽²⁶¹⁴⁾ , 노컷뉴스 ⁽²⁶¹⁵⁾ , 인터넷 메트로 ⁽²⁷⁵⁵⁾ , 쿠키뉴스 ⁽²⁷⁵⁶⁾ , 뉴스1코리아 ⁽²⁷⁵⁸⁾ , wow한국경제TV ⁽²⁷⁵⁹⁾
조 정 대 상	• 인터넷 TV조선 : 『유대균, 일부 혐의 부인… 박○○,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뉴스면) 외 6건 • 인터넷 채널A : 『유대균 첫 재판서 ‘횡령 부인’… 형집행정지 신청』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4건 • 인터넷 YTN : 『유대균 일부 혐의 부인… 박○○ 모두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건 • 뉴스1코리아 : 『“유대균 호위무사” 박○○ 씨 첫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2건 • 연합뉴스 : 『유대균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박○○은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대균 “회삿돈 개인적으로 안 써… 구원파 자금”』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외 2건 • 인터넷 서울신문 : 『박○○, 체포 당시의 꺾꺾한 모습 어디로 가고…』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8일자 사회면) 외 14매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TV조선, SBS 콘텐츠허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인터넷 채널A^(1739병합) 250만원, 인터넷 YTN^(1747병합) 300만원, 연합뉴스^(1774병합) 100만원, 인터넷 연합뉴스TV^(1766병합) 100만원, KBS미디어^(1751병합) 200만원, 인터넷 JTBC^(1743병합) 5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1770병합) 100만원 - 동의 후 지급) • 각 기각 (뉴스1코리아,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이데일리, 아시아투데이닷컴, e머니투데이, 뉴스천지, 데일리한국, 매경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메트로, 쿠키뉴스, 뉴스1코리아, wow한국경제TV/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인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이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이익보다 우선) • 취하 (노컷뉴스^(1763병합)/사유 - 손해배상 200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401·2402, 2404·2405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시사위크 ^(2401·2402) , 노컷뉴스 ^(2404·2405)
조 정 대 상	· 시사위크 : 『[방산비리] 이○○ ○○그룹 회장 정조준… ‘비리화수분’ 주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7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공영 담당 기무사 요원 부인 ○○계열사 취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산비리의 핵심인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2403	(정정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사이버 성폭력, 그 후』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2406~2419, 2620~2623	(각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스타엔 ⁽²⁴⁰⁶⁾ , 업다운뉴스 ⁽²⁴⁰⁷⁾ , 이투데이 ⁽²⁴⁰⁸⁾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²⁴⁰⁹⁾ , 인터넷 YTN ⁽²⁴¹⁰⁾ , 인터넷 문화일보 ⁽²⁴¹¹⁾ , 민중의소리 ⁽²⁴¹²⁾ , 인터넷 서울경제 ⁽²⁴¹³⁾ , 인터넷 서울신문 ⁽²⁴¹⁴⁾ , 티비리포트 ⁽²⁴¹⁵⁾ , 국제뉴스 ⁽²⁴¹⁶⁾ , 뉴스천지 ⁽²⁴¹⁷⁾ , 뉴스캔 ⁽²⁴¹⁸⁾ , 뉴시스 ⁽²⁴¹⁹⁾ , 인터넷 스포츠조선 ⁽²⁶²⁰⁾ , 스타뉴스 ⁽²⁶²¹⁾ , 연합뉴스 ⁽²⁶²²⁾ , 인터넷 코리아데일리 ⁽²⁶²³⁾
조 정 대 상	· 스타엔 : 『하강레포트 타던 어린이 추락사…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 ‘안전 불감증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e토픽면) · 업다운뉴스 : 『○○○ 사고, 에이 잘 좀 하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뉴스면) 외 1건 · 이투데이 : 『하강레포트 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화제면) 외 1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하강레포트 타던 어린이 추락사, 24m 추락 후 과다출혈로 사망… 사건 당시 관계자 달랑 1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YTN : 『놀이시설 타던 12세 어린이 20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뉴스면) · 인터넷 문화일보 : 『보은 놀이공원서 기구타던 12세 어린이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12세 어린이 놀이기구 타다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8일자 사회면) 외 7개 매체
신청인 주장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의 원인이 된 놀이기구를 신청인 회사가 설치·운영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스타엔, 이투데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민중의소리,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서울신문, 티비리포트, 국제뉴스, 뉴스천지, 뉴스캔, 뉴시스, 연합뉴스/사유 : 기사수정) · 각 취하 (업다운뉴스, 인터넷 문화일보, 인터넷 스포츠조선, 스타뉴스, 인터넷 코리아데일리/사유 : 기사삭제) · 취하 (인터넷 YTN/사유 : 보도약속)
이 행 결 과	· 스타엔 : 『하강레포츠 타던 어린이 추락사… 원인은 안전수칙 위반? ‘안전불감증 증폭’』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10일자 e토픽면) · 이투데이 : 『하강레포츠 기구 타던 어린이 추락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화제면)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 『하강레포츠 타던 어린이 추락사, 24m 추락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사건 당시 관계자 달랑 1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사회면) · 민중의소리 : 『12세 어린이 놀이기구 타다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보은 놀이공원서 기구타던 12세 어린이 추락해 숨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6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2015서울조정 2420	(정정청구) 국가인권위원회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검·경 인권침해” 지난해 1538건 진정… 인권위, 8건만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6면) (2) 『긴급구제 결정, 법령·정책권고 등 모두 감소… ‘거꾸로 인권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6면)
신청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구제 실적을 축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2일자 알림면)

2015서울조정 2421·2422	(정정·손배청구) ○○○○지주(주)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부산 ○○○○지주, 소액주주운동 억압 ‘원성’』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액주주의 경영권 참여를 억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부산 ○○○○지주, 소액주주운동 억압 ‘원성’』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2015년 3월 10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2423	(손배청구) 양○○ 외 1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동거녀 살해사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살인사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을 촬영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4백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424~2427	(각 정정청구) ○○○ 사태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외 1인 對 미디어펜 ⁽²⁴²⁴⁾ , 인터넷 시사뉴스 ⁽²⁴²⁵⁾ (정정·손배청구) 김○○ 對 미디어펜 ^(2426·2427)
조 정 대 상	• 미디어펜 : 『조억동 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사뉴스 : 『조억동 광주시장, 전교조에 ‘무조건 굴복’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교조와 연관되었고, 사학죽이기에 앞장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미디어펜^(2424, 2426), 인터넷 시사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미디어펜⁽²⁴²⁷⁾/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이 행 결 과	• 미디어펜 : 『경기광주시장 전교조에 백기 들었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시사뉴스 : 『‘조억동 광주시장, 전교조에 굴복’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428, 2429, 2499, 2500	(각 손배청구) 정○○ 對 YTN ^(2428, 2499) , 인터넷 YTN ^(2429, 2500)
조 정 대 상	뉴스Q 프로그램 『취객 매달고 경찰차 30미터 ‘아찔 운행’』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3월 7일자, 인터넷 YTN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이 취객을 매달고 운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보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YTN⁽²⁴²⁸⁾, 인터넷 YTN⁽²⁴²⁹⁾/사유 : 자진취하)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YTN⁽²⁴⁹⁹⁾, 인터넷 YTN⁽²⁵⁰⁰⁾/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금액지급)

2015서울조정 2430~2435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겨레21 ^(2430·2431) , 인터넷 한겨레 ^(2432·2433) , 인터넷 한겨레21 ^(2434·2435)
조 정 대 상	- 한겨레21 : 『‘중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 배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20면~27면, 인터넷 한겨레21 3월 4일자 뉴스섹션면) - 인터넷 한겨레 : 『‘중편이 낳은 괴물’들의 거친 입·독한 입·쏟린 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수인 신청인이 정치, 사회분야에 대해 발언할 만한 전문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중편이 낳은 괴물’들 막장 배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수정 (인터넷 한겨레21 2015년 3월 27일자 뉴스섹션면)

2015서울조정 2436~2445	(각 추후청구) 장○○ 對 KBS-1TV ⁽²⁴³⁶⁾ , KBS-2TV ⁽²⁴³⁷⁾ , MBC-TV ⁽²⁴³⁸⁾ , MBN ⁽²⁴³⁹⁾ , SBS-TV ⁽²⁴⁴⁰⁾ , YTN ⁽²⁴⁴¹⁾ , 연합뉴스 TV ⁽²⁴⁴²⁾ , e머니투데이 ⁽²⁴⁴³⁾ , 온라인 중앙일보 ⁽²⁴⁴⁴⁾ , 인터넷 한겨레 ⁽²⁴⁴⁵⁾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문화재 지킴이가 도굴… 보물급도 손대』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 KBS-2TV : 아침뉴스타임 프로그램 『도굴 문화재 은닉 적발… 사립 박물관』 제하의 보도 (2014년 10월 1일자)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문화재 지킴이가 ‘도굴’… “문화재 2백33점 훔쳐”』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 MBN : 뉴스8 프로그램 『문화재 지킴이가 문화재 2백여 점 도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 SBS-TV : 뉴스8 프로그램 『‘고양이에게 생선을?’… 문화재 지킴이가 도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 YTN : 뉴스Q 프로그램 『‘문화 지킴이’가 문화재 도굴』 제하의 보도 (2014년 4월 1일자)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문화재를 도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범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함)

2015서울조정 2446~2449	(각 정정·손배청구) (주)○○○산후조리원 對 JTBC ^(2446·2447) , 인터넷 JTBC ^(2448·2449)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아기·산모에게 병 주는 산후조리원... 소비자 피해 급증』 제하의 보도 (JTBC 2014년 12월 4일자, 인터넷 JTBC 12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산후조리원의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450~2452	(각 정정청구) 구립○○노인요양센터 對 MBC-TV ⁽²⁴⁵⁰⁾ , SBS-TV ⁽²⁴⁵¹⁾ , JTBC ⁽²⁴⁵²⁾
조 정 대 상	•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포라고 하더니 다리절단까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SBS-TV : 8뉴스 프로그램 『아픈 노인 방치·폭행... 못 믿을 요양병원·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멀쩡하던 다리, 절단 수술까지...” 노인잡는 요양 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센터의 과실로 입소 노인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453, 2454	(각 정정청구) 강남구청 對 머니투데이 ⁽²⁴⁵³⁾ , e머니투데이 ⁽²⁴⁵⁴⁾
조 정 대 상	『구룡마을 개발안 또 퇴짜... 주민들 한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24면, e머니투데이 3월 6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과 SH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룡마을 개발업무 관련 내용을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455	(손배청구) 정○○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의 불량 핸드백 A/S 대응법』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8일자 Consumer면)
신청인 주장	제조업체 과장인 신청인이 제품하자 관련 언론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으로 답변했다고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456·2457, 2468~2473, 2519·2520	(각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對 노컷뉴스 ^(2456·2457) , 인터넷 국민일보 ^(2468·2469) , 뉴스파워 ^(2470·2471) , 인터넷 CTS기독교TV ^(2472·2473) , 경제투데이 ^(2519·2520)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신학기 이단 포교활동 주의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종교면) • 인터넷 국민일보 : 『○○○○○협의회 대학가에 이단 경계주의보 발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시사면) 외 1건 • 뉴스파워 : 『월간 〈현대종교〉 대학별 이단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교계뉴스면) • 인터넷 CTS기독교TV : 『주간 교계 기자수첩』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뉴스면) • 경제투데이 : 『“○○○ 조심하세요” 3월 신입생들 “주의해야”… “일대일로 친해진 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종합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이단 사이버 종교단체이고, 포교활동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스파워/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CTS기독교TV) • 취하 (경제투데이/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뉴스파워 : 『○○○(○○○○○연합)이단 포교 활동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교계뉴스면) • 경제투데이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일자 종합면)
2015서울조정 2458~2467	(각 추후청구) 문○○ 對 온라인 중앙일보 ⁽²⁴⁵⁸⁾ , SBS 콘텐츠허브 ⁽²⁴⁵⁹⁾ , 아시아경제닷컴 ⁽²⁴⁶⁰⁾ , e머니투데이 ⁽²⁴⁶¹⁾ , 뉴스1코리아 ⁽²⁴⁶²⁾ , 연합뉴스 ⁽²⁴⁶³⁾ , 인터넷 MBN ⁽²⁴⁶⁴⁾ , 매경닷컴 ⁽²⁴⁶⁵⁾ , 줌 ⁽²⁴⁶⁶⁾ , 노컷뉴스 ⁽²⁴⁶⁷⁾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대한○○연맹 회장,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2건 • SBS 콘텐츠허브 :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연맹 회장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억대 사기’ 대한○○연맹 회장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한○○연맹 문○○ 회장, 사기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3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1건 • 뉴스1코리아 : 『대한○○연맹 문○○ 회장, 사기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연맹 회장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스포츠연맹 회장인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474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1) 『‘500억 수출 성과’ 구체적 근거 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8면) (2) 『‘2천억 수출 계약’ 상대 사우디 제약사 ‘실체 모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10면) (3) 『국내업체, 항암제 사업 손잡았다 올 초 ‘중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대통령의 중동순방에 맞춰 발표한 의약품 수출계약 등의 내용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정정보도 내지 반론보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2015서울조정 2475	(정정청구) 유○○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마약 했다가 징역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마약 투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차세대 미디어 아티스트 마약 했다가 징역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5년 3월 2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476·2477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학원 對 내외통신뉴스
조 정 대 상	『제천 모 사회복지법인 ‘인권유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기부금 횡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478~2486	(각 손해청구) 추○○ 對 인터넷 TV조선 ^(2478, 2479) , 인터넷 채널A ^(2480, 2481) , 인터넷 JTBC ⁽²⁴⁸²⁾ , 인터넷 MBN ⁽²⁴⁸³⁾ , 인터넷 연합뉴스TV ⁽²⁴⁸⁴⁾ , KBS미디어 ⁽²⁴⁸⁵⁾ , iMBC ⁽²⁴⁸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TV조선 : 『[주말뉴스 일]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내일 첫 재판』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4일자 사회면) 외 16건 • 인터넷 채널A : 『탤런트 전양자,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사회면) 외 14건 • 인터넷 JTBC : 『‘유병언 측근’ 전양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사회면) 외 3건 • 인터넷 MBN : 『전양자, 초췌한 모습으로 재판 출석』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5일자 다시보기면) 4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내일 첫 재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외 6건 • KBS미디어 외 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측근인 모 탤런트의 공판에 동행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491~2496	(각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JTBC ⁽²⁴⁹¹⁾ , iMBC ⁽²⁴⁹²⁾ , 인터넷 MBN ⁽²⁴⁹³⁾ , 인터넷 TV조선 ⁽²⁴⁹⁴⁾ , 인터넷 연합뉴스TV ⁽²⁴⁹⁵⁾ , 인터넷 채널A ⁽²⁴⁹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JTBC : 『‘유병언 측근’ 전양자 “모든 혐의 인정”…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사회면) 외 3건 • iMBC : 『[연예 투데이] 유병언 측근 배우 전양자,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다시보기면) • 인터넷 MBN : 『금수원 대표 전양자 “법 몰랐다”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일자 다시보기면) • 인터넷 TV조선 : 『직업 뭐죠?... 탤런트 전양자 “노른자 쇼핑 대표”』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6일자 사회면) 외 5건 • 인터넷 연합뉴스TV : 『탤런트 전양자 2차 공판 출석, 혐의 재차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29일자 사회면) 외 5건 • 인터넷 채널A : 『檢, 유대균에 징역 4년- 전양자 징역 1년 구형』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7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측근인 모 탤런트의 공판에 동행한 구원파 신도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2501	(손배청구) 시○○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 눈 프로그램 『황혼의 스캔들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사적 내밀 영역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3백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504	(정정청구) (사)○○○○○○연합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경찰보다 무서운 ○○연” 공갈협박 시달리는 특선판매업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이 특선판매 상공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505·2506	(정정·손배청구) (주)엠비씨경남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MBC 주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뽕튀기 정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을 받아 공동 개최한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시설비가 수익원 부풀려져 정산보고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MBC경남”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509·2510	(정정·손배청구) 이○○ 외 1인 對 불교닷컴
조 정 대 상	『○○대 이사장 소송비는 누구 돈일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불교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교 사무처 직원인 신청인들이 직원 사이에서 평판도 안 좋고, 진급도 못하던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삭제

2015서울조정 2511, 2512	(각 정정청구) 한국석유공사 對 The Korea Times ⁽²⁵¹¹⁾ , 인터넷 The Korea Times ⁽²⁵¹²⁾
조 정 대 상	『\$31.4 mil. missing from HSBC』 제하의 기사 (The Korea Times 2015년 3월 5일자 1면, 인터넷 The Korea Times 3월 4일자 National면)
신청인 주장	한국석유공사가 쿠르드 자치정부에게 자원개발 취득 대가로 송금한 서명보너스가 뇌물일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Regarding the article entitled, ‘\$31.4 mil. missing from HSBC’』 제하의 기사 (인터넷 The Korea Times 2015년 3월 3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2513~2518	(각 정정청구) ○○○○○○ 인권연대 ○○○ 외 1인 對 닥터스뉴스 ⁽²⁵¹³⁾ , 인터넷 병원신문 ⁽²⁵¹⁴⁾ , 메디칼타임즈 ⁽²⁵¹⁵⁾ ,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²⁵¹⁶⁾ , 인터넷 의학신문 ⁽²⁵¹⁷⁾ , 인터넷 후생신보 ⁽²⁵¹⁸⁾
조 정 대 상	• 닥터스뉴스 : 『허위사실 주장 에이즈 환자에 피해주는 것』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병원신문 : 『○○○○요양병원,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 에이즈 감염인 단체측 일방 주장에 해명자료 배포』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뉴스/병원면) • 메디칼타임즈 : 『에이즈 환자에게 명예훼손 당했다는 요양병원,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의사·개원면) 외 1건 • 인터넷 메디칼업저버 : 『에이즈 환자 방치 VS 국립에이즈요양병원 건립 위한 포석』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4일자 병의원면) • 인터넷 의학신문 : 『○○○○요양병원, ‘KBS 추적60분’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후생신보 : 『“병원 부주의로 환자 사망했다?” 명백한 허위사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2일자 병의원면)
신청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사망 및 차별행위 안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병원신문, 메디칼타임즈, 인터넷 의학신문, 인터넷 후생신보/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의학신문/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메디칼업저버/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닥터스뉴스 : 『‘에이즈 단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병원신문 : 『‘에이즈 감염인 단체 국립요양병원 설립 요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뉴스/병원면) • 메디칼타임즈 : 『‘에이즈 감염인 및 동성애 단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의사·개원면) • 인터넷 의학신문 : 『‘에이즈 감염인 단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4년 4월 9일자 의원·병원면) • 인터넷 후생신보 : 『‘○○○○요양병원, 환자 인권침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병의원면)

2015서울조정 2521	(정정청구) 대한민국○○○○○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사고·먹튀 까지… ‘부실’ ○○대장정 추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6일자)
신청인 주장	○○대장정을 주최하는 신청인 단체가 정식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국세청 고유 번호도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부실 ○○대장정 단체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522·2523	(정정·손배청구) (주)○○○○그룹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피자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피자 가맹점주들이 매달 지급하는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갑질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피자에서 무슨 일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4월 3일자 기업면)

2015서울조정 2524~2573, 3617~3666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채널A^(2524·2525), TV조선^(2526·2527), 문화일보^(2528·2529), 인터넷 문화일보^(2530·2531), 연합뉴스 TV^(2532·2533), 연합뉴스^(2534·2535), KBS-1TV^(2536·2537), KBS미디어^(2538·2539), SBS-TV^(2540·2541), SBS 콘텐츠허브^(2542·2543), 노컷뉴스^(2544·2545), 뉴시스^(2546·2547), 데일리안^(2548·2549), e머니투데이^(2550·2551), 미디어펜^(2552·2553), 세계닷컴^(2554·2555), 인터넷 여성신문^(2556·2557), 쿠키뉴스^(2558·2559), 인터넷 한겨레^(2560·2561), 인터넷 TBS^(2562·2563), 네이버^(2564·2565), 다음^(2566·2567), 네이트^(2568·2569), 구글^(2570·2571), 줌^(2572·2573)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경향신문^(3617·3618), 노컷뉴스^(3619·3620), e머니투데이^(3621·3622), 인터넷 메트로^(3623·3624), 세계닷컴^(3625·3626), 인터넷 스포츠경향^(3627·3628), 아시아투데이닷컴^(3629·3630), 인터넷 일요신문^(3631·3632), 인터넷 뉴스신문고^(3633·3634), 조선닷컴^(3635·3636), 인터넷 헤럴드경제^(3637·3638), 연합뉴스^(3639·3640), 뉴시스^(3641·3642), 뉴스1코리아^(3643·3644), KBS미디어^(3645·3646), iMBC^(3647·3648), SBS 콘텐츠허브^(3649·3650), MBN^(3651·3652), 인터넷 MBN^(3653·3654), 현대HCN관악방송^(3655·3656), 네이버^(3657·3658), 다음^(3659·3660), 네이트^(3661·3662), 구글^(3663·3664), 줌^(3665·3666)
조 정 대 상	- 채널A :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대 교직원의 막말』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 TV조선 : 아침종합뉴스 프로그램 『○○대 성희롱 교직원, 행정소송 패소』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 문화일보 : 『이번엔 교직원이… 성추문 ‘점입가경’ ○○대』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2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뉴스워치 프로그램 『“성관계로 유혹”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 연합뉴스 : 『“성관계로 유혹”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사회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징계는 정당』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KBS미디어 2월 12일자 사회면) - SBS-TV : 저녁8시뉴스 프로그램 『성희롱·막말 일삼은 ○○대 교직원 징계는 정당』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2일자, SBS콘텐츠허브 2월 12일자 사회면) 외 40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대학 조교와 학생에게 성희롱과 막말을 일삼았다는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검찰조사에서 죄가 안됨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조정대상보도가 공개재판절차에 관한 것인데다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2015서울조정 2574·2575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당신의 열정을 헐값에 삽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최저임금을 지키는 가게가 없다는 보도를 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8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576	(정정청구) 인천광역시청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유정복 시장, 조카·처남 3명 상습 채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인천광역시가 유정복 시장 조카를 시장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577, 2578	(각 손해청구) 한○○ 對 MBN ⁽²⁵⁷⁷⁾ , 인터넷 MBN ⁽²⁵⁷⁸⁾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4살 어린이의 호기심일까? 성추행일까?』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3월 19일자, 인터넷 MBN 3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아인 신청인이 같은 어린이집 남자 아동들에게 성추행 당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특정될 수 있게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579·2580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농협 조합장 후보 허위사실 유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581~2589	(각 정정청구) (사)○○○○협회 對 조선일보 ⁽²⁵⁸¹⁾ , 조선닷컴 ⁽²⁵⁸²⁾ , 동아일보 ⁽²⁵⁸³⁾ , 동아닷컴 ⁽²⁵⁸⁴⁾ , 세계일보 ⁽²⁵⁸⁵⁾ , 세계닷컴 ⁽²⁵⁸⁶⁾ , 중앙일보 ⁽²⁵⁸⁷⁾ , 온라인 중앙일보 ⁽²⁵⁸⁸⁾ , 조선비즈닷컴 ⁽²⁵⁸⁹⁾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방통위, 비지상파 피해 알고도 광고총량제 강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2면) 외 3건 - 조선닷컴 : 『방통위 ‘광고 총량제’ 강행,朴 정부 눈엔 지상파만』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오피니언면) - 동아일보 : 『방통위는 지상파 특혜 주는 광고총량제에서 손떼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31면, 동아닷컴 3월 4일자 오피니언면) - 세계일보 : 『신문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특혜 정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10면, 세계닷컴 3월 2일자 뉴스면) - 중앙일보 : 『광고총량제 저지 위해 행동 나설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3면, 온라인 중앙일보 3월 2일자 뉴스면) - 조선비즈닷컴 : 『[오늘의 세상] 방통위, 非지상파 被害 알고도 광고총량제 강행』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뉴스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한 연구소의 조사에서 광고주의 81.7%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광고를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조선일보, 조선닷컴, 세계일보, 세계닷컴,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조선비즈닷컴/사유 : 정정보도) - 각 기각 (동아일보, 동아닷컴/사유 : 당사자 부적격)
이 행 결 과	- 조선일보 : 『[바로잡습니다] 1월 31일자 A2면 ‘방통위, 비지상파 피해 알고도 광고총량제 강행’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2면, 조선닷컴, 조선비즈닷컴 4월 18일자 사회면) - 세계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3일자 10면 ‘신문協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특혜 정책”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2면, 세계닷컴 4월 21일자 사회면) -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3월 2일자 3면 ‘광고총량제 저지 위해 행동 나설 것’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16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590~2593	(각 정정·손배청구) 영화진흥위원회 對 에너지경제 ^(2590·2591) , 인터넷 에너지경제 ^(2592·2593)
조 정 대 상	『누가 탄파라를 투사로 만드는가』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3월 5일자 19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3월 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영화상영 등급분류 면제 추천에 관한 분류 규정을 개정하여 특정 영화의 상영을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594~2602	(각 손해청구) 김○○ 對 인터넷 JTBC ⁽²⁵⁹⁴⁾ , KBS-1TV ⁽²⁵⁹⁵⁾ , KBS미디어 ⁽²⁵⁹⁶⁾ , 세계 닷컴 ⁽²⁵⁹⁷⁾ , 인터넷 스페셜경제 ⁽²⁵⁹⁸⁾ , 게임플 ⁽²⁵⁹⁹⁾ , 인터넷 일요서울 ⁽²⁶⁰⁰⁾ , 스포츠서울 (2601), 이타임즈 ⁽²⁶⁰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JTBC : 『제 역할 못하고 내부 갈등만... ○○위 폐지 추진』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29일자 문화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성추행·복무 태만... ○○위 ‘총체적 문제’』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7일자, KBS미디어 11월 17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추문에 흔들리는 ○○위... 알력 싸움에 업게 피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6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페셜경제 : 『게임물관리위원회 설기환 號, ‘존폐’ 갈림길 내몰린 까닭』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사회면) • 게임플 : 『○○위, 존폐 위기 왜?』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31일자 뉴스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기관의 계약직 여성노조대의원인 신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성희롱 사건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문제 제기가 사측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603~2606	(각 정정·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한국일보 ^(2603·2604) , 한국일보 (2605·2606)
조 정 대 상	『기성회비 반환 다가오자 ○○○○대, 교직원들에 평평』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3월 5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이 기성회비 제도 폐지를 앞두고 회비를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고, 교과부의 기성회비 관련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4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607	(손배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쌍둥이 낳는 달 있다 황당 한의사 자격정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자격 정지를 받은 한의사에 관해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한의사인 신청인의 초상을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608~2610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KT, 건물 옥상에 420톤 구조물… 입주민 불안』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2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유아관련 서비스 업체가 입주한 건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2015서울조정 2617, 2618	(각 정정청구) 영화진흥위원회 對 경향신문 ⁽²⁶¹⁷⁾ , 인터넷 경향신문 ⁽²⁶¹⁸⁾
조 정 대 상	『부산국제영화제 흔드는 손들』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3월 18일자 영화면, 인터넷 경향신문 3월 18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영화진흥위원회가 등급제 개정을 추진했고, 영화제 출품작들에 대한 사전검열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영화진흥위원회 사전검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4월 17일자 24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16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2619	(정정청구) 농업회사법인(주)○○○○○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단독]해썬 인증 업체 불법 지하수로 도축… 위생 상태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건설사에 지하수시설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624~262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산업(주) 외 1인 對 업코리아 ^(2624~2626) , 뉴스 뷰 ^(2627~2629)
조 정 대 상	- 업코리아 : 『○○시청 ○○○○과, ‘불법 종합선물세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지역면) - 뉴스뷰 : 『○○시청 ○○○○과, ‘불법 종합선물세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시청 공무원이 시청 외주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630·2631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외 1인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한국, “반기문 자랑스럽다” 말할 자격 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병원이 에이즈환자의 인권을 유린하여 질병관리본부와의 위탁사업이 해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6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632	(정정청구) ○○캐피탈(주) 對 시사N
조 정 대 상	『○○과 호텔 사이 무슨 일 있었기에』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8일자 36면~4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소기업인에게 거액을 대출해 주고 조직적으로 대출금 상환을 방해하여 중소기업 소유의 호텔을 강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633	(반론청구) (사)○○○○○○○○기관협회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노예같은 삶... 최저임금 받는 ‘요양보호사’』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의 회원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634~2636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선데이뉴스쇼 프로그램 『“쌍욕대응 vs 기획 고소” 홍가혜 논란, 쟁점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인터넷 채널A 2015년 5월 7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637·2638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외 2인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경찰보다 무서운 한노연” 공갈협박 시달리는 특선판매업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5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특선판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익신청/ 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639, 2640	(각 반론청구) 국립경찰병원 對 MBN ⁽²⁶³⁹⁾ , 인터넷 MBN ⁽²⁶⁴⁰⁾
조 정 대 상	굿모닝 MBN 프로그램 『경찰병원에서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도』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2월 9일자, 인터넷 MBN 2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국립경찰병원이 소속 고위 공무원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병원 성추행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MBN 2015년 4월 1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641	(정정청구) 성남시청 對 문화일보
조 정 대 상	『이번엔 ‘공짜 산후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5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성남시의 산후조리 지원사업에 연간 3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서울조정 2642, 2643, 2680, 2746, 2861~2863	(각 반론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기독교일보 ⁽²⁶⁴²⁾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²⁶⁴³⁾ , 뉴스미션 ⁽²⁶⁸⁰⁾ , 기독교인뉴스 ⁽²⁷⁴⁶⁾ (정정·반론·손배청구) 노컷뉴스 ^(2861~2863)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기독교일보 :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31일부터 여는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8일자 교단/단체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뉴욕교협 이단대책협 “31일부터 여는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선교면) - 뉴스미션 : 『한교연, ‘박○○ 씨’ 관련 피해방지 대책 세워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0일자 교계면) - 기독교인뉴스 : 『한교연, ‘박○○ 씨’ 관련 피해방지 대책 세워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교단면) - 노컷뉴스 : 『수백억대 주식 사기’ 박○○ 씨 첫 공판서 모두 부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신청인 대표 목사가 주식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처럼 단정적으로 제목을 뽑아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기독교일보,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뉴스미션, 기독교인뉴스/사유 : 반론보도) - 조정성립 (노컷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기독교일보 :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4일자 교단/단체면) - 인터넷 크리스천투데이 : 『‘구원파 맨하탄 세미나 주의’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선교면) - 뉴스미션 : 『[한교연, ‘박○○ 씨’ 관련 피해방지 대책 세워달라]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교계면) - 기독교인뉴스 : 『한교연 ○○○○선교회 박○○ 불법성 폭로 기자회견 가져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1일자 교단면) - 노컷뉴스 : 『수백억대 주식 사기’ 혐의 박○○ 씨 첫 공판서 모두 부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644~2664, 2668~2670	(각 반론·손배청구) 최○○ 對 채널A ^(2644·2645) , 동아일보 ^(2646·2647) , wow 한국경제TV ^(2648·2649) , YTN ^(2650·2651) , 이투데이 ^(2652·2653) , TV조선 ^(2654·2655, 2662~2664) , 인터넷 헤럴드경제 ^(2656·2657) , 아주뉴스 ^(2658·2659) , 뉴데일리 ^(2660·2661) , 조선닷컴 ^(2668~2670)
조 정 대 상	• 채널A : 시사인사이드 프로그램 『홍가혜 측 변호인, 악플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7일자) • 동아일보 : 『홍가혜 측 변호사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사회면) • wow 한국경제TV : 『비방댓글 고소 홍가혜 변호사, 피고소인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0일자 뉴스면) • YTN : 이슈오늘 프로그램 『홍가혜 측 변호사 “합의가 장난이야?”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7일자) • 이투데이 : 『홍가혜 변호사, 2분 만에 문자 5통 “싫으면 합의하세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사회면) 외 5개 매체
신청인 주장	홍가혜 변호인인 신청인이 피소된 네티즌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YTN/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채널A, 동아일보, TV조선/사유 : 자진취하) • 각 취하 (이투데이,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선닷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wow한국경제TV, 아주뉴스, 뉴데일리/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YTN : 이슈오늘 프로그램 『「홍가혜 측 변호사 “합의가 장난이야?”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2일자) • wow 한국경제TV : 『비방댓글 고소 홍가혜 변호사와 피고소인 문자 내용에 누리꾼 관심 폭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최신뉴스면) • 아주뉴스 : 『[반론보도문] 홍가혜 측 변호사가 “1년 죽어라 일하면 1000만원 못 버냐” 고 말한 경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 : 『[반론보도문] 홍가혜 측 변호사가 피고소인에게 “노가다를 하든 알아서 돈 만들어라” 하고 말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665~2667	(각 정정청구) 신○○ 對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조 정 대 상	(1) 『MBC 나온 그 ○○○구 신○○ 산부인과 ‘과실치사 검찰조사만 3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커뮤니티면) (2) 『신○○ 산부인과 ‘산모사망 보도 기자 고소’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커뮤니티면) (3) 『신○○ 산부인과 ‘의료사고 검찰수사 기사 내려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커뮤니티면)
신청인 주장	산부인과 의사인 신청인이 의료사고로 전과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MBC 나온 그 ○○○구 신○○ 산부인과 ‘과실치사 검찰조사만 3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사진 삭제 (2015년 4월 27일자 커뮤니티면)
2015서울조정 2671~2676	(각 손해청구) 김○○ 對 KBS-1TV ⁽²⁶⁷¹⁾ , KBS미디어 ⁽²⁶⁷²⁾ , MBN ⁽²⁶⁷³⁾ , 인터넷 MBN ⁽²⁶⁷⁴⁾ , TV조선 ⁽²⁶⁷⁵⁾ , 인터넷 TV조선 ⁽²⁶⁷⁶⁾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KBS미디어 2월 11일자 사회면 외 2건) • MBN : 뉴스8 프로그램 『캄보디아인 수십 명 패싸움... ‘정글도’까지 휘둘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MBN 2월 11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판 프로그램 『“우리 애를 때려?”... 집단 패싸움 벌인 캄보디아인』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인터넷 TV조선 2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난투극을 보도 하면서 식당 상호를 무단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PR, 후속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지급)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MBN, 인터넷 MBN/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산정의 근거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 각 취하 (KBS-1TV, KBS 미디어/사유 : 관할합의)
2015서울조정 2677	(정정청구) ○○○○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1)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알고계십니까, 산분해간장편』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5일자) (2) 경제매거진 M 프로그램 『Y리포트 산분해간장편』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3) 기분좋은 날 프로그램 『한국인의 힘! 고추장, 된장, 간장 - 우리 장의 모든 것』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산분해간장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TV속의 TV 프로그램 『〈산분해간장의 유해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6일자)

2015서울조정 2678·2679	(정정·손배청구) 윤○○ 對 서울일보
조 정 대 상	『○○시 공보관은 언론간의 분열과 불화 조성』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공보담당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청 출입기자간 불화를 조성하고 예산을 사채처럼 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공보담당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서울일보 4월 30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2681~2745	(각 정정청구) 윤○○ 對 인터넷 의정부신문 ⁽²⁶⁸¹⁾ , 인터넷 이데일리 ⁽²⁶⁸²⁾ , 온라인 중앙일보 ⁽²⁶⁸³⁾ , 쿠키뉴스 ⁽²⁶⁸⁴⁾ , 사람일보 ⁽²⁶⁸⁵⁾ , 투데이코리아 ⁽²⁶⁸⁶⁾ , 인터넷 더데일리 포커스 ⁽²⁶⁸⁷⁾ , 인터넷 무예신문 ⁽²⁶⁸⁸⁾ , 폴리뉴스 ⁽²⁶⁸⁹⁾ , 디지털 함께걸음 ⁽²⁶⁹⁰⁾ , 인터넷 헤럴드경제 ⁽²⁶⁹¹⁾ ,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²⁶⁹²⁾ , e머니투데이 ⁽²⁶⁹³⁾ , 연합뉴스 ⁽²⁶⁹⁴⁾ , 줌 ⁽²⁶⁹⁵⁾ , 에이블뉴스 ^(2696, 2706) , 오마이뉴스 ⁽²⁶⁹⁷⁾ , 인터넷 한겨레 ⁽²⁶⁹⁸⁾ , 디지털 포천신문 ⁽²⁶⁹⁹⁾ , 프레시안 ⁽²⁷⁰⁰⁾ , 가자아이뉴스 ⁽²⁷⁰¹⁾ , 스카이드일리 ⁽²⁷⁰²⁾ , 조선닷컴 ⁽²⁷⁰³⁾ , 인터넷 한겨레21 ⁽²⁷⁰⁴⁾ , 인터넷 포천뉴스 ⁽²⁷⁰⁵⁾ , 인터넷 미디어오늘 ⁽²⁷⁰⁷⁾ , 동아닷컴 ⁽²⁷⁰⁸⁾ , 인터넷 경향신문 ⁽²⁷⁰⁹⁾ , 인터넷 내일신문 ⁽²⁷¹⁰⁾ , 노컷뉴스 ⁽²⁷¹¹⁾ , 뉴민주신문 ⁽²⁷¹²⁾ , 뉴스1코리아 ⁽²⁷¹³⁾ , 뉴스캐 ⁽²⁷¹⁴⁾ , 뉴스천지 ⁽²⁷¹⁵⁾ , 뉴스토마토 ⁽²⁷¹⁶⁾ , 인터넷 데일리경제 ⁽²⁷¹⁷⁾ , 마로니에방송 ⁽²⁷¹⁸⁾ , 인터넷 매일일보 ⁽²⁷¹⁹⁾ , 인터넷 문화일보 ⁽²⁷²⁰⁾ , 문화저널 21 ⁽²⁷²¹⁾ , 민중의소리 ⁽²⁷²²⁾ , 브레이크뉴스 ⁽²⁷²³⁾ , 비마이너 ⁽²⁷²⁴⁾ , 인터넷 서울경제 ⁽²⁷²⁵⁾ , 인터넷 서울신문 ⁽²⁷²⁶⁾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²⁷²⁷⁾ , 세계닷컴 ⁽²⁷²⁸⁾ ,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²⁷²⁹⁾ , 인터넷 시민일보 ⁽²⁷³⁰⁾ , 시사HN Live ⁽²⁷³¹⁾ , 시사포커스신문 ⁽²⁷³²⁾ , 아시아경제닷컴 ⁽²⁷³³⁾ , 아이뉴스24 ⁽²⁷³⁴⁾ , 의약뉴스 ⁽²⁷³⁵⁾ , KBS미디어 ⁽²⁷³⁶⁾ , 씨앤비뉴스 ⁽²⁷³⁷⁾ , 칸투데이 ⁽²⁷³⁸⁾ , iMBC ⁽²⁷³⁹⁾ , 인터넷 평화방송 ⁽²⁷⁴⁰⁾ , SBS 콘텐츠허브 ⁽²⁷⁴¹⁾ , 인터넷 서울신문STV ⁽²⁷⁴²⁾ , 더팩트 ⁽²⁷⁴³⁾ , 위키트리 ⁽²⁷⁴⁴⁾ , 인터넷 YTN ⁽²⁷⁴⁵⁾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의정부신문 : 『포천 김○○ 의원 “○○○ 체육회 옥매트 사건” 연루 되었나?』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이데일리 : 『여야, ‘도가니’ 국정조사 추진』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정치면)

조 정 대 상	• 온라인 중앙일보 : 『옥매트 차떼기 사건 논란, 장병원 “윤○○ 회장, 본인 지역구에 선심썼다”』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7일자 뉴스면) 외 2건 • 쿠키뉴스 : 『새누리당, 치열한 경쟁속 전통 텃밭에만 우르르 ‘외화내빈’』 제하의 기사 (2012년 2월 16일자 정치면) 외 1건 • 사람일보 : 『한나라당 수억원대 ‘옥매트 횡령 사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정치·경제면) • 투데이코리아 : 『[기자수첩] 정부 여당, 당신들 입부터 조심하라』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12일자 정치면) 외 1건 • 인터넷 더데일리포커스 : 『새마을금고 여직원 16억 횡령 外』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22일자 사회면) 외 57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체육회장 재직시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의정부신문, 온라인 중앙일보, 쿠키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가자아이뉴스, 스카이드일리, 뉴민주신문, 인터넷 데일리경제, 브레이크뉴스, 세계닷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투데이코리아, 조선닷컴, 인터넷 포천뉴스, 동아닷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내일신문, 노컷뉴스, 문화저널21, 인터넷 서울신문, 아이뉴스24, 씨앤비뉴스, 더팩트, 위키트리/사유 :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 각 취하 (인터넷 이데일리, 사람일보, 인터넷 더데일리포커스, 인터넷 무예신문, 폴리뉴스, 디지털 함께걸음, e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줌, 에이블뉴스, 오마이뉴스, 인터넷 한겨레, 디지털 포천신문, 인터넷 한겨레21, 인터넷 미디어오늘, 뉴스1코리아, 뉴스캔, 뉴스천지, 뉴스토마토, 마로니에방송, 인터넷 문화일보, 민중의소리, 비마이너, 인터넷 서울경제, 민중의소리 서울의소리, 인터넷 스포츠한국미디어, 인터넷 시민일보, 시사IN Live, 시사포커스신문, 아시아경제닷컴, KBS미디어, 칸투데이, iMBC, 인터넷 평화방송, SBS 콘텐츠허브, 인터넷 서울신문STV, 인터넷 YTN/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747	(손배청구) 이○○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KBS 일베 기자 사태에 고발뉴스 이상호 씨 “곧 나찌 기자도 입성할 듯”』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악플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748, 2749	(각 정정청구) 국○○ 對 TV조선 ⁽²⁷⁴⁸⁾ , MBN ⁽²⁷⁴⁹⁾
조 정 대 상	• TV조선 : 뉴스쇼판 프로그램 『구청 공무원이 대포차 부추거』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0일자) • MBN : 뉴스8 프로그램 『세금·과태료 등 4억 원 사라져』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대포차 관련 제보자인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취하 (TV조선/사유 : 손해배상 150만원 지급) • 취하간주 (MBN) ※ 손해배상 50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2760~2763	(각 정정·손배청구) 서울○○○○○ 외 1인 對 가스신문 ^(2760·2761) , 인터넷 가스신문 ^(2762·2763)
조 정 대 상	『가스저장탱크 명판 위조한 김○○ 구속 「이○○ 불구속 구공판 처분」』 제하의 기사 (가스신문 2015년 3월 11일자 7면, 인터넷 가스신문 3월 3일자 LPG·고압가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절차도 거치지 않고 초저온 저장탱크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서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LPG·고압가스면, 인터넷 가스신문 4월 30일자 LPG·고압가스면면)
2015서울조정 2764	(손배청구) 임○○ 對 KBS-2TV
조 정 대 상	생생정보 프로그램 『비밀은 없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고기 정량을 속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765~2768	(각 정정·반론청구) 이○○ 對 한국경제 ^(2765·2766) , 한경닷컴 ^(2767·2768)
조 정 대 상	『서울의 마지막 시골 ‘○○○’ 힐링타운으로 변신』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3월 27일자 31면, 한경닷컴 3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유 부지에 추진중인 도봉구의 생태치유공원 조성계획을 서울시가 찬성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도봉구 ‘○○○’과 관련해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4월 29일자 33면, 한경닷컴 4월 2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769~2772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국일보 ^(2769·2770) , 인터넷 한국일보 ^(2771·2772)
조 정 대 상	『사재기 논란 ○○과 ○○ 이번엔 갑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3월 27일자 22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7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직원 채용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무와 무관한 일에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773	(정정청구) (사)○○○○○○지도사회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노조파괴 컨설팅 ‘심종두 부활법’ 작년 국회 통과』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1면) (2) 『‘깜깜이’ 본회의 통과 ‘상식 파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관련법에 따라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영역이 공인노무사의 업무까지 확대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774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세월호 소식, MBC 뉴스데스크에 없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3일자 미디어오늘)
신청인 주장	MBC가 세월호 관련 보도에 소홀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세월호 소식, MBC 뉴스데스크에 없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775·2776	(정정·손배청구) 전국○○총연합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모르면 바가지... 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대리진료 제도에 대해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모르면 바가지... 아무도 모르는 ‘반값 진료비’ 제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5년 5월 20일자)

2015서울조정 2777~2780	(각 반론·손배청구) 이○○ 對 아시아경제닷컴 ^(2777·2778) , 동아닷컴 ^(2779·2780)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1) 『檢 “합의금 목적 다수인 고소, 공갈죄 검토”』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2) 『“제 2의 홍가혜” 막는다... 모욕 혐의 고소 남발하면 고소인 처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악성댓글 ‘고소 남발’ 논란... 檢, ‘홍가혜 사례’ 방지대책 발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아시아경제닷컴 : 『[반론보도문]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합의금 목적 고소남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781~2795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서울특별시 중구 對 아시아투데이 ^(2781~2783) , 아시아투데이닷컴 ^(2784~2786) , 네이버 ^(2787~2789) , 네이트 ^(2790~2792) , 다음 ^(2793~2795)
조 정 대 상	- 아시아투데이 :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의 경력 악용』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23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기자의눈] 최창식 구청장님! 서울시 예산은 1000만 시민의 것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면, 네이버·네이트·다음 4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구청장이 서울시 고위관리직 경력을 이용하여 타 자치구보다 많이 예산을 가져 간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닷컴/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네이트, 다음/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796	(손배청구) 고○○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시험없이 대학갈 수 있어요?』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직장인 재교육 관련 계약학과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면서 교직원인 신청인과의 대화내용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험없이 대학갈 수 있어요?』 제하의 보도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수정 (2015년 5월 8일자)

2015서울조정 2797~2800	(각 반론·손배청구) ○○교장로회 ○○○○○교회 외 1인 對 SBS-TV ^(2797·2798) , SBS 콘텐츠허브 ^(2799·2800)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기적을 파는 교회 목사에게 헌금이란 무엇인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병든 신도들에게 치료를 빙자하여 헌금을 강요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01, 2802	(각 반론청구) 신○○ 외 1인 對 메트로 ⁽²⁸⁰¹⁾ , 인터넷 메트로 ⁽²⁸⁰²⁾
조 정 대 상	(1) 『警,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4월 9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4월 9일자 사회면) (2) 『신세계의 메트로 강탈, 경찰이 하수인 노릇』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4월 9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4월 9일자 사회면) (3) 『특수강도 신세계 직원 풀어준 경찰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어』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4월 9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4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파출소 경찰관인 신청인들이 특수강도 용의자를 관내 대기업 직원이란 이유로 조사 없이 풀어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특수강도 용의자 조사도 않고 풀어줘』 관련』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5월 23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5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03·2804	(정정·손배청구) 동○○ 외 1인 對 MBN
조 정 대 상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들이 남자의 학벌과 경제력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언니들의 선택 프로그램 『“20대 여성들이 보는 남자의 기준” 자료화면 관련 알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일자)

2015서울조정 2805~2808	(각 정정·손배청구) (사)○○○○○○연합 외 1인 對 시사매거진 ^(2805·2806) , 인터넷 시사매거진 ^(2807·2808)
조 정 대 상	『도를 넘어선 금품갈취, 공갈협박, 뿌리 뽑을 것』 제하의 기사 (시사매거진 2015년 4월 2일자 86~87면, 인터넷 시사매거진 4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특선판매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연합과 특선판매업 관련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매거진 2015년 5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시사매거진 4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08·2809	(정정·손배청구) 최경환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자원외교’ 감사원 자료 내밀어도 최경환 “책임없다” 발뺌』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5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지식경제부 장관 재직시 석유공사 사장 등에게 하베스트의 부실자산인 정유부문 매수를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11	(반론청구) ○○○○○○인권연대 ○○○ 외 1인 對 인터넷 메디컬업저버
조 정 대 상	『“에이즈환자 눈물” 방송, 요양병원 “사실보도 눈물로 호소”』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6일자 병의원면)
신청인 주장	국가인권위원회가 모 요양병원의 에이즈 환자 사망 및 차별행위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요양병원 인권침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병의원면)

2015서울조정 2812, 2813	(각 정정청구) 임○○ 對 세계닷컴 ⁽²⁸¹²⁾ , 온라인 중앙일보 ⁽²⁸¹³⁾
조 정 대 상	• 세계닷컴 : 『만취 상태에서 쇠파이프로 백구 폭행... 네티즌 ‘격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 온라인 중앙일보 : 『쇠파이프로 진돗개 폭행한 남성... “괴롭히겠다” 협박까지 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쇠파이프에 맞아 위중한 진돗개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수정) • 취하 (세계닷컴/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쇠파이프로 진돗개 폭행한 남성... “괴롭히겠다” 협박까지 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온라인 중앙일보 2015년 4월 2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814, 2815	(각 정정청구) 최○○ 對 MBN ⁽²⁸¹⁴⁾ , 인터넷 MBN ⁽²⁸¹⁵⁾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설선물 참치 세트 뺏긴 미화원들』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3월 9일자, 인터넷 MBN 3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노조 조합장 재직시 환경미화원에게 돌아가야 할 명절 참치세트를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16	(정정청구) (사)○○○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도가니〉…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자 사회면) (2) 『“하루빨리 나가고 싶다” 외친 장애인시설, 어쩔건가』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사회면) (3) 『광주 ○○○, 제2의 형제복지원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5일자 사회면) (4) 『절차 강조하던 ○○○, 특별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일자 사회면) (5)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7일자 사회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장애인들을 확대하고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광주 ○○○, 제2의 형제복지원 될 수 있다”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2)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3) 『“○○○ 사태에 교사들도… “우린 자존감없는 교사였다”』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17	(손배청구) 최○○ 對 소상공인신문
조 정 대 상	(1) 『양측, 선거 앞두고 내분 치달다 “대충돌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1면) (2) 『최○○ 회장, 정부기관 향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4면) (3) 『최 회장, 수적 우위 앞세워 온갖 무리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5면) (4) 『2013년의 소상공인업계 분열 과정 새 사실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소기업청을 협박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보도하면서 악의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18	(정정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성완중 전 회장 의원 시절 보좌관, 6·4 선거 때 유정복 캠프에서 일해』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성완중 회장의 암묵적인 지시로 6·4 지방선거 당시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성완중 전 회장 의원 시절 보좌관, 6·4 선거 때 유정복 캠프에서 일해』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반론 삽입 (2015년 4월 23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2819·2820	(정정·손배청구) (주)천지일보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이만희, 천지일보 신천지 신문 취지 발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21	(정정청구) (유)○○해운 ○○지점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장관 탈 때만’ 시늉뿐인 안전… 우리 안의 세월호』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여객선 탑승시 승객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차량을 고정시키는 고박을 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822	(정정청구) 이○○ 對 시크뉴스
조 정 대 상	『벤츠 ‘○○○○’ vs 애플 ‘○○’ 본사 이름 먹칠하는 ‘공식’ 서비스센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인 모 외제차 멀티미디어 공식서비스센터가 사후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823~2826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법인 ○○대학교 對 불교닷컴
조 정 대 상	(1) 『“○○ 이사장 선출 적법”... 녹취록 다시 봤더니』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종합면) (2) 『“○○ 스님 이사장 출근은 범법행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종합면) (3) 『불량 장정 넷과 출근한 ○○ 이사의 말 말 말』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종합면) (4) 『“○○ 스님 실망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종합면) (5) 『□□·△△스님, ○○스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종합면) 외 14건
신청인 주장	모 대학교의 신임 이사장 선임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27~2829	(정정·반론·손배청구) 최○○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국정원 직원이 北협조자에 기밀누설... 법원 “해임정당”』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뉴스홈면)
신청인 주장	전 국정원 직원인 신청인이 제기한 징계부당 소송 관련 2심 판결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30, 2832, 2833	(각 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경향신문 ⁽²⁸³⁰⁾ , The Korea Times ⁽²⁸³²⁾ , 인터넷 The Korea Times ⁽²⁸³³⁾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이슈 세월호 1년 ‘세월호 영웅’ 최○○·박○○ 씨 미국서 추모메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사회면) - The Korea Times : 『US charity honors Sewol heroines』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National면, 인터넷 The Korea Times 3월 9일자 National면)
신청인 주장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을 구하다 숨진 단원교 교사 관련 보도에서 동명이인인 신청인의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기각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블로그에 남아 있는 기사에 대한 책임까지 질 의무는 없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The Korea Times, 인터넷 The Korea Times/내용 :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 동의 후 금액지급)

2015서울조정 2831	(손배청구) 이○○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MBN, 기자 사칭한 이완구 측근 ‘단독’ 인터뷰… ‘방어’ 나서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고 성완중 경남기업 회장 관련 인터뷰 내용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보도를 하면서 실명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MBN, 기자 사칭한 이완구 측근 ‘단독’ 인터뷰… ‘방어’ 나서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이름 익명 처리 (2015년 6월 5일자 미디어뉴스면)

2015서울조정 2834, 2840	(정정청구) 주승용 對 중앙일보 ⁽²⁸³⁴⁾ , 온라인 중앙일보 ⁽²⁸⁴⁰⁾
조 정 대 상	『“내가 280억 도로 유치”… 그 길 옆엔 의원 땅 있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4월 6일자 1면 및 3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 토지의 보상을 위해 지역구의 도로 확장 예산을 유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5월 28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28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2835	(정정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가스총 제조업체, 총탄 2백만 발 ‘무면허’ 불법 제조』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총탄 200만발을 불법 제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36~2838	(각 정정청구) ○○캐피탈(주) 對 인터넷 뉴스신문고 ⁽²⁸³⁶⁾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²⁸³⁷⁾ , 금융소비자뉴스 ⁽²⁸³⁸⁾
조 정 대 상	- 인터넷 뉴스신문고 : 『“○○” 수상한 소송… 600억 원 호텔 약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초기화면) -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 (1) 『MB사둔 ○○ 조○○, “○○○○○○호텔 강탈의혹 사건 내막”』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초기화면) (2) 『○○○○○○ 벤처회사 ‘○○○○○그룹’ 대표, ○○캐피탈 호텔 약탈 의혹 대출 관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초기화면) - 금융소비자뉴스 : (1) 『○○ 3남 조○○ 부사장 ‘강남호텔 강탈’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9일자 뉴스면) (2) 『○○캐피탈, 소송 상대자 1년 동안 ‘불법 사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기업 소유의 호텔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한 뒤 대출금 상환을 방해하여 호텔을 강탈한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인터넷 뉴스신문고/사유 : 정정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민족의소리 서울의소리, 금융소비자뉴스)
이 행 결 과	인터넷 뉴스신문고 : 『[정정보도문] “○○” 수상한 소송… 600억원 호텔 약탈?”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9일자 초기화면)

2015서울조정 2839	(정정청구) 복○○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1) 『‘300만원 투자해 100억 벌었다’는 투자자문사 대표, 알고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2) 『회원수 1000명의 ‘복○○ 손실 모임 카페’ 실종 사건… 그 진실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허위 경력을 광고하여 투자자문 회사 회원을 모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300만원 투자해 100억 벌었다’는 투자자문사 대표, 알고보니…]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닷컴 2015년 5월 1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41, 2842	(각 반론청구) ○○○○○전국연합 對 MBC-TV ⁽²⁸⁴¹⁾ , iMBC ⁽²⁸⁴²⁾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강남 대로변 노점 철거에 불만... 화단에 ‘환김 방화’』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6일자, iMBC 4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강남구청의 노점 철거에 불만을 품고 대로변 화단에 불을 낸 사람이 신청인 연합의 간부이고, 철거된 지역 노점상들이 여러개의 노점을 소유한 기업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43·2844	(정정·손배청구) 한국○○○○연구원 對 KBS-2TV
조 정 대 상	추적60분 프로그램 『대형참사, 왜 반복되나?』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대형화재의 원인인 샌드위치패널 관련 화재실험이 신청인 연구원의 주관하에 실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EX패널 관련 한국○○○○연구원』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5월 26일자 추적60분 홈페이지 게시판)

2015서울조정 2845, 2846	(각 반론청구) 한국○○총연맹 對 인터넷 일요서울 ⁽²⁸⁴⁵⁾ , 브레이크뉴스 ⁽²⁸⁴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일요서울 : 『제4 이통사업 누리통신 컨소시엄 투자자 “양심선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 브레이크뉴스 : 『우○○ ○○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맹 회장이 사무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전임에서 실시한 사업 피해 투자자에게 문제제기하도록 유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신문/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브레이크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일요서울 : 『‘○○총연맹 현 회장에게 농락’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 브레이크뉴스 : 『‘우○○ ○○총연 사무총장 해임 뒷말 무성’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47~2852	(각 정정·손배청구) 양○○ 對 한국일보 ^(2847·2848) , 인터넷 한국일보 ^(2849·2850) , 인터넷 일요신문 ^(2851·2852)
조 정 대 상	- 한국일보 : (1) 『부하에 폭언, 술값 대납시킨 청와대 경비 전경대장 송방망이 징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12면, 인터넷 한국일보 2월 9일자 사회면) (2) 『청장車 검문했다고 24시간 당직 후에 또 교육...』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3월 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청와대 외곽 ‘○○○ 경비단’ 파행운영 추적』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청와대 재직시 의경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하고 소대장들에게 술값을 대신 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 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인터넷 일요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터넷 일요신문 : 『“청와대 외곽 ‘○○○ 경비단’ 양 아무개 경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53, 2854	(각 정정청구) 류지영 對 조선일보 ⁽²⁸⁵³⁾ , 조선닷컴 ⁽²⁸⁵⁴⁾
조 정 대 상	『비례의원이 주요 창구... 보좌관도 ‘숨은 甲’』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4월 28일자 3면, 조선닷컴 4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어린이집 CCTV 설치법에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서울조정 2855, 2856	(각 반론청구) ○○○○협회 對 YTN ⁽²⁸⁵⁵⁾ , 인터넷 YTN ⁽²⁸⁵⁶⁾
조 정 대 상	(1) 뉴스출발 프로그램 『○○○협회 편 가르기... 황포 논란』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4월 13일자, 인터넷 YTN 4월 13일자 사회면) (2) 이슈오늘 프로그램 『비회원사 일감 주지 마... ○○○협회 황포』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4월 13일자, 인터넷 YTN 4월 13일자 사회면) (3) 뉴스출발 2부 프로그램 『○○○협회 편 가르기... 황포 논란』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4월 13일자, 인터넷 YTN 4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간부들에게 일감을 먼저 주고, 차량대수를 늘린 일부 회원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협회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5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57, 2858	(각 정정청구) 전국○○노동조합 ○○자동차지부판매위원회 對 매일경제 ⁽²⁸⁵⁷⁾ , 매경닷컴 ⁽²⁸⁵⁸⁾
조 정 대 상	『○○○○차 안방시장 점유율 계속 추락 왜?』 제하의 기사 (매일경제 2015년 4월 10일자 17면, 매경닷컴 4월 9일자 기업면)
신청인 주장	모 자동차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조합원인 영업직원들 간 경쟁마인드 부족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59·2860	(정정·손배청구) (주)○○○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먹거리X파일 프로그램 『정육식당의 꿈수』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16일자 및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운영하는 정육식당이 용량, 부위, 등급 등을 속여서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2백만원, 부제소, 기타)

2015서울조정 2864~2867	(각 정정청구) (주)○○○○ 對 MBC-TV ⁽²⁸⁶⁴⁾ , SBS 콘텐츠허브 ⁽²⁸⁶⁵⁾ , 연합뉴스 ⁽²⁸⁶⁶⁾ , 헬스코리아뉴스 ⁽²⁸⁶⁷⁾
조 정 대 상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에 부모들 분통』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6일자) • SBS 콘텐츠허브 :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6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에 부모들 분통』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6일자 사회면) • 헬스코리아뉴스 : 『일본뇌염 벡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에 부모들 분통』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일본뇌염예방백신으로 벡세포 배양 사백신으로 전환을 권고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MBC-TV/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SBS 콘텐츠허브, 연합뉴스, 헬스코리아뉴스/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MBC-TV : 정오뉴스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WHO “생백신 안전성 신뢰할 만한 수준”』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4일자)

이 행 결 과	• SBS 콘텐츠허브 : 『“일본뇌염 베로사포사백신 무료화 지연”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5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일본뇌염 베로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사회면) • 헬스코리아뉴스 : 『‘일본뇌염 베로세포 사백신 무료화 지연...’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알림면)

2015서울조정 2868·2869	(정정·손배청구) 홍문중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成 리스트 홍문중 수상한 재산 증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1면) (2) 『100억 빚더미 속 예금은 늘어... 건물 매각 13억도 안개속』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2012년, 2013년 재산 증가분에 대한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5년 5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870	(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포천 농약 연쇄 살인사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지인이 연루된 살인사건 관련 방송을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신청인들의 초상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871	(반론청구) 윤○○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노아의 방주를 탄 사람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7일자)
신청인 주장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존재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허황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72, 2873	(각 정정청구) 김○○ 對 경향신문 ⁽²⁸⁷²⁾ , 인터넷 경향신문 ⁽²⁸⁷³⁾
조 정 대 상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4월 6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교감인 신청인이 급식비 미납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밥먹지 말라고 망신을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74	(정정청구) ○○○○○○(주) 對 프레시안
조 정 대 상	『매일 타는 지하철, 차량 수명이 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지하철 차량 안전검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2875·2876	(정정·손배청구) 박○○ 對 KBS-1TV
조 정 대 상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프로그램 『본드로 이어붙인 나무 도마의 진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생산하는 미국제 도마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2월 6일 방송된 <○○○ 나무도마> 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5월 26일자 프로그램 소개면)
2015서울조정 2877~2882	(각 정정·반론청구) ○○○○(주) 對 문화일보 ^(2877·2878) , 인터넷 문화일보 ^(2879·2880) (각 정정청구) 채널A ⁽²⁸⁸¹⁾ , 인터넷 채널A ⁽²⁸⁸²⁾
조 정 대 상	- 문화일보 : (1) 『‘장비 도입’ 민간업체에 휘둘리는 기상청』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8일자 사회면) 외 2건 (2) 『라이다 탐지거리 규격 15km →10km 돌연 낮춰… ‘수상한 입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9일자 사회면) (3) 『기상청, 케이웨더 장비 도입 때 성능문제 제기하면 해임·좌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3일자 사회면) 외 1건 (4) 『성능미달 라이다 납품에 적합판정… 감사원, 기상진흥원 2명 정직 요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4월 14일자 12면) 외

2015서울조정 2877~2882	(각 정정·반론청구) ○○○○(주) 對 문화일보 ^(2877·2878) , 인터넷 문화일보 ^(2879·2880) (각 정정청구) 채널A ⁽²⁸⁸¹⁾ , 인터넷 채널A ⁽²⁸⁸²⁾
조 정 대 상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성능 미달” 인정하고도 ‘배짱 소송’ 佛 업체』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8일자, 인터넷 채널A 4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설치한 공항 돌풍감지장치의 성능이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며, 기상장비 입찰과정을 좌지우지 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83·2884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아침& 프로그램 『저가 전자담배 충전 실험해보니… 불과 8분 만에 ‘핑’』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중국산 저가 전자담배의 폭발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 담배 상표를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2885·2886	(반론·손배청구) 광주문화방송(주)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1) 『광주MBC, 수상쩍은 건설사 협찬금 2억원』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 일자 미디어면) (2) 『검찰, 광주MBC 건설사 협찬금 수사 진행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30일자 미디어면) (3) 『광주MBC, 건설사 협찬금, 공무원이 자문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5일자 미디어면) (4) 『광주MBC 협찬금, 삼각 카르텔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광주MBC 사장과 보도국장이 모 건설사에 협찬을 강요하고 협찬금 일부를 착 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광주MBC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미디어오늘 2016년 6 월 3일자 2면, 인터넷 미디어오늘 5월 29일자 미디어면)

2015서울조정 2887, 2888	(각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한국일보 ⁽²⁸⁸⁷⁾ , 연합뉴스 ⁽²⁸⁸⁸⁾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국일보 : 『천안시의회 택시 콜비 보조금 폐지 주장 논란 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천안시의회 콜비 보조금 폐지 주장에 시민 반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지자체에 콜택시 콜비 보조금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889~2892	(각 정정·손배청구) 정○○ 對 북경기신문 ^(2889·2890) , 인터넷 북경기신문 ^(2891·2892)
조 정 대 상	『○○ 농협 ‘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제하의 기사 (북경기신문 2015년 2월 12일자 1면, 인터넷 북경기신문 2월 1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농협 상임이사인 신청인이 신청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에 불법적인 대출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93~2896	(각 정정·손배청구) 하○○ 對 채널A ^(2893·2894) , 인터넷 채널A ^(2895·2896)
조 정 대 상	- 뉴스특보 프로그램 『구원파, ‘호위무사’ 박○○을 지켜라... 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3일자 사회면) - 뉴스특보 프로그램 『‘과차량’ 고속도로서 막무가내 박○○ 보호』 제하의 보도 (채널A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박○○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897, 2898	(각 손해청구) 김○○ 對 채널A ⁽²⁸⁹⁷⁾ , 인터넷 채널A ⁽²⁸⁹⁸⁾
조 정 대 상	뉴스특보 프로그램 『구원파, ‘호위무사’ 박○○을 지켜라… 왜』 제하의 보도 (2014년 11월 13일자, 인터넷 채널A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박○○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취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손해배상 350만원, 부제소 - 동의 후 지급)

2015서울조정 2899·2890	(정정·손배청구) 이○○ 외 3인 對 한국무예신문
조 정 대 상	『“공수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국가대표감독 아들 경기에 심판은 감독 가족』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5일자 격투기면)
신청인 주장	모 체육 연맹 사무국장장과 심판인 신청인들이 권력을 남용하고 편파판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연맹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9일자 격투기면)

2015서울조정 2901, 2902	(각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뉴스토마토 ⁽²⁹⁰¹⁾ , 뉴스토마토 인터넷 ⁽²⁹⁰²⁾
조 정 대 상	『공공기관 평가 ‘유명무실’… 부정시험에 혈세 ‘핑퐁’』 제하의 기사 (뉴스토마토 2015년 5월 11일자 34면 및 35면, 뉴스토마토 인터넷 5월 10일자 정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정부경영평가 평가위원에게 로비 목적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공기관 평가 ‘유명무실’… 부정시험에 혈세 ‘핑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뉴스토마토 2015년 6월 17일자 6면, 뉴스토마토 인터넷 6월 10일자 정책면)

2015서울조정 2903~2906	(각 정정청구) ○○시립○○○○요양원 對 채널A ^(2903,2905) , 인터넷 채널A ^(2904,2906)
조 정 대 상	(1) 종합뉴스 프로그램 『시립요양원 직원, 기초수급 노인 폭행』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5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5일자 사회면) (2) 굿모닝A 프로그램 『시립이라 믿었는데… 치매 할머니 폭행』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5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5일자 사회면) (3) 종합뉴스 프로그램 『치매노인 학대 요양원, 내부고발자 증징계』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6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원이 요양사의 치매노인 폭행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 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07~2910, 2929~2932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JTBC ^(2907·2908, 2929·2930) , 인터넷 JTBC ^(2909·2910, 2931·2932)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몇 천원 짜리가 23만원으로… 황당 ‘가짜 산삼주’』 제하 의 보도 (JTBC 2015년 5월 14일자, 인터넷 JTBC 5월 14일자 사회면) (2) 뉴스룸 프로그램 『‘가짜 산삼주’ 제조과정 추적… 경찰도 본격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5월 20일자, 인터넷 JTBC 5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산삼주가 가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

2015서울조정 2911	(반론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금속노조와 ‘5년 전쟁’ 뚫고… ○○○, 도요타 수출 길 열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1면 및 2면)
신청인 주장	자동차 부품업체 ○○○○○○○○○코리아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한 이후 회사의 수익성이 향상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수출 기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2면)

2015서울조정 2912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에너지경제
조 정 대 상	(1)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 성적서 위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0일자 에너지면) (2) 『가스밸브 불합격품이 1등급 둔갑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0일자 에너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도시가스 배관 밸브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불합격 제품을 가스 회사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결정 내용 일부는 수용 가능하나 전부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913, 2914	(각 정정청구) 인천중부경찰서 對 서울매일 ⁽²⁹¹³⁾ , 인터넷 서울매일 ⁽²⁹¹⁴⁾
조 정 대 상	『인천 동구, 수상한 컨테이너 도둑』 제하의 기사 (서울매일 2015년 4월 27일자 15면, 인터넷 서울매일 4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컨테이너 절도사건 관련 담당 형사를 이유 없이 교체하는 등 사건 처리에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인천 동구, 수상한 컨테이너 도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매일 2015년 6월 8일자 15면, 인터넷 서울매일 6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915, 2916	(각 정정청구) 이미경 외 10인 對 채널A ⁽²⁹¹⁵⁾ , 인터넷 채널A ⁽²⁹¹⁶⁾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이희호 여사 “정치인과 식사 않겠다” 격노, 왜?』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1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희호 여사가 신청인들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해 격노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17	(손배청구) 박○○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중부 오늘도 낮까지 강풍』 제하의 사진 (2015년 5월 13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강풍에 치마를 붙잡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918	(정정청구) ○○○○○○○○관리단 對 인터넷 파이낸셜투데이
조 정 대 상	『[단독] ○○○시티 관리인 부정선거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모 건물 관리인이 부정선거 및 집합건물법 위반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시티 관리인 선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2919	(정정청구) ○○○○대학교 對 예정뉴스
조 정 대 상	(1) 『○○사태, 결국 학교 손을 떠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5일자 신학교/대학교면) (2) 『○○학원 사태로 본 신학대학교 이사회 문제』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신학교/대학교면) (3) 『○○학생들 또 총회 방문 선처 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신학교/대학교면) (4) 『총회 결정 항명하는 자들 강한 징계조치 있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5일자 신학교/대학교면) (5) 『○○○○대학교 학내 사태에 대한 성명서』 제하의 기사 (2015년 4 2일자 신학교/대학교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 목사에게 명예 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고, 이사회가 멋대로 정관을 개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학교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신학교/대학교면)

2015서울조정 2920·2921	(정정·손배청구) 홍○○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 정 대 상	(1) 『광명시내 학교계약부서 ‘지역경제, 지역서점 살리기’ 나 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6일자 뉴스면) (2) 『광명시 일부 학교들 페이퍼 컴퍼니 싸고돌아 유명서점 활개쳐…』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서점이 사업자등록만 한 유명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컴퍼니 ○○교재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922	(반론청구) 손○○ 對 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대형화물차 아찔한 보복운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9일자) (2) 뉴스광장 프로그램 『대형화물차 아찔한 보복운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대형화물차 운전자인 신청인이 위험운전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923~2926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중앙일보 ^(2923·2924) , 온라인 중앙일보 ^(2925·2926)
조 정 대 상	『금융 문맹 탈북자들, 투자 사기에 운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4월 21일자 10면, 온라인 중앙일보 4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탈북자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27, 2928	(각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중앙일보 ⁽²⁹²⁷⁾ , 온라인 중앙일보 ⁽²⁹²⁸⁾
조 정 대 상	『콘텐츠 가격 담합하는 지상파 3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5월 18일자 33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8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MBC가 이동통신사에 제공하는 콘텐츠 가격을 타 지상파 방송과 담합하여 인상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6월 19일자 오피니언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18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2933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디지털타임스
조 정 대 상	『[이덕환의 과학세상](509) 전문기관의 홍보』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자 생활과학면)
신청인 주장	MBC가 수입닭고기 업체와 식약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의 사실관계를 왜곡해 영터리로 보도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전문기관의 홍보’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6일자 생활과학면)

2015서울조정 2934~2937	(각 정정·반론청구) 국토교통부 對 경향신문 ^(2934·2935) , 인터넷 경향신문 ^(2936·2937)
조 정 대 상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5월 26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5월 26일자 과학·환경면)
신청인 주장	국토교통부의 국가하천 이용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섬진강 포함된 5대강 사업 비밀리 추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6월 27일자 2면, 인터넷 경향신문 6월 26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2938~2941	(각 정정·손배청구) 최○○ 對 치과의사신문 ^(2938·2939) ,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2940·2941)
조 정 대 상	(1) 『예전 최○○ 치과 전화번호와 ○플란트 전화번호가 같다!』 제하의 기사 (치과의사신문 2015년 4월 20일자 1면,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4월 16일자 뉴스면) (2) 『최○○ 치과 자리에 ○플란트가 문을 연다』 제하의 기사 (치과의사신문 2015년 4월 20일자 3면, 인터넷 치과의사신문 4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운영하는 치과가 네트워크치과에 인수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므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942~2945	(각 정정·반론청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對 파이낸셜뉴스 ^(2942·2943)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2944·2945)
조 정 대 상	『세금구멍 소진공, 2조 운용 자격 있나』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4월 29일자 20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4월 28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 내부감사에서 상생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세금구멍 소진공 2兆운영 자격 있나’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6월 12일자 1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6월 11일자 중소기업면)

2015서울조정 2946, 2947	(각 정정청구) ○○○○마을회 對 내외일보 ⁽²⁹⁴⁶⁾ , 인터넷 내외일보 ⁽²⁹⁴⁷⁾
조 정 대 상	『민의 행정에 중심 못잡는 농어촌공사』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5년 5월 15일자 7면, 인터넷 내외일보 5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마을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포천 산정호수 공유수면 임대운영권 계약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산정호수 공유수면 운영계약’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내외일보 2015년 6월 18일자 6면)

2015서울조정 2948	(손배청구) 이○○ 對 조갑제닷컴
조 정 대 상	『박원순 시장은 이것을 원하나?』 제하의 사진 (2015년 5월 28일자 포토면)
신청인 주장	퀴어축제에 참석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5서울조정 2949	(정정청구) 이○○ 對 SBS-TV
조 정 대 상	이슈인사이드 프로그램 『가짜 백수오 파동... 어디까지?』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허위 과장광고로 입건된 한의사 관련 보도에서 한의사인 신청인이 출연한 홈쇼핑 광고를 배경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2950·2951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연합통신넷
조 정 대 상	『부노회장 인준 불발로 바라 본 ○○ 노회』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4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모 교회 목사인 신청인이 부노회장으로 선출된 모 목사를 음해하는 문건을 작성하여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사 삭제 및 손해배상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결정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2952~2961	(각 추후청구) 문○○ 對 뉴스1코리아 ⁽²⁹⁵²⁾ , 연합뉴스 ⁽²⁹⁵³⁾ , 온라인 중앙일보 ⁽²⁹⁵⁴⁾ , 아시아경제닷컴 ⁽²⁹⁵⁵⁾ , e머니투데이 ⁽²⁹⁵⁶⁾ , 노컷뉴스 ⁽²⁹⁵⁷⁾ , 줌 ⁽²⁹⁵⁸⁾ , 매경닷컴 ⁽²⁹⁵⁹⁾ , 인터넷 MBN ⁽²⁹⁶⁰⁾ , SBS 콘텐츠허브 ⁽²⁹⁶¹⁾
조 정 대 상	- 뉴스1코리아 : 『대한○○연맹 문○○ 회장, 사기혐의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대한○○연맹 회장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속보면) - 온라인 중앙일보 : 『대한○○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2건

조 정 대 상	• 아시아경제닷컴 : 『‘억대 사기’ 대한○○연맹 회장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한○○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재판에』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1건 • 노컷뉴스 : 『대한○○연맹 회장,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8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체육연맹 회장인 신청인이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 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연합뉴스, 아시아경제닷컴, e머니투데이, 노컷뉴스, 줌, 매경닷컴, 인터넷 MBN, SBS 콘텐츠허브/사유 : 추후보도)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추후보도문] 대한○○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사기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법원검찰면) • 연합뉴스 : 『대한○○연맹 회장, 사기혐의 무죄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사회면) • 아시아경제닷컴 : 『대한○○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억대 사기 혐의 무죄로 결론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정치/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한○○연맹 회장 사기혐의 무죄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추후보도문] 대한○○연맹 회장 ‘정치권 친분’ 사기행각 혐의 무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2015서울조정 2962·2963, 2965·2966	(각 정정·손배청구) ○○○○○조직위원회 對 인터넷 국민일보 ^(2962·2963) , 국민일보 ^(2965·2966)
조 정 대 상	『퀴어문화 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5월 28일자 29면, 인터넷 국민일보 5월 27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주최하는 동성애자 축제에서 에이즈가 확산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64	(손배청구) 이○○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도를 아십니까?’ 따라 가보니...』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사이비종교 관련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2015서울조정 2967~2970	(각 반론·손배청구) 김○○ ^(2967·2968) , 김△△ ^(2969·2970)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단독] ‘논문대필’ 벌금형 축구감독 직위 유지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축구부 감독이 대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코치는 축구부원들에게 반찬을 남기면 벌금을 내도록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2971, 2972	(각 정정청구) (사)한국○○○○○회 對 대한변협신문 ⁽²⁹⁷¹⁾ ,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²⁹⁷²⁾
조 정 대 상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제하의 만평 (대한변협신문 2015년 5월 11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5월 1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기와 연루되어 불법 수수료를 받는다는 만평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 손해사정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대한변협신문 2015년 7월 6일자 3면, 인터넷 대한변협신문 7월 6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2973, 2988, 2989, 2992, 2993	(각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²⁹⁷³⁾ , (주)에스비에스 ^(2988, 2989) , 한국방송공사 ^(2992, 2993) 對 동아일보 ^(2973, 2988, 2992) , 동아닷컴 ^(2989, 2993)
조 정 대 상	『방통위는 지상파 특혜 주는 광고총량제에서 손 떼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3월 4일자 31면, 동아닷컴 3월 4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광고주의 81.7%가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광고를 늘릴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광고총량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7월 9일자 2면)

2015서울조정 2974~2977	(각 정정·손배청구) ○○○○○회 對 유교신문 ^(2974·2975) , 인터넷 유교신문 ^(2976·2977)
조 정 대 상	『○○○○○○총본부 유교총연합으로 새출발』 제하의 기사 (유교신문 2015년 4월 1일자 3면, 인터넷 유교신문 3월 2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단법인이 유교총연합으로 새출발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78·2979	(반론·손배청구) 임○○ 對 장로신문
조 정 대 상	『○○교회 담임목사 위임해제와 1년 정직』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1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목사직 정직을 둘러싼 분쟁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80	(정정청구) 한국○○○○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동물병원 약값 부르는게 값? 처방전 발급 안돼』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31일자)
신청인 주장	동물병원이 동물 진료비를 부당하게 과잉 청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KBS미디어 2015년 7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981·3052	(정정·손배청구) 이연주 對 인터넷 아시아일보
조 정 대 상	『새정권 이연주 국회의원 막말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 국회의원들과 광명시 의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이연주 의원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일보 2015년 6월 15일자 2면, 인터넷 아시아일보 6월 15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2982·2983	(정정·손배청구) (주)메트로신문사 對 반론보도닷컴
조 정 대 상	『무가지 메트로 억지주장 하다 망신살』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2일자 이슈 &트렌드면)
신청인 주장	메트로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반론보도를 게재한 것이 원 기사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2984·2985	(정정·손배청구)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對 인터넷 소상공인신문
조 정 대 상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포커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진의 구성이 중소기업인의 이익대변과는 무관하게 구성되었으며, 집행부에게 비판적인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기획특집면)

2015서울조정 2986, 2987	(각 반론청구) 한○○ 對 채널A ⁽²⁹⁸⁶⁾ , 인터넷 채널A ⁽²⁹⁸⁷⁾
조 정 대 상	(1) 종합뉴스 프로그램 『흥기 난동 신고하자… 칼 찔리면 그 때 신고』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27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7일자 사회면) (2) 굿모닝A 프로그램 『흥기 난동 신고하자… 칼 찔리면 그 때 신고』 제하의 보도 (채널A 2015년 5월 28일자, 인터넷 채널A 5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마트에서 근무하던 신청인이 흥기로 여직원을 위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 ‘흥기 난동’ 표현을 ‘흥기 위협’으로 수정

2015서울조정 2990, 2991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메트로 ⁽²⁹⁹⁰⁾ , 인터넷 메트로 ⁽²⁹⁹¹⁾
조 정 대 상	『박원순 서울시장 하루 평균 공식 ‘밥값’ 117만원』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5월 8일자 23면, 인터넷 메트로 5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이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접대하는 식사비로 집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박원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메트로 2015년 6월 19일자 4면, 인터넷 메트로 6월 1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2994·2995	(정정·손배청구) (재)○○○ 외 1인 對 뉴스토마토
조 정 대 상	(1) 『“사회통합 책임자 의문”... 종교편향 불씨 여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정치면) (2) 『황교안, ○○교도소 미스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모 교도소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주도로 설립됐고, 황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재직시 정부보조금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교안 ○○교도소 설립 주도 및 특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2996·2997	(정정·손배청구) (주)○○○○○○○○이송단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메르스 확진 환자인 줄 모르고... 구급차 무방비 이송』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메르스 확진 환자를 이송한 민간이송업체의 미흡한 방역 조치를 보도하면서 보도내용과 무관한 신청인 회사의 구급차 모습을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알림)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메르스 확진 환자인 줄 모르고... 구급차 무방비 이송』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4일자)

2015서울조정 2998~3005, 3008~3035	(각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조선일보^(2998·2999), 조선닷컴^(3000·3001), KBS-1TV^(3002·3003), TV조선^(3004·3005), MBC-TV^(3008·3009), SBS-TV^(3010·3011), JTBC^(3012·3013), MBN^(3014·3015), 채널A^(3016·3017), YTN^(3018·3019), 온라인 중앙일보^(3020·3021), 연합뉴스^(3022·3023), 인터넷 국민일보^(3024·3025), 세계닷컴^(3026·3027), 아시아투데이닷컴^(3028·3029), 인터넷 아주경제^(3030·3031), 뉴스핌^(3032·3033), 고발뉴스닷컴^(3034·3035)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3인조 食파라치 사기단' 수도권 마트 습격사건』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3월 4일자 12면, 조선닷컴 3월 4일자 사회면)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포상금 노린 3인조 식파라치』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3건 - TV조선 : 김광일의 신통방통 프로그램 『3인조 식파라치 사기단 수도권 마트 습격 사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1건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제품으로 바꿔치기? 수상한 3인조 식파라치』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1건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대형 마트에만 나타나... 수상쩍은 식파라치』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외 3건 - JTBC 외 11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몰래 반입해 매장제품인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조선일보, 조선닷컴, KBS-1TV, MBC-TV, SBS-TV, YTN) - 각 조정성립 (TV조선, JTBC,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추후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MBN/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2백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채널A/내용 : 추후보도, 손해배상 3백만원,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세계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인터넷 아주경제, 뉴스핌/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국민일보, 고발뉴스닷컴/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TV조선 :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혹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JTBC : 『하남 3인조 식파라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사회면) - 인터넷 MBN : 『[정정보도문]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혹’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채널A : 프로그램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혹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7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하남 ‘식파라치 사기’ 의심사건 무혐의 결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사회면) 외 2건

2015서울조정 3006	(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27일자)
신청인 주장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차량 사고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에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2015서울조정 3007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세월호 피해구제법에서 유독 ‘특례입학’부터 본 MBC』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MBC가 세월호피해구제법과 관련,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유가족들을 교묘하게 매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036·3037, 3087·3088	(정정·손배청구) (주)○○○ 對 브레이크뉴스 ^(3036·3037) (반론·손배청구) 뉴데일리경제 ^(3087·3088)
조 정 대 상	• 브레이크뉴스 : 『○○○, 전 점주에 갑질 횡포... “옆 점포 인수해 무기한 50%할인 하겠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경제면) • 뉴데일리경제 : (1) 『○○○서 옆에 매장 내고 협박 문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경제면) (2) 『“○○킹과 거래 끊어라” ○○○, 납품업체에 ‘슈퍼 갑질’』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경제면) (3) 『“갑질” ○○○, 어설픈 변명 일관... 가맹점 피해 생각은 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전 가맹업주에게 갑질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브레이크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뉴데일리경제/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전 점주에 갑질 횡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브레이크뉴스 2015년 6월 23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038·3039	(정정·손배청구) ○○○○서포터즈 ○○○○ 對 풋볼리스트
조 정 대 상	『‘욕설 난무’ 축구장, 팬이 팬을 쫓아낸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국 내기사면)
신청인 주장	프로축구팀 서포터즈인 신청인이 경기장에서 상대팀 선수와 심판진에게 욕설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서포터즈 욕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국 내기사면)

2015서울조정 3040	(정정청구) 유의동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팩트체크』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메르스 자가격리대상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유의동 의원 메르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7월 2일자 뉴스룸면)

2015서울조정 3041	(정정청구) 유○○ 對 서울뉴스통신
조 정 대 상	『경찰수사관이 피의자로부터 신변 위협받았다고... 파문 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불법유치권 행사 사건 관련 유치권자로부터 위협을 받고 봐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신변 위협 받은 경찰수사관’ 관련 반론보도문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042, 3043	(각 정정청구) ○○종합건설(주) 외 1인 對 한겨레 ⁽³⁰⁴²⁾ , 인터넷 한겨레 ⁽³⁰⁴³⁾
조 정 대 상	『검찰, ‘포스코 비자금 의혹’ 배○○ 회장 본격 수사』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6월 3일자 10면, 인터넷 한겨레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모 기업 비자금 조성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간주

2015서울조정 3044, 3045	(각 정정청구) 시립○○○어린이집 對 한국일보 ⁽³⁰⁴⁴⁾ , 인터넷 한국일보 ⁽³⁰⁴⁵⁾
조 정 대 상	(1) 『시립 어린이집마저... “폭행에 썩은 과일 급식까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4월 7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7일자 사회면) (2) 『수원 시립 어린이집 학대 증거 입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4월 8일자 11면, 인터넷 한국일보 4월 8일자 사회면) (3) 『수원 시립 어린이집 학대... 경찰 조사서 사실로 확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6월 1일자 10면, 인터넷 한국일보 6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46~3049	(각 정정청구) 장하나 對 동아일보 ⁽³⁰⁴⁶⁾ , 동아닷컴 ⁽³⁰⁴⁷⁾ , 중앙일보 ⁽³⁰⁴⁸⁾ , 온라인 중앙일보 ⁽³⁰⁴⁹⁾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한 건’ 의식해 졸속입법... 위헌 논란 - 무용지물 法 쏟아내』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2일자 정치면, 동아닷컴 5월 12일자 정치면) - 중앙일보 : 『야당의 품격, 국가의 걱정거리』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2일자 31면, 온라인 중앙일보 5월 1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원수(怨讐)라고 비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 기사중 ‘怨讐’ 한자병기 삭제

2015서울조정 3050·3051	(정정·손배청구) (주)문화방송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한미FTA 보도 제대로 했다” MBC 소송자료에서 거짓말?』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9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MBC가 2012년 파업 관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허위 증거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53·3054	(정정·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현직 경찰과 일반 시민들 사비불어 ‘업무방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술집에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055~3057	(정정·반론·손배청구) (사)○○○○선교회 외 1인 對 온라인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수백억 대 주식사기’ 박○○ 씨 첫 공판서 모두 부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3058~3060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지상의 스튜어디스’ 꿈꿨던 KTX 여승무원들의 11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철도공사 사장 재직시 KTX 여승무원 280여명을 정리하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KTX 승무원 보도 관련 이 ○ 전 사장의 정정·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061	(손배청구) 강○○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남편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이혼소송 중인 신청인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062~3064	(각 손배청구) 권○○ 對 연합뉴스 ⁽³⁰⁶²⁾ , 연합뉴스TV ⁽³⁰⁶³⁾ , 인터넷 연합뉴스TV ⁽³⁰⁶⁴⁾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최신영상』 제하의 사진 (2015년 6월 12일자 최신영상면) - 연합뉴스TV : 뉴스다이제스트 프로그램 『유병언 부인 권윤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부인인 권윤자의 재판 결과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연합뉴스TV/내용 : 기사수정정보,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 각 조정성립 (연합뉴스, 인터넷 연합뉴스TV/내용 : 기사수정정보, 부제소) ※ 보도 영상 중 신청인 초상 삭제

2015서울조정 3065, 3072	(각 손배청구) 신○○ 對 채널A ⁽³⁰⁶⁵⁾ , YTN ⁽³⁰⁷²⁾
조 정 대 상	- 채널A : (1) 종합뉴스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프 방문... 상인들 “쇼하냐” 항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2) 박정훈의 뉴스TOP10 프로그램 『박원순, 가든파이프 방문... “힘내라” vs “쇼한다”』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 YTN : (1) 뉴스통 프로그램 『서울시, 메르스 격리 입원자 생계비 40만 9천 원 지원』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5일자) (2) 뉴스Q 프로그램 『서울시, 메르스 격리 입원자 생계비 40만 9천원 지원』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5일자) 외 2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의 가든파이프 방문 당시 항의하던 신청인의 초상 및 음성을 동의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채널A - 손해배상 90만원, YTN - 손해배상 50만원)

2015서울조정 3066	(정정청구) (주)○○○○○아카데미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컴퓨터 아트 학원 본사 이○○ 부장』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컴퓨터아트 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 회사의 경쟁업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과장 홍보성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피플] ○○컴퓨터 아트 학원 기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067·3068	(정정·손배청구) (주)○○코리아 對 인터넷 에너지경제
조 정 대 상	『전자 담배 전파인증받고 폭발방지 광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산업/기업면)
신청인 주장	전자담배 제조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전기안전인증을 받았다고 허위 광고하고 있고, 전자담배 폭발이 이슈가 되기 전에 생산된 제품에 보호 회로가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069~3071	(정정·반론·손배청구) ○○○○○교회 對 CBS-TV
조 정 대 상	관찰보고서 프로그램 『○○○에 빠진 사람들 1부~8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6일, 17일, 23일, 24일, 30일, 31일, 4월 6일,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73·3074	(정정·손배청구)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외 1인 對 포천일보
조 정 대 상	『토지매입 안한 주택조합 과대광고 ‘주민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과장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075, 3076, 3080, 3081, 3106, 3107	(각 정정청구) 박○○ 對 중앙일보 ⁽³⁰⁷⁵⁾ , 온라인 중앙일보 ⁽³⁰⁷⁶⁾ , JTBC ⁽³⁰⁸⁰⁾ , 시사 포커스신문 ⁽³⁰⁸¹⁾ , 투데이코리아 ⁽³¹⁰⁶⁾ , 아시아경제닷컴 ⁽³¹⁰⁷⁾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처음처럼 vs 침대는 과학』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8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17일자 사회면) - JTBC : 5시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광고계 “미다스 손” 영입… 홍보강화 빛 발할까』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7일자) - 시사포커스신문 :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에 ‘처음처럼’ 브랜드 만든 손해원 영입』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정치면) - 투데이코리아 :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손해원 홍보위원장 임명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침대는 과학’에 놀란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맞불 놓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안한 광고 카피를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JTBC/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피신청인 유감표명, 부제소) - 각 취하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시사포커스신문, 투데이코리아, 아시아경제닷컴/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중앙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1일자 사회면) - JTBC : 5시 정치부회의 프로그램 프로그램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8일자 뉴스면) - 시사포커스신문 : 『새정치연합, 홍보위원장에 ‘처음처럼’ 브랜드 만든 손해원 영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2015년 6월 26일자 정치면) - 투데이코리아 :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손해원 홍보위원장 임명한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2015년 7월 1일자 정치면) - 아시아경제닷컴 : 『‘침대는 과학’에 놀란 새정치연합… ‘처음처럼’ 맞불 놓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077~3079	(각 정정청구) 김경협 對 채널A ⁽³⁰⁷⁷⁾ , MBN ⁽³⁰⁷⁸⁾ , KBS-1TV ⁽³⁰⁷⁹⁾
조 정 대 상	- 채널A : 종합뉴스 프로그램 『‘친노’ 김경협 “비노는 당원 아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 MBN : 뉴스8 프로그램 『‘친노’ 김경협, SNS서 작심 비판… 비노 ‘부글부글’』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3일자)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새정치연합 혁신위 본격 활동… ‘비노’ 발언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비노는 당원이 아니다란 글의 취지를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약속)

2015서울조정 3082·3083	(정정·손배청구) (주)메트로신문사 對 반론보도닷컴
조 정 대 상	『언중위, 메트로 정상적 저널리즘으로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5일자 이슈&트렌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가 불성립결정을 내린 이유가 신청인의 주장이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84	(정정청구) (사)○○○○○협회 對 닥터스뉴스
조 정 대 상	『한의협, 의협 임원들 고소...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의사·협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모 협회 임원들을 고소한 것이 메르스 퇴치 활동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한의협, 의협 임원들 고소... 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6월 30일자 의사·협회면)

2015서울조정 3085·3086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환경스포츠타신문
조 정 대 상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관리비 전쟁 수원 ○○○○프라자 관리비 전쟁』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건물 관리회사인 신청인이 관리비를 부당하게 부과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089~3092	(각 정정청구) 성남시 對 문화일보 ^(3089,3091) , 인터넷 문화일보 ^(3090,3092)
조 정 대 상	(1)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6월 8일자 8면, 인터넷 문화일보 6월 8일자 사회면) (2) 『창원시의 무분별한 정보 공개... 환자 가족들 욕설전화 시달려』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6월 12일자 4면, 인터넷 문화일보 6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개하지 않은 메르스 환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음] 메르스 정보공개, 정부 ‘뒷북’ vs 지자체는 ‘오버’』 제하의 기사 (인터넷 문화일보 2015년 7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093·3094	(정정·손배청구)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 對 소상공인신문
조 정 대 상	『“네이버 ‘희망재단’, 소상공인 ‘절망재단’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4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 이사진이 중소기업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집행부에 비판적인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4면)

2015서울조정 3095~310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노컷뉴스 ^(3095·3096) , 더팩트 ^(3097·3098) , KBS-1TV ^(3099·3100) , KBS미디어 ^(3101·3102)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영상] 잠자는 권리금법, 빈손으로 밀려나는 사장님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4일자 사회면) • 더팩트 : 『강제퇴거 둘러싼 ‘건물주 vs세입자’ 갈등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경제면) • KBS-1TV : 취재파일K 프로그램 『그냥 장사하게 해 주세요』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6일자, KBS미디어 4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상가건물주인 신청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노컷뉴스, 더팩트/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KBS-1TV, KBS미디어/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그냥 장사하게 해주세요』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KBS 미디어 2015년 7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103·3104	(정정·손배청구) 함○○ 對 여성조선
조 정 대 상	『강용석 스캔들은 빙산의 일각! 비방·편가르기·소송… 알고 보면 ‘안 력셔리’한 력셔리 블로거들의 삶』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2일자 134~13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강모 변호사와 여성 블로거와의 스캔들을 유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133면)

2015서울조정 3105	(정정청구) (사)○○○○○○협회 對 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상처 연고·한약이 금지 약물?... 스포츠계 ‘비상’』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여자 프로배구선수가 식욕억제제가 포함된 한약 때문에 도핑에 적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이미 정정보도했으므로 신청인의 신청 목적 달성)

2015서울조정 3108·3109	(정정·손배청구) (주)○○○○○○시스템 외 1인 對 불만닷컴
조 정 대 상	(1) 『정비업계 vs 손보사, 이권 다툼에 자동차 수리비·보험료 ↑... “소비자가 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자동차면) (2) 『[단독] 자동차 정비공장에 따라 정비요금 “천차만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자동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수리비 견적프로그램이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한 AOS 견적프로그램보다 수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나온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자동차수리비 견적프로그램 ‘○○’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4일자 자동차면)

2015서울조정 3110	(정정청구) ○○○엔터프라이즈 對 씨씨티브이뉴스
조 정 대 상	(1) 『○○○ 숯불 김밥 갑질 논란, 조작된 진실로 선량한 기업에 피해 우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엔터테인먼트면) (2) 『허위사실에 피해입는 선량한 기업, ○○○ 숯불 김밥 본격 해명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엔터테인먼트면) (3) 『○○○ 갑질, 알고 보니 과장된 언론의 황포?』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엔터테인먼트면) (4) 『○○○ 갑질 논란, ○○킹 ○○점 전 남편 ‘○○○ 레시피 베꼈다’ 핵심 증언 제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엔터테인먼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와 경쟁업체 사이에 있던 분쟁을 편향되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숯불 김밥 ‘갑질 논란’ 기사에 대한 ○○킹의 정정·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5일자 엔터테인먼트면)

2015서울조정 3111	(정정청구) (사)○○○○○협회 對 닥터스뉴스
조 정 대 상	『보험·제도 “약침술, 자보수가 청구 문제 많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보험·제도면)
신청인 주장	약침 및 약침액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12	(반론청구) 김○○ 외 1인 對 주간침례신문
조 정 대 상	『제 104차 총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6~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국내선교회 기금 횡령관련 조사대상으로 조사를 받고,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제 104차 총회 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5일자 3면)

2015서울조정 3115·3116	(정정·손배청구) (주)○○○○컴퍼니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직언직설 프로그램 『알바비로 십원 짜리 만개 고약한 업주』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브랜드를 관련 없는 보도에서 비판적인 내용과 함께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서울조정 3117·3118	(추후·손배청구) 이○○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뒷돈』 등장에 ○○농협 상임이사 선거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농협 상임이사 후보자인 신청인이 선거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19·3120	(정정·손배청구) 홍문중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 새누리 조직본부 소속… 홍문중 관여』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일자) (2) 아침& 프로그램 『○○○, 새누리 조직본부 소속… 홍문중 관여』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8대 대선 당시 불법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의 조직과 업무에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21~3123	(각 반론청구) (주)메트로신문사 對 조선일보 ⁽³¹²¹⁾ , 조선비즈닷컴 ⁽³¹²²⁾ , 온라인 중앙일보 ⁽³¹²³⁾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대기업 87% “사이비 언론 피해 입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6면, 조선비즈닷컴 7월 2일자 뉴스면) - 온라인 중앙일보 : 『광고주가 뽑은 나쁜 언론에 메트로신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한국광고주협회 실태조사 결과, 신청인 언론사가 유사언론 1위 매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24·3125	(정정·반론청구) 최원석 對 채널A
조 정 대 상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비운의 기업’ 사하라 기적 동아그룹』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4일자)
신청인 주장	전 동아그룹 회장인 신청인이 정부의 구조조정 시책에 따르지 않았고 신청인의 법정구속으로 동아그룹이 해체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스테이션 프로그램 『‘비운의 기업’ 사하라 기적 동아그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5일자)

2015서울조정 3126	(정정청구) 유기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1) 『“정치인 출신 장관 부재중” 한 달에 서너 번 세종 근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9일자 산업면) (2) 『정치인 출신 장관 ‘입맛 따라’ 현장 방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산업면) (3) 『벌써 총선 행보?... 장관 스펙 쌓은 유기준 해수, 부산만 찾고 또 찾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 장관인 신청인이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만 세종청사에서 업무를 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해양수산부 유기준 장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127~3166	(각 조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스포츠경향^(3127·3128), 조선닷컴^(3129·3130), 인터넷 연합뉴스TV^(3131·3132), 인터넷 서울경제^(3133·3134), 인터넷 국민일보^(3135·3136), 인터넷 MBN^(3137·3138), 연합뉴스^(3139·3140), 인터넷 한국일보^(3141·3142), 아주뉴스^(3143·3144), 인터넷 문화일보^(3145·3146), 인터넷 이코노믹리뷰^(3147·3148), 세계닷컴^(3149~3152), 쿠키뉴스^(3153·3154), 인터넷 헤럴드경제^(3155·3156), 컨슈머타임스^(3157·3158) (각 손배청구) 인터넷 TV조선⁽³¹⁵⁹⁾, 뉴스1코리아⁽³¹⁶⁰⁾, 이투데이⁽³¹⁶¹⁾, 데일리안⁽³¹⁶²⁾, 인터넷 에너지경제⁽³¹⁶³⁾, 시사위크⁽³¹⁶⁴⁾, 뉴시스⁽³¹⁶⁵⁾, 미디어펜⁽³¹⁶⁶⁾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경향 : 『한국부터 독일까지 8500km 쫓아다닌 스톡커 “자매님을 볼 때마다 열정이 샘솟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생활문화면) - 조선닷컴 : 『한국서 독일까지 비행기로 쫓아가며 3년간 스톡킹한 30대 남성 징역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연합뉴스TV : 『유학하며 만난 여성 3년간 스톡킹… 법원 유죄 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독일까지 세 차례나 쫓아간 스톡커… 결국 실형』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스톡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시사면) - 인터넷 MBN : 『스케일이 다른 스톡킹, 첫 눈에 반한 여성 따라 독일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한국서 독일까지 8천500km 날아간 ‘독한’ 스톡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사회면) 외 1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제를 요구한 여성의 뒤를 몰래 밟는 등 광기어린 스톡킹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스포츠경향, 아주뉴스, 인터넷 이코노믹리뷰, 세계닷컴, 쿠키뉴스, 인터넷 헤럴드경제, 컨슈머타임스, 이투데이, 데일리안, 시사위크, 미디어펜/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선닷컴, 인터넷 연합뉴스TV, 인터넷 서울경제, 인터넷 국민일보, 연합뉴스, 인터넷 한국일보, 인터넷 문화일보, 뉴스1코리아, 뉴시스/내용 : 기사수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MBN, 인터넷 TV조선)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한국서 독일까지 비행기로 쫓아가며 3년간 스톡킹한 30대 남성 징역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7월 31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서울경제 : 『독일까지 세 차례나 쫓아간 스톡커… 결국 실형』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7월 3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스톡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6일자 시사면) - 연합뉴스 : 『한국서 독일까지 8천500km 날아간 ‘독한’ 스톡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11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국일보 : 『구매 거절당하자… 8500km 거리 쫓아온 스톡킹』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12일자 사회면) 외 3개 매체

2015서울조정 3167	(정정청구) 해양수산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해수부, 장관 지역구에 씨푸드밸리?... 사실상 부산 낙점, 특혜 논란일 듯』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가 추진 예정인 동북아 수산식품 클러스터(씨푸드밸리) 사업지로 부산시가 사실상 낙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해양수산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168	(정정청구) ○○○의사회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강남의사들의 위험한 비밀클럽』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강남 의사들이 성매매 브로커 소개 받고 성관계를 맺어온 여성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협박을 받은 사람은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169~3188, 3294	(각 정정청구) 박○○ 對 MBN ⁽³¹⁶⁹⁾ , 인터넷 MBN ⁽³¹⁷⁰⁾ (각 정정·손배청구) 인터넷 경향신문 ^(3171·3172) , 뉴스1코리아 ^(3173·3174) , 뉴시스 ^(3175·3176) , 동아닷컴 ^(3177·3178) , e머니투데이 ^(3179·3180) , 인터넷 메트로 ^(3181·3182) , 아시아경제닷컴 ^(3183·3184) , 아시아투데이닷컴 ^(3185·3186) , 조선닷컴 ^(3187·3188) (손배청구) 온라인 중앙일보 ⁽³²⁹⁴⁾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파혼 당하고도 SNS서 부부 행세한 여성 CEO 집행유예』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7일자, 인터넷 MBN 7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30대 유명 여성 CEO 파혼당하자 ‘두 얼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파혼남의 집에 ‘낙서 협박’한 여성 CEO... 집행유예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뉴시스 : 『대법 “파혼 남성 협박... 30대 여성 CEO 집유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수십억 자산가 30대女 CEO, 파혼남 협박 혐의 집행유예 2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파혼 당하자 수시로 협박’ 유명 여성 CEO, 집유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사회면) 외 5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MBN, 인터넷 MBN, 인터넷 경향신문, 뉴시스, 동아닷컴, 아시아경제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조선닷컴, 온라인 중앙일보/사유 : 기사삭제) • 각 조정불성립결정 (뉴스1코리아, e머니투데이, 인터넷 메트로)

2015서울조정 3189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박근혜는 가리고 노무현은 키운 MBC의 ‘성완중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성완중 전 경남기업 비자금 관련 보도를 하면서 수사 대상을 야권으로 넓히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190	(정정청구) 유기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IMO총장 당선 “모두 내 덕” 낮 뜨거운 공치사 난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을 두고 해수부 장관인 신청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부처간 협업과 외교력의 승리라고 포장해 눈총을 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191·3192	(정정·손배청구) (주)○○○ 對 서울일보닷컴
조 정 대 상	(1) 『○○○○○촌 수탁업체 특감결과 비공개 고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사회면) (2) 『남은 기간 좀 빼먹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6일자 사회면) (3) 『겨울에도 푸르지 못하다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한번도 하지 않은 강통회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193~3196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파이낸셜뉴스 ^(3193·3194)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195·3196)
조 정 대 상	『지상파 VOD 가격 협의, 담합 여부 논란』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7월 3일자 1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3일자 경제/IT면)
신청인 주장	지상파 3사의 합작회사인 신청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관련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설립”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18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7월 24일자 경제/IT면)

2015서울조정 3197·3198	(정정·손배청구) 한○○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여주시, “뉴욕 페스티벌” 홍보 대사 신천지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일자 종교면) (2) 『여주시, “뉴욕 페스티벌” 6만 명 관람 폐막 홍보대사… 신천지 논란 오점』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종교면)
신청인 주장	작가이자 모 지자체 전 홍보대사인 신청인이 신천지 신도이며 수상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여주시 홍보대사 신천지 신도 의혹]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종교면)

2015서울조정 3199·320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조 정 대 상	『○○시의원 아파트 배관공사 시공사 선정 외압 의혹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5일자 수도권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시의원인 신청인이 아파트 배관공사 시공사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의원 아파트 배관공사 시공사 선정 외압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201·3202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對 인터넷 신동아
조 정 대 상	『“경복궁 교태전은 왕비가 교태 부리는 곳”』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호 206면~2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관광통역 안내사 대부분이 한국을 비하하는 내용의 해설을 하고 폭리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중국인 관광객 가이드 양성하는 전○○ 한국○○○○○○○협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68면)
2015서울조정 3203	(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뉴데일리경제
조 정 대 상	『GKL “더 이상 크루즈 검토 안한다”… 해수부, 외국합작으로 선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크루즈산업 활성화 정책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204, 3205	(각 손배청구) 허○○ 對 TV조선 ⁽³²⁰⁴⁾ , 인터넷 TV조선 ⁽³²⁰⁵⁾
조 정 대 상	이슈해결사 박대장 프로그램 『부인에 흥기 휘두른 무자비한 남편』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7월 10일자, 인터넷 TV조선 7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부싸움 관련 내용을 동의 없이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06·3207	(정정·반론청구) ○○○골프앤리조트○○○○○ (주)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단독] 부산도공과 ○○○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관광단지 개발사업 관련 한국자산신탁과 자금관리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신탁사의 자금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부산도공과 ○○○골프앤리조트의 ‘수상한 거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210	(정정청구) 동해시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이슈 프로그램 『지자체의 두 얼굴… 바가지 요금 부채질』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동해시가 위탁 운영하는 리조트의 휴가철 숙박 요금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요금’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YTN 2015년 8월 12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211, 3212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국민일보 ⁽³²¹¹⁾ , 인터넷 국민일보 ⁽³²¹²⁾
조 정 대 상	(1) 『박원순 시장 “동성애자 권리 찬성”』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6월 2일자 29면~30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2일자 미션라이프면) (2) 『박원순 시장 ‘친동성애 정책’에 혈세 2억원』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6월 4일자 29면~30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4일자 미션라이프면) (3) 『동성애 단체, 지방선거 때 박원순 시장 지지』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6월 5일자 29면~30면, 인터넷 국민일보 6월 5일자 미션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동성애 관련 발언과 서울시의 인권관련 정책을 왜곡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퀴어문화축제 실체를 파헤친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9월 3일자 28면, 인터넷 국민일보 9월 2일자 미션라이프면)

2015서울조정 3213	(정정청구) 최민희 對 뉴데일리
조 정 대 상	『朴대통령 놓고 민병주-진선미 두 女의원 격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일으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214, 3215	(각 정정청구) (사)○○보호시민단체 ○○ 對 씨앤비뉴스 ⁽³²¹⁴⁾ , 아주뉴스 ⁽³²¹⁵⁾
조 정 대 상	• 씨앤비뉴스 : 『법원 “테마동물원 ○○의 동물학대 ○○ 주장은 허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테마동물원 ○○에 대한 동물보호단체 ○○의 주장 허위사실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모 테마동물원은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씨앤비뉴스 : 『[반론보도] “테마동물원 ○○의 동물학대 ○○ 주장은 허위”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아주뉴스 : 『[반론보도] “테마동물원 ○○의 동물학대 ○○ 주장은 허위”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5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216·3217, 3239~3256, 3261·3262	(추후·손배청구) 남○○ 對 MBN ^(3216·3217) (각 추후·손배청구) 뉴스1코리아 ^(3239·3240) , 조선닷컴 ^(3241·3242) , 이슈타임 ^(3243·3244) , 인터넷 뉴스신문고 ^(3245·3246) , 더팩트 ^(3247·3248) , 풀빵닷컴 ^(3249·3250) , kidok.com ^(3251·3252) , 뉴스미션 ^(3253·3254) , e뉴스 ^(3255·3256) , 다음 ^(3261·3262)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굶주린 아동 돕자더니”... ○○대책본부 정부지원금 부당사용』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 뉴스1코리아 : 『국제NGO 단체 선교사, 역대 정부지원금 횡령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계속되는 시민단체 인사들의 잡음... 도덕성 논란 또 제기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 이슈타임 : 『○○대책본부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 “세계 기아 아동 돕는다더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정치·사회면) • 인터넷 뉴스신문고 : 『아동 도우라고 준 ○○대책본부 지원금, 엉뚱한 곳에?』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사회면) • 더팩트 : 『○○대책본부 파견 선교사, 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 풀빵닷컴 : 『○○대책 선교사 빈곤아동 지원금 부당 사용 정황』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커뮤니티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한국○○○○대책기구 ○○○지부 대표인 신청인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MBN :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3일자) • 뉴스1코리아 : 『‘횡령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사회면) • 조선닷컴 :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5일자 사회면) • 이슈타임 : 『[정정보도]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정치·사회면) • 인터넷 뉴스신문고 : 『‘횡령 혐의 ○○대책 ○○○지부 남모 씨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사회면) • 더팩트 : 『[정정보도] ○○대책본부 파견선교사 정부지원금 부당사용,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사회면) • 풀빵닷컴 : 『[정정보도] ○○대책본부 파견선교사 정부지원금 부당 사용,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4일자 커뮤니티면) 외 4개 매체

2015서울조정 3218	(정정청구) 대통령 경호실 對 내일신문
조 정 대 상	『군인사 문란 장관 위에 경호실장』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0일자 6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경호실의 군사관리관 인사가 군 직제령 등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잘못 보도했고, 경호실장이 군 인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대통령 경호실 ‘군 인사 문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5일자 6면)

2015서울조정 3219, 3220, 3228, 3232~3234, 3236~3238, 3257, 3258, 3260, 3265, 3266	(각 추후청구) 손○○ 외 1인 對 경향신문⁽³²¹⁹⁾, 인터넷 경향신문⁽³²²⁰⁾, 한국일보⁽³²²⁸⁾, 인터넷 한겨레⁽³²³²⁾, 뉴스1코리아⁽³²³³⁾, 뉴스토마토⁽³²³⁴⁾, 인터넷 PD저널⁽³²³⁶⁾, 인터넷 기자협회보⁽³²⁵⁷⁾, 오마이뉴스⁽³²⁶⁰⁾ 손○○ 외 2인 對 미디어스⁽³²⁶⁶⁾ 손○○ 對 아시아경제닷컴⁽³²³⁷⁾, 인터넷 미디어오늘^(3238, 3265), 부스앤뉴스⁽³²⁵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YTN 간부들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12면, 인터넷 경향신문 4월 9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YTN 간부 3인, 원○○과 통화 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9면) 외 1건 - 인터넷 한겨레 : 『YTN노조 “사측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YTN 노조, “YTN 주요간부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9일자 뉴스면) - 뉴스토마토 : 『YTN 노조, ‘불법사찰’ 관련 총리실 전 직원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16일자 IT/벤처면) - 인터넷 PD저널 : 『YTN노조, 파업 계속 이어 간다』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메인면)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방송사 간부인 신청인들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 뉴스토마토, 인터넷 PD저널, 아시아경제닷컴, 인터넷 기자협회보, 미디어스/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한국일보, 인터넷 미디어오늘/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인터넷 한겨레, 뉴스1코리아/사유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오마이뉴스/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 경향신문 : 『“불법사찰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14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7일자 사회면) - 한국일보 : 『“불법사찰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사회면) - 뉴스토마토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 인터넷 PD저널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외 6개 매체

2015서울조정 3221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인터넷 건설경제
조 정 대 상	『[취재 에필로그] 머나먼 정상화』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에 패심죄로 부실 벌점을 매겼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머나먼 정상화 보도’ 관련 철도시설공단 측 반론』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산업면)

2015서울조정 3222~3225	(각 추후·손배청구) 조○○ 對 일요신문 ^(3222·3223) , 인터넷 일요신문 ^(3224·3225)
조 정 대 상	『[단독보도]모 교회 목사 부인 충격 주장 조○○ ○○○교회 원로목사 사기혐의 피소 내막』 제하의 기사 (일요신문 2014년 6월 16일자 경제면, 인터넷 일요신문 6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목사인 신청인이 사기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조○○ ○○○○○교회 원로목사 무혐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226·3227	(정정·추후청구) 한○○ 對 중앙일보
조 정 대 상	『올드스쿨 걸스데이 소진, “우겔 찍고 싶은 사람은 성시경 선배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애인인 유명가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5서울조정 3229~3231	(각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디지털데일리 ⁽³²²⁹⁾ , 미디어스 ^(3230, 3231)
조 정 대 상	• 디지털데일리 : 『MBC-유료방송 협상난항... 무한도전 무료 VOD 사라지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5일자 뉴스면) • 미디어스 (1) : 『MBC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 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미디어뉴스면) • 미디어스 (2) :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로 내다 본, 해직자 판결 미리보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MBC와 유료방송사간 SVOD 협상 관련, IPTV 업계가 MBC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법원이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판결에서 이상호 기자가 MBC를 고발하는 트윗을 게시한 행위가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디지털데일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미디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디지털데일리 : 『‘MBC-유료방송 협상난항... 무한도전 무료 VOD 사라지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뉴스면) • 미디어스 : 『‘이상호 기자 해고무효’ 관련 기사 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미디어뉴스면)

2015서울조정 3235	(정정청구) (주)○○기업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대 출신업체에 광고권 특혜 줬다』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군부대의 특혜로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옥외광고판의 광고권을 획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5년 8월 19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259	(손배청구) 주○○ 對 MBC-TV
조 정 대 상	PD수첩 프로그램 『데이트 폭력』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데이트 폭력 피해 사연을 보도하면서 실명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50만원, 부제소)

2015서울조정 3263·3264	(반론·손배청구) ○○○○○의료원 對 인터넷 매일노동뉴스
조 정 대 상	『보건의료노조 “○○의료원 정상화하려면 원장 퇴진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7일자 노동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료원의 노사분규와 관련 노동조합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노동이슈면)

2015서울조정 3267·3268, 3296·3297	(각 정정·반론청구) 최○○ 對 한국일보 ^(3267·3268) , 인터넷 한국일보 ^(3296·3297)
조 정 대 상	(1) 『비리인사를 국립대 총장에… 황당한 교육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5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2) 『‘자격시비’ ○○ 국립대 총장 제자논문 가로챈 의혹까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6일자 28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3) 『논문표절 의혹 총장 감싸는 교육부… “연구부정 엄단” 빈 말이었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7일자 28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4) 『총장 검증 손 놓은 교육부, 국립대 망친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20일자 29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립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동일 주제 논문 중복 게재 및 표절 등의 연구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69·3270	(정정·손배청구) 류○○ 對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조 정 대 상	『76만 사회복지사 단체장 성희롱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0일자 사회복지면)
신청인 주장	모 협회 회장인 신청인이 여직원을 성희롱 했고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71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젯밥’ 뉴스 MBC, 방통위원장 스튜디오에 앉히는 ‘꿀볼견’』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MBC가 광고규제 완화를 위해 방통위원장을 방송에 출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젯밥’ 뉴스 MBC, 방통위원장 스튜디오에 앉히는 꿀볼견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미디어뉴스면)

2015서울조정 3272~3275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중앙일보 ^(3272·3273) , 온라인 중앙일보 ^(3274·3275)
조 정 대 상	『웃음거리 된 어린이집 ‘사생활 보호 CCTV’』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7월 30일자 12면, 온라인 중앙일보 7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실패한 ‘어린이집 CCTV 사생활보호 프로그램’ 시연회를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이 진행한 다른 시연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기타)
이 행 결 과	『‘어린이집 CCTV 사생활보호 프로그램’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28일자 2면)

2015서울조정 3276, 3277	(각 정정청구) 조달청 對 스포츠서울 ⁽³²⁷⁶⁾ , 인터넷 스포츠서울 ⁽³²⁷⁷⁾
조 정 대 상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5년 7월 16일자 2면, 인터넷 스포츠서울 7월 16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조달청의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선정 관련, 조달청장과 업체간 유착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스포츠토토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스포츠서울 2015년 8월 21일자 2면, 인터넷 스포츠서울 8월 20일자 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3278	(정정청구) 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포항 ○○대 총장 ‘새누리 ○○을 조직위원장 신청’... 잡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총장인 신청인이 학내 분규 관련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총장직을 일신 영달을 위한 디딤돌로 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포항 ○○대 총장 ‘새누리 ○○을 조직위원장 신청’... 잡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5년 8월 24일자 지역면)

2015서울조정 3279	(정정청구) 박○○ 對 차의세계
조 정 대 상	『연해적전의 구증구포설을 전면 부정하고 나선 박○○의 반론을 논박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30면~36면)
신청인 주장	차문화 연구가인 신청인의 소송인 응송이 초의선사의 제다법을 계승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선가의 전통제다법을 부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280~3282	(정정·반론·손배청구) ○○○○○○○○○코리아(주) 對 KBS-1TV
조 정 대 상	시사기획 창 프로그램 『외국 투자기업의 그늘』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을 부당 해고했고 노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양당사간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소송을 통해 진위여부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반론보도로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283~3286	(각 조정·손배청구) ○○○○○○○○대표회의 對 아시아타임즈 ^(3283·3284)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3285·3286)
조 정 대 상	『어른 다툼에 상처 입는 아이들』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7월 20일자 16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7월 20일자 수도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내 공부방을 사업권을 둘러싼 다툼때문에 예고 없이 폐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업권 분쟁으로 인한 공부방 폐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8월 24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287~3289	(정정·반론·손배청구) (주)○○○○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TV보조출연의 그늘①] “사라진 출연시간”… 일 끝길까 말도 못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메인면) (2) 『[TV보조출연의 그늘②] “빛 좋은 개살구”… 고용·산재보험서도 “사각지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방송 보조출연 기획사인 신청인 회사가 보조출연자에게 급여표를 제공하지 않고 출연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TV보조출연 기획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290~3292	(정정·반론·손배청구) 박○○ 對 e채널
조 정 대 상	용감한 기자들 프로그램 『별에서 온 귀족녀』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293	(손배청구) (주)○○ 對 몬스터짐
조 정 대 상	『멘데즈는 맥그레거에게 가장 완벽한 상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격투면)
신청인 주장	종합격투기 이벤트사인 신청인 회사가 원칙과 과정을 무시하고 격투기 대진을 결정하고 소속 선수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295	(정정청구) 조○○ 對 세계일보
조 정 대 상	『엔터리 인사행정에 ○○의료원 비리자 복직』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모 의료원 원직복귀가 주먹구구식 인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298	(정정청구) 포천시의회 對 인터넷 포천뉴스
조 정 대 상	『장자산업단지 비리의혹 조사특별위원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시의회면)
신청인 주장	포천시의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장자산업단지 폐수처리업체 선정 관련 비리를 확인하고 고발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포천시의회 장자일반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시의회면)

2015서울조정 3299·3300	(정정·손배청구) 오 ○ 對 아시아투데이닷컴
조 정 대 상	『영양군, 불법 오토캠핑장 단속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중인 오토캠핑장이 불법 시설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301	(정정청구) (주)○○○○○○○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野, 재계약 안돼 黨속 이전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유 빌딩에 입주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청인의 재계약 거부로 당사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종합면)

2015서울조정 3302~3327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경인KBS-1TV ⁽³³⁰²⁾ , KBS미디어 ⁽³³⁰³⁾ , SBS-TV ⁽³³⁰⁴⁾ , SBS 콘텐츠허브 ⁽³³⁰⁵⁾ , MBN ⁽³³⁰⁶⁾ , 인터넷 MBN ⁽³³⁰⁷⁾ , YTN ⁽³³⁰⁸⁾ , 인터넷 YTN ⁽³³⁰⁹⁾ , TV조선 ⁽³³¹⁰⁾ , 인터넷 TV조선 ⁽³³¹¹⁾ , 연합뉴스 ⁽³³¹²⁾ , 노컷뉴스 ⁽³³¹³⁾ , 시사포커스신문 ⁽³³¹⁴⁾ , 이슈타임 ⁽³³¹⁵⁾ , 전국뉴스 ⁽³³¹⁶⁾ , 코나스 ⁽³³¹⁷⁾ , 푸드투데이 ⁽³³¹⁸⁾ , 매경닷컴 ⁽³³¹⁹⁾ , 아시아경제닷컴 ⁽³³²⁰⁾ , 온라인 중앙일보 ⁽³³²¹⁾ , 인터넷 경향신문 ⁽³³²²⁾ , 인터넷 국민일보 ⁽³³²³⁾ , 인터넷 매일일보 ⁽³³²⁴⁾ , 인터넷 메트로 ⁽³³²⁵⁾ , 인터넷 서울신문 ⁽³³²⁶⁾ , 인터넷 신아일보 ⁽³³²⁷⁾
조 정 대 상	• 경인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재료 사용 도시락 납품한 사회적기업 대표 등 검거』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KBS 미디어 3월 4일자 사회면) • SBS-TV : 8시 뉴스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 두 얼굴의 사회적 기업』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6일자, SBS 콘텐츠허브 3월 4일자 사회면) • MBN : 뉴스8 프로그램 『“불량 도시락” 대량 유통한 사회적 기업』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인터넷 MBN 3월 4일자 사회면) • YTN : 뉴스10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도시락... 예비군 훈련장에』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4일자, 인터넷 YTN 3월 4일자 사회면) • TV조선 : 뉴스7 프로그램 『유통기한 지난 불량 도시락 제조한 사회적 기업』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5일자, 인터넷 TV조선 3월 5일자 사회면) 외 1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사회적 기업 직원인 신청인들이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TV조선, 인터넷 TV조선/내용 : 추후보도)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SBS-TV, SBS 콘텐츠허브, MBN, 인터넷 MBN, YTN, 인터넷 YTN, 매경닷컴/내용 : 추후보도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경인KBS-1TV, KBS 미디어, 연합뉴스, 노컷뉴스, 시사포커스신문, 이슈타임, 전국뉴스, 코나스, 푸드투데이, 아시아경제닷컴, 온라인 중앙일보, 인터넷 경향신문, 인터넷 국민일보, 인터넷 매일일보, 인터넷 메트로, 인터넷 서울신문, 인터넷 신아일보/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경인KBS-1TV : 뉴스광장 프로그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사회적 기업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8일자) • SBS-TV : 뉴스퍼레이드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의 보조금 수급 등 관련 추후 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6일자) • MBN : 전국네트워크뉴스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보조금 수급 등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8일자) • YTN : 뉴스10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보조금 수급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3일자) • TV조선 : 생방송 광화문의 아침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관련 추후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3일자) 외 16개 매체

2015서울조정 3328	(추후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YTN
조 정 대 상	뉴스10 프로그램 『바늘학대 의심 고소장 접수… 경찰 수사 나서』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329	(정정청구) (사)○○○○협회 對 인터넷 한의신문
조 정 대 상	『○○협의 언론중재위 제소에 꼬리 내린 의협』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협회가 모 협회 임원진을 고소한 사건을 보도한 모 언론사가 기사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 보도내용의 잘못을 인정한 결과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 신청/사유 : 기사삭제할 정도의 위법성을 지닌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330	(정정청구) 송○○ 對 쉬핑데일리
조 정 대 상	『송회장 책임 안지고 경영권확보, 또 관리인 노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스페셜리포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표로 있는 모 기업이 법정관리 신청 당시 금전채권 170억원을 선 순위 채무로 인정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 송○○ 회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스페셜리포트면)

2015서울조정 3331~3334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조선일보 ^(3331·3332) , 조선닷컴 ^(3333·3334)
조 정 대 상	『眞僞 불분명한 일방적 폭로 명석 갈아준 ‘국민방송 KBS’』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8월 3일자 2면, 조선닷컴 2015년 8월 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KBS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관련 장남 측 주장을 “특종 욕심에 검증 없이 보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9월 25일자 2면, 조선닷컴 9월 25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서울조정 3335, 3336	(각 정정청구) 김경협 對 한국일보 ⁽³³³⁵⁾ , 인터넷 한국일보 ⁽³³³⁶⁾
조 정 대 상	『비노세작 발언 김경협 당직 자격정지 징계 확정』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7월 10일자 6면, 인터넷 한국일보 7월 1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당직 자격정지 징계로 내년 총선에 못 나올 공산이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337, 3338	(각 정정청구) 교육부 對 경향신문 ⁽³³³⁷⁾ , 인터넷 경향신문 ⁽³³³⁸⁾
조 정 대 상	- 경향신문 : 『대통령에 보고한 ‘문·이과 통합’ 슬그머니 없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1면 및 5면, 인터넷 경향신문 7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1) 『[길 잃은 교육과정 개정] ‘2015 개정’은 수능 개선책 찾다 나온 ‘돌발 개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교육입시면) (2) 『[길 잃은 교육과정 개정] 통합교육·학습 경감·현장 중심… “3가지 약속 다 안 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교육입시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길 잃은 교육과정 개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8월 22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향신문 8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39~3342	(각 반론·손배청구) 문○○ 對 국민일보 ^(3339·3340) , 인터넷 국민일보 ^(3341·3342)
조 정 대 상	『동네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데려가면… 절도 혐의 유죄? 무죄?』 제하의 기사 (국민일보 2015년 7월 10일자 13면, 인터넷 국민일보 7월 10일자 시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길고양이 구조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일부 주민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13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바로잡습니다] 7월 10일자 13면 ‘동네주민 사랑받던 길고양이 데려가면… 절도 혐의 유죄? 무죄?’ 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시사면)

2015서울조정 3343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에이블뉴스
조 정 대 상	(1) 『○○○ 사태 광주시 주도로 본격 감사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오피니언면) (2) 『○○○ 비리와 인권침해를 철저히 규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자 오피니언면) (3) 『비대위, ○○○ 사태 왜곡 보도 강경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0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4) 『○○○ 사태에 교사들도… “우리 자존감 없는 교사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전국넷면) (5) 『장애인거주시설인가? 장애인 사망시설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후원금을 착복하고 거주 장애인을 학대하는 등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44~3347	(각 정정·손배청구) ○○○○○ 복지노동조합 對 메디칼타임즈 ^(3344·3345) , 메디파나뉴스 ^(3346·3347)
조 정 대 상	• 메디칼타임즈 : 『○○의료원 복수노조 탄생… 노사갈등 새국면 맞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병원·의대면) • 메디파나뉴스 : 『“○○의료원” 갑작스런 노사 협약체결… 내막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종합병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과 사측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사측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메디칼타임즈 : 『○○의료원 복수노조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병원·의대면) • 메디파나뉴스 : 『○○의료원 복수노조 관련 정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348	(정정청구) 송○○ 對 동아일보
조 정 대 상	『北청소년, 수학공부도 스파르타식… 성적 미달땐 ‘얼차려’ 받는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2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북한의 수학영재교육을 폄하하는 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 수정)
이 행 결 과	『北청소년, 수학공부도 스파르타식… 성적 미달땐 ‘얼차려’ 받는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동아닷컴 2015년 8월 18일자 과학일반면)

2015서울조정 3349, 3350	(각 정정청구) 해군본부 對 시사저널 ⁽³³⁴⁹⁾ , 인터넷 시사저널 ⁽³³⁵⁰⁾
조 정 대 상	『해군, 레이더 결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강행』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8월 4일자 14면~17면, 인터넷 시사저널 8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해군이 레이더 결함이 있는 해상작전헬기 수입을 강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해군 레이더 결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강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9월 23일자 46면, 인터넷 시사저널 9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51~3354	(각 반론·손배청구) ○○대학 對 노컷뉴스 ^(3351·3352) , 인터넷 한국일보 ^(3353·3354)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1) 『55명 중 39명에게 F학점 준 대학 교수 ‘유령학생’ 주장』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지역면) (2) 『○○ ○○대학 ‘유령학생’들 국가장학금 수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지역면) (3) 『유령학생 출석부 서둘러 폐기했다 교육부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지역면) 외 7건 • 인터넷 한국일보 : (1) 『○○ ○○대학 학점장사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사회면) (2) 『○○ ○○대 학생 출석부 제멋대로 폐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사회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모 대학이 학생총원율을 높이기 위해 유령 학생을 입학시키고 허위 학점을 줬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노컷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가 아닌 반론보도는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실보도이므로 반론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대학’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한국일보 2015년 9월 3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355~3376, 3381~3390, 3399~3410	(각 추후·손배청구) 염○○ 對 미디어스^(3355·3356, 3399·3400), 인터넷 미디어오늘^(3357·3358, 3407·3408), 인터넷 기자협회보^(3359·3360), 인터넷 PD저널^(3361·3362), 오마이뉴스^(3363·3364), 뉴스1코리아^(3365·3366), e머니투데이^(3367·3368), 폴리뉴스^(3369·3370), 프레시안^(3371·3372), 인터넷 BBS불교방송^(3373·3374), 인터넷 경향신문^(3375·3376), 노컷뉴스^(3381·3382), 뉴스앤뉴스^(3383·3384), 뉴스토마토^(3385·3386), 아시아경제닷컴^(3387·3388), 뉴시스^(3389·3390), 시사IN Live^(3401·3402), 인터넷 한겨레^(3403·3404), 뉴스타파^(3405·3406), 인터넷 한국일보^(3409·3410)
조 정 대 상	• 미디어스 :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8일자 미디어뉴스면) 외 5건 ※2015서울조정3266사건에 병합 • 인터넷 미디어오늘 : 『YTN 주총서 사원주주들, 배석규 사장 퇴진 압박』 제하의 기사 (2013년 3월 22일자 메인면) 외 3건 ※2015서울조정3238사건에 병합 • 인터넷 기자협회보 : 『YTN 간부-“민간사찰” 원○○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뉴스면) 외 4건 ※2015서울조정3257사건에 병합 • 인터넷 PD저널 : 『YTN간부 ‘불법사찰’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뉴스면) 외 2건 ※2015서울조정3236사건에 병합 • 오마이뉴스 : 『민간인 사찰 주역과 YTN 간부들의 “수상한 통화내역”』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메인면) 외 1건 • 뉴스1코리아 : 『YTN 노조, “YTN 주요간부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메인면) 외 1건 • e머니투데이 : 『YTN간부들, 불법사찰 터지자 “사찰자” 원○○과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메인면) 외 13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방송사 간부인 신청인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미디어스, 인터넷 기자협회보, 인터넷 PD저널, e머니투데이, 인터넷 경향신문, 뉴스앤뉴스, 뉴스토마토, 아시아경제닷컴, 뉴시스, 뉴스타파/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인터넷 미디어오늘,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추후 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폴리뉴스, 프레시안, 인터넷 BBS뉴스, 노컷뉴스, 시사IN Live/사유 : 추후보도) • 각 취하 (오마이뉴스, 인터넷 한겨레/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 미디어스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팀장 추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 인터넷 미디어오늘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메인면) • 인터넷 기자협회보 : 『“불법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메인면) • 인터넷 PD저널 : 『“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메인면) • 오마이뉴스 : 『“불법사찰 공모” YTN ○○팀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메인면) • 뉴스1코리아 : 『“불법사찰에 연루” YTN ○○팀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메인면) • e머니투데이 : 『“불법사찰에 연루” YTN ○○팀장 ‘혐의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일자 사회면) 외 13개 매체

2015서울조정 3377~3380	(각 정정·손배청구) 권○○ 對 조선일보 ^(3377·3378) , 조선닷컴 ^(3379·3380)
조 정 대 상	『[단독] 경매로 나온 유병언 一家 부동산, 다시 구원파 계열회사 품으로』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8월 14일자 사회면, 조선닷컴 8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텔런트 전모 씨의 남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391	(반론청구) 박○○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간부 공무원 승진 5분만에 번복 논란… 경찰에 고발』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3일자)
신청인 주장	모 소방본부 승진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된 소방서장급 승진자를 외압을 받고 번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2015서울조정 3392	(반론청구) 조○○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부패 척결 외치던 조○○ 前 청장 뇌물 사건에 충격받은 경찰』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것처럼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조○○ 전 경찰청장 뇌물수수’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393~3396, 3447~3462	(각 반론·손배청구) 장○○ 對 채널A ^(3393·3394) , 인터넷 채널A ^(3395·3396) , 인터넷 MBN ^(3447·3448) , SBS 콘텐츠허브 ^(3449·3450) , 인터넷 경향신문 ^(3451·3452) , 인터넷 국민일보 ^(3453·3454) , 연합뉴스 ^(3455·3456) , 인터넷 일요신문 ^(3457·3458) , 인터넷 한겨레 ^(3459·3460)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3461·3462)
조 정 대 상	- 채널A : 시사인사이드 프로그램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 네티즌 무더기 고소… 결과는?』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일자, 인터넷 채널A 6월 1일자 뉴스면) - 인터넷 MBN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고 노 전 대통령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경향신문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업체의 무리수… 비난 네티즌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사회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형상의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397·3398	(정정·손배청구) 이○○ 對 MBC-TV
조 정 대 상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도난차 추격전 빛난 시민의식』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8일자) - 생방송오늘 프로그램 『무면허에 만취로 차량절도! 영화 같은 추격전』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차량 절도 범행 사실을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3411	(정정청구) 화천군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화천군수의 집요 - 간교한 빨갱이 짓』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화천군 베트남참전기념관 내 평화수호참전기념탑에 설치된 대형 조각품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5서울조정 3412, 3413	(각 정정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경인KBS-1TV ⁽³⁴¹²⁾ , KBS 미디어 ⁽³⁴¹³⁾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갈 길 먼 정상화... 이유는?』 제하의 보도 (경인KBS-1TV 2015년 7월 14일자, KBS 미디어 7월 14일자 경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에 대한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 부실급식과 인권유린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장애인사회복지법인 보도’ 관련 고침』 제하의 기사 (KBS 미디어 2015년 9월 16일자 경인면)

2015서울조정 3414, 3415	(각 손해청구) 김○○ 對 JTBC ⁽³⁴¹⁴⁾ , 인터넷 JTBC ⁽³⁴¹⁵⁾
조 정 대 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유병언 1년 허상을 쫓았다?』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7월 26일자, 인터넷 JTBC 7월 2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신청인 초상 삭제,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50만원, 부제소)

2015서울조정 3416, 3417, 3569	(각 정정청구) 유대운 對 조선일보 ⁽³⁴¹⁶⁾ , 조선닷컴 ⁽³⁴¹⁷⁾ , 인터넷 일요시사 ⁽³⁵⁶⁹⁾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의원들의 브레이크 없는 ‘수퍼甲 횡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4면, 조선닷컴 8월 18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일요시사 : 『〈사설〉 안행위 국감, 유대운과 강신명』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시사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술을 마신 뒤 경찰지구대를 찾아가 지역구 내에서 발생한 바바리맨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소동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조선닷컴 : 『의원들의 브레이크 없는 ‘수퍼甲 횡포’』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27일자 정치면) - 인터넷 일요시사 : 『〈사설〉 안행위 국감, 유대운과 강신명』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삭제 (2015년 9월 21일자 시사칼럼면)

2015서울조정 3418, 3419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³⁴¹⁸⁾ , 인터넷 한국일보 ⁽³⁴¹⁹⁾
조 정 대 상	『現 장관 의원시절 보좌관을? ○○○대의 수상한 교수 임용』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8일자 28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현 교육부장관의 전 보좌관이 학력 및 경력 등이 부족함에도 교수로 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20~3432	(각 손해청구) 고○○ 외 2인 對 인터넷 TBS ⁽³⁴²⁰⁾ , 인터넷 YTN ⁽³⁴²¹⁾ , 인터넷 경향신문 ⁽³⁴²²⁾ , 세계닷컴 ⁽³⁴²⁴⁾ , 연합뉴스 ⁽³⁴²⁶⁾ , 온라인 중앙일보 ⁽³⁴²⁸⁾ , 쿠키뉴스 ⁽³⁴²⁹⁾ , KBS미디어 ⁽³⁴³⁰⁾ , 뉴스1코리아 ⁽³⁴³¹⁾ , SBS 콘텐츠허브 ⁽³⁴³²⁾ 고○○ 외 1인 對 내외뉴스통신 ⁽³⁴²³⁾ , 아시아투데이닷컴 ⁽³⁴²⁵⁾ , 인터넷 일간스포츠 ⁽³⁴²⁷⁾
조 정 대 상	- 인터넷 TBS : 『50대 전 교수 여제자 상습 성추행해』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뉴스면) - 인터넷 YTN : 『찜질방·노래방에서 여제자 성추행한 교수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외 1건 - 인터넷 경향신문 :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전 교수 입건』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내외뉴스통신 : 『대학교 50대 교수, 노래방서 여제자 허리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세계닷컴 :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대학교수, 수사받자 사표냈지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인터넷 아시아투데이닷컴 : 『여제자 상습 성추행 대학 교수 구속송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찜질방에서, 노래방에서...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前 교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사회면)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장소, 범행 내용 등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터넷 TBS, 인터넷 YTN, 인터넷 경향신문, 내외뉴스통신, 세계닷컴, 아시아투데이닷컴, 연합뉴스, 인터넷 일간스포츠, 온라인 중앙일보, 쿠키뉴스, KBS 미디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SBS 콘텐츠허브/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女제자 추행 대학 교수, 수사하자 사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28일자 경기면) - SBS 콘텐츠허브 : 『여제자 상습 성추행한 50대 전직 교수』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8월 3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433	(정정청구) (주)문화방송 對 미디어스
조 정 대 상	『참여정부 끌어들이는 MBC와 TV조선의 님은 꼴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4일자 미디어뉴스면)
신청인 주장	‘성완중 리스트’와 ‘2012년 불법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MBC가 여당 편향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34~3437	(각 정정·손배청구) (주)○○○○○ ^(3434·3435) , ○○○○(주) ^(3436·3437) 對 대한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국가인증 위조에 국가기관 납품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KS 국가인증을 부정 발급받거나 인증번호를 부정 사용했으며, 국방부에 성능미달 제품을 납품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438~3440	(정정·반론·손배청구) (주)소셜뉴스 對 인터넷 헤럴드경제
조 정 대 상	『배우 김○○ “동료 대한 잡담 끌어 모아 기사화” 발끈, 무슨 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연예·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언론사가 연예인의 트위터 글을 당사자 동의 없이 기사화한 것에 대해 부도덕한 짓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키트리의 배우 김○○ 트윗 기사화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연예·스포츠면)

2015서울조정 3441	(반론청구) 송○○ 對 TV조선
조 정 대 상	뉴스쇼판 프로그램 『대출 담보 차량 대포차로 처분한 일당 검거』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무등록 대부업자를 협박하였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뉴스쇼판 프로그램 『대포차 사기』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5일자, 인터넷 TV조선 9월 25일자 사건사고면)
2015서울조정 3442	(반론청구) 박○○ 對 SBS 스포츠
조 정 대 상	주간야구 프로그램 『보문산 호루라기』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7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야구장에서 고성과 욕설, 쓰레기통 투척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서 미비)
2015서울조정 3443·3444	(정정·손배청구) 박○○ 對 데일리메디
조 정 대 상	『국립중앙의료원 노사관리 강사 놓고 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5일자 의원/병원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의료원의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만든 당사자라는 노조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45·3446	(정정·손배청구) ○○구 자동차매매단지관리단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자동차매매단지 내홍 전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4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관리단이 공금으로 음주, 도박을 하고, LED 조명 교체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과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일요초대석> ○○자동차매매단지 김○○ ○○단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인물면)

2015서울조정 3463, 3464	(각 손해청구) 박○○ 對 KBS-1TV ⁽³⁴⁶³⁾ , KBS미디어 ⁽³⁴⁶⁴⁾
조 정 대 상	이웃집 찰스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5인방』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8월 25일자, KBS미디어 8월 25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신청인 관련 영상삭제, 손해배상 3백만원, 부제소 - 동의 후 지급)

2015서울조정 3465~3468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SBS-TV ^(3465·3466) , SBS 콘텐츠허브 ^(3467·3468)
조 정 대 상	뉴스토리 프로그램 『빠들린 돈으로 황제의 삶... 초호화 결혼식 올리는 경제사범』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일자, SBS 콘텐츠허브 6월 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 특별 접견실에서 자유 시간을 보내는 등 편만한 수감생활을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469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 경향이 없는 유족에 바가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일자 상조뉴스면)
신청인 주장	상조회사인 신청인이 분양이 금지된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했고,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서울조정 3470·3471	(정정·손배청구) 임태희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코엑스를 흔드는 손』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12년 모 상가 상인회로부터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고, 상인들의 재입점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양당사자간 이의 신청/사유 : 신청인은 정정보도의 내용 및 게재방법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정정보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472·3473, 3515·3516	(각 정정·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인터넷 미디어오늘
조 정 대 상	(1) 『세계일보 논설위원의 ‘셀프’ 사장 임명?』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미디어면) (2)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세계일보 사장으로 임명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미디어면) (3) 『세계일보 기자들 “통일교에서 사장 교체 통보한 적 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미디어면) (4) 『세계일보 주화파 vs 주전파의 대립?』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8일자 미디어면) (5) 『‘정윤희 문건’ 후폭풍, 세계일보 사장 교체 임박』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미디어면) (6) 『세계일보 ‘정윤희 특종’ 기자들 집단 사표 냈다 철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미디어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거 없이 신임 세계일보 사장 임명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1~5번 기사/사유 : 기간 초과) 기각 (6번 기사/사유 : 사실보도)

2015서울조정 3474·3475	(정정·손배청구) 박○○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성매매업소서 학교예산 횡령한 전 이사장 복귀추진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파면된 신청인이 진행하고 있는 해고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반대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파면된 사학재단 전 이사장 복귀 추진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476	(정정청구) 대통령 경호실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군, 남북 긴장 풀리자마자… 별들의 긴급 전쟁』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3면)
신청인 주장	대통령 경호실장이 국방부에 청와대 군사관리관의 유임을 요청하여 근무케 한 것이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대통령 경호실 ‘군 인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일자 3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3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477·3478	(정정·반론청구) 이○○ 對 JTBC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대 고위 보직교수, 동료 여교수 성추행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3일자) (2) 뉴스룸 프로그램 『○대 교수 성추행, 진상조사 착수… 의혹 대부분 인정』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4일자) (3) 뉴스룸 프로그램 『성추행 의혹 교수에 3개월 정직 처분… 감싸기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대학교수인 신청인의 동료 여교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대 보직교수 성추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479~3482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한국일보 ^(3479·3480) , 인터넷 한국일보 ^(3481·3482)
조 정 대 상	『○○○협회 변칙 입법로비 의혹』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31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3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협회의 입법로비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0월 26일자 2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31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483~3486	(각 정정청구) 김○○ 對 중앙일보 ⁽³⁴⁸³⁾ , 온라인 중앙일보 ⁽³⁴⁸⁴⁾ , 매경닷컴 ⁽³⁴⁸⁵⁾ , 뉴스1코리아 ⁽³⁴⁸⁶⁾
조 정 대 상	• 중앙일보 : 『설경구, 악성 댓글 쓴 주부 고소 취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4일자 20면, 온라인 중앙일보 6월 4일자 연예면) • 매경닷컴 : 『설경구, 아내 송윤아 비방한 악플러 30대 주부 고소 취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스타투데이면) • 뉴스1코리아 : 『설경구 악플러 고수 취하 결정, 왜 일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유명배우와 그의 가족에 대해 악성 댓글을 쓴 악플러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기사삭제) • 취하 (매경닷컴/사유 - 기사삭제) • 취하 (뉴스1코리아/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뉴스1코리아 : 『‘설경구 악플러 고소 취하 결정, 왜일까’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연예면)

2015서울조정 3487, 3488	(각 정정청구) 김○○ 對 경제풍월 ⁽³⁴⁸⁷⁾ , 인터넷 경제풍월 ⁽³⁴⁸⁸⁾
조 정 대 상	『[DMZ 지뢰도발] ‘전투복 입고 돌아 오라’』 제하의 기사 (경제풍월 2015년 9월 2자 3면, 인터넷 경제풍월 9월 2일자 국가비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DMZ 지뢰도발 사건에 관한 사전 ‘엠바고’ 요청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김광진 의원 DMZ 지뢰도발 엠바고 파기 관련』 제하의 기사 (경제풍월 9월 23일자 3면, 인터넷 경제풍월 2015년 9월 10일자 국가비전면)

2015서울조정 3489, 3490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한국일보 ⁽³⁴⁸⁹⁾ , 인터넷 한국일보 ⁽³⁴⁹⁰⁾
조 정 대 상	(1) 『日 독도도발에 맞설古지도가 썩어간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0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2) 『“기증 청할 땐 언제고...”古지도 대모의 울분』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0일자 8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3) 『○○박물관장 “○○대가 보복성 징계 절차”』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17일자 1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부설 박물관의 유물을 부실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제기를 한 박물관장을 보복 징계하려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김○○ 박물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25일자 수도권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3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491~3506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3491·3492) , 미디어펜 ^(3493·3494) , e머니투데이 ^(3495·3496) , 시사포커스신문 ^(3497·3498) , 뉴스1코리아 ^(3499·3500) , 뉴시스 ^(3501·3502) , 아주뉴스 ^(3503·3504) , 유엔엔 ^(3505·3506)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공금으로 일본 여행간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조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 미디어펜 : 『○○대, 공금횡령·직원 무단 동원 등 김○○ 박물관장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유물 팔아 수익원 ‘횡령’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포커스신문 : 『○○대, 공금횡령 ○○박물관장 김○○ 교수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대, ‘횡령 혐의’ ○○박물관장 직위 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모 대학 측의 일방적인 징계결정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원기사의 기사 제목 수정 및 신청인 주장 삽입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향신문 :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부당 법정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0일자 사회면) - 미디어펜 :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부당…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 前○○박물관장 “직위 해제 부당…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사회면) - 시사포커스신문 : 『김○○ ○○박물관장, ○○대와 ‘부당 직위 해제’ 법적 분쟁』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대 ○○박물관장 직위 해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사회면) 외 3건

2015서울조정 3507, 3508	(각 추후청구) ○○코퍼레이션 對 에너지경제 ⁽³⁵⁰⁷⁾ , 인터넷 에너지경제 ⁽³⁵⁰⁸⁾
조 정 대 상	(1) 『2억짜리를 7억에... 수상한 수의계약』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4월 23일자 1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4월 23일자 에너지산업면) (2) 『국산화 했다더니 납품제품은 중국산?』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4월 23일자 3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4월 23일자 에너지산업면) (3) 『국가 신기술인증 받은 제품이 사실은 중국산?』 제하의 기사 (인터넷 에너지경제 2014년 12월 23일자 에너지산업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공기업과의 거래 시 가격을 부풀린 혐의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코퍼레이션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에너지경제 2015년 9월 16일자 1면, 인터넷 에너지경제 9월 16일자 에너지산업면)

2015서울조정 3509~3512, 3513, 3514, 3517, 3518	(각 정정·손배청구) ○○○○○코리아(유) 외 2인 對 JTBC ^(3509·3510) ○○○○○코리아(유) 對 인터넷 JTBC ^(3511·3512) (각 손배청구) 임○○ ^(3513, 3514) , 구○○ ^(3517,3518) 對 JTBC ^(3513, 3517) , 인터넷 JTBC ^(3514, 3518)
조 정 대 상	(1) 뉴스룸 프로그램 『그래도 1명 골라보세요... 후보 뽑는 여론조사도 ‘영터리’』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31일자, 인터넷 JTBC 8월 31일자 사회면) (2) 뉴스룸 프로그램 『조사기관 ‘내용 공개 거부’』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인터넷 JTBC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여론조사 회사인 신청인이 새누리당 양산시장 후보자 공천 여론조사에서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양산시장 여론조사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10월 23일자, 인터넷 JTBC 10월 2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19·3520	(정정·손배청구) 윤○○ 외 1인 對 SBS-TV
조 정 대 상	뉴스스토리 프로그램 『강제입원 5만 명 ‘가족이 날 가뒀다?’』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21, 3523	(각 반론청구) (사)○○○○선교회 외 1인 對 e뉴스 ⁽³⁵²¹⁾ , 교회와 신앙 ⁽³⁵²³⁾
조 정 대 상	- e뉴스 : 『‘구원파’ ○○○○선교회 박○○ 목사 징역 9년 구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교계면) - 교회와 신앙 : 『청부 살해 시도 의혹 제기… 박○○ 관련 재판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이단&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회 소속 목사가 구원파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교회와 신앙/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e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e뉴스 : 『○○○○선교회, ‘구원파’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일자 교계면) - 교회와 신앙 : 『○○○○선교회 및 박○○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이단&이슈면)

2015서울조정 3522	(정정청구) ○○○○협회중앙회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단독〉 ○○○○협회 200억 빌딩 편취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협회 200억 빌딩 편취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24·3525, 3667~367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법률정보신문 ^(3524·3525) , 연합뉴스 ^(3667·3668) , SBS 콘텐츠허브 ^(3669·3670) , 인터넷 국민일보 ^(3671·3672)
조 정 대 상	- 법률정보신문 : 『쇼핑몰 ‘위탁관리자’ 모집광고서 돈만 날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주부들 상대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 위탁 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6일자 뉴스면) - SBS 콘텐츠허브 : 『주부들 상대 ‘온라인 아동복 쇼핑몰’ 위탁 사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 인터넷 국민일보 : 『간식비 벌려다가 인터넷 쇼핑몰 잘못 만나 수천만원 뜯긴 주부들 경찰에 도움 호소』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부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편취하는 온라인 쇼핑몰 위탁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526	(정정청구) 한국방송공사 對 한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노보
조 정 대 상	『의혹, 공공유용·방송개입 진실을 밝혀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1면~3면)
신청인 주장	KBS가 이사장의 개인용무 해외출장에 공금을 집행했고, 이사장의 압력을 받고 이사장 출연 프로그램에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노보라는 특성상 사측의 주장을 게재하기 어려우며 사실보도이므로 정정보도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527	(반론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SBS스페셜 프로그램 『가족끼리 왜 이래』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3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속만 받고 부모를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버지의 강통 통장』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SBS 콘텐츠허브 2015년 10월 19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3528~3530	(정정·반론·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과일칩쌀떡 청년의 황당 횡포』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과일칩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자인 신청인이 가맹점들에게 갑의 횡포를 부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31~3533, 3581~3586, 3591, 3592, 3685, 3710~3713, 3825	(각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경향신문 ^(3531~3533, 3581, 3583, 3585, 3712, 3713) , 주간경향 ^(3582, 3584, 3586, 3685) , 인터넷 주간경향 ^(3591, 3592, 3825) , 경향신문 ^(3710, 3711)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1) 『국정원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2일자 사회일반면) (2) 『○○○ 용역팀은 ‘국정원 댓글부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9일자 사회일반면) (3) 『○○○ ‘댓글부대’ 석연찮은 해명, 찢찢매는 권력기관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5일자 사회일반면) 외 5건 - 주간경향 : (1) 『국정원은 검찰수사의 성역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32면~35면, 인터넷 주간경향 9월 1일자 사회면) (2) 『○○○ 용역팀은 ‘국정원 댓글 부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38면~39면, 인터넷 주간경향 9월 1일자 사회면) (3) 『○○○ ‘댓글부대’ 석연찮은 해명, 찢찢매는 권력기관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38면~39면, 인터넷 주간경향 9월 15일자 사회면) - 경향신문 : (1) 『‘댓글’ 의혹 용역팀 “국정원과 정보 협력”』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1면~2면) (2) 『국정원의 ○○○ ‘댓글부대’ 개입 의혹 규명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3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기관으로부터 수주한 사업이 국가정보원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 취하 (인터넷 주간경향⁽³⁸²⁵⁾/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34, 3535	(각 반론청구) (사)○○○○○○운동연합 對 중앙일보 ⁽³⁵³⁴⁾ , 인터넷 중앙일보 ⁽³⁵³⁵⁾
조 정 대 상	『암살 안옥윤의 조국과 2015년 대한민국』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5일자 27면, 인터넷 중앙일보 9월 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해방 후 김구 선생이 여의도 비행장을 통해 귀국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9월 5일자 ‘암살 안옥윤의 조국과 2015년 대한민국’ 제목의 ‘중앙시평’과 관련』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24일자 3면)

2015서울조정 3536·3537	(정정·손배청구) 장○○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당신의 ‘장난’에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출혈이 심한 시민을 구할 때 입은 피 묻은 제복 사진을 총 기사고로 숨진 의경 제복의 사진이라고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3538, 3539	(각 손해청구) 염○○ 對 MBN ⁽³⁵³⁸⁾ , 인터넷 MBN ⁽³⁵³⁹⁾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범행동기 ‘오리무중’』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9월 9일자, 인터넷 MBN 9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살인사건 관련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40, 3541	(각 정정청구) 조○○ 對 인터넷 스포츠조선 ⁽³⁵⁴⁰⁾ , 인터넷 한겨레 ⁽³⁵⁴¹⁾
조 정 대 상	- 인터넷 스포츠조선 : 『성추행 당한 여배우A “김○○ 아냐… 男배우B, 속옷 찢고 마구 만졌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연예면) - 인터넷 한겨레 : 『과한 연기 한 남자 배우, 성추행일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영화촬영 중 연기를 빙자해 여배우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스포츠조선 : 『[반론보도] 영화 촬영 중 여배우 성추행 주장 사건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연예면) - 인터넷 한겨레 :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42, 3568	(각 반론청구) 은평구 對 아시아경제닷컴
조 정 대 상	『은평뉴타운서 아파트 분양허가 8번 좌절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4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은평구가 모 건설사의 은평뉴타운 내 건축 허가를 보류한 이유가 구청장의 공약이나 민원 때문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약속)

2015서울조정 3543	(반론청구) 서○○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한 명이 7개월간 273건 헌법소원 제기, 예산낭비 심각』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헌법소원을 남용하는 악성 청구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44·3545	(정정·손배청구) 최○○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연합회장, 명절휴가비·시간외수당 지급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연합회장의 판공비가 1년에 약 4억원이라고 얘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546~3549, 3594·3595	(각 정정·반론청구) 유○○ 對 쿠키뉴스 ^(3546·3547) , 뷰스앤뉴스 ^(3548·3549) , 인터넷 일요신문 ^(3594·3595)
조 정 대 상	- 쿠키뉴스 : 『부산대 이어 ○대서도 ‘일베 교수’ 논란… ‘정치 편향성’ vs ‘표현의 자유’』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3일자 뉴스면) - 뷰스앤뉴스 : 『‘일베 교수’ “盧, 부영이 바워서 떨어져 IQ 69”』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교육면) - 인터넷 일요신문 : 『학점 몰모삼아 정치색 드러낸 교수님? 대학가 일베 교수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출제한 시험문제 지문이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내용이라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뷰스앤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쿠키뉴스/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인터넷 일요신문/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쿠키뉴스 : 『‘일베 교수’와 맞서게 된 대학생들 기사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6일자 뉴스면) - 뷰스앤뉴스 : 『‘○○대 일베 교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일요신문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52	(손배청구) 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광주APT에서 초등 1년생 男, 14층에서 추락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자녀가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자택을 알 수 있게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553·3554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리얼스토리논 프로그램 『염산테러 당한 여자, 택시운전사는 왜?』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7일자)
신청인 주장	보령 염산테러 사건 배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소운영자와의 인터뷰에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명을 표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55	(반론청구) (주)○○○○○○ 對 SBS-TV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소방관 장갑 살돈도 없다는데... 줄줄 새는 70억』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앙119구조본부에 다목적 제독차 3대를 과도한 가격에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8시뉴스 프로그램 『‘다목적 제독차 납품 국고손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2일자)

2015서울조정 3556	(정정청구) ○○○○○○보험(주)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대형 보험사 4곳 2000억 사기 당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18면~2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당한 해외여행자보험 사기피해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해외 여행자 보험사기 관련』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1월 10일자 65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9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57~3564	(각 정정·손배청구) 진성준 對 중앙일보 ^(3557~3560) , 온라인 중앙일보 ^(3561~3564)
조 정 대 상	(1) 『국감위스트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12일자 5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12일자 정치면) (2) 『경찰청장에게 총쏘기 시연까지 시키는 국정감사』 제하의 기사 (중앙일보 2015년 9월 15일자 34면, 온라인 중앙일보 9월 15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565	(정정청구) 손○○ 對 인터넷 태권라인
조 정 대 상	『누가 태권도 단증 없이도 태권도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팀&현장탐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단증이 없어도 태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제한 폐지를 주도했고 권력을 남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단증없이...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6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3566, 3567	(각 정정청구) 조○○ 對 세계일보 ⁽³⁵⁶⁶⁾ , 세계닷컴 ⁽³⁵⁶⁷⁾
조 정 대 상	(1) 『“조○○에 자리 보전 대가 역대 상납”』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0일자 1면, 세계닷컴 9월 10일자 정치면) (2) 『돈 선거·인사 파행… 보훈처 명령도 무시한 ‘막가파 회장님’』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0일자 3면, 세계닷컴 9월 10일자 정치면) (3) 『조○○ 해외출장 ‘부실투성이’』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1일자 1면, 세계닷컴 9월 11일자 정치면) (4) 『조회장, 이권회사 대표에 측근들 얹혀… 제2 BW사건 ‘시한폭탄’』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1일자 6면, 세계닷컴 9월 11일자 정치면) (5) 『“회장에 집중된 ‘막강 권한’ 분산… 전문가에 경영 맡겨야”』 제하의 기사 (세계일보 2015년 9월 14일자 6면, 세계닷컴 9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단체 회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570~3573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디지털타임스 ^(3570·3571) , 인터넷 일요저널 ^(3572·3573)
조 정 대 상	• 디지털타임스 : 『서초구청, ○○동 ○○시티 부지에 시정명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산업면) • 인터넷 일요저널 : 『○○동 ○○시티(옛 ○○터미널 부지), 낮에는 주차장, 밤에는 산업쓰레기 매립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상적인 계약 없이 모 택지개발 부지에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산업폐기물을 매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디지털타임스/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인터넷 일요저널/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디지털타임스 : 『‘서초구청, ○○동 ○○시티 부지에 시정명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산업면) • 인터넷 일요저널 : 『〈정정 및 반론〉 ‘○○동 ○○시티, 낮에는 주차장 밤에는 산업쓰레기 매립장’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74, 3575	(각 손해청구) 조○○ 對 iMBC ⁽³⁵⁷⁴⁾ , SBS 콘텐츠허브 ⁽³⁵⁷⁵⁾
조 정 대 상	- iMBC : 『“영화에서 본 대로”, 고등학생 5만원 권 위조 지폐범 딜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뉴스투데이면) - SBS 콘텐츠허브 : (1) 『“영화보고 따라해” 5만원 권 위조한 고교생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7일자 사회면) (2) 『“영화 보고 지폐 위조” 간 큰 고교생 ‘딜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위조지폐범 신고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범행 당시 CCTV 속 신청인의 초상과 점포 내부를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iMBC : 『“영화에서 본 대로”, 고등학생 5만원 권 위조 지폐범 딜미』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모자이크 처리 (2015년 10월 2일자 사회면) - SBS 콘텐츠허브 : 『“영화보고 따라해” 5만원 권 위조한 고교생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초상 모자이크 처리 (2015년 9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76, 3577	(각 정정청구)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對 MBN ⁽³⁵⁷⁶⁾ , 인터넷 MBN ⁽³⁵⁷⁷⁾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 재건축 조합원 투신 자살』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9월 16일자, 인터넷 MBN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 자살한 이유가 조합의 시공사 선정 관련 비리 때문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와이드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 재건축 조합원 투신 자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10월 21일자, 인터넷 MBN 10월 2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78	(손배청구) 왕○○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두 정거장 차인데 패션은 ‘극과 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학생들의 학교별 패션을 비교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기사수정,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두 정거장 차인데 패션은 ‘극과 극’』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사진 삭제 (2015년 10월 2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579, 3580	(각 정정청구) 하남시 對 아시아타임즈 ⁽³⁵⁷⁹⁾ ,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³⁵⁸⁰⁾
조 정 대 상	『하남시, 홍수관리구역 논밭 매각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8월 17일자 11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8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하남시가 홍수관리구역의 사유지를 특정인에게 매각하고 규정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하남시, 홍수관리구역 논밭 매각 특혜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아시아타임즈 2015년 10월 2일자 11면, 인터넷 아시아타임즈 10월 2일자 수도권면)

2015서울조정 3587~3590	(각 손해청구) 박○○ 對 MBN ⁽³⁵⁸⁷⁾ , 인터넷 MBN ⁽³⁵⁸⁸⁾ , 네이버 ⁽³⁵⁸⁹⁾ , 다음 ⁽³⁵⁹⁰⁾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5살 친아들 살해』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4일자) • 인터넷 MBN : 『“남편만 따르는 것 미워서” 5살 아들 살해한 친엄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네이버 9월 15일자 사회면, 다음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N, 인터넷 MBN/내용 : 피신청인 유감표명, 손해배상 70만원, 부제소) • 각 조정성립 (네이버, 다음/내용 : 부제소, 기타)

2015서울조정 3593	(반론청구) 황○○ 외 1인 對 조선일보
조 정 대 상	『40대 여성, 참고인 조사 다음날 자살한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강압수사로 참고인이 자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조선일보 2015년 10월 15일자 2면, 조선닷컴 10월 15일자 사고면)

2015서울조정 3596	(정정청구) 이○○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수업 내용 적으라”... ○○고 제보교사 ‘사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부장교사인 신청인이 학교 내부 사안을 제보한 교사의 수업내용을 사찰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 제보교사 사찰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교육면)

2015서울조정 3597	(정정청구) ○○○○○○협동조합연합회 對 한국경제
조 정 대 상	『협동조합 이름 내건 다단계 사기꾼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고 단정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립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598·3599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교육부 ‘송 ○ ○○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 결정’』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모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이사장 승인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 결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교육면)

2015서울조정 3600	(반론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위클리오늘
조 정 대 상	(1) 『경남 ○○○○대 사학비리 의혹 관련, 교내 일부 교수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사회면) (2) 『경남 ○○○○대, 개인정보 열람으로 인권침해 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의 사학비리를 제기한 교수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경남 ○○○○대 사학비리 및 개인정보 침해’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01~3616, 3779~379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KBS-1TV ^(3601·3602) , MBC-TV ^(3603·3604) , YTN ^(3605·3606) , JTBC ^(3607·3608) , MBN ^(3609·3610) , 인터넷 경향신문 ^(3611·3612) , 세계닷컴 ^(3613·3614) , 뉴데일리 ^(3615·3616) , 뉴시스 ^(3779·3780) , 더팩트 ^(3781·3782) , 동아닷컴 ^(3783·3784) , e 머니위크 ^(3785·3786) , 인터넷 스포츠조선 ^(3787·3788) , 아시아경제닷컴 ^(3789·3790) , 아주뉴스 ^(3791·3792) , 조선닷컴 ^(3793·3794)
조 정 대 상	• KBS-1TV : 뉴스9 프로그램 『“결혼 안 해 준다” 초등생 잡고 두 시간 반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MBC-TV :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내연녀 초등생 아들 상대 인질극 50대男 긴급체포』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YTN : 뉴스만만 프로그램 『순천 아파트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안 만나준다” 앙심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MBN : 뉴스BIG5 프로그램 『2시간 40여분 순천 아파트 인질극, 이유 들어 보니 ‘이럴 수가’』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순천 아파트 인질극, 9살 인질 풀어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일자 사건·사고면) 외 10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신청인과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KBS-1TV/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JTBC/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인터넷 경향신문, 세계닷컴, 뉴데일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MBC-TV, MBN) • 각 취하 (뉴시스, 더팩트, 동아닷컴, e머니위크, 인터넷 스포츠조선, 아시아경제닷컴, 아주뉴스, 조선닷컴/사유 : 기사삭제) • 취하 (YTN/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 KBS-1TV : 뉴스7 프로그램 『법원, '9살 어린이 인질극' 남성 징역 2년 선고』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5일자) • JTBC : 아침& 프로그램 『9살 남아 인질극 남성에 징역 2년』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6일자) • 인터넷 경향신문 : 『[정정 및 반론보도문]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오피니언면) • 세계닷컴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사회면) • 뉴데일리 :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17~366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경향신문^(3617·3618), 노컷뉴스^(3619·3620), e머니투데이^(3621·3622), 인터넷 메트로^(3623·3624), 세계닷컴^(3625·3626), 인터넷 스포츠경향^(3627·3628), 아시아투데이닷컴^(3629·3630), 인터넷 일요신문^(3631·3632), 인터넷 뉴스신문고^(3633·3634), 조선닷컴^(3635·3636), 인터넷 헤럴드경제^(3637·3638), 연합뉴스^(3639·3640), 뉴시스^(3641·3642), 뉴스1코리아^(3643·3644), KBS미디어^(3645·3646), iMBC^(3647·3648), SBS 콘텐츠하브^(3649·3650), MBN^(3651·3652), 인터넷 MBN^(3653·3654), 현대HCN관악방송^(3655·3656), 네이버^(3657·3658), 다음^(3659·3660), 네이트^(3661·3662), 구글^(3663·3664), 줌^(3665·3666)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대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을 벌인 서울대 졸업생』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노컷뉴스 : 『'○○대 명예 실추' 시비에 교직원-졸업생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대 명예 실추시켰다” 성희롱 교직원 폭행한 졸업생』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메트로 : 『“○○대 명예 더럽혔다”... 졸업생,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세계닷컴 : 『○○대 출신작가, “성희롱으로 학교 명예 더럽혔다”며 ○○대 직원과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인터넷 스포츠경향 : 『○○대 졸업생이 ‘성희롱’ 교직원 찾아가 몸싸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 아시아투데이닷컴 : 『○○대 성희롱 교직원과 졸업생 주먹다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외 18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교직원인 신청인이 학교 졸업생과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고 보도됐으나 검찰에서 ‘죄가 안 됨’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인정)

2015서울조정 3673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박○○ 목사 무죄, ‘수백억 원’ 사기 의혹에도 “입증됐다 보기 어려워”』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사기 의혹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박○○ 목사 무죄, ‘수백억 원’ 사기 의혹은 무죄』 제하의 기사 중 기사 제목 및 신청인 관련 기사 수정 (2015년 9월 3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74, 3675	(각 정정청구) 변○○ 對 JTBC ⁽³⁶⁷⁴⁾ , 인터넷 JTBC ⁽³⁶⁷⁵⁾
조 정 대 상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유병언 1년 허상을 쫓았다?』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7월 6일자, 인터넷 JTBC 7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되었던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676	(정정청구) 장○○ 對 사건의내막
조 정 대 상	『성범죄 사건 속출... 대형마트 가기 무섭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컨슈머리포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피해자인 대형마트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초기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마트 측의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아울렛 성폭행 미수 사건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677, 3678	(각 정정청구) 유○○ 對 JTBC ⁽³⁶⁷⁷⁾ , 인터넷 JTBC ⁽³⁶⁷⁸⁾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값비싼 “히말라야 핑크소금”, 실상 알고보니...』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9월 21일자, 인터넷 JTBC 9월 21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는 히말라야 식용암염이 위생상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핑크소금’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10월 20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679·3680	(정정·손배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기자의 눈] 철도 안전보단 유라시아열차 홍보가 우선?』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오피니언면) (2) 『승무원도 예매 취소 못하는 최신 코레일 특, 오류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사회면) (3) 『“철도공기업 CEO 평가” “흑자보다 안전”... 인명사고 발생 땀 해임 건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사회면) (4) 『코레일, 최근 5년간 음주 직원 76명 적발... 솜방망이 처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일자 사회면) (5) 『수당 줄테니 없애자... 코레일 자동승진 폐지의 불편한 진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가 안전문제 보다는 단기 경영흑자와 홍보에 치중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반론보도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681	(정정청구) 한국광물자원공사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광물공사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 “많이 해먹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사의 모 해외 주재원들이 회사 운영비로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룸 프로그램 『‘광물공사 주재원들, 골프·유흥비 25억’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10월 16일자, 인터넷 JTBC 10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82	(반론청구) 법무부 對 SBS-TV
조 정 대 상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담장 위를 걷는 특권』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서울남부구치소가 특정 수용자에게 외부 반입 음식물 허용, 골프생방송 시청 등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열린TV 시청자세상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SBS 2015년 12월 2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1일자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 홈페이지)

2015서울조정 3683, 3684	(각 정정청구) ○○○○○선교회 對 마이씨네 ⁽³⁶⁸³⁾ , 아이크레뉴스 ⁽³⁶⁸⁴⁾
조 정 대 상	- 마이씨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마이씨네면) - 아이크레뉴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교단의 총재가 여대생을 선별해 잠자리에 들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 마이씨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10월 1일자 마이씨네면) - 아이크레뉴스 : 『영화 <치외법권> 속 교주 실제 모델은?』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삭제 (2015년 10월 1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686	(손배청구) ○○○○○○협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웨딩사업 투자’ 사기 친 단체 대표, 2심서 집유·석방』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장의 개인비리 관련 재판결과를 보도하면서, 신청인 협회명을 밝혀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 행 결 과	『‘웨딩사업 투자’ 사기 친 단체 대표, 2심서 집유·석방』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2015년 10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87·3688	(각 정정·손배청구) ○○유치원 對 인터넷 주간고양신문
조 정 대 상	『5세 여아, 흘린 음식 훔아먹고 성추행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유치원의 운전기사가 원아를 성추행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알림)
이 행 결 과	『‘일산 Y유치원’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89·3690	(정정·손배청구) ○○○○○입주자대표회의 對 동아닷컴
조 정 대 상	『빛 좋은 개살구, ‘○○○하우스’ 실제 살아보니...』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9일자 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테라스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아파트단지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하우스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서울조정 3691	(정정청구) ○○○○대학교 對 인터넷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대, 편법 입학·제적으로 충원을 높였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총장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시설의 장애인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 편법 입학·제적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692~3695	(각 정정·손배청구) ○○○○개발(주) 對 한국일보 ^(3692·3693) , 인터넷 한국일보 ^(3694·3695)
조 정 대 상	(1) 『○○○○공고 후적지 ‘연립주택’ 꿈수분양 논란』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15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4일자 사회면) (2) 『달성군, 남○○○○○ ‘꿈수’ 분양 팔짱』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16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15일자 사회면) (3) 『○○○○공고 후적지 개발, 잇단 불법 물의』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9월 23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인 신청인 회사가 과장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되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696	(손배청구) 이○○ 對 인사이트
조 정 대 상	『한 번 입으면 무조건 반하는 아름다운 ‘생활한복’ 사진 5장』 제하의 사진 (2015년 9월 29일자 라이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SNS에 게시한 생활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무단 게재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서울조정 3697·3698	(정정·손배청구) ○○○○○○○○ (주) 외 1인 對 이뉴스투데이
조 정 대 상	『직원을 사지(死地)로 내 몬 ‘카지노 ○○○ 임○○ 대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 구치소에 수감된 직원의 석방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직원 중국 구치소 구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699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의정부뉴스
조 정 대 상	『의정부시 자매결연지 방문 관광 의혹 눈총』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베트남 하이증시와의 자매도시 조인식에 출입기자단을 배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700~3703	(각 정정·손배청구) (주)덴탈포커스 對 치의신보 ^(3700·3701) , 데일리덴탈 ^(3702·3703)
조 정 대 상	- 치의신보 : (1) 『치과 재료사주기 운동 펼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5면) (2) 『현 집행부 성과내게 힘 실어줘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5면) - 데일리덴탈 : (1) 『치과 재료사주기 운동 펼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5면) (2) 『현 집행부 성과내게 힘 실어줘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치의에 관련 단체의 기자재전시회(WeDEX) 조직위원회 등이 신청인 언론사에 대해 취재 거부를 결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04, 3705	(각 반론청구) ○○○○○협동조합 對 KBS-1TV ⁽³⁷⁰⁴⁾ , KBS미디어 ⁽³⁷⁰⁵⁾
조 정 대 상	7시 종합뉴스 프로그램 『가입비 10억원... ‘그들만의 리그’ ○○○조합』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9월 14일자, KBS미디어 9월 1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신규 업체에 거액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업체는 예인 작업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광장 프로그램 『○○ 조합 부산지부 “불법 작업 신규업체 배선 거부”』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0월 31일자)

2015서울조정 3706, 3707	(각 정정청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對 머니투데이 ⁽³⁷⁰⁶⁾ , e머니투데이 ⁽³⁷⁰⁷⁾
조 정 대 상	- 머니투데이 : 『국감 후폭풍에 ‘몸살’ 앓는 소진공』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5일자 15면) - e머니투데이 : 『‘모자논란’ 소진공, 국감 후폭풍에 휩싸여』 제하의 기사(2015년 9월 2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이사장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려고 이사장이 디자인한 모자를 행사용품으로 구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08, 3709	(각 정정청구) 이○○ 對 MBN ⁽³⁷⁰⁸⁾ , 인터넷 MBN ⁽³⁷⁰⁹⁾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죽은 동물과 대화 가능한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제하의 보도 (MBN 2015년 10월 3일자, 인터넷 MBN 10월 3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인 신청인이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과도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714, 3715	(각 정정청구) 권은희 對 일요시사 ⁽³⁷¹⁴⁾ , 인터넷 일요시사 ⁽³⁷¹⁵⁾
조 정 대 상	『[긴급입수] 새정치 공천 살생부 공개』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0월 4일자 14~15면, 인터넷 일요시사 10월 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 민주연합에 공천 살생부가 있으며 신청인이 이에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새정치 공천 살생부 공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1월 1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시사 10월 28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716	(정정청구) (사)○○○○○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현○○, 또 삼성 출신 ‘낙하산 인사’ 입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8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법인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외곽조직 역할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3717·3718	(정정·손배청구) ○○○○○○(주) 외 1인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천사, ‘○○○○○섬유’ ○○수의 홍보관 구입 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소비자를 속여 고가에 수익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2015서울조정 3719	(정정청구) 교육부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100억대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수수료 경감 효과는 전혀 없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구축한 ‘대입 공통원서 접수시스템’이 수험생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입원서 접수시스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20	(정정청구) (주)○○○○○ 對 e머니워크
조 정 대 상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편법·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생활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자전거 대여사업권을 서울시로부터 수주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서울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수주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생활문화면)

2015서울조정 3721~3723, 3736	(각 정정청구) ○○○○○○○○ 연합회 對 MBC-TV ⁽³⁷²¹⁾ , iMBC ⁽³⁷³⁶⁾ △△△△△△△△ 연합회 對 MBC-TV ⁽³⁷²²⁾ , iMBC ⁽³⁷²³⁾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비위생 급식?』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6일자, iMBC 10월 6일자 다시보기면) (2) 생방송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사각 지대’ 놓인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발병』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7일자, iMBC 10월 7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정원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엄격하지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24~3727	(각 정정·손배청구) 홍○○ 對 매경닷컴 ^(3724·3725) , 네이버 ^(3726·3727)
조 정 대 상	『천사를 전사로 만드는 사회』 제하의 기사 (매경닷컴 2015년 9월 9일자 오피니언면, 네이버 9월 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 소유 건물 임차인을 협박하고 영업방해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천사를 전사로 만드는 사회”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매경닷컴 2015년 11월 13일자 오피니언면, 네이버 11월 13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3728, 3729	(각 정정청구) 국방부 외 1인 對 한겨레 ⁽³⁷²⁸⁾ , 인터넷 한겨레 ⁽³⁷²⁹⁾
조 정 대 상	『전투기로 장난 하나… 공군 창설 이래 최대위기』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0월 3일자 19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3일자 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차기 전투기 선정과정에서 미국의 압력으로 특정 전투기로 기종을 변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군 창설 이래 최대 위기’ 관련 정정 및 반론』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2월 26일자 21면, 인터넷 한겨레 12월 25일자 군사면)

2015서울조정 3730~3733	(각 정정·손배청구) 강○○ 對 한국일보 ^(3730·3731) , 인터넷 한국일보 ^(3732·3733)
조 정 대 상	『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0월 6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10월 6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경찰서장 재직시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격려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익산시장 판공비로 “경찰서장 등에게 격려금”』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26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6일자 지역면)

2015서울조정 3734, 3735	(각 손배청구) 유○○ 對 JTBC ⁽³⁷³⁴⁾ , 인터넷 JTBC ⁽³⁷³⁵⁾
조 정 대 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유병언 사후 1년, 허상 쫓았다』 제하의 보도 (JTBC 2015년 7월 26일자, 인터넷 JTBC : 7월 2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 관련 수사와 재판 결과를 분석하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공적 관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노출된 초상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신청인의 보호 이익보다 우선)

2015서울조정 3737~3740	(각 정정·반론청구) 인천삼산경찰서 對 경향신문 ^(3737·3738) , 인터넷 경향신문 ^(3739·3740)
조 정 대 상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잡았건만...』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9월 22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불법스포츠도박 현행범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훈방처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법 스포츠 도박 현행범』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1월 6일자 27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41	(정정청구) 의정부시 對 의정부뉴스
조 정 대 상	『의정부시민 혈세로 신세계百貨 앞 광장 단장』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시가 세금을 들여 사유지를 단장해 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742·3743	(정정·손배청구) 양○○ 對 아시아엔
조 정 대 상	(1) 『교민 잇단 피살 마닐라 한인 사업가 “고위경관이 위해음모 가담” 필리핀 경찰청장에 신변보호 요청』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동북아면) (2) 『한국 대사관 및 검찰·사법부 현지 사정 너무 ‘깜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동북아면)
신청인 주장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던 신청인이 현지인을 사주해 다른 교민 사업가에게 누명을 씌우고 위해를 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744, 3745	(각 정정청구) 은평구 對 한국경제 ⁽³⁷⁴⁴⁾ , 한경닷컴 ⁽³⁷⁴⁵⁾
조 정 대 상	『서울시 땅 팔고 구청은 건축불허... 등 터지는 건설사』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10월 12일자 33면, 한경닷컴 10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건설사가 은평구내 아파트 분양관련 건축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가 은평구의 인허가권 남용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은평구 인·허가권 남용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경제 2015년 12월 2일자 33면, 한경닷컴 1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46~3749, 3756~3759, 3775~3778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방송공사 ^(3746~3749) , 주식회사 문화방송 ^(3756~3759) ,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3775~3778) 對 동아일보 ^(3746·3747, 3756·3757, 3775·3776) , 동아닷컴 ^(3748·3749, 3758·3759, 3777·3778)
조 정 대 상	(1) 『정부 무시하는 지상파... 재전송료 협의체도 외면』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8월 12일자 12면, 동아닷컴 8월 12일자 사회면) (2) 『진격의 지상파 방송』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9월 1일자 29면, 동아닷컴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지상파 방송사들이 정부가 구상한 케이블TV 재전송료 협의체에 불참한 이유가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750~3753	(각 정정·반론청구) 해양수산부 對 서울신문 ^(3750·3751) , 인터넷 서울신문 ^(3752·3753)
조 정 대 상	『대한민국 국적 포기합니다- 중견선사 크루즈 허가 위해 1년여 피땀... 결국 홍콩행 왜』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5년 10월 9일자 2면, 인터넷 서울신문 10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국내 한 해운사가 홍콩국적으로 크루즈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해양수산부의 허가 지연 등 행정처리 부실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해수부 크루즈 허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서울신문 2015년 12월 2일자 11면, 인터넷 서울신문 12월 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54, 3755	(각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서울경제 ⁽³⁷⁵⁴⁾ , 네이버 ⁽³⁷⁵⁵⁾
조 정 대 상	『폐간운동 부른 한 잡지의 범법 행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서울경제 2015년 9월 8일자 정치·사회면, 네이버 9월 8일자 정치·사회면)
신청인 주장	남성잡지 맥시코리아의 9월호 표지사진이 여성 납치 및 유기를 묘사한 범죄 조장 행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폐간운동 부른 한 잡지의 범죄 연출 행위』 제하의 기사 중 제목 수정 (인터넷 서울경제 2015년 10월 16일자 정치·사회면, 네이버 10월 16일자 정치·사회면)
2015서울조정 3760, 3761	(각 반론청구) 박○○ 對 연합뉴스 ⁽³⁷⁶⁰⁾ , 연합뉴스TV ⁽³⁷⁶¹⁾
조 정 대 상	• 연합뉴스 :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5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출발 640 프로그램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음주단속 중 시민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연합뉴스 : 『‘경찰관과 시비 한번에... 부부의 꿈 풍비박산’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TV : 출발 640 프로그램 『[반론보도] ○○경찰서 박모경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31일자, 인터넷 연합뉴스TV 10월 31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62~376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대학 對 한국대학신문 ^(3762~3764) , 유엔앤 ^(3765~3767)
조 정 대 상	• 한국대학신문 : 『사이버대 전환·신규 설립 불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4면) • 유엔앤 : 『사이버대 전환·신규 설립 무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의 사이버대학 전환신청이 실패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한국대학신문 : 『○○○○○대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4면) • 유엔앤 : 『○○○○○대학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768·3769, 3826·3827, 3849~3860	(각 정정·손배청구) 황○○ 對 인터넷 한겨레 ^(3768·3769) , 불교닷컴 ^(3826·3827) , 뉴스천지 ^(3849·3850) , 불교포커스 ^(3851·3852) , 불교플러스 ^(3853·3854) , 인터넷 금강신문 ^(3855·3856) , 인터넷 시사저널 ^(3857·3858) , 시사N Live ^(3859·3860)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사 탕화 절도사건… ○○ 스님은 ‘저승사자’ 유출에 시치미 떼는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7일자 사회면) - 불교닷컴 : 『“매불 행위 이사장이 이사회소집하다니…”』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종합면) 외 5건 - 뉴스천지 : 『혜문스님 “절 집안 쉬쉬 그만하고… 탕화 제자리 돌려놔야”』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불교면) - 불교포커스 : 『흥국사 성조스님 “○○스님이 탕화 두 점 빼돌린 건 사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종합면) 외 3건 - 인터넷 금강신문 : 『민불 “○○대 표절 총장, 절도 이사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뉴스면) 외 1건 - 불교플러스 : 『○○사 탕화 은닉 혐의… 문화재청은 등재여부를 공개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뉴스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이사장인 신청인이 사찰 주지 재임 당시 발생한 흥국사 탕화 절도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뉴스천지, 인터넷 금강신문/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 각 조정불성립결정 (인터넷 한겨레, 불교닷컴, 불교포커스, 불교플러스, 인터넷 시사저널, 시사N Live)

2015서울조정 3770	(정정청구) (주)○○○○○ 對 e머니위크
조 정 대 상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편법·몰아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생활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자전거 대여사업권을 서울시로부터 수주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서울 한강 자전거대여사업 수주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생활문화면)

2015서울조정 3771·3772	(정정·반론청구) ○○고 학부모회 對 인터넷 한겨레
조 정 대 상	(1) 『○○고 학부모들, 공익제보 교사에게 “학교 떠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영상뉴스면) (2) 『○○고 학부모들, 공익제보자 퇴진 요구 “침묵 시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1일자 영상뉴스면)
신청인 주장	모 고교 학부모들이 학교 내부문제 제보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침묵시위 동영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고 학부모들 공익제보자 퇴진 요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774·3775	(정정·손배청구) ○○○○○○○○○○조합법인 對 에스티브이
조 정 대 상	『[고발] ○○시립화장장, 유골함 10배 폭리 시 위탁판매 ○○○리 번영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춘천 모 화장장 위탁 운영과 관련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 식당 사진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고발] ○○시립화장장, 유골함 10배 폭리 시 위탁판매 ○○○리 번영회』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식당 모자이크 처리 및 캡션 수정 (2015년 10월 21일자 핫이슈면)

2015서울조정 3795~3798	(각 정정·손배청구) (주)조선방송 對 KBS-1TV ^(3795·3796) , KBS미디어 ^(3797·3798)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육설·막말·비속어, 방송에서 못 쓴다』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0월 7일자, KBS미디어 10월 7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TV조선 뉴스프로그램이 비속어와 인격 비하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육설·막말·비속어, 방송에서 못 쓴다』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2월 5일자, KBS미디어 12월 9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3799·3800	(정정·반론청구) ○○○○○주택조합 對 데일리안
조 정 대 상	『○○동 조합 ‘파산 신청’ ○○은행, 막무가내 집회로 신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주택조합이 횡령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01	(정정청구) (주)○○프로덕션 對 뉴스1스타
조 정 대 상	『[단독] ‘굿바이 미스터 블랙’, SBS 이어 MBC도 편성 불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의 방송 편성이 불발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단독] ‘굿바이 미스터 블랙’, SBS 이어 MBC도 편성 불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1코리아 2015년 10월 22일자 연예면)
2015서울조정 3802, 3803	(각 손배청구) 김○○ 對 KBS-1TV ⁽³⁸⁰²⁾ , KBS미디어 ⁽³⁸⁰³⁾
조 정 대 상	뉴스광장 프로그램 『고속도로 공사 안전불감증 여전』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0월 5일자, KBS미디어 10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속도로 공사의 위험을 알리는 보도에서 현장근로자인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04	(손배청구) ○○○○○○○○○(유) 외 1인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법원, 非 교과목 ‘공부법’ 가르쳐도 “학원 등록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원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청인 교육업체의 회사명과 대표자의 실명을 언급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법원, 非 교과목 ‘공부법’ 가르쳐도 “학원 등록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05	(정정청구) 김관진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김관진, 軍비선 통해 ‘한민구 동향’ 보고 받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 비선을 통해 국방장관의 동향을 보고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4일자 2면)
2015서울조정 3806~3809	(각 정정·반론청구) ○○○○○○ 對 한국일보 ^(3806·3807) , 인터넷 한국일보 ^(3808·3809)
조 정 대 상	『풀뿌리 소송으로 시민단체 바로잡다』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8월 7일자 27면, 인터넷 한국일보 8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대표가 회계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고 단체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1월 12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국일보 11월 1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10	(정정청구) 주철기 對 세계일보
조 정 대 상	『경질 된 주철기, 방산비리 연루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방산비리와 연루되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직에서 경질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2면)

2015서울조정 3811, 3812	(각 반론청구) 김○○ 對 JTBC ⁽³⁸¹¹⁾ , 인터넷 JTBC ⁽³⁸¹²⁾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공혈견” 충격영상 첫 공개』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6일자) • 인터넷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동물복지 사각지대” 공혈견 사육장… 충격 실태 보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모 동물혈액은행이 사육하고 있는 공혈견의 복지를 도외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혈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JTBC 2015년 11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13	(반론청구) 양○○ 對 조선닷컴
조 정 대 상	『조갑제 “죄 없는 박원순 시장 아들에 대한 마녀사냥 헌법 정신에 위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6일자 정치일반면)
신청인 주장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를 주장한 것을 마녀사냥이라고 매도해 관련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814	(정정청구) 교육부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조간 1면, ‘국정화’ 빠지고 ‘교육부 광고’ 게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교육부가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주요 신문 1면에 광고를 게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음)

2015서울조정 3815~3822	(각 정정청구) 유승희 對 동아일보 ⁽³⁸¹⁵⁾ , 문화일보 ⁽³⁸¹⁶⁾ , 세계일보 ⁽³⁸¹⁷⁾ , 조선일보 ⁽³⁸¹⁸⁾ , 한국일보 ⁽³⁸¹⁹⁾ , 인터넷 한국일보 ⁽³⁸²⁰⁾ , 연합뉴스 ⁽³⁸²¹⁾ , 인터넷 YTN ⁽³⁸²²⁾
조 정 대 상	• 동아일보 : 『리더십 실종된 새정치聯의 민낯』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6면) • 문화일보 : 『野 또 ‘난장판’... 兪 “정봉주 특사 1호” 李 “트러블 메이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8면) • 세계일보 : 『또 욕설·막말·소란... 새정치 최고위는 ‘봉숭아 학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6면) • 조선일보 : 『野 최고위, 또 막말 싸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8면) • 한국일보 : 『野 지도부 ‘막장 드라마’ 시즌 3』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5면) 외 3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득 최고위원과 막말 공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동아일보, 문화일보,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세계일보, 조선일보, 인터넷 YTN/사유 : 반론보도) • 취하 (연합뉴스/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동아닷컴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바로잡습니다면) • 인터넷 문화일보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정치면) • 세계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2면) • 조선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5면) • 인터넷 한국일보 :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막말 공방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정치면) 외 2개 매체
2015서울조정 3823·3824, 3957·3958	(정정·손배청구) 현경대 對 경향신문 ^(3823·3824) , 인터넷 경향신문 ^(3957·3958)
조 정 대 상	(1) 『박 대통령 ‘7인회’ 현경대 씨 지난 총선 때 1000만원 받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정치면) (2) 『총선 이틀 전 돈봉투 받은 현경대 ‘고마워요 잘 쓰겠어요’라고 말해』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28, 3829	(각 정정청구) 법무법인 ○○ 對 경향신문 ⁽³⁸²⁸⁾ , 인터넷 경향신문 ⁽³⁸²⁹⁾
조 정 대 상	『박 대통령 ‘7인회’ 현경대 씨 지난 총선 때 1000만원 받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0월 13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13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법인이 이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30	(손배청구) 마○○ 對 현대홈쇼핑
조 정 대 상	상담받고 혜택받고 프로그램 광고 (2015년 10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여행상품 판매 영상에 휴양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노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손해배상 3백만원 지급)

2015서울조정 3831	(정정청구) (주)○○○○○○ 對 전자신문 인터넷
조 정 대 상	『IoT 기술로 산간 오지 ‘사방댐’ 수위 조절한다… 홍수·산사태도 IoT로 해결』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컴퓨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개발한 사방댐 수위조절 시스템을 타 회사가 개발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32·3833	(정정·반론청구) 학교법인 ○○○○○○ ○○○○○○ ○○○○병원 對 라포르시안
조 정 대 상	『○○○○○병원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당해…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노조 지부장이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병원 노조 지부장 집단 괴롭힘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4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834~3836	(각 정정청구) 강○○ 對 하키뉴스코리아 ⁽³⁸³⁴⁾ , 네이버 ⁽³⁸³⁵⁾ , 다음 ⁽³⁸³⁶⁾
조 정 대 상	『아이스하키 명문 ‘자주색 군단’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제하의 기사 (하키 뉴스코리아 2015년 10월 7일자 칼럼면, 네이버·다음 10월 7일자 스포츠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아이스하키 팀 코치인 신청인이 기자의 팀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37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주간현대
조 정 대 상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거 비리 백태』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초기 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마을금고 이사장 재직 시 대출을 남발해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38·3839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1) 『‘닷컴부대’로 의심 ○○○ 용역업체 국정원 간부 출신 ‘회장’ 영입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사회일반면) (2) 『○○○ 용역업체 국정원 출신 김○○ 회장은 누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7일자 사회일반면) (3) 『○○○ ‘닷컴부대’ 용역업체 사장 2013년부터 국정원과 특수 관계 과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4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모 기업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수주한 특정 사업에 신청인이 관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840	(추후청구) 전○○ 對 연합뉴스
조 정 대 상	『스마트폰 액정 일부러 깨고 무상교체 수천만원 “꿀꺽”』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중고 스마트폰을 사들여 액정을 일부러 파손하고 무상교체 받은 후 되팔아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보도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스마트폰 액정 일부러 깨고 무상 교체 수천만원 ‘꿀꺽’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41~3844	(각 정정·손배청구) 강남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오토바이 인도주행, 단속은 한다지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국내사진면) (2)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지워진 횡단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국내사진면) (3) 『정비되지 않는 강남역 횡단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국내 사진면) 외 58건
신청인 주장	강남역 인근 등 곳곳의 횡단보도가 지워진 사진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신청인 강남구에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지워진 횡단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845~3848	(각 정정·손배청구) 권○ 對 파이낸셜뉴스 ^(3845·3846) ,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3847·3848)
조 정 대 상	『역대 최대 규모 선박왕 탈세 사건』 제하의 기사 (파이낸셜뉴스 2015년 10월 8일자 사회면,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국세청 사이의 탈세 관련 소송이 국세청의 전부 승소로 확정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861·3862	(정정·손배청구) (주)○○○○○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유명한 광명동굴 코끼리 차 이 사람에겐 ‘웬수’입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인천경기면) (2) 『코끼리 차 때문에 끝날 뻔 한 25년 공직생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인천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광명동굴 코끼리 차의 납품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63	(반론청구) ○○○○○○복지관 對 인터넷 법보신문사
조 정 대 상	(1) 『부천 ○○복지관 간부 “가임기 여성 다 잘라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교계면) (2) 『자비사상 실현 복지관서 가임기 여성 자른다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간부의 여성 차별적 발언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로 계약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반론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864~3867, 3889~3898, 3899~3906, 3909~3912, 3976~3979	(각 정정·손배청구) ○○○엔터테인먼트 對 한겨레 ^(3864·3865, 3889·3890, 3909~3912) , 인터넷 한겨레 ^(3866·3867, 3891~3898) , 한겨레21 ^(3899~3902) , 인터넷 한겨레 21 ^(3903~3906) , 씨네21 ^(3976·3977) , 씨네21 뉴스서비스 ^(3978·3979)
조 정 대 상	• 한겨레 : (1)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30면, 인터넷 한겨레 7월 29일자 사설·칼럼면) (2) 『TV 속 배경음악마저 ‘열정 페이’의 결과물이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26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9일자 문화면) (3) 『TV 배경음악 저작권료 정산·분배부터 ‘오류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24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6일자 문화면) (4) 『[한겨레 프리즘] ‘배경’ 취급받는 작곡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24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11일자 사설·칼럼면)

조 정 대 상	• 인터넷 한겨레 : 『우리 뭐든 시키는 대로 하는 무명의 작곡기계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문화면) • 한겨레21 : (1) 『이름없는 작곡기계였을 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75면, 인터넷 한겨레21 9월 9일자 레드기획면) (2) 『온전한 노동자, 음악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80면, 인터넷 한겨레21 9월 14일자 레드기획면) • 씨네21 : (1) 『눈을 바쳐 영전할 수 있는 세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문화면, 씨네21 뉴스서비스 8월 18일자 문화면) (2) 『장인들의 천국, 창작자들의 지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문화면, 씨네21 뉴스서비스 9월 15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작곡가들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열정페이로 일하게 하며 저작권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한겨레, 인터넷 한겨레,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씨네21, 씨네21 뉴스서비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1월 27일자 25면, 인터넷 한겨레 11월 26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868·3869	(정정·손배청구) 영화진흥위원회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기자의 눈] 영진위는 ‘정부’가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영화산업 현장에서 영화지원 공적 기구로서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870	(정정청구) (주)아이넷방송 對 문화투데이
조 정 대 상	(1) 『배덕광 의원, “아이넷, 외주제작사에 송출수수료 요구 부당행위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전체기사면) (2) 『김홍국, “아이넷과 가수들 갈등 해결 돼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전체기사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가수들에게 출연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고 외주 제작사에게 송출료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성인가요채널 아이넷방송』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3871, 3872	(각 정정청구) ○○○○○연대 對 국제뉴스 ⁽³⁸⁷¹⁾ , 인터넷 신아일보 ⁽³⁸⁷²⁾
조 정 대 상	• 국제뉴스 : 『[기획]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 갈등 속내 감춘 소모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1일자 전국/경기면) • 인터넷 신아일보 : 『포천 장자산단 열병합발전소 건립 “갈등”』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모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 반대가 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국제뉴스/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인터넷 신아일보/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국제뉴스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포천 열병합발전소 건설갈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0일자 전국/경기면) • 인터넷 신아일보 : 『[정정 및 반론 보도문] “포천 장자산단 열병합발전소 건립 “갈등”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경기면)

2015서울조정 3873	(반론청구) (재)○○○청소년재단 對 MBN
조 정 대 상	뉴스8 프로그램 『정말 동물과 대화하나』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위촉한 애니멀커뮤니케이터들이 엉터리 사기꾼들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지엽말단적이고 사소한 보도여서 조정신청의 실익이 없음)

2015서울조정 3874, 3875	(각 정정청구) (주)○○○○○ 對 MBC-TV ⁽³⁸⁷⁴⁾ , iMBC ⁽³⁸⁷⁵⁾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 프로그램 『VIP 체험단의 비밀』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9월 20일자, iMBC 9월 20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음파운동기가 소비자 정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876, 3877	(각 정정청구) (재)○○○○○원 對 한겨레 ⁽³⁸⁷⁶⁾ , 인터넷 한겨레 ⁽³⁸⁷⁷⁾
조 정 대 상	『전경련, 산하기관 앞세워 ‘야당 낙선운동’ 나서나』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10월 27일자 2면, 인터넷 한겨레 10월 26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기관이 전경련을 대신해 반시장적 야당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도모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78·3879	(정정·손배청구) ○○○○○○유통지원센터 對 조세일보
조 정 대 상	『빈병 보증금 인상은 환경부 관피아 배불리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산업면)
신청인 주장	빈병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신청인 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3880·3881	(정정·반론청구) (사)○○○○○협회 對 트레블데일리
조 정 대 상	『남○○ 선거전략 문제 많다… 비판 쇄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 소속 직원들이 협회 회장 선거 운동에 개입하여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882	(정정청구) 장○○ 對 이투데이
조 정 대 상	『SK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증권금융면)
신청인 주장	SK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3883~3886	(각 정정·손배청구) 김무성 對 한겨레 ^(3883·3884) , 인터넷 한겨레 ^(3885·3886)
조 정 대 상	『‘친일’ 김무성 아버지가 애국자로 둔갑하고 있다』 제하의 기사 (한겨레 2015년 8월 1일자 1면~4면, 인터넷 한겨레 8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선친이 친일행적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는 것이어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887·3888	(정정·손배청구) (주)○○○○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 인수한 ○○산삼, 직원에 다단계식 영업 강요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경제면) (2) 『공정위·경찰, ○○산삼 불법다단계 영업 논란 내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경제면) (3) 『급여 반 깎고 주식 준다… 코 안풀고 상장사 인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경제면) (4) 『삼성·롯데 무단도용, 카페 점장 값 5500만원 선불… 상식 밖의 ○○산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불법 다단계식 영업을 하고 직원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07·3908	(정정·손배청구) 김○○ 對 비전코리아뉴스
조 정 대 상	『생활비 벌려던 주부들 올린 ‘온라인 아동복 쇼핑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부들을 상대로 계약금만 편취하는 온라인 쇼핑물 위탁 사기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13	(정정청구) (주)○○컴퓨터 對 인터넷 일요시사
조 정 대 상	『○○컴퓨터 ‘불량품’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부정확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신청인 회사가 생산하는 컴퓨터의 불량률이 높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14~3917	(각 정정·손배청구) 김한표 對 시사저널 ^(3914·3915) , 인터넷 시사저널 ^(3916·3917)
조 정 대 상	『정·관계 브로커 ‘황○○ 리스트’ 터진다』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0월 12일자 12면, 인터넷 시사저널 10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정·관계 브로커로 의심받고 있는 황모 씨를 배후에서 지원해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황○○ 리스트’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1월 30일자 17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27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3918·3919	(정정·손배청구) (사) ○○○○○○○○○협회 對 오에스이엔
조 정 대 상	『‘○○○○’ 근데 누구세요? 졸속 행사에 주민 마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주최한 ○○국제영화제의 스타로드 행사가 졸속으로 진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20·3921	(정정·손배청구) 배○○ 외 1인 對 불교닷컴
조 정 대 상	『불교경전사이트 ‘○○’ 폐쇄…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불교뉴스면)
신청인 주장	불교신도인 신청인들이 소속사찰 주지를 비난한 스님을 감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22·3923	(정정·손배청구) 박○○ 對 채널A
조 정 대 상	종합뉴스 프로그램 『가수 정○○에 앙심… ‘허위 고소’ 재판』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모 가수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신청인과 가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에 관해 편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24~3927, 3940~3943	(각 정정·반론청구) ○○염전 ^(3924~3927) , ○○○○조합 ^(3940~3943) 對 SBS-TV ^(3924·3925, 3940·3941) , SBS 콘텐츠허브 ^(3926·3927, 3942·3943)
조 정 대 상	SBS스페셜 프로그램 『소금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천일염 논란』 제하의 보도 (SBS-TV 2015년 9월 13일자, SBS 콘텐츠허브 9월 13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천일염이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염전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천일염 논란’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SBS 콘텐츠허브 2015년 11월 23일자 다시보기면 및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

2015서울조정 3928, 3929	(각 손해청구) 이○○ 외 1인 對 매일경제 ⁽³⁹²⁸⁾ , 매경닷컴 ⁽³⁹²⁹⁾
조 정 대 상	『가을 추억 만들어봐요』 제하의 사진 (매일경제 2015년 11월 7일자 19면, 매경닷컴 11월 7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공원에서 데이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초상을 동의 없이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930·3931	(정정·반론청구) ○○고등학교 對 에듀인뉴스
조 정 대 상	(1) 『학생부 비리 <1> 서울 A고등학교, 학생부 수년간 ‘임의 조작’』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뉴스면) (2) 『학생부 비리 <2> 서울교육청, 학생부 조작 알고도 ‘봐주기·축소’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뉴스면) (3) 『<학생부비리>서울교육청 “봉사활동 지침위반 조치할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뉴스면) (4) 『학생부 비리 <3> 전국교고 3년간 멋대로 고쳤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뉴스면) (5) 『학생부 조작, 대학입시 근간 흔들 사건이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고등학교가 학생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하여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서울 A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8일자 뉴스면)

2015서울조정 3932	(손배청구) 김○○ 對 JTBC
조 정 대 상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프로그램 『엄마찾아 일만키로의 여정』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4일자)
신청인 주장	북한 주민이 탈북하는 과정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탈북자인 신청인의 초상을 여과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33	(반론청구) 국가보훈처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1)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 현실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1면) (2) 『2대·3대 후손으로 갈수록 더 가난… 교육 수준도 열악』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4면) (3) 『팔순에야 받게 된 유공자 연금… 고생한 세월 서럽기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5면) (4) 『빠대있는 명가도 풍비박산… 아래기로 배 채우며 버텼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정부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서울조정 3934~3937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뉴스타파 ^(3934·3935) , SBS-TV ^(3936·3937)
조 정 대 상	· 뉴스타파 : 『경찰 팔 꺾지 않았다… 6년 만에 무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뉴스면) · SBS-TV :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한 번의 사건, 세 번의 기소, 누가 경찰관의 팔을 비틀었나?』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4일자)
신청인 주장	경찰관인 신청인이 음주단속 중 시민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38·3939	(정정·손배청구) 박○○○ 對 SBS-TV
조 정 대 상	(1) 8뉴스 프로그램 『“나쁜 손님”, 골목상인들 울린다』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8일자, 뉴스토리 프로그램 9월 8일자) (2) 이슈인사이드 프로그램 『“고객은 왕” 멍드는 감정 노동자』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음식점에서 불친절한 대우를 받는 내용을 SNS에 올린 신청인을 블랙컨슈머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3시뉴스 브리핑 프로그램 『선릉역 짬뽕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4일자, 뉴스토리 프로그램 12월 12일자, SBS 콘텐츠허브 12월 12일자 시청자게시판면)

2015서울조정 3944	(정정청구) 윤후덕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윤후덕 의원 딸, 대기업 변호사 채용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의 딸이 대기업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945, 3946	(각 정정청구) 문화재청 對 MBN ⁽³⁹⁴⁵⁾ , 인터넷 MBN ⁽³⁹⁴⁶⁾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문화재청의 거짓말 “보호 후 공사”』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23일자) • 인터넷 MBN : 『문화재청의 거짓말 “보호조치 후 공사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문화재청이 고분 발견 지역에 보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건설 공사가 진행 되도록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굿모닝 MBN 프로그램 『문화재청 “미사지구 유적, 전방후원분 아냐... 조사 후 공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4일자, 인터넷 MBN 12월 14일자 문화면)

2015서울조정 3947	(반론청구) 김 ○ 對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 종금증권, 주가 조작 혐의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68면~6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증권 임원 재직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끌어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종금 전 임원 주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2월 9일자 경제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9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3948·3949	(정정·손배청구) 금○○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이완구 전 총리가 매우 억울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정에서 신청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50	(반론청구) 최○○ 對 조세일보
조 정 대 상	『가짜 백수오 사건과 식약처 인사의 명암』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헬스면)
신청인 주장	식약처 내부 승진 관련 기사에서 신청인이 가짜 백수오 사건 당시 승진자에 비해 일처리를 무능하게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가짜 백수오 사건과 식약처 인사의 명암』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헬스면)
2015서울조정 3951, 3952	(각 정정청구) 임○○ 對 YTN ⁽³⁹⁵¹⁾ , 인터넷 YTN ⁽³⁹⁵²⁾
조 정 대 상	뉴스만만 프로그램 『전직 교수, 경찰, 가수도 마약... ‘비트코인’ 이용하기도』 제하의 보도 (YTN 2015년 11월 9일자, 인터넷 YTN 11월 9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전직 강사 마약투약 적발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학원 내부를 촬영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3953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거제르포]⑥기자수첩 ‘목요일 오후 4시의 포커판’... ○○○○ 노조 단체 사무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 집행위원들이 노조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포커판을 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거제르포]⑥기자수첩 ‘목요일 오후 4시의 포커판’... ○○○○ 노조 단체 사무실』 제하에서 ‘노조 단체’ 부분을 ‘노동 단체’로 수정하고 신청인 관련 내용 일부 기사 수정 (2015년 12월 3일자 오피니언면)

2015서울조정 3954	(정정청구) ○○증권 (주) 對 인터넷 시사저널
조 정 대 상	『“○○증권 오너 집안 사람” 자처 자산운용 前 직원 수십억 불법 커미션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불법 커미션 수수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신청인 회사의 전 직원이 사주 집안 사람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955	(정정청구) ○○○○○○회 ○○○시 지부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퇴직공무원 단체 민간 위탁 참여 ‘빈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모 지자체의 콜 밴 민간위탁 사업에 지원한 것에 대해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회 ○○○지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전국면)

2015서울조정 3956	(정정청구) 보건복지부 對 경향신문
조 정 대 상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 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정정보도가 게재되어야 한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959·9360	(정정·손배청구) 정○○ 對 아시아엔
조 정 대 상	『[단독] ‘○○○○○○항공 부기장 취업’ 미끼 한국유학생 수십명에 역대 사기 ‘의혹’... 필리핀 당국 교민 용의자 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동북아면)
신청인 주장	필리핀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유학생들에게 항공사에 조종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거액을 갈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3961~3964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시사저널 ^(3961·3962) , 인터넷 시사저널 ^(3963·3964)
조 정 대 상	『박○○ ○○○ 회장, 3억 주고 위증 교사』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1월 17일자 54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1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배임혐의로 피소된 신청인이 고소인에게 금품을 주고 위증교사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박○○ ○○○ 회장 위증 교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시사저널 2015년 12월 22일자 13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24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965	(정정청구) (사)○○○○○협회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車보험 축내는 韓方... 같은 사고, 진료비는 5배』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6일자 정책금융면)
신청인 주장	한의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관련 환자진료기준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자동차사고 보험 한방 진료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정책금융면)

2015서울조정 3966·3967	(정정·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신안군,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농협 부정행위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농가에 특정 유기질 비료를 구매하도록 강요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타)

2015서울조정 3968·3969	(정정·손배청구) ○○○○총연합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日 여학생 13% 원조교제” 유엔 보고관 발언에 日 ‘발끈’』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월드뉴스면)
신청인 주장	일본 여학생 13%가 원조교제를 한다는 기사에서 의사가 진료현장에서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것 같은 삽화를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이미 정정보도가 게재되어 정정보도 청구의 목적이 달성)

2015서울조정 3970~3973, 3991~3994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동아닷컴 ^(3970~3973) , 동아일보 ^(3991~3994)
조 정 대 상	(1) 『소말리아 해적 물리친 영웅의 몰락』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0월 21일자 14면, 동아닷컴 10월 21일자 사회면) (2) 『“[사설] 장병 급식비 빼돌려 진급 로비하는게 軍 관행인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0월 22일자 39면, 동아닷컴 10월 22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부대 부대장 시절 장병들의 급식비를 빼돌려 장성진급을 위한 로비용 선물을 구입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2월 22일자 14면, 동아닷컴 12월 2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974	(정정청구) (주)○○○○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어린이 역사책을 둘러싼 ‘비방광고’와 ‘저작권 침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사느이야기면)
신청인 주장	타 출판사와 법적 분쟁 중인 사안에 대해 신청인 회사가 잘못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기사삭제, 부제소, 기타)
이 행 결 과	『논란의 어린이 역사책,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반론 내용 추가하여 기사 수정 (2015년 12월 23일자 사느이야기면)

2015서울조정 3975	(반론청구) 이○○ 외 1인 對 에스티브이
조 정 대 상	『도교육청, 교육 지원청 지시 모두 묵살하고 특정인 몇몇 고등학부모회 대표 행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모 지자체 참여예산 시민위원과 학부모회장단협의회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80	(정정청구) 의정부지방검찰청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검찰 간부 구내식당에 갑질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경기북부면) (2) 『의정부지검 이상한 구내식당 업체 선정… 특혜 의혹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9일자 경기북부면)
신청인 주장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방식을 바꾼 이유가 기존 업체를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81·398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MBN
조 정 대 상	(1) 『[M+연예 사(思)] 김○○의 ‘SNS 오버’가 위태위태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연예면) (2) 『[단독] ‘명예훼손 혐의’ 김○○ 측 법률대리인, 항소심 재개신청 후 ‘사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연예면)
신청인 주장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3983, 4022, 4026, 4029	(각 반론청구) 양○○ 對 노컷뉴스 ⁽³⁹⁸³⁾ , 뉴스1코리아 ⁽⁴⁰²²⁾ , 뉴스앤뉴스 ⁽⁴⁰²⁶⁾ , e머니투데이 ⁽⁴⁰²⁹⁾
조 정 대 상	• 노컷뉴스 : 『[단독] 의사협회도 박원순 손 들어줬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끝?... 의혹 “MRI 6건 모두 동일 인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뉴스앤뉴스 : 『대한영상의학회 “박원순 아들 영상은 모두 동일 인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 e머니투데이 : 『박원순 아들 병역논란 끝?... 의협 “MRI 6건 모두 동일 인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척추 MRI 사진의 감정결과로 인해 신청인이 제기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이 해소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노컷뉴스, 뉴스1코리아, e머니투데이) • 취하 (뉴스앤뉴스/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앤뉴스 2015년 12월 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3984	(정정청구) 한○○ 對 파이낸셜뉴스
조 정 대 상	『역대 최대 규모 선박왕 탈세 사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26면)
신청인 주장	변호사인 신청인이 담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신청인과 하지도 않은 인터뷰 내용을 허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3985~3991, 3997~3999, 4002~4004, 4023~4037, 4039~4044, 4047~4049, 4051~4052, 4065~4067, 4086~4087, 4157~4164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이뉴스투데이^(3985~3987), 비마이너^(3988~3990, 4035~4037), 뉴스1코리아^(3997~3999, 4002~4004), 아시아뉴스통신^(4032~4034), 에이블뉴스^(4039~4041), 웰페어뉴스^(4042~4044), 인터넷 경기도정신문^(4047~4049), e-시사통신^(4065~4067) (정정·반론청구) 온라인 중앙일보^(4051,4052) (정정·손배청구) 엔디엔뉴스^(4086~4087), 뉴시스^(4157~4158), 돌직구뉴스^(4159~4160), 웰페어뉴스^(4161~4162), 온라인 중앙일보^(4163~4164)
조 정 대 상	• 이뉴스투데이 : 『이○○ 부지사, “○○○ 사태 조속한 해결 앞장” 약속』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면) • 비마이너 : (1) 『경기도 국감에서 “○○○,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사회면) (2) 『시설 인권침해로 거주인들 결국 ‘바깥으로’... “복지부가 나서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8일자 인원면) (3) 『복지부 “○○○ 이사회 무효” 결정』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인원면) • 뉴스1코리아 : (1) 『경기도, 인권침해 등 물의 ‘○○○’ 정상화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면) (2) 『경기도의회, 성추행 논란 ‘○○○’ 파헤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전국면)

조 정 대 상	• 아시아뉴스통신 : 『이○○ 경기도 사회통합 부지사 “○○○ 사태 조속한 해결 앞장” 약속』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 에이블뉴스 : 『경기도, 사회적 물의 ○○○ 정상화 앞장』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전국면) 외 9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비마이너/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기타) • 각 취하 (이뉴스투데이, 에이블뉴스, 웰페어뉴스, 인터넷 경기도정신문, 온라인 중앙일보, e-시사통신, 엔디엔뉴스, 뉴시스, 돌직구뉴스, 웰페어뉴스/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뉴스1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취하 (온라인 중앙일보^(4163·4164)/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이뉴스투데이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6일자 전국면) • 비마이너 : 『○○○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7일자 사회면) • 뉴스1코리아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전국면) • 아시아뉴스통신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사회면) • 에이블뉴스 : 『○○○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뉴스면) 외 9개 매체

2015서울조정 3995, 3996	(각 정정청구) 조○○ 對 KBS-1TV ⁽³⁹⁹⁵⁾ , KBS미디어 ⁽³⁹⁹⁶⁾
조 정 대 상	9시뉴스 프로그램 『조○○ 향군회장 소환… 이○○ 연루 조사』 제하의 보도 (KBS-1TV 2015년 11월 13일자, KBS미디어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권력형 비리의 핵심이었던 이용호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000, 4001	(각 손해청구) 최○○ 對 경향신문 ⁽⁴⁰⁰⁰⁾ , 인터넷 경향신문 ⁽⁴⁰⁰¹⁾
조 정 대 상	『[‘국정화 찬성 여론’ 조작의혹] 인쇄소 측 “자정까지 교육부 보내야… 오전에 급한 주문받아”』 제하의 기사 (경향신문 2015년 11월 19일자 1면, 인터넷 경향신문 11월 1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서 신청인과 비보도를 조건으로 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05~4008	(각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일요시사 ^(4005·4006) , 인터넷 일요시사 ^(4007·4008)
조 정 대 상	『VIP 이름 나오자 비리 정황 덮었나』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1월 1일자 1면~3면, 인터넷 일요시사 11월 2일자 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권력의 비호 아래 철도 납품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주)○○○○○ 납품 비리 의혹 관련』 제하의 기사 (일요시사 2015년 12월 3일자 3면, 인터넷 일요시사 12월 6일자 사고면)

2015서울조정 4009·4010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스1코리아
조 정 대 상	(1) 『○○구청 공무원이 시의원들에게 “이XX”... 행정감사서 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면) (2) 『“육설난동” ○○구 공무원, 3년 만에 7급→5급 초고속 승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2일자 면)
신청인 주장	모 지자체 공무원인 신청인이 서울시의회 감사에서 육설 등의 난동을 부렸고, 3년만에 두 계급 승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 보도이므로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011~4013	(각 반론청구) 김 ○ 對 인터넷 시사저널 ⁽⁴⁰¹¹⁾ , 스포츠조선 ⁽⁴⁰¹²⁾ , 인터넷 스포츠조선 ⁽⁴⁰¹³⁾
조 정 대 상	- 시사저널 : 『○○○ 중금 증권, 주가 조작 혐의 수사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68면~69면, 인터넷 시사저널 11월 11일자 경제면) - 스포츠조선 : 『○○○ 중금 전 임원 주가 조작 의혹으로 검찰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18면, 인터넷 스포츠조선 11월 12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증권회사 임원 재직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시사저널 : 『“○○○ 중금 전 임원 주가 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경제면, 인터넷 시사저널 12월 9일자 경제면) - 스포츠조선 : 『[○○○ 중금 전 임원 주가조작]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라이프&경제면, 인터넷 스포츠조선 12월 2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4014	(정정청구) ○○○○○고등학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교학사 교과서… 교실에선 짐짝 취급’ 관련 반론』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수업시간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박근혜 등에 얽은 교학사 교과서… 교실에선 짐짝 취급』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15~4021	(각 추후청구) ○○○○○○요양센터 對 JTBC ⁽⁴⁰¹⁵⁾ , KBS-1TV ⁽⁴⁰¹⁶⁾ , MBC-TV ⁽⁴⁰¹⁷⁾ , SBS-TV ⁽⁴⁰¹⁸⁾ , 오마이뉴스 ⁽⁴⁰¹⁹⁾ , 프레시안 ⁽⁴⁰²⁰⁾ , 쿠키뉴스 ⁽⁴⁰²¹⁾
조 정 대 상	• JTBC : 뉴스룸 프로그램 『멀쩡하던 다리, 절단 수술까지… 노인 잡는 요양 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일자)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실태점검 노인요양원』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0일자) •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포라고 하더니 다리절단까지?』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SBS-TV : 8시뉴스 프로그램 『아픈 노인 방치·폭행… 못 믿을 요양병원·시설』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7일자) • 오마이뉴스 : 『1년 기다려 들어간 요양원… 아버지 다리가 잘렸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6일자 사회면) • 프레시안 : 『요양원 모신 아버지, 화상 입고 다리 절단』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수포라고 했는데… 멀쩡한 오른쪽 다리 절단하라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요양센터의 과실로 입소 노인이 다리를 절단하게 됐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JTBC : 프로그램 『서울 한 구립 요양센터 대표, 과실치상 무혐의 처분』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1일자) • KBS-1TV : 똑똑한 소비자리포트 프로그램 『월 20일 방송된 <실태점검 노인요양원> 편과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3일자) • MBC-TV : 생방송 오늘아침 프로그램 『“수포라고 하더니 다리절단까지?!”(2/27 방송) 내용 중 노인의 다리 절단은 요양원측의 과실 없음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밝혀져』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0일자)

이 행 결 과	• SBS 콘텐츠허브 : 『[추후보도문] ‘아픈 노인 방치 못 믿을 요양시설’ 과실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7일자) • 오마이뉴스 : 『요양원 화상치료 관련 기사, 검찰서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프레시안 : 『요양원 화상 환자 관련 보도, 요양원 측 과실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사회면) • 쿠키뉴스 : 『[추후보도] 다리 절단 원인은 요양원 과실 아니다, 검찰 조사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23	(정정청구) (주)○○○ 對 푸드투데이
조 정 대 상	(1) 『○○○ 물류 또 파업… 신선먹거리 차질 오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일자 종합면) (2) 『화물연대 음성진천 ○○○분회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4일자 포토면) (3) 『○○○ 물류 파업 장기화 조짐… 해법 안보여』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7일자 종합면) (4) 『바른 먹거리 ○○○ 최악의 파업 사태… 폭력 등 파국 치달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식품면) (5) 『“○○○, 허위사실 유포로 화물연대 음해 폭도로 매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종합면) 외 1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노사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24, 4025, 4084, 4085, 4094~4097, 4119~4124, 4184, 4185	(각 정정청구) 방위사업청 對 중앙Sunday ⁽⁴⁰²⁴⁾ , 인터넷 중앙Sunday ⁽⁴⁰²⁵⁾ , 중앙일보 ⁽⁴⁰⁸⁴⁾ , 온라인 중앙일보 ⁽⁴⁰⁸⁵⁾ , 조선일보 ⁽⁴⁰⁹⁴⁾ , 조선닷컴 ⁽⁴⁰⁹⁵⁾ , 한겨레21 ⁽⁴⁰⁹⁶⁾ , 인터넷 한겨레21 ⁽⁴⁰⁹⁷⁾ , 문화일보 ^(4119, 4121, 4123) , 인터넷 문화일보 ^(4120, 4122, 4124) , 경향신문 ⁽⁴¹⁸⁴⁾ , 인터넷 경향신문 ⁽⁴¹⁸⁵⁾
조 정 대 상	• 중앙Sunday : 『일본보다 전투기 싸게 사고 기술 이전 바란 게 무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8일자 3면, 인터넷 중앙Sunday 10월 18일자 사회면) • 중앙일보 : 『방사청, 2년 전엔 “기술이전 안 되면 이행보증금 몰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6면, 온라인 중앙일보 10월 29일자 정치면) • 조선일보 : 『방사청, KF-X 논의 때 美 측에 “기술이전 가능 꾸며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6면, 조선닷컴 11월 19일자 사회면)

조 정 대 상	• 한겨레 21 : 『18조원짜리 ‘보라매’ 결국 추락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30면~33면, 인터넷 한겨레21 11월 16일자 사회면) 외 1건 • 문화일보 : (1) 『핵심기술 다 빠져 KF-X ‘좌초위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4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11월 24일자 정치면) (2) 『KF-X 기술 300여 항목 중 100여개에 ‘이전 단서조항’』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8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8일자 정치면) (3) 『美, 무기기술 이전 통제… 日에도 ‘핵심’ 안 넘겨』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8일자 12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8일자 정치면) 외 2건 • 경향신문 : 『방사청, 2억짜리 소해함 장비 기술 240억 ‘바가지 구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10면, 인터넷 경향신문 10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의 F-35A 전투기 도입을 결정하면서 기술이전과 관련해 거짓 발표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성립 (조선일보, 조선닷컴, 한겨레21, 인터넷 한겨레21/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문화일보, 인터넷 문화일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각 취하 (중앙Sunday, 인터넷 중앙Sunday/사유 : 정정보도) • 각 취하 (경향신문, 인터넷 경향신문/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중앙Sunday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2면) • 중앙일보 :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2면, 온라인 중앙일보 1월 15일자 오피니언면) • 조선일보 : 『[알려드립니다] 방사청, KF-X 기술이전 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2일자 6면, 조선닷컴 1월 22일자 사회면) • 한겨레21 : 『방위사업청 KF-X 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이슈추적면, 인터넷 한겨레 1월 18일자 사회면) • 문화일보 : 『“KF-X 기술이전”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9일자 2면, 인터넷 문화일보 2월 19일자 정치면)

2015서울조정 4027	(정정청구) 주호영 對 뉴스타파
조 정 대 상	『은○○ 정관계 인맥과 로비… ‘3가지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3일자 최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모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로부터 로비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을 당시 도움을 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은○○ 로비 의혹 관련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9일자 최신뉴스면)

2015서울조정 4028	(반론청구) (주)○○○○○ 對 인터넷 시사상조
조 정 대 상	『○○○○○, 존속능력 중대한 의문 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최신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부실 기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4030·4031	(정정·손배청구) 안○○ 對 국제뉴스
조 정 대 상	『포항 J요양병원, 환자방치로 위독 상황 몰고 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국제뉴스TV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하여 위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038	(손배청구) 김○○ 對 MBC-TV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동대표의 돈잔치』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아파트 동대표의 횡포에 관한 보도에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부제소)

2015서울조정 4045	(정정청구) ○○○○○○노동조합 對 한경닷컴
조 정 대 상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동조합 산하 기관노조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46	(정정청구) (주)○○ 對 인터넷 이데일리
조 정 대 상	『[재테크의 여왕]우후죽순 P2P 대출, 유사수신 투자 주의보』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경제·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회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민노총 벽에 막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내용 기사 수정 (2015년 12월 10일자 경제·금융면)

2015서울조정 4050	(정정청구) 권○○ 對 YTN
조 정 대 상	(1) 뉴스출발 프로그램 『“입 맞춰”... 전 기무부대 준장 성추행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8일자) (2) 오늘이슈 프로그램 『전 기무부대 준장, 직원 성추행 혐의 조사』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회식 자리에서 동성 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053·4054, 4148, 4207·4208	(정정·손배청구, 정정청구) 박○○ ^(4053·4054, 4148) 對 노컷뉴스 (정정·손배청구) (사)○○○○선교회 외 1인 ^(4207·4208)
조 정 대 상	(1) 『박○○ 무죄 선고 재판부, 전관예우 논란 이어 재판 편의 제공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5일자 문화면) (2) 『검찰은 유죄 법원은 무죄... 주식사기 혐의 박○○ 선고 공판 전관예우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문화면) (3) 『거액 변호사 선임비용을 신도들 현금으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주식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청인이 1심 재판부로부터 재판일정 관련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57~4064	(각 정정·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시사메디in
조 정 대 상	(1) 『○○○○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혐의 벗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메디면) (2) 『인권위 “○○○○병원 따돌림? 조사대상 아니다” 각하』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일자 메디면) (3) 『○○○○병원에 20억 요구한 공갈범과 보건의료노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메디면) (4) 『개인 분품이에 휘말린 보건의료노조』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메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조가 비판하고 있는 모 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사건 제보자에게 이용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보도이므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068	(반론청구) 윤○○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홍대 터주대감 ‘○○’은 어떻게 쫓겨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사는이야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임차인을 아무런 이유없이 쫓아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사는이야기면)

2015서울조정 4069, 4070	(각 정정청구) 곽○○ 對 동아일보 ⁽⁴⁰⁶⁹⁾ , 동아닷컴 ⁽⁴⁰⁷⁰⁾
조 정 대 상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1월 11일자 12면, 동아닷컴 11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박○○ 서울시향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신청인의 주장을 잘못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시향 성추문’ 1년만의 반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6년 1월 7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71	(손배청구) 오○○ 외 2인 對 MBC-TV
조 정 대 상	위대한 조강지처 프로그램 65회차 (2015년 9월 11일자) 외 12회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방송 드라마에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백만원, 이행강제금)

2015서울조정 4072~4075	(각, 정정·반론청구)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병원 對 인터넷 경향신문 ^(4072·4073) , 인터넷 주간경향 ^(4074·4075)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향신문 : 『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병원 바티칸 교황 앞에 선 노조, ‘○○교구 감사’요구 나선 까닭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주간경향 : 『노조탄압·돈벌이 경영 논란 휩싸인 ○○○○병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직원들에게 실적을 강요하는 등 돈벌이 경영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병원 돈벌이 경영의혹 등 관련 반론보도입니다』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향신문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주간경향 1월 30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76~4079	(각 정정·손배청구) (주)씨비에스아이 對 뉴스천지 ^(4076·4077) , 뉴스쉐어 ^(4078·4079)
조 정 대 상	- 뉴스천지 : (1) 『○○○가 집단폭행?... 노컷뉴스의 도 넘은 편파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1일자 사회면) (2) 『CBS노컷뉴스, ‘○○○폭행’ 기사 반론보도 합의... 사실상 오보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7일자 사회면) - 뉴스쉐어 : 『CBS, ○○○ 향한 거짓비방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매체에서 보도한 ○○○ 신도들의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한 기사가 오보임을 인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뉴스천지/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취재가 있었으므로 정정보도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 조정성립 (뉴스쉐어/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노컷뉴스 ○○○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뉴스쉐어 2015년 12월 23일자 메인면)

2015서울조정 4080, 4081	(각 정정청구) (사)○○○○연구소 對 문화일보 ⁽⁴⁰⁸⁰⁾ , 인터넷 문화일보 ⁽⁴⁰⁸¹⁾
조 정 대 상	『서울시 박정희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 문화일보 10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에 설립한 단체이며, 정치적 이해관계로 박정희 기념도서관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서울시, 박정희 도서관 부지매매 보류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문화일보 2015년 12월 23일자 2면, 인터넷 문화일보 12월 23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082, 4083	(각 정정청구) 최○○ 對 MBC-TV ⁽⁴⁰⁸²⁾ , iMBC ⁽⁴⁰⁸³⁾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6일자, iMBC 10월 6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집단 장염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급식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청 내용이 추후보도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겠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088, 4089	(각 반론청구) ○○○○○고등학교 외 1인 對 한국일보 ⁽⁴⁰⁸⁸⁾ , 인터넷 한국일보 ⁽⁴⁰⁸⁹⁾
조 정 대 상	『공익제보 교사가 파면 안되자... 청소·급식만 시킨 학교』 제하의 기사 (한국일보 2015년 12월 8일자 29면, 인터넷 한국일보 1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내부비리 고발 교사를 보복징계했고, 이에 대한 시교육청 감사를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0·4091	(정정·손배청구) (주)○○○○○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이번에는 ○○○○○회의 회장이 아동 역사서를 표절?』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고의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2·4093	(정정·손배청구) 양○○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노원구 살인사건, 군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가리키는 것은』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약혼녀를 살해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도록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8	(정정청구) 국방부 對 한겨레
조 정 대 상	『애국군인이 되어라, 치료비는 니가 내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21면)
신청인 주장	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국방부의 의료지원체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099	(정정청구) 한국철도공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정치 떠났다던 최연혜 사장, 출마설 슬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일자 사회면) (2) 『갈대같은 최연혜 사장, 철도민영화 찬성? 반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사회면) (3) 『코레일 안전불감증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고, 철도민영화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00	(정정청구) 한국도로공사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 케이블 관리업체 없이 장기간 방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경제정책면)
신청인 주장	한국도로공사가 서해대교의 케이블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한국도로공사, 서해대교 케이블 관리업체 없이 장기간 방치’]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8일자 경제면)

2015서울조정 4101~4104, 4105, 4106, 4143~4147, 4165, 4172, 4173	(각 정정청구) 김○○ ^(4101,4102) , 김△△ ^(4103,4104) 對 조선일보 ^(4101,4103,4105, 4145,4165,4172) , 조선닷컴 ^(4102,4104,4106,4143,4146,4173) , 인터넷 주간조선 ⁽⁴¹⁴⁴⁾ , 주간조선 ⁽⁴¹⁴⁷⁾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 ^(4105,4106)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143, 4144)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145~4147) 이○○ 외 33인 ⁽⁴¹⁶⁵⁾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 ^(4172,4173)
조 정 대 상	- 조선일보 : 『女변호사는 왜 립스틱 질게 바르고 매일 구치소로 출근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5일자 3면, 인터넷 조선일보 12월 5일자 사회면) - 주간조선 : 『접견 전문 변호사? 여변들이 화났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34면~39면, 인터넷 주간조선 12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로스쿨 출신 젊은 여성 변호사들을 법률 자문 대신 웃음을 파는 접견녀라고 매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4107	(손배청구) 김○○ 對 SBS-TV
조 정 대 상	궁금한 이야기Y 프로그램 『양화대교 할아버지』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노숙인 의료지원 관계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 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유감표명)

2015서울조정 4108	(정정청구) 구 ○○은행 ○○○ 퇴직자모임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옛 ○○은행 정년퇴임 직원 “재취업 보장하라” 어깃장에 사측 백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정책·금융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모임 회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요구와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수용이 어렵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109~4112	(각 정정·손배청구) 한국마사회 對 시사뉴스 ^(4109·4110) , 인터넷 시사뉴스 ^(4111·4112)
조 정 대 상	『한국마사회를 둘러싼 추문과 의혹』 제하의 기사 (시사뉴스 2015년 12월 14일자 12면~13면, 인터넷 시사뉴스 12월 14일자 헤드라인면)
신청인 주장	한국마사회가 전광판 설치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줬고, 정윤희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결정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2015서울조정 4113~4118, 4209·4210	(각 정정·손배청구) ○○○엔터테인먼트 對 XSFM ^(4113·4114) , 발뉴스 ^(4115·4116) ,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4117·4118) , 인터넷 내일신문 ^(4209·4210)
조 정 대 상	• XSFM : 『146b, 지옥의 배경음악』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1일자 그것은 알기 싫다면) • 발뉴스 : 『화려한 TV 배경음악 뒤편 작곡가들의 ‘열정 폐이’』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9일자 민동기의 뉴스박스면) •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 : 『지상파 인기 프로그램의 작곡노예 이야기』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 인터넷 내일신문 : 『방송음악 작곡가들의 눈물』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30일자 기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작곡가들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착취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XSFM, 발뉴스, 트위터매거진 새가날아든다/사유 : 자진취하) • 취하(인터넷 내일신문/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25~4133	(각 정정·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MBN ^(4125·4126) , 동아닷컴 ^(4127·4128) , 오마이뉴스 ^(4129·4130) , MBN ^(4131·4132)
조 정 대 상	• MBN : 뉴스8 프로그램 『선생 싸움에 학생은 뒷전... 4개월째 네 탓 공방』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5일자, 인터넷 MBN 12월 15일자 사회면) • 동아닷컴 : 『중학교 女교감이 여교사들 상습폭행? 집단 탄원서 제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5일자 사회면) • 오마이뉴스 : 『“교감이 자꾸 때려요” 경기 H중 교사 34명 실명탄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교육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교감인 신청인이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MBN, 인터넷 MBN/내용 : PR·후속보도, 기사삭제) • 각 기각결정 (동아닷컴, 오마이뉴스/사유 : 공인적인 보도인데다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진실성이 인정)
이 행 결 과	미이행

2015서울조정 4133	(정정청구) ○○○○○○○○ 코리아 유한회사 對 인터넷 시사주간
조 정 대 상	『○○○ 화장품, 미 화장품인 줄 알았더니... 한국서 제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한국에서 제조된化妆품을 미국 직수입 化妆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34, 4135	(각 정정청구) ○○○○대학교 對 동아일보 ⁽⁴¹³⁴⁾ , 동아닷컴 ⁽⁴¹³⁵⁾
조 정 대 상	『“○○○○대 직원 채용비리”... 교수평의회 “당사자 사퇴해야”』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9월 23일자 18면, 동아닷컴 9월 23일자 광주/전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대학교가 직원채용 비리를 저질렀고 회계부정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동아닷컴 2015년 12월 28일자 광주/전남면)

2015서울조정 4136~4138	(반론·추후·손배청구) 조○○ 외 3인 對 오마이뉴스
조 정 대 상	(1) 『〈도가니〉… 그 끝나지 않은 악몽, ○○○』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 자 인천경기면) (2) 『“하루 빨리 나가고 싶다” 외친 장애인시설, 어쩔건가』 제하의 기사 (2014 년 12월 26일자 인천경기면) (3) 『광주 ○○○, 제2의 형제복지원 될 수 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5 일자 인천경기면) (4) 『절차 강조하던 ○○○, 특별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1 일자 인천경기면) (5) 『○○○ 문제 호락호락하지 않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7일자 인천경 기면) (6) 『○○○ 사태에 교사들도… “우린 자존감 없는 교사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4일자 인천경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횡령公款유용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반론·추후청구/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인천경기면)

2015서울조정 4139, 4140	(각 반론청구) 한국자유총연맹 對 일요서울 ⁽⁴¹³⁹⁾ , 인터넷 일요서울 ⁽⁴¹⁴⁰⁾
조 정 대 상	『행자부와 전면전 선포한 허준영 자총 회장』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5년 12월 14일자 1면, 인터넷 일요서울 12월 1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맹 회장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법인카드를 규정 외로 사용하는 등 조직 운영에 문제가 많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총연맹 허준영 회장’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일요서울 2016년 1월 25일자 정치면, 인터넷 일요서울 1월 25일자 정치종합면)

2015서울조정 4141·4142	(정정·손배청구) 김광진 對 뉴스타운
조 정 대 상	『중북의 최후 발악 조짐이 안 좋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메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11, 14,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중북 좌파의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49~4156, 4191~4198	(각 추후·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에이블뉴스 ^(4149·4150, 4197·4198) , 지뉴스데일리 ^(4151·4152) , 더코리아프레스 ^(4153·4154) , 한강타임즈 ^(4155·4156) , 장애인뉴스 ^(4191·4192) ,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4193·4194) , 인터넷 길림신문해외판 ^(4195·4196)
조 정 대 상	• 에이블뉴스 : 『의혹 투성이 ○○○, 검찰 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자 사회면) 외 3건 • 지뉴스데일리 : 『○○○ 성추행 피해 여성 절규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행정면) • 더코리아프레스 : 『○○○ 성추행 피해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엉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 한강타임즈 : 『○○○ 성추행 피해자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엉엉!”』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 장애인뉴스 : 『거주 시설인가, 사망 시설인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뉴스면) 외 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에이블뉴스/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지뉴스데일리, 한강타임즈,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인터넷 길림신문 해외판/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각 취하 (더코리아프레스, 장애인뉴스/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에이블뉴스 : 『○○○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일자 사회면) • 지뉴스데일리 : 『○○○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0일자 사회면) • 한강타임즈 : 『○○○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2일자 사회면) • 인터넷 복지연합신문 : 『○○○ 장애인 인권 침해 사안, 무혐의 처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4일자 사회복지면)

2015서울조정 4166~4169	(각 정정·손배청구) 정○○ ^(4166·4167) , (주)○○○ ^(4168·4169) 對 인터넷 일요서울
조 정 대 상	『[단독] 의혹 투성이 ‘줄기세포치료’... 고객 유인·알선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불법 줄기세포 시술을 하였으며, 신청인 회사의 줄기세포 화장품이 피부에 유해하고 비과학적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70·4171	(정정·손배청구) 김○○ 對 푸른한국닷컴
조 정 대 상	『○○대 축구부 감독의 제왕적 행태 결국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기로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3일자 문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반찬을 남긴 선수들에게 벌금을 걷고 논문대필을 사주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74~4177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신아일보 ^(4174·4175) , 인터넷 신아일보 ^(4176·4177)
조 정 대 상	(1) 『철원 유명사찰서 10년 동안 전기도둑행위?』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1일자 전국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1일자 전국네트워크면) (2) 『철원 ○○○사 “전기도둑” 의혹, 사실로 드러났다』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2일자 전국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2일자 전국네트워크면) (3) 『불교명예에 먹칠한 사찰의 전기 도둑』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7일자 전국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7일자 전국네트워크면) (4) 『철원 ○○○사 신도들 “주지스님 사찰 떠나야”』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5년 12월 1일자 사설면, 인터넷 신아일보 12월 1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주지로 재임 중인 사찰의 전기절도 사건이 신청인의 지시로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철원 ○○○사 주지 ○○’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신아일보 2016년 1월 14일자 강원네트워크면, 인터넷 신아일보 1월 14일자 전국네트워크면)

2015서울조정 4178~418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조○○ 對 매일일보 ^(4178~4180) , 국제뉴스 ^(4181~4183)
조 정 대 상	• 매일일보 : 『○○그룹 세무조사, 조○○ 부산○○ 겨냥』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전국면) • 국제뉴스 : 『국세청, ○○그룹 세무조사 조○○ 부산○○ 회장 겨냥 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86	(반론청구) 양○○ 對 JTBC
조 정 대 상	뉴스룸 프로그램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제하의 보도 (2015년 11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과 관련해 신청인이 감정 요청한 X레이 사진 3장이 동일인의 것으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187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인터넷 국민일보
조 정 대 상	『지금도... “내 귀에 도청장치 있다” 호소하는 사람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마인드컨트롤 전파 피해자들을 망상장애자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당사자 부적격)

2015서울조정 4188·4189	(반론·손배청구) ○○철강(주) 對 브레이크뉴스
조 정 대 상	『장기 불황 철강업계 중국산 짝퉁까지 유통』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중국산 철강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서울조정 4190	(정정청구) 국방부 對 MBC-TV
조 정 대 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입대할 때만 “국가의 아들” 치료는 각자?』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직무 수행 중 부상당한 군인에 대한 국방부의 의료지원 체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입대할 때만 ‘국가의 아들’ 치료는 각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IMBC 2016년 2월 4일자)
2015서울조정 4199~4202	(각 정정·손배청구) ○○○○○회 對 유교신문 ^(4199·4200) , 인터넷 유교신문 ^(4201·4202)
조 정 대 상	『(사)○○○○○회총본부로 명칭 변경 문화부 허가』 제하의 기사 (유교신문 2015년 10월 29일자 뉴스면, 인터넷 유교신문 10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명칭을 변경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서울조정 4203·4024	(정정·손배청구) 전국○○○○노동조합 ○○○○은행지부 對 조선비즈닷컴
조 정 대 상	『“재취업 보장하라” 옛 ○○은행 정년 퇴임 직원의 어깃장』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정책금융면)
신청인 주장	정년을 맞은 모 은행 직원들의 퇴직 후 재취업 요구와 관련해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205·4206	(정정·손배청구) (주)○○○○대리운전 외 1인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카카오의 O2O 전략, ‘종사자’에 집중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진출에 대해 반대하는 신청인들과 카카오와의 갈등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서울조정 4211·4212, 4222·4223	(각 정정·반론청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對 MBC-TV ^(4211·4212) , iMBC ^(4222·4223)
조 정 대 상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국과수는 틀리지 않는다?』 제하의 보도 (MBC-TV 2015년 10월 4일자, iMBC 10월 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제보자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엉터리 감정을 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시사매거진2580 프로그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보도 (MBC-TV 2016년 2월 21일자, iMBC 2월 21일자 알립니다면)

2015서울조정 4217	(정정청구) (주)○○○○ 對 KBS-2TV
조 정 대 상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유리섬유의 위험』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판매하는 텐트에 사용되는 유리섬유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위기탈출 넘버원 프로그램 『우리집 가계비 다이어트- 에너지 절약 살림법』 제하의 보도 (2016년 2월 15일자)

2015서울조정 4218, 4219	(각 정정청구) 권은희 對 TV조선 ⁽⁴²¹⁸⁾ , 인터넷 TV조선 ⁽⁴²¹⁹⁾
조 정 대 상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野 권은희, 천정배 신당행?』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5년 12월 24일자, 인터넷 TV조선 12월 2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불거진 신청인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성민의 시사탱크 프로그램 『『권은희 의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보도 (TV조선 2016년 1월 26일자, 인터넷 TV조선 1월 26일자 다시보기면)

2015서울조정 4220	(정정청구) ○○○○○장로회 ○○○노회 對 e뉴조
조 정 대 상	『○○○ 교회 교인 치리하는 ○○○노회, “공정 재판” 가능할까』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5일자 교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노회가 재판국에 모 교회 교인 관련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권고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장로회 ○○○노회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5일자 교회면)

2015서울조정 4221	(정정청구) 원○○ 對 e머니투데이
조 정 대 상	『‘표절 논문’ ○○대 총장, 교수·학생·교직원 무더기 징계 조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대학 홍보실장인 신청인이 대학 구성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를 총장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표절 논문’ ○○대 총장, 교수·학생·교직원 무더기 징계 조짐』 제하 중 ‘무더기’ 표현 삭제 및 기사 중 신청인 실명을 익명으로 처리 (2016년 1월 12일자 사회면)

2015서울조정 4224, 4225	(각 정정청구) 서울특별시 對 동아일보 ⁽⁴²²⁴⁾ , 동아닷컴 ⁽⁴²²⁵⁾
조 정 대 상	『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가 뭔가』 제하의 기사 (동아일보 2015년 11월 12일자 39면, 동아닷컴 11월 12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서울시 시민인권 보호관이 전 서울시향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시정권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前서울시향 대표를 성추행범으로 몬 이유 뭔가』관련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4일자 2면, 동아닷컴 1월 30일자 오피니언면)

지역중재부

〈부산〉

2015부산조정 9	(정정청구) ○○○○ 산부인과의원 對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귀신이 곡할’ 영아 결핵 감염… 부산 보건 당국 ‘비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 10면)
신청인 주장	모 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결핵 발병 8개월 이상 전부터 균을 배출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귀신이 곡할’ 영아 결핵 감염… 부산 보건 당국 ‘비상’』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부산일보 2015년 3월 3일자 사회면)

2015부산조정 10, 11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케어 對 K신문 ⁽¹⁰⁾ , 인터넷 국제신문 ⁽¹¹⁾
조 정 대 상	• K신문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4일자 뉴스면) • 인터넷 국제신문 : 『영국 안과서 렌즈 삽입 시력교정술 잇단 부작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국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독점 수입 판매하는 렌즈에 문제가 있어 외국에서 피해보상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12·13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부산일보
조 정 대 상	『대한항공 여승무원 미소 ‘소름’, “교수 제안에 거짓 진술”』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하여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14~25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부산일보 ^(14·15) , 인터넷 부산일보 ^(16·17) , 국제신문 ^(18·19) , 인터넷 국제신문 ^(20·21) , KNN ^(22·23) , iKNN ^(24·25)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상인 폭행 갈취한 조직폭력배 구속』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10면, 인터넷 부산일보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 국제신문 : 『“빵에서 담배 나왔다” 영세상인 돈 뜯은 조폭』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 8면, 인터넷 국제신문 2015년 2월 3일 사회면 초기화면) - KNN : 주요뉴스 프로그램 『영세업주 폭행·갈취 조폭무더기 검거』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3일자, iKNN 2월 3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26, 27	(각 손배청구) 이○○ 對 KNN ⁽²⁶⁾ , iKNN ⁽²⁷⁾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유력 우승마의 부진, 승부조작 논란으로』 제하의 보도 (KNN 2015년 3월 30일자, iKNN 3월 30일자 홈페이지 다시보기)
신청인 주장	○○○○경마공원에서 발생한 승부조작 의혹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28, 29	(각 손배청구) 김○○ 對 KNN ⁽²⁸⁾ , iKNN ⁽²⁹⁾
조 정 대 상	뉴스아이 프로그램 『외국인 폭력조직화, “위협...”』 제하의 보도 (KNN 2015년 2월 12일자, iKNN 2월 12일자 뉴스아이 섹션)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폭력 사건을 보도하면서 신청인 식당의 상호를 노출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손해배상 200만원)

2015부산조정 30	(반론청구) 최○○ 對 부산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 수습역대 땅투기”... 공무원 연루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0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전 군수 부동산 투기 연루』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1일자)
신청인 주장	전 ○○군수인 신청인이 ○○군청 공무원들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사건에 연루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9 프로그램 『최○○ 前 군수, “땅 투기 의혹 전혀 관여 안해”』 제하의 보도 (부산KBS-1TV 2015년 6월 26일자)

2015부산조정 31	(정정청구) 울산광역시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1) 『메르스 감염 의심자 숫자 조작, 울산시 대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지역면 초기화면) (2) 『울산시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지역면 초기화면) (3) 『울산 시민연대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초기화면) (4) 『메르스 현황 숫자 집계 부실에도 울산시장은 해외출장 중』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초기화면) (5) 『메르스 감염의심자 숫자 조작, 울산시대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울산시 메르스관리대책본부가 감염의심자 숫자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32, 33	(각 반론청구) 노○○ 對 부산KBS-1TV ⁽³²⁾ , KBS미디어 ⁽³³⁾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사립학교 도 넘는 도덕적 해이』 제하의 보도 (부산KBS-1TV 2015년 7월 15일자, KBS미디어 7월 1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 부담금 납입과 관련한 신청인의 인터뷰 내용을 왜곡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부산조정 34·35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치과병원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대 치과병원, 법인화 무색 부실 운영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의 경영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36~41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부산일보 ^(36·37) , 인터넷 부산일보 ^(38·39)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40·41)
조 정 대 상	• 부산일보 : 『‘문지마 폐원’ 기장군청 민주노총, 주민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8면) • 인터넷 부산일보 : 『‘문지마 폐원’ 기장군청 민주노총, 주민 감사 청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1일자 사회면)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7시 뉴스 프로그램 『○○ 민간 어린이집 문지마 폐원』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9일)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위장폐업 의혹을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부산일보 : 『부산지노위 “○○ 어린이집 위장폐원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10면) • CJ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 7시 뉴스 프로그램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1일)

2015부산조정 42·43	(정정·손배청구) 최○○ 외 3인 對 크리스찬타임
조 정 대 상	『하기수련회 참석 일부 장로들 골프 치다가 들통나』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2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교회 장로인 신청인들이 교회수련회비로 골프를 쳤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하기수련회 참석 일부 장로들 골프치다 들통나”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3일자 1면)

2015부산조정 44, 46	(정정, 손해청구) ○○○○○중양회 부산지역본부 외 1인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갑질 ○○○○○ 부산지역본부 긴급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양회 부산지역본부가 일선 지점들에 대해 표적검사를 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45, 47	(정정, 손해청구) 황○○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 부산본부 간부, 만취상태에서 감사하다 행패』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양회 부산지역본부 직원인 신청인이 일선 지점들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만취상태에서 ○○ 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46	(손배청구) 이○○ 對 세계닷컴
조 정 대 상	(1) 『부산 ○○○○○ 대출조사 ‘갑질’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사회일반) (2) 『‘갑질’ ○○○○○ 부산지역본부 긴급감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3) 『‘갑질’ ○○○○○부산지역본부 긴급감사』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3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4) 『○○○○○ 부산본부, ‘규정따른 대출이다’ 설명해도 무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4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5) 『‘갑질의혹’ ○○○○○중양회 부산본부, 직원 보복징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 중양회 부산지역본부가 일선 ○○○○○에 대해 ‘갑질횡포’를 한다고 허위보도 하면서 본부장인 신청인의 실명을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부산조정 48·49	(정정·손배청구) 유○○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찰의혹으로 내홍』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신청인이 시설관리용역업체 선정 심사 방법을 특정 업체에게 유리하게 바꿔 선정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찰의혹’으로 내홍』 제하의 기사에 “이에 대해 C 씨는 업체심사방법을 ‘최저입찰제’에서 ‘심사제’로 바꾸는 과정에 전혀 관련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문장 삽입 (2015년 10월 21일자 지역 섹션)

2015부산조정 50·51	(정정·손배청구) 금○○ 對 한국디지털뉴스
조 정 대 상	『이완구 전총리가 매우 억울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이완구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기사에서 고 성완종 회장의 수행 비서였던 신청인의 실명을 공개하고, 법정에서 신청인이 허위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간주

2015부산조정 52~5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학교복음병원지부 對 한국기독신문 ^(52~54) ,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55~57)
조 정 대 상	『법인○○학원, ○○대 복음병원 약국장 보직해임, 새 약국장 선임 단행』 제하의 기사 (한국기독신문 2015년 11월 21일자 사회면 뉴스초점란, 인터넷 한국기독신문 2015년 11월 18일 뉴스섹션 뉴스초점면)
신청인 주장	○○대 복음병원노조가 사측의 인사단행과 관련하여 파업을 예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문)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법인○○학원, ○○대 복음병원 약국장 보직해임, 새 약국장 선임 단행”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한국기독신문 2016년 1월 1일자 7면)

2015부산조정 58~61	(각 정정·반론청구)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對 부산일보 ^(58·59) , 인터넷 부산일보 ^(60·61)
조 정 대 상	『○○○ 뉴타운 좌초 위기』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5년 11월 18일자 1면, 인터넷 부산일보 11월 18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 뉴타운 10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해제될 공산이 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타운 사업에 대한 조합 측 입장』 제하의 기사 (인터넷 부산일보 2016년 1월 28일자 경제해양면)

2015부산조정 62~6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건설 對 부산일보 ^(62~64) , 인터넷 부산일보 ^(65~67)
조 정 대 상	『특허공법이 아니라 특허공법이었나』 제하의 기사 (부산일보 2015년 11월 30일자 1면, 인터넷 부산일보 11월 30일자 홈페이지 경제해양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국제산업물류도시 발파공사 현장에서 에어테크공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자진취하)

2015부산조정 68	(정정청구) ○○○자산운용주식회사 對 부산MBC-TV
조 정 대 상	뉴스투데이 부산 프로그램 『수정·백양터널 행정 엉터리』 제하의 보도 (부산 MBC-TV 2015년 12월 1일)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외국계 자본이고, 부산 유료터널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불법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부산 프로그램 『○○○ 인프라펀드의 정정보도 요청』 제하의 보도 (부산MBC-TV 2016년 1월 8일자)

2015부산조정 69~72	(각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WBC 복지TV
조 정 대 상	『경기도청과 광주시청은 ○○○의 불법이사회의 개최에 대해 엄중히 처벌과 이 사진에 대한 선임무효를 확인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뉴스/보도 자료 성명·논평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부산조정 73~7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이○○ 외 4인 對 울산조은뉴스
조 정 대 상	(1) 『공동주택 동대표회장이 뭐길래! 입주민들 뺐났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 『○○○○ 입주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실력행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임대아파트 동대표회장인 신청인이 공금을 변칙 지출하고 CCTV를 불법 열람하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공동대표 동대표회장이 뭐길래! 입주민들 뺐났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6년 2월 16일 사회면)

〈대구〉

2015대구조정 1	(정정청구) 성주경찰서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성주署 편파수사 여부 밝혀질까』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성주경찰서가 폭행치상 사건의 피해자 진술을 묵살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1일자 사회면)

2015대구조정 15~18	(각 정정·손배청구) ○○축산업협동조합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1) 『○○축협 청보리 사업 보조금, 조합장 친구에게 몰아준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3일자 사회면) (2) 『○○축협, 조사료(소 사료용 볏짚) 장비지원도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3) 『눈먼 돈 국고보조금 방치 안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조합장 친구가 운영하는 영농법인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19·2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경북도민일보
조 정 대 상	『대구교육청, 홍보물 업체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홍보물 제작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특혜를 입은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구교육청, 홍보물 업체 특혜의혹’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2일자 지역뉴스/대구면)

2015대구조정 25·26	(정정·손배청구) 조○○ 對 인터넷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대한항공 박○○ 사무장, 여승무원 검찰 조사 받던 날 환한 미소에 ‘쌔쌔’』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한항공 승무원인 신청인이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으로부터 교수직 제안을 받고 거짓 진술을 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27	(추후청구) 조○○ 對 타임뉴스
조 정 대 상	『오산시 A어린이집 아동학대, 성추행 의혹 휩싸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으나, 수사 결과 무혐의로 확인됐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오산시 A어린이집 아동학대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6일자 오산면)

2015대구조정 28	(정정청구) 윤○○ 對 경북장애인뉴스
조 정 대 상	『○○○○○체육회 회장 윤○○ 국회의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 제하의 기사 (2013년 1월 9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체육회장 재직 시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대구조정 29·30	(정정·손배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 對 서라벌신문
조 정 대 상	『노조원동의로 기업별 노조를 만들었는데 법원 “위원장 결재를 안받았으니 무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시스템스코리아(주)의 공작에 의한 친기업노조 설립을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것으로 왜곡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31·32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인터넷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수도권 마트 돌며 식파라치 사기극... 경찰 수사 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33~35	(정정·손배청구 ^(33·34) , 정정청구 ⁽³⁵⁾) 박○○ 對 영남일보
조 정 대 상	『영남일보·○○○○건설, “한겨레 정○○ 기자에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2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영남일보 발행인이 포스코 비자금 조성에 개입했다는 찌라시를 언론 등에 배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영남일보·○○○○건설, 배○○ 회장 악의적으로 보도한 한겨레 정○○ 기자에 법적 대응』 제하의 기사 중 신청인 관련 부분 기사 수정 (인터넷 영남일보 2015년 6월 22일자 초기화면)

2015대구조정 36~38	(정정·손배청구 ^(36·37) , 정정청구 ⁽³⁸⁾) ○○○○연대 외 1인 對 매일신문
조 정 대 상	『취재 협박 ‘이상한’ 시민단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0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시민단체인 신청인이 군의회 의원들의 비리를 파악하려는 기자의 취재활동을 방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취재 방해, 협박 의도 없었다고 알려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10면)

2015대구조정 39·4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UGN 경북뉴스
조 정 대 상	(1) 『○○○○○촌 수탁업체 특감결과 비공개 교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영주봉화 인터넷뉴스면) (2) 『남은기간 좀 빼먹자』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6일자 영주봉화 인터넷뉴스면) (3) 『겨울에도 푸르지 못하다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영주봉화 인터넷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강통회사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자진취하)

2015대구조정 41·42	(정정·손배청구) 최○○ 對 올인코리아
조 정 대 상	『국정원은 반역적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1일자 올인코리아 메인페이지)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북한에 우호적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국정원은 반역적 외부인을 들이지 말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쟁점면)

2015대구조정 43~46	(각 추후청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對 영남일보 ⁽⁴³⁾ , 매일신문 ⁽⁴⁴⁾ , 대구MBC-TV ⁽⁴⁵⁾ , TBC-TV ⁽⁴⁶⁾
조 정 대 상	(1) 『4살짜리 딸 손등, 허벅지 등 상처 복구서 어린이집 학대 신고』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2월 14일자 6면) (2) 『바늘로 아이 찔렸다』 제하의 기사 (매일신문 2015년 2월 13일자 3면) (3)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바늘로 아이 찔렸다』 제하의 보도 (대구MBC-TV 2015년 2월 13일자) (4) 뉴스8 프로그램 『바늘 학대 어린이집 수사』 제하의 보도 (TBC-TV 2015년 2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 영남일보, 매일신문 : 『바늘학대 의혹사건 무혐의』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8월 18일 8면, 매일신문 8월 18일자 6면) - 대구MBC-TV : MBC 뉴스데스크 『바늘학대 의혹사건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4일자) - TBC-TV : 뉴스8 프로그램 『바늘학대 의혹사건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7일자)

2015대구조정 47	(정정청구) ○○군 공무원직장협의회 對 경북일보
조 정 대 상	『○○군, 업무추진비는 공무원 밥값』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군 공무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회식비 등으로 편법 사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군 업무 추진비 편법 집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10면)

2015대구조정 48~51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 對 내외일보
조 정 대 상	(1) 『○○촌, ○○문화수련원위·수탁 협약 불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10면) (2) 『영주시, ‘○○촌’·‘○○○○문화수련원’ 골머리 사업수행 관련, 사회적 물의 빚어... 협약서 의거 협약 해지 요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경북 영주의 ○○촌과 ○○문화수련원 운영을 위탁받은 신청인 회사가 주식회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이며, 영주시로부터 협약 해지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48, 50) (내용 : 정정보도) - 취하^(49, 51)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영주 ○○촌 ○○문화수련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사회면)

2015대구조정 52~5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박○○ 對 경북매일 ^(52~54) , 인터넷 경북매일 ^(55~57)
조 정 대 상	『보형물 후유증 병원 배짱에 이중고』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 2015년 8월 25일자 4면, 인터넷 경북매일 8월 25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의사인 신청인이 시행한 음경확대수술로 인한 의료분쟁과 관련, 환자의 거짓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58~61	(정정·반론청구) ○○군 농민회 외 3명 對 영남일보 ^(58·59) , 인터넷 영남일보 ^(60·61)
조 정 대 상	『○○군 농민회, 농활 대학생 집회 동원 논란』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8월 10일자 10면, 인터넷 영남일보 8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폐기물매립장 반대집회에 농촌봉사활동 대학생들을 동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알림)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군 농민회, 농활 대학생 집회 동원 논란 보도 관련)』 제하의 기사 (영남일보 2015년 10월 13일자 12면, 인터넷 영남일보 10월 13일자 사회면)

2015대구조정 62	(정정청구) 전국○○○○노동조합 對 대구MBC-TV
조 정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대구 지하철 쪼개기 위탁으로 시민혈세 낭비』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8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대구지하철공사에서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착복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대구조정 63~66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한길뉴스 ^(63·64) , 인터넷 한길뉴스 ^(65·66)
조 정 대 상	『희대 사기범 조희팔 은닉자금 삼○○ 유입, ○○컨설팅 지역 정, 관계 정치자금 혹은 뇌물로 뿌렸을 가능성 거론』 제하의 기사 (한길뉴스 2015년 10월 22일자 1~2면, 인터넷 한길뉴스 10월 18일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다단계 사기 주범인 조희팔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67~71	(정정·반론·손배청구 ^(67~69) , 정정·반론청구 ^(70·71)) 성주군 對 대구광역일보
조 정 대 상	『성주군공무원 손에 놀아난 군수·군의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성주군 내 지정폐기물처리장 설치, 운영과 관련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구조정 72·73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경북자치신문
조 정 대 상	『김천 M중학교 전 행정실장 기자회견- 11월 5일 오전 11시 사학비리발표』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법인 재단이사가 교사채용 비리와 관련된 것처럼 보도했으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확정됐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김천 M중학교 전 행정실장 기자회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경북자치신문 2015년 11월 27일자 1면, 인터넷 경북자치신문 11월 26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2015대구조정 74~77	(정정·손배청구) 안○○ 對 대경일보 ^(74·75) , 인터넷 대경일보 ^(76·77)
조 정 대 상	『요양병원, 부실한 환자관리 비난 폭주』 제하의 기사 (대경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종합면, 인터넷 대경일보 1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응급환자를 장시간 방치하여 위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구조정 78	(정정청구) 문○○ 對 인터넷 울진신문
조 정 대 상	『○○협 전임 집행부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울진군 공무원인 신청인이 울진군 ○○○○○협의회 전 집행부의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협의회, 전임 집행부 고발’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초기화면)

2015대구조정 79·80	(정정·손배청구) 최○○ 對 경북매일
조 정 대 상	『○○시 평생학습원 노래강사 자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5면)
신청인 주장	○○시 평생학습원 노래교실 강사인 신청인이 수업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수강생들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보도)
이 행 결 과	『노래로 행복 전하는 최○○씨 “인기짱이라 전해라~”』 제하의 기사 (경북매일 2016년 1월 15일자 6면)

〈광주〉

2015광주조정 1~4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광남일보 ^(1·2) , 인터넷 광남일보 ^(3·4)
조 정 대 상	『가전매장 등 문연 채 ‘히터 평평’』 제하의 기사 (광남일보 2015년 1월 8일 10면, 인터넷 광남일보 1월 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대형 난방기를 켜둔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 반론보도] 가전매장 등 문 연 채 ‘히터 평평’』 제하의 기사 (광남일보 2015년 1월 26일자 10면, 인터넷 광남일보 1월 26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5·6, 9~14, 39·40, 54~61	(각 정정·손배청구) 맹○○ 對 파인뉴스 ^(5·6, 39·40, 58·59) , 뉴스투데이한국 ^(54·55) , 남도타임즈 ^(56·57) , 화순투데이 ^(60·61)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파인뉴스파인뉴스 ^(9~11) , 뉴스투데이한국 ^(12~14)
조 정 대 상	- 파인뉴스 : (1) 『악성민원인 덕분(?)에 20억 투자 지연』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 사회면) (2) 『화순군 관내 고발,공판 등 묶음소식』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2일 사회면) 외 2건 - 뉴스투데이한국 : (1) 『○○○○○○ 前간부사원 A씨 “해고무효소송” 다음달 26일 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3일자 사람사는세상면) (2) 『○○○○○○유통(주) 투자유치 결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5일 전국뉴스면) - 화순투데이 : 『○○ ○○○○○○○(주) 41억여 원 투자유치 성공』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3일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식약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 때문에 모 기업이 20억원 투자를 약속한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각하 (파인뉴스^(5·6, 9~11, 39·40)/사유 : 출석요구서 송달 불가능) - 조정성립 (뉴스투데이한국^(12~14)/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 각 기각 (뉴스투데이한국^(54~61), 남도타임즈, 파인뉴스^(58·59), 화순투데이/사유 : 당사자 부적격, 개별적 연관성 부정)

2015광주조정 7·8	(정정·반론청구) (주)○○○○○○코리아 對 KBC-TV
조 정 대 상	저녁뉴스 및 8시 뉴스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갑질 논란 조정 신청하자 “간판 내려라”』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9일자)
신청인 주장	외식업체인 신청인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조사한 결과 현행법 위반과 부당 행위가 무더기로 드러났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저녁뉴스 프로그램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맹점이 먼저 요구』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일자)

2015광주조정 15~34	(각 정정·반론청구) ○○○○○○시장상인회 對 광주일보 ^(15·16, 19·20, 23·24, 27·28, 31·32) , 인터넷 광주일보 ^(17·18, 21·22, 25·26, 29·30, 33·34)
조 정 대 상	(1) 『노점 할머니들 푸돈 뜯는 시장상인들의 ‘甲’질』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19일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19일자 사회면) (2) 『동구청 “노점상 자릿세 못건게 하겠다”』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0일자 제7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3) 『관리비 부당징수 ‘○○○○○○’와 새벽시장 운영·관리 협약 파기하라』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1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1일자 사회면) (4) 『○○○시장 무료주차권 위조 의혹』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4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4일자 사회면) (5) 『○○○시장종합상가 불법 원룸 증개축… 수십년째 임대 물의』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5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시장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를 뜯고 물건을 건어차는 등의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이 행 결 과	『○○○시장,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남광주○○○○○○○, ‘디자인 점포대학’ 개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대대적 탈바꿈 시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4일자 7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5일 사회면)

2015광주조정 35~38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광주일보 ^(35·36) , 인터넷 광주일보 ^(37·38)
조 정 대 상	『예산 퍼준 당국…개인용도 시설 혈세 지원』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4년 11월 26일자 6면, 인터넷 광주일보 11월 28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소유한 상가건물을 불법 개조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기사)
이 행 결 과	『○○○시장, 문화관광형 ‘명품시장’으로 ○○○○○○시장 상인회, ‘디자인 점포 대학’ 개설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대대적 탈바꿈 시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5일자 7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5일 사회면)

2015광주조정 41~52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서○○ 對 뉴스호남 ^(41~43) , 전남인터넷신문 ^(44~46) , 호남매일 ^(47~49) , 프라임경제 ^(50~52)
조 정 대 상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칼럼면 등)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뉴스호남/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각 취하 (전남인터넷신문, 호남매일, 프라임경제/내용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뉴스호남 2015년 3월 8일자 칼럼면)

2015광주조정 53	(정정청구) 강○○ 對 전남기독신문
조 정 대 상	『목포 ○○○○○교회 내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9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원로목사인 신청인이 담임목사를 몰아내려 하는 등 교회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목포 ○○○○○교회 내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7면)

2015광주조정 62~65	(정정·반론청구) 백○○ 對 KBC-TV ^(62·63) , 인터넷 KBC ^(64·65)
조 정 대 상	저녁뉴스 프로그램 『사우나 업주 “플래카드 걸지 않았다” 주장... 경찰 조사』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3월 27일자, 인터넷 KBC 3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사우나를 운영하던 신청인이 사우나 폐업 직전에 회원권과 할인쿠폰을 남발한 후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사우나 업주 “플래카드 걸지 않았다” 주장... 경찰 조사』 제하의 기사 (인터넷 KBC 2015년 3월 27일자 뉴스면)

2015광주조정 66, 67	(각 정정청구) 김○○ 對 광주매일신문 ⁽⁶⁶⁾ ,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⁶⁷⁾
조 정 대 상	『풍암 호수에 울려 퍼진 사랑의 멜로디』 제하의 기사 (광주매일신문 2015년 3월 9일자 7면,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3월 8일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에서 주최한 음악회를 타 회사에서 주최한 것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풍암 호수 ‘사랑의 멜로디’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광주매일신문 2015년 3월 31일자 7면, 인터넷 광주매일신문 3월 31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68~71	(각 정정청구) 오○○ 對 전남일보 ⁽⁶⁸⁾ , 광주MBC-TV ⁽⁶⁹⁾ , 광주KBS-1TV ⁽⁷⁰⁾ , 연합뉴스 ⁽⁷¹⁾
조 정 대 상	• 전남일보 : 『○○○재단 이사장-직원 갈등』 제하의 기사(2015년 1월 6일자 4면) 외 1건 • 광주MBC-TV : MBC뉴스데스크 프로그램 『○○○ 기념재단 직원들 이사장 사퇴 촉구』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일자) 외 2건 • 광주KBS-1TV : 뉴스9 프로그램 『이사장 사퇴하라, ○○○기념재단 갈등 격화』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5일자) • 연합뉴스 : 『이사장 고사, 계약직 해고... ○○○ 기념재단 20주년 흔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기념재단 이사장인 신청인이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전남일보, 광주MBC-TV, 연합뉴스/사유 : 중재합의) • 조정성립 (광주KBS-1TV/내용 : 유감표명, 부제소)

2015광주조정 72~75	(각 정정·반론청구) ○○축산영농조합법인 對 전남매일 ^(72·73) , 인터넷 전남매일 ^(74·75)
조 정 대 상	『국가지원 축산영농조합 변칙 운영심각』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5년 4월 15일자 5면, 인터넷 전남매일 4월 15일 경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국가지원 축사를 조합원이 아닌 개인업자에게 매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전남매일 2015년 5월 8일자 5면, 인터넷 전남매일 5월 22일자 경제면)

2015광주조정 76	(정정청구) ○○대학교 對 서울신문
조 정 대 상	『육망의 노예 총장님, 비리백화점 ○○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11면)
신청인 주장	○○대학교 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여교수를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1) 『〈반론 보도문〉 ‘○○대 비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1일자 사회면) (2) 『고소고발로 얼룩진 ○○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1일자 지방자치면)

2015광주조정 77~80	(각 정정·반론청구) 정○○ 對 광주MBC ^(77·78) , 인터넷 광주MBC ^(79·80)
조 정 대 상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투자금 돌려달라며 이웃 살해하려는 50대』 제하의 보도 (광주MBC 2015년 5월 2일자, 인터넷 광주MBC 4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흥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힌 이웃 주민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투자금 반환요구하며 이웃 살해시도’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광주MBC 2015년 5월 16일자, 인터넷 광주MBC 5월 16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81, 82	(각 반론청구) ○○○○방송(주) 對 시민의소리 ⁽⁸¹⁾ , 인터넷 시민의소리 ⁽⁸²⁾
조 정 대 상	『○○○○○ 협찬금 의혹, 일파만파』 제하의 기사 (시민의소리 2015년 5월 11일자 10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5월 7일자 <미디어를 쏘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방송사가 건설사로부터 받은 협찬금의 일부를 신청인 방송사의 대표와 보도국장이 착복했다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문] ○○○○○, 협찬금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터넷 시민의소리 2015년 5월 15일자 언론계뉴스면)

2015광주조정 83~86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광주일보 ^(83·84) , 인터넷 광주일보 ^(85·86)
조 정 대 상	『정동영의 추락과 천정배의 부활』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5월 8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5월 8일자 칼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4·29 재·보선에서 낙선한 이유가 5년 전 광주 서구청장 재보선에서 ‘무리한 공천’을 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민주당, 안이한 공천으로 패배’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12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12일자 정치면)

2015광주조정 87~90	(각 정정·반론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광주일보 ^(87·88) , 인터넷 광주일보 ^(89·90)
조 정 대 상	『광주시, 송정역사 증축 건의키로』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4월 30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4월 30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공단이 호남선 KTX 광주송정역의 설계과정에서 이사장의 지시로 역사 규모 등을 축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철도시설공단이 광주송정역사 규모 축소’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주일보 2015년 6월 19일자 2면, 인터넷 광주일보 6월 19일자 정치면)

2015광주조정 91, 92	(각 반론청구)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對 시민의소리
조 정 대 상	『초등 수준도 못되는 광산구의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회가 본회의 의결 내용과 다르게 회의록을 작성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광산구의회 회의록, 문제없어』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6면)

2015광주조정 93~96	(각 정정·반론청구) ○○시 리통장단협의회 對 전남타임스 ^(93·94) , 인터넷 전남타임스 ^(95·96)
조 정 대 상	『○○시 일부 이장들 파렴치 행각 ‘경악’』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3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일부 회원이 마을 주민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2015광주조정 97~100, 101~104, 111~114, 167, 168	(각 정정·반론청구) 주식회사 ○○○○○○ 對 전남도민일보 ^(97·98, 101·102) ,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99·100, 103·104) (각 정정청구) 전남도민일보 ^(111, 113, 167) ,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112, 114, 168)
조 정 대 상	(1) 『○○○○○○○센터 연구원, 기술 팔아 금품수수 ‘의혹’』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2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2일자 종합뉴스면) (2) 『中유기질비료 국내산 ‘둔갑’ 최고 5배 폭리… ‘농민우롱’』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6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6일자 종합뉴스면) (3) 『정부지원 ○○○○○○센터, ‘임대사업장’ 둔갑… 불만고조』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13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13일자 사회면) (4) 『금품거래 사적연구 발뺌 물의』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7월 29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7월 29일자 사회면) (5) 『‘병원균 득실’ 이용객 건강 위험 심각… ‘충격’』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9월 22일자 1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센터 연구원으로부터 미생물 광합성세균 배양기술을 몰래 사들였다가 수익성이 떨어지자 연구원을 협박해 돈을 돌려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전남도민일보^(97·98, 101·102), 인터넷 전남도민일보^(99·100, 103·104)/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각 조정성립 (전남도민일보^(111, 113), 인터넷 전남도민일보^(112, 114)/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전남도민일보⁽¹⁶⁷⁾, 인터넷 전남도민일보⁽¹⁶⁸⁾/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1) 『“○○○○센타의 E사’ 관련 알림』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8월 17일자 2면) (2) 『바로잡습니다 “○○ ○○○○센타 E사, 공장등록요건 갖춰”』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10월 20일자 2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10월 20일 전남곡성면) (3)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전남도민일보 2015년 10월 28일자 2면, 인터넷 전남도민일보 10월 28일자 전남곡성면)

2015광주조정 105~108	(각 정정·반론청구) ○○○○파트재건축조합 對 KBC-TV ^(105·106) , 인터넷 KBC-TV ^(107·108)
조 정 대 상	8뉴스 프로그램 『‘새집은 언제나’ 재건축조합 비리로 얼룩』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8월 3일자, 인터넷 KBC-TV 8월 3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건축 조합이 입주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주택 소유권을 담보로 사채를 빌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KBC 저녁뉴스 프로그램 『목포 재건축조합 관련 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8월 25일자, 인터넷 KBC-TV 8월 25일자 뉴스검색면)

2015광주조정 109~110	(반론·손배청구) 손○○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 ○○연구소 직원, 사채·성범죄·취업 알선료 수수… 불법 ‘종합세트’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단독면) (2) 『○○○ ○○연구소 직원, 장애인 가정 풍비박산(?)… 집 강제경매신청』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3일자 단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금리 사채놀이를 하고,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광주조정 115~118	(각 정정·반론청구) ○○○ ○○사 對 해남신문 ^(115·116) , 인터넷 해남신문 ^(117·118)
조 정 대 상	『포교활동인가 ‘뺏다방’인가』 제하의 기사 (해남신문 2015년 5월 1일자 사회면, 인터넷 해남신문 5월 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찰의 포교 방식이 ‘뺏다방’과 유사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 ○○사, ‘뺏다방 포교활동’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인터넷 해남신문 2015년 9월 30일자 행정면)

2015광주조정 119~130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동○○아파트입주자 외 1인 對 전남일보 ^(119~121, 125~127) , 인터넷 전남일보 ^(122~124, 128~130)
조 정 대 상	『아파트 도색공사 공개입찰 폭행사건 비화』 제하의 기사 (전남일보 2015년 8월 27일자 4면, 인터넷 전남일보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파트 외관 도색공사 관련해 높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선정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아파트 도색 공사 공개입찰 폭행사건 비화』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전남일보 2015년 8월 27일자 4면, 인터넷 전남일보 8월 27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131~162	(각 정정·반론청구) ○○시장상인회 對 KBC-TV ^(131·132) , 인터넷 KBC-TV ^(133·134) , 시민의소리 ^(135·136, 139·140, 143·144, 147·148, 151·152, 155·156, 159·160) , 인터넷 시민의소리 ^(137·138, 141·142, 145·146, 149·150, 153·154, 157·158, 161·162)
조 정 대 상	• KBC-TV : 8시 저녁 뉴스 프로그램 및 아침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시장 상인회 관련』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19일자 및 8월 20일자, 인터넷 KBC-TV 8월 19일자 및 8월 20일자 뉴스면) • 시민의 소리 : 『○○시장상인회 사업비 횡령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7일자 7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8월 12일자 사회면) 외 6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상인회가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KBC-TV, 인터넷 KBC-TV/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시민의소리, 인터넷 시민의소리/내용 : 반론보도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 KBS-TV : 모닝와이드 프로그램 『‘○○시장, 지원금 횡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10월 21일자, 인터넷 KBC 10월 21일자 뉴스거러면) • 시민의소리 : 『‘○○시장 상인회 비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3면, 인터넷 시민의소리 11월 12일자 사회면)

2015광주조정 163~166	(각 정정·반론청구) 김○○ 對 KBC-TV ^(163·164) , 인터넷 KBC-TV ^(165·166)
조 정 대 상	(1) 시사터치 따라부따 프로그램 『광주 ○○ ○○단 예술감독 인사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7월 14일자, 인터넷 KBC-TV 7월 14일자 다시보기면) (2) 시사터치 따라부따 프로그램 『경력위조! 허위이력! 김○○ 예술 감독, 즉각 해임하라! 해임하라! 해임하라!』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9월 14일자, 인터넷 KBC-TV 9월 14일자 다시보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불교방송과 교통방송의 국악프로그램 진행 경력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시사터치 따라부따 프로그램 『‘○○○○단 예술감독 허위이력’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보도 (KBC-TV 2015년 11월 2일자)

2015광주조정 169, 170	(각 반론청구) ○○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광양신문 ⁽¹⁶⁹⁾ , 광양뉴스 ⁽¹⁷⁰⁾
조 정 대 상	『단지 내 예초기 작업에 8살 남아 부상』 제하의 기사 (광양신문 9월 30일자 11면, 인터넷 광양신문 9월 3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아파트 단지 내 예초기 작업 중 발생한 아동 부상에 대해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예초기 작업에 아이 부상’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광양신문 2015년 11월 2일자 2면, 광양뉴스 10월 30일자 지역이슈면)

2015광주조정 171·172, 174~176	(정정·반론·손배청구) 이윤석 對 주간노령 ^(174~176) , 인터넷 주간노령 ^(171·172)
조 정 대 상	『긴급속보, 임○○ 씨 “무안기업도시 무산, 이윤석 의원 책임 커”』 제하의 기사 (주간노령 2015년 11월 11일자 1·6면, 인터넷 주간노령 11월 3일자 홈페이지 메인화면)
신청인 주장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무안기업도시를 반대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무안기업도시 무산은 이윤석 의원 책임’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주간노령 2015년 12월 7일 1면, 인터넷 주간노령 11월 25일자 무안면)

2015광주조정 177·178	(정정·손배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프라임경제
조 정 대 상	『○○군, 유기질비료 지원… 일부 농협 부정행위 ‘골머리’』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5일자 지역/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군의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특정제품을 강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농협 유기질비료’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6일자 경제면)

2015광주조정 179, 180	(각 추후청구) 장○○ 對 KBC-TV ⁽¹⁷⁹⁾ , 인터넷 KBC-TV ⁽¹⁸⁰⁾
조 정 대 상	8시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KBC-TV 2013년 12월 13일자, 인터넷 KBC-TV 12월 13일자 8시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상가 불법 분양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중재합의)

2015광주조정 181~214	(각 정정·반론청구) 조○○ 對 전남일보 ^(181·182) , 인터넷 전남일보 ^(183·184) , 연합뉴스 ^(197·198) , 한국일보 ^(205·206) , 인터넷 한국일보 ^(207·20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광남일보 ^(185~187, 199~201) , 인터넷 광남일보 ^(188~190, 202~204) , 무등일보 ^(199~201) , 인터넷 무등일보 ^(202~204) , 영암신문 ^(209~211) , 인터넷 영암신문 ^(212~214)
조 정 대 상	• 전남일보 : 『영암군, 악취 물의 승마장 경찰에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11면, 인터넷 전남일보 6월 23일자 영암군면) • 광남일보 : (1) 『학교 부지서 승마장 불법영업 ‘빈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제1면, 인터넷 광남일보 6월 22일 시/군면) (2) 『영암군 승마장 특혜의혹 해소시켜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4일자 19면, 인터넷 광남일보 6월 22일 시/군면) 외 2건 • 무등일보 : 『학교부지 임대받은 승마장서 말 사육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제11면, 인터넷 무등일보 6월 23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학교부지에 승마장”... 전남개발공사·영암군 묵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전체기사면) 외 4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승마연습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전남일보, 인터넷 전남일보/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각 조정성립 (광남일보, 인터넷 광남일보, 무등일보, 인터넷 무등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연합뉴스/내용 : 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한국일보, 인터넷 한국일보/사유 : 기사삭제) • 각 취하 (영암뉴스, 인터넷 영암뉴스/사유 : 중재합의)
이 행 결 과	• 전남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10면, 인터넷 전남일보 1월 19일자 영암군면) • 광남일보 : 『영암군 상호읍 D승마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15일자 2면, 인터넷 광남일보 1월 14일자 사회면) • 무등일보 : 『학교부지 임대받은 승마장서 말 사육 ‘물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11면, 인터넷 무등일보 6월 23일자 뉴스센터면) • 연합뉴스 : 『영암 D 승마장 “책임 보험 가입”』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일자 전남면)

〈대전〉

2015대전조정 1	(정정청구) 조○○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조○○ ○○시의원, 공무원 비하발언 못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9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공무원 비하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조○○ ○○시의원 ‘공무원 비하 발언’ 못매 기사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17면)

2015대전조정 2~5	(각 정정·손배청구) 송○○ 對 대전시티저널 ^(2·3) , 브레이크뉴스 대전충청 ^(4·5)
조 정 대 상	- 대전시티저널 : 『주고받고 배달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 공무원, 업자 입건』 제하의 기사 (2014년 10월 8일자 사회면) - 브레이크뉴스 대전충청 : 『대전경찰, 인허가 관련 청탁 뇌물수수 기자·고위 공무원 적발』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임야 개발 및 폐기물처리장 용도변경과 관련 항응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대전시티저널/내용 : 추후보도 - 동의 후 보도) - 취하 (브레이크뉴스 대전충청/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주고받고 배달 사고까지 낸 뇌물수수 기자·공무원·업자 입건” 관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대전시티저널 2015년 1월 30일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9	(각 정정·손배청구) 이○○ 對 주간당진시대 ^(6·7) ,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8·9)
조 정 대 상	『○○네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 제하의 기사 (주간당진시대 2015년 7월 21일자 교육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7월 18일자 홈페이지 교육면)
신청인 주장	어린이집 원장인 신청인이 조리사를 부당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어린이집 부당해고 논란” 권고사직으로 종결』 제하의 기사 (주간당진시대 2015년 2월 2일자 9면, 인터넷 주간당진시대 2월 2일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14	(정정청구) ○○농업협동조합 對 충남일보
조 정 대 상	『○○○○농협, 역대 리베이트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이 주유소 신축공사 수주업체 선정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농협 역대 리베이트 의혹 제기’ 기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6면)

2015대전조정 15~26	(각 정정·반론청구) 백○○ 對 디트news24 ^(15·16) , 인터넷 대전일보 ^(17~20) , 대전 시티저널 ^(21·22) , 인터넷 굿모닝충청 ^(23·24) , 인터넷 금강일보 ^(25·26)
조 정 대 상	• 디트news24 : 『초등학교 4학년생 식칼 들고 등교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 인터넷 대전일보 : 『초등생 식칼 들고 등교 강제전학 요구에 고심』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1일자 홈페이지 뉴스면) • 대전시티저널 : 『인성교육 우수 학교에서 학생이 식칼 들고 등교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홈페이지 교육면) • 인터넷 굿모닝충청 : 『대전 초등학교 교실 흥기소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교육면) • 인터넷 금강일보 : 『초등생이 교실서 ‘식칼소동’』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초등학생인 신청인이 다수의 학생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식칼을 들고 등교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대전조정 27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타던 어린이 추락 안전요원 규정 안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충북 보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 관련 놀이기구가 신청인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하강레포츠 하던 어린이 추락 안전요원 규정 안 지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28	(정정청구) (주)○○○플러스 對 금강일보
조 정 대 상	(1) 『지원조례 없이 혈세로 위탁업체 좋은 일만 ○○ ‘○○콜’ 운영비 여객운수법 위반 제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31일자 12면) (2) 『이름만 ○○콜, 실상은 말썽콜』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4일자 12면) (3) 『○○ ○○콜 장비 불량납품 여부 가린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12면)
신청인 주장	○○시 콜택시 요금결제서비스 및 GPS위성콜서비스 위탁운영사업자인 신청인 회사가 불량 통신장비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콜’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9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29·30, 72·73	(정정·손배청구) 전○○ 對 충남일보 ^(29·30) (반론·손배청구) 굿모닝논산 ^(72·73)
조 정 대 상	• 충남일보 : 『완장 조합 감사 이대로 둘 수 있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10면) • 굿모닝논산 : 『윤○○, 강○○ 조합장 선처 여론 비등』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농협 조합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충남일보 : 『기자수첩란』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1일자 6면) • 굿모닝논산 : 『윤○○, 강○○ 조합장 선처여론 비등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0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31~34, 40	(각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지부 외 1인 對 대전투데이 ^(31·32) , 인터넷 대전투데이 ^(33·34) (정정청구) 아시아뉴스통신(대전) ⁽⁴⁰⁾
조 정 대 상	• 대전투데이 : (1) 『○○시 문화단체 비밀장부가 있다』 제하의 기사 (4월 16일 15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2015년 4월 15일 오피니언 칼럼면) (2) 『○○시 호수공원 행사 허용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자 7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4월 21일자 종합뉴스 충남면) • 아시아뉴스통신(대전) : 『충남 ○○시 호수공원 행사 구두 허용 약속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2일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위원회가 비밀장부를 만들어 관리하고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보도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대전투데이, 인터넷 대전투데이/내용 : 반론보도) • 취하 (아시아뉴스통신(대전)/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대전투데이 : 『‘○○시 문화예술단체 비밀장부 있다고’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7일자 7면, 인터넷 대전투데이 5월 27일자 원보도지면) • 아시아뉴스통신(대전) : 『‘충남 ○○시 호수공원 행사 구두 허용 약속 특혜 논란’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35~37	(반론청구) 주○○ 對 대전일보 ⁽³⁵⁾ (각 정정청구) 충청투데이 ⁽³⁶⁾ , TJB-TV ⁽³⁷⁾
조 정 대 상	• 대전일보 : 『○○시의회 콜택시 예산 삭감 주장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지역면) • 충청투데이 : 『○○ ○○콜택시 콜비용 유료화 요구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0일자 17면) • TJB-TV : 8시뉴스 프로그램 『시의회가 ‘환경파괴’ 주도』 제하의 보도 (2015년 5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자연경관지구 토지 소유 업체의 청탁을 받고 환경 파괴를 초래하는 조례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전조정 38·39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의용소방대가 대장인 신청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충남면)
신청인 주장	모 소방대가 신청인의 사조직처럼 운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전조정 41	(반론청구) ○○건설 주식회사 對 인터넷 대전일보
조 정 대 상	『치고 빠지는 ‘암체 건설社’ 득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홈페이지 건설/부동산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세종시에 분양 예정인 아파트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동구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공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42·43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천안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유통기한 지난 상품 몰래 놓고 신고하는 식파라치 사기극』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4일자 사회-정치소식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식파라치 사기극’ 사기 아닌 정당한 공익신고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44, 45	(각 정정청구) 김○○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시의원에 고소당한 여성단체 회원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3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여성단체 회원 3명에 대한 검찰 처분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대전조정 46·47	(정정·손배청구) ○○대학교 병원 對 뉴스1 대전충남
조 정 대 상	『메르스 환자 거쳐간 대전지역 2개 병원 휴원 조치는 ‘사실무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일자 대전충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메르스 환자 처리 관련 휴원조치 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전문] 박○○ ○○대병원 의료원장』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6일자 원보도 지면)

2015대전조정 48, 49	(각 정정청구) 대전광역시 동구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동구 인쇄거리 재생사업… 눈감은 동구청』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구청이 인쇄거리 재생사업을 시행하면서 설계도와 다른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동구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 공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0	(정정청구) 이○○ 對 청양신문
조 정 대 상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8일자 5면)
신청인 주장	○○문화원 부원장 선거에 입후보한 신청인이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일부 선거후보 자격논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5면)

2015대전조정 51	(정정청구) 유○○ 對 대전시티저널
조 정 대 상	『시간 남는다 오페라 관람 ○○연 방만 운영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연구원장인 신청인이 연구원을 방만하게 운영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대전조정 52	(반론청구) (주)○○○ 對 아시아뉴스통신(대전)
조 정 대 상	『○○대, “미화원 부당대우에 이어 체불임금 갈등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신청인 주장	○○대 환경미화 용역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미화원들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고, 연차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대, “미화원 부당대우에 이어 체불임금 갈등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3~56	(각 정정·손배청구) ○○○○자치위원회 對 CNN25 ^(53·54) , 충남뉴스 ^(55·56)
조 정 대 상	『현장고발 탁상행정의 극치… 금산군 ○○면 ○○○ ○○마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뉴스종합면)
신청인 주장	금산군 ○○○ ○○마을의 신청인 위원회가 전횡을 일삼으며 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마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7	(반론청구) ○○종합사회복지관 對 우리들뉴스
조 정 대 상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보복해고 부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 홈페이지 경기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복지사를 보복성으로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부천 ○○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보복해고 부당”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5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58~61	(각 정정·손배청구) (주)○○건설 對 세종매일 ^(58·59) , 인터넷 세종매일 ^(60·61)
조 정 대 상	『건설사 승승장구 근로자 피눈물』 제하의 기사 (세종매일 2015년 8월 18일 1·2면, 인터넷 세종매일 8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건설사가 근로자 노임을 고의로 체불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건설사 승승장구 ‘피눈물’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세종매일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2	(반론청구) 공주시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오시덕 공주시장, 1년 평가 ‘낙제점’』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5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민선6기 공주시장의 1년 시정평가가 무원칙한 인사, 전략부재 등으로 낙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오시덕 공주시장, 1년 평가 낙제점’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3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對 세종매일
조 정 대 상	『최교진 교육감 전문성 무시한 측근 채용』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4일자 종합 1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교육청이 전문성을 무시한 채 교육감 측근을 장학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최교진 교육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관 채용한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4·65	(추후·손배청구) 이○○ 對 세종매일
조 정 대 상	(1) 『세종교육청 ○○○○과 L장학사 수사착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1면) (2) 『세종교육청 L장학사 “잘 봐주겠다.” 금품요구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1면) (3) 『세종교육청 L장학사 협박 무서워 자살기도 충격 고백』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교육청 장학사인 신청인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세종시 교육청의 ○○○○과 L장학사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6	(정정청구) (재)한국○○○○연구원 對 인터넷 금이성
조 정 대 상	(1) 『고교평준화 시기조절이 필요하다(1)』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6일자 뉴스 사설면) (2) 『고교평준화 시기조절이 필요하다(2)』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0일자 뉴스 사설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 교육청의 고교평준화 타당성 검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신청인 연구원이 교육관련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반론보도] 세종시 ‘고교평준화’ 시기조절 필요하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6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67~69	(각 정정청구) ○○종합복지센터 對 인터넷 세종매일 ^(67, 68) , 세종in뉴스 ⁽⁶⁹⁾
조 정 대 상	- 인터넷 세종매일 : (1)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잇단 ‘잡음’』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세종시청 위탁사업자에게 갑의 횡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3일자 세종시면) - 세종in뉴스 : 『내 칼은 너무 커 한번 뽑으면 세종시장 한 둘은 목 날라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3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센터 산하 시설 직원들이 사직한 이유가 센터장의 언어폭력과 종교 차별 등의 인권침해행위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인터넷 세종매일⁽⁶⁷⁾/사유 : 자진취하) - 취하 (인터넷 세종매일⁽⁶⁸⁾/사유 : 반론보도) - 조정성립 (세종in뉴스⁽⁶⁹⁾/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세종매일⁽⁶⁸⁾ : 『‘내 칼은 너무 커 한번 뽑으면 세종시장 한 둘은 목 날라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원보도지면) - 세종in뉴스⁽⁶⁹⁾ : 『‘내 칼은 너무 커 한번 뽑으면 세종시장 한 둘은 목 날라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70, 71	(각 반론청구)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對 중도일보 ⁽⁷⁰⁾ , 인터넷 중도일보 ⁽⁷¹⁾
조 정 대 상	『천안 ○○○○ 재개발조합 비리 의혹, 전조합장, 일부 임원 檢 고소... 용역업체 선정, 선지급 협의』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5년 10월 23일자 14면, 인터넷 중도일보 10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조합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천안 ○○·○○ 재개발조합 “적법절차 따랐다” 이의제기』 제하의 기사 (중도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74	(정정청구) 천안시의회 對 충청투데이
조 정 대 상	『천안시의회 ‘브리핑실 폐쇄 조례안’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천안시의회 의장이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폐쇄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2일자 14면)

2015대전조정 75	(정정청구)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 對 중도일보
조 정 대 상	『천안 브리핑실 폐쇄 조례안 부결』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7일자 지역면)
신청인 주장	천안시의회 총무환경위원회가 천안시청 브리핑실 폐쇄 조례안을 부결시켰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5일자 14면)

2015대전조정 76~79	(각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파인피플뉴스
조 정 대 상	『비리로 얼룩진 ○○○ 실질적인 정상화 대책 마련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원보도지면)

2015대전조정 80	(정정청구) 천안시 對 충청신문
조 정 대 상	(1) 『○○공원, 민간개발업자와 ‘야합’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6일자 사회면) (2) 『○○공원 심사규정 유출의혹 ‘실망+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7일자 사회면) (3) 『천안 ○○공원, 야합 등 각종 의혹 ‘점입가경’』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2일자 사회면) (4) 『천안 5000억 ○○공원, 의혹 어디까지...』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4일자 사회면) (5) 『천안시 공직자간 청렴불감증 심화』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천안시가 ○○공원 민간개발사업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심사기준을 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천안시 ○○공원 민간개발업자 선정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7면)

2015대전조정 81~84	(각 추후·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뉴스스토리 ^(81·82) , 뉴스코어 ^(83·84)
조 정 대 상	• 뉴스스토리 : 『의혹 투성이 ○○○, 검찰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정치면) • 뉴스코어 : 『의혹투성이 ○○○, 검찰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방송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후원금 횡령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 취하 (뉴스스토리/사유 : 추후보도) • 취하 (뉴스코어/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뉴스스토리 : 『〈추후보도문〉○○○ 의혹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4일자 원보도지면) • 뉴스코어 : 『○○○, 횡령 의혹과 인권침해 검찰 무혐의 판결』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5일자 원보도지면)

〈경기〉

2015경기조정 1·2	(정정·손배청구) ○○○○요양병원 외 1인 對 뉴스셀
조 정 대 상	『에이즈, 그리고 건강할 권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이 간병인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부적절한 치료로 에이즈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원보도 하단)

2015경기조정 3, 5, 161	(각 정정청구) 수원시 對 인터넷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1) 『수원시 청렴도 순위 ‘수직하락’… 지난해 1등급→올해 26위』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4일자 정치면) (2)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7일자 사회면) (3) 『수원시 청렴인사 기본계획 발표… 시민·공무원 ‘가우뚱’』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4) 『‘부동산 대박’ 현실로… “염태영 땅 시세차익 무려 40억원”』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수원시 청렴도가 수원시장 비리 혐의로 인해 전년도에 비해 급락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2015경기조정3, 2015경기조정5/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2015경기조정161/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1) 『“수원시 청렴도 순위 ‘수직하락’… 지난해 1등급→올해 26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원보도면) (2) 『수원시 청렴인사 기본계획 발표… 시민·공무원 ‘가우뚱’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11~14, 218~221	(각 정정·손배청구) 신○○ 對 경인일보 ^(11·12) , 인터넷 경인일보 ^(13·14) (각 추후·손배청구) 경인일보 ^(218·219) , 인터넷 경인일보 ^(220·221)
조 정 대 상	『경기재향군인회장이 수천만원횡령』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5년 1월 19일자 22면, 인터넷 경인일보 1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기재향군인회 공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경인일보^(11·12), 인터넷 경인일보^(13·14))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경인일보^(218·219), 인터넷 경인일보^(220·221) /내용 : 추후 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손해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만족 할 수 없다고 주장)
2015경기조정 18·19	(정정·손배청구) 강원도 ○○의료원 對 뉴스웍
조 정 대 상	『보건의료노조, ○○의료원 소속한 정상화 위한 연쇄 면담 추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의료원 원장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원 소속한 정상화 위한 연쇄 면담 추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20	(정정청구) 수원시도서관사업소 對 인터넷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수원시 도서관 가구구입 수의계약 특혜의혹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27, 39	(각 손해청구) 박○○ 對 인터넷 경인일보 ⁽²⁷⁾ , 인터넷 OBS경인TV ⁽³⁹⁾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인일보 (1) 『박○○ “유대균 도와야 할 것 같아 스스로 짐 꾸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1일자 사회면) (2) 『유대균 수행 박○○씨 첫 공판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 인터넷 OBS경인TV : (1) 『유대균 첫 재판… “일부 혐의 부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2) 『유대균 “일부 범죄 사실 세부 조항 달라” 혐의 부인』 제하의 기사 (2014년 8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대균의 도피를 돕다 체포된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유대균 “일부 범죄 사실 세부 조항 달라” 혐의 부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인터넷 OBS경인TV 2015년 5월 21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28·29	(정정·손배청구) ○○중학교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용인의 학폭예방 우수교 집단폭행 학교는 ‘애들 일이라’ 손 놔버렸나』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가 학내 집단폭행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용인의 학폭예방 우수교 집단폭행 학교는 ‘애들 일이라’ 손 놔버렸나」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30	(정정청구) 박○○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조합장선거] ○○농협, 작년 상반기 흑자 30억… 새얼굴 잇단 도전장』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가 차기 조합장 선거의 사전포석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31, 32	(각 정정청구) 유○○ 對 인터넷 기호일보 ⁽³¹⁾ , NIB 뉴스 ⁽³²⁾
조 정 대 상	- 인터넷 기호일보 : 『몰래 시설물 늘리던 어린이집 달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 NIB 뉴스 : 『어린이집 독단 운영, 반발 확산』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어린이집 원장으로 취임한 후 급식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기호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 조정성립 (NIB 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인터넷 기호일보 : 『‘몰래 시설물 늘리던 어린이집 달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원보도면) - NIB 뉴스 : 『어린이집 독단 운영, 반발 확산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33	(정정청구) 원○○ 외 2인 對 인터넷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여주 ○○○○ 경비실서 50대 경비원 목매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 부친이 자살한 이유가 신병 비관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여주 ○○○○ 경비원 병가 거절에 의한 스트레스가 의심되는 유서 발견]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알림면)

2015경기조정 34	(정정청구) 이○○ 對 경인매일
조 정 대 상	『가평군, 공유수면 사용허가 특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가평군이 신청인에게 공유수면 사용을 허가한 것이 특혜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가평군, 공유수면 사용허가 특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원보도지면)

2015경기조정 35·36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구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공금횡령 비리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6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구 생활체육회 회장인 신청인이 사무국장의 공금횡령 비리와 관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구 생활체육회 공금횡령 비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3일자 2면)

2015경기조정 37, 38	(각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아시아뉴스통신 ⁽³⁷⁾ , 여성종합뉴스 ⁽³⁸⁾
조 정 대 상	『충북교육발전소, “보은 하강놀이기구 사고는 예고된 인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충북 보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 관련 놀이기구가 신청인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것 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기사수정』 제하의 기사의 “○○○”을 “하강놀이기구”로 변경 (2015년 3월 9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40, 41	(각 정정청구) 인천연수경찰서 對 인천일보 ⁽⁴⁰⁾ , 인터넷 인천일보 ⁽⁴¹⁾
조 정 대 상	(1) 『[불량 쇠고기 파동] 업체 봐주나...警 수사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2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2일 사회면) (2) 『[불량쇠고기 파동] 警 “○○○ 대표 소환할것” 수사 급선회 』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3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3일자 사회면) (3) 『[불량 쇠고기 파동] ○○○ 대표 소환... 유통사실은 못밝혀 』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6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6일자 사회면) (4) 『연수경찰서의 어설픈 불량쇠고기 수사』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2월 17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2월 17일자 사설면)
신청인 주장	인천연수경찰서가 불량 쇠고기 유통 사건관련, 음식점 단속을 늦추는 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량 쇠고기 경찰수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3월 23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23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경기조정 42~44	(정정·반론·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인터넷 경기리포트
조 정 대 상	『오산시민들, ○○대학 돌려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집중취재면)
신청인 주장	○○학원이 운영하는 ○○대학을 오산시민이 설립했고, 이사장이 전횡을 일삼는 등 ○○대학 내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오산시민들, ○○대학 돌려 달라”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3일자 <바로잡습니다>면)

2015경기조정 45, 46	(각 정정청구) 박○○ 외 1인 對 수도권일보 ⁽⁴⁵⁾ , 인터넷 수도권일보 ⁽⁴⁶⁾
조 정 대 상	『인천 시의장에 행패, ○구의원 ‘비난 빗발’』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5년 3월 9일자 1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3월 9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행사장에서 시의회 의장의 먹살을 잡는 등 추태를 벌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인천 시의장에 행패, ○구의원 ‘비난 빗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수도권일보 2015년 4월 7일자 2면, 인터넷 수도권일보 4월 7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47	(손배청구) 추○○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1) 『‘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씨, 오늘 첫 재판』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뉴스면) (2) 『유병언 측근 전양자씨 첫 재판… “혐의 인정”』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뉴스면) (3) 『檢, 유대균·전양자 징역형… 박○○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48	(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OBS경인TV
조 정 대 상	『檢, 유대균·전양자 징역형... 박○○ 집행유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8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양자씨의 검찰출두 건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신청인의 초상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49·50	(정정·손배청구) 박○○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갑질하는 ○○시의원』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5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시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공기업 업무감사에서 남편의 보직 발령을 요구하는 등 직위를 남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갑질하는 ○○시의원’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27일자 오피니언면)

2015경기조정 51	(정정청구) 인천광역시청 對 인천뉴스
조 정 대 상	『[단독] 유정복 시장, 조카·처남 3명 ‘상습’ 채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7일자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후 조카를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52~55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홀딩스 對 경기일보 ^(52·53) , 인터넷 경기일보 ^(54·55)
조 정 대 상	『○○홀딩스 ‘사기분양 의혹’ 정조준』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3월 13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3월 13일자 경기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사기분양을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및 보도약속)

2015경기조정 56, 57	(각 손해청구) 김○○ 對 겐툰
조 정 대 상	『왜, ○○위는 주문에 휩싸이는 것일까』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3일자 게임 뉴스면)
신청인 주장	○○○○○위원회의 계약직 여성노조 대의원인 신청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성희롱 사건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문제 제기가 사측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경기조정 58, 59	(각 추후청구) 조○○ 對 오산인터넷뉴스 ⁽⁵⁸⁾ , 인터넷 물향기신문 ⁽⁵⁹⁾
조 정 대 상	- 오산인터넷뉴스 : 『○동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의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사건사고면) 외 3건 - 인터넷 물향기신문 : 『보육시범도시 오산, 어린이집 ‘아동 성기 학대’ 주장 나와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뉴스면) 외 2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내사 종결되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오산인터넷뉴스 : 『“○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원보도면) - 인터넷 물향기신문 : 『“○동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 의심” 관련』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60~63	(각 정정청구) 윤○○ 對 인터넷 경인일보 ⁽⁶⁰⁾ , e수원뉴스 ⁽⁶¹⁾ ,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⁶²⁾ , 인터넷 장애인생활신문 ⁽⁶³⁾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인일보 : 『송사 휘말린 의원들 “나 떨고있니”』 제하의 기사 외 2건 (2011년 11월 9일자) - e수원뉴스 : 『장병완 “윤○○, 장애인 후원물품 횡령”(종합)』 제하의 기사 (2011년 11월 7일자) -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 : 『국감, 민주당 장병완의원, 윤○○회장 옥매트 750장 어디로 갔어!』 제하의 기사 (2011년 10월 8일자) - 인터넷 장애인생활신문 : 『○○○○○체육회 윤○○ 회장, 사무총장 직위해제 철회』 제하의 기사 (2014년 1월 6일자 외 5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체육회장 재직 시 횡령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재판결과 무죄판결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경기조정 64~69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태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외 2인 對 여성 종합뉴스
조 정 대 상	『국가교육국민 감시단, ○○○ 산하 ‘○○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성명서 발표’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학교학부모비대위가 전교조의 사주를 받아 광주시청 시장실을 불법 점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국가교육국민 감시단, ○○○ 산하 ‘○○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성명서 발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8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70, 71	(각 정정청구) 인천항만공사 對 인천일보 ⁽⁷⁰⁾ , 인터넷 인천일보 ⁽⁷¹⁾
조 정 대 상	『지역사회 “신항, 5월 조속개장” 촉구』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3월 27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3월 27일자 경제면)
신청인 주장	인천항만공사가 2015년 예산서에 신항 관련 임대료 수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경기조정 72	(정정청구) 남양주시 ○○연합회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남양주 체육시설 헐값 임대 논란 시는 방관했을까』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가 시 체육시설을 헐값에 임차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남양주 체육시설 헐값 임대 논란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원보도면)

2015경기조정 73	(정정청구) ○○환경건설 주식회사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특정업체 유착·공사실적 부풀리기 ○구 아파트 입주자회 의혹 투성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모 아파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면서 입주자대표 회의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특정업체 유착·공사실적 부풀리기 ○구 아파트 입주자회 의혹 투성이”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4일자 2면)

2015경기조정 74·75	(정정·손배청구) 문○○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내홍에 1년 공석... ○○새마을금고, 11일 이사장 선거』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인천면)
신청인 주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이 전 이사장의 불법대출과 배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손배청구/내용 : 손해배상 200만원, 부제소)
이 행 결 과	『“내홍에 1년 공석... ○○새마을금고, 11일 이사장 선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인천면)

2015경기조정 76·77	(정정·손배청구) 최○○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인천 간부 세무공무원,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뇌물수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하던 업체에서 공금횡령으로 해고되었고, 공무원 뇌물 제공 및 접대 관련 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78	(정정청구) 이○○ 對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시 위탁사업 그들만의 리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인천시 보건복지국장과 유착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6일자 2면)

2015경기조정 79	(정정청구) 안산시 외 1인 對 경인종합일보
조 정 대 상	『안산시정 홍보물 선관위 경고』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안산시장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경고를 받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안산시정 홍보물 선관위 경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9일자 1면)

2015경기조정 80, 81, 153~156	(각 반론청구) 인천남부경찰서 對 인천일보 ⁽⁸⁰⁾ , 인터넷 인천일보 ⁽⁸¹⁾ (각 정정·반론청구) 경기일보 ^(153·154) , 인터넷 경기일보 ^(155·156)
조 정 대 상	- 인천일보 : 『과도한 친절 전보조치... 警 민원응대 이중 잣대』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7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4월 27일자 사회면) - 경기일보 : 『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치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7면, 인터넷 경기일보 10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남부경찰서가 과도한 호의로 민원인을 응대한 경찰관을 전보 조치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인천일보, 인터넷 인천일보/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경기일보, 인터넷 경기일보/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천일보 :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3일자 2면, 인터넷 인천일보 5월 13일자 게시판면) - 경기일보 : 『“경찰 빗나간 동료애?... 개인정보 불법조치 의혹”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1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11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82	(정정청구) ○○산업 주식회사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M 프로그램 『○○ ○○동 터미널 부지 개발 먹튀 논란』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인천 터미널 부지 개발로 신청인 업체가 거둔 이익에 비해 기부채납액이 적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OBS 뉴스M 프로그램 『○○ ○○동 터미널 부지 개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4일자)

2015경기조정 83	(손배청구) 이○○ 對 인터넷 용인신문
조 정 대 상	『도시계획 조례 재상정... 사상 초유 욕설·고성·막말 본회의』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용인시 의원간 몸싸움을 보도하면서 방청 중인 신청인의 초상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도시계획 조례 재상정... 사상초유 욕설·고성·막말 본회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정치면)

2015경기조정 84	(정정청구) ○○○○마을회 對 우리일보
조 정 대 상	『농어촌(公) 공유수면 운영권 놓고 주민간 갈등』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5일자 14면)
신청인 주장	○○○○마을회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포천 산정호수 공유수면 임대운영권 계약이 불법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농어촌公 공유수면 운영권 놓고 주민 간 갈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5일자 사회2면)

2015경기조정 85, 244·245	(정정청구) 이언주 對 경인투데이뉴스 ⁽⁸⁵⁾ (정정·손배청구) 중부미디어 ^(244·245)
조 정 대 상	- 경인투데이뉴스 : 『새정권소속 이언주국회의원, 지역주민 및 시의원들에게 막말 논란으로 말썽』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지역뉴스면) - 중부미디어 : 『광명시 A 국회의원 약자에 대한 갑질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동료 국회의원과 광명시 의원들에게 무지령이 등의 막말을 했다는 보도 등은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경인투데이뉴스/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중부미디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이언주 의원 막말’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인투데이뉴스 2015년 6월 19일자 사건/사고면)

2015경기조정 86·87	(정정·손배청구) 김○○ 외 2인 對 미디어 하남
조 정 대 상	『하남시 마트 5곳 식파라치, 포상노린 의심사건 발생(부제 : 유통기한 지난 상품 고의로 놓고 신고)』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 밖에서 가져와 매장에서 구입한 것처럼 꾸며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사기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하남시 마트 5곳 ‘식파라치’ 포상노린 의심사건 발생” 관련 추후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88·89	(정정·손배청구) 홍○○ 對 중부투데이
조 정 대 상	(1) 『광명시 학교행정 지역경제, 지역서점 살리기 역행』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0일자 지역뉴스면) (2) 『광명시 일부 학교들 유령서점 감싸, 페이퍼 컴퍼니 활개쳐』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0일자 지역뉴스면)
신청인 주장	각급 학교에 도서를 납품하는 신청인 운영 서점이 페이퍼 컴퍼니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자진취하)
이 행 결 과	『‘페이퍼 컴퍼니 ○○교재사’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6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90·91, 95·96, 126·127	(각 정정·손배청구) 광명시 對 광명투데이신문 ^(90·91, 126·127) , 현대일보 ^(95·96)
조 정 대 상	• 광명투데이신문 : (1) 『(속보)가학폐광산 안전사고 조직적 은폐 의혹 속속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사회면) (2) 『광명시는 현재 신(新) 공안정국시대 “비아냥”』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9일자 사회면) • 현대일보 : 『자격미달 업체 선정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2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광명시가 광명동굴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광명투데이신문 (1) 『‘가학폐광산(광명동굴) 안전사고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초기화면) (2) 『광명시는 현재 신공안정국시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사목록) • 현대일보 : 『광명 ‘○○○○’ 운영권 위탁 외지업체 “사업수행실적 미흡 자격 미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8일자 1면)
2015경기조정 92·93	(정정·손배청구) 이○○ 對 미디어광명
조 정 대 상	(1) 『가학폐광산, 여성 안내원 안전사고 8가지 의혹 밝혀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8일자 사회면) (2) 『광명시, 가학폐광산(광명동굴) 사고 ‘이상한’ 해명 자료 내놔』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9일자 사회면) (3) 『가학폐광산(광명동굴) 여성 안내원 사고 침묵하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안전수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여직원을 동굴 내 통제구역으로 데리고 갔으며, 이러한 행동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가학폐광산, 여성 안내원 안전사고 8가지 의혹 밝혀야’ 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4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94	(반론청구) 사단법인 한국○○○○네트워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최○○ ○○○○연합회 회장, 업무상 배임 정황 드러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기타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영세가맹점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 선정위원회에 차량을 불법으로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최○○ ○○○○연합회 회장, 업무상 배임 정황’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사회일반면)
2015경기조정 97, 98	(각 정정청구) (사)○○○○관리협회 對 경인일보 ⁽⁹⁷⁾ , 인터넷 경인일보 ⁽⁹⁸⁾
조 정 대 상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익대 수익사업』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5년 4월 3일자 23면, 인터넷 경인일보 4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인천공사와 조류퇴치 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고도 조류퇴치 참가자들에게 협찬금을 받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공항 내 조류퇴치 사격 협회 수익대 수익사업”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경인일보 2015년 7월 28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인일보 7월 28일자 알림면)
2015경기조정 99·100	(정정·손배청구) ○○○○ 주식회사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단독)전·현직 경남경찰청장 등 4명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1일자 아시아뉴스통신 단독면) (2) 『(단독2보)경남경찰청 ‘화약류수출허가 부정발급 등’ 해명 ‘글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8일자 사회일반면) (3) 『군수품 탄창 밀수출과 경남서 수출한 최루탄은 유사 수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사회일반면) (4) 『(단독5보)경찰, 김해 D화공 최루탄 수사 마무리 임박』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최루탄 생산 업체인 신청인 회사가 경찰 고위간부들의 비호 아래 허가량을 초과하여 제품을 생산, 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경찰, 김해 D화공 최루탄 수사 마무리 임박’ 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1일자 경남지역면)

2015경기조정 101	(정정청구) 세종특별자치시 對 인터넷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이준희 세종시장 언론사 줄 세우기하나』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0일자 지역 종합/세종·대전·충남면)
신청인 주장	세종시가 일방적으로 브리핑룸과 기자실을 분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경기조정 102, 103	(각 정정청구) (사)○○○○시민단체 ○○ 對 인터넷 수도권일보 ⁽¹⁰²⁾ , 인터넷 전국매일 ⁽¹⁰³⁾
조 정 대 상	- 인터넷 수도권일보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누명 벗어』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뉴스면) - 인터넷 전국매일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 주장 허위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테마동물원 ○○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한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수도권일보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누명 벗어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전국매일 : 『‘테마동물원 ○○ 동물학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5일 메트로면)

2015경기조정 104	(정정청구) 장○○ 對 우리들뉴스
조 정 대 상	『아산시 ○○○○어린이집 원장 막말 SNS 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일자 충남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한국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 서류 위조’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7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05	(반론청구) 주식회사 ○○○○○테크 외 1인 對 OBS경인TV
조 정 대 상	OBS 뉴스M 프로그램 『[집중] 7천억 ○○공원 민자사업 특혜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2일자)
신청인 주장	○○○시 ○○근린공원조성사업 시행자인 신청인들과 이전 공동사업자간 법적 분쟁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OBS 뉴스M 프로그램 『‘○○공원 민자사업 특혜 논란’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0일자)

2015경기조정 106, 117, 183	(각 반론청구) ○○종합사회복지관 對 우리들뉴스 ⁽¹⁰⁶⁾ , 깊게 보는 개미뉴스 ^(117, 183)
조 정 대 상	• 우리들뉴스 : 『○○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 “임산부에 대한 성차별, 인권침해 및 보복해고 부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경기도면) • 깊게 보는 개미뉴스 : (1) 『총애를 받던 직원 갑자기 해고된 이유』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9일자 개미소식면) (2) 『○○종합사회복지관 사태에 부쳐①,②』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개미소식면) (3) 『복지관의 이방인(Ⅰ)-가벼운 농담의 진실 : 끝없는 평행선, 복지관의 이방인(Ⅱ)-무모한 선동꾼 : 그의 문제의식이 문제였을까?』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6일자 심층취재면) 외 4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관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복지사를 보복성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우리들뉴스⁽¹⁰⁶⁾/사유 : 기타) • 취하 (깊게 보는 개미뉴스⁽¹¹⁷⁾/사유 : 기사수정) • 조정성립 (깊게 보는 개미뉴스⁽¹⁸³⁾/사유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종합사회복지관 총애를 받던 직원, 갑자기 해고 관련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깊게 보는 개미뉴스 2015년 9월 9일자 초기화면) • 『“복지관의 이방인”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깊게 보는 개미뉴스 2015년 1월 8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07·108	(정정·손배청구) 한○○ 對 시민방송국Y
조 정 대 상	(1) 『○○시 홍보대사 한○○씨 선정 적절한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6일자 뉴스면) (2) 『말 많던 한○○씨 ○○시 홍보대사 사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뉴스면) (3) 『제목: H 전 ○○시 홍보대사, 사퇴 기자회견도 거짓말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6일자 뉴스면) (4) 『○○시 홍보대사 논란… 사퇴가 능사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작가이자 전 ○○시 홍보대사인 신청인이 신천지 신도이며 수상한 이력의 소유자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시 홍보대사 신천지 신도 및 각종 이력 의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4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09, 110	(각 정정청구) 장○○ 對 경인일보
조 정 대 상	『7년간 무차별 고소, 고발 “상처뿐인 재산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보상 등 개인적 욕심을 채기려고 수년간 반복된 민원을 제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11·112	(정정·반론청구) 사단법인 대한○○회 對 인터넷 수도권일보
조 정 대 상	『각종 이권으로 얼룩진 ‘○○회관 재건축’』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대한○○회 회장이 ○○회관 재건축 관련 업무대행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독단적인 업무 처리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회관 재건축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0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13, 114	(각 추후청구) 이○○ 외 2인 對 인터넷 경기일보 ⁽¹¹³⁾ , 인터넷 인천일보 ⁽¹¹⁴⁾
조 정 대 상	『예비군들 올린 ‘못 믿을 사회적 기업’』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사건·사고면)
신청인 주장	사회적 기업 직원인 신청인들이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사회적 기업 대표 이모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무혐의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일보 2015년 8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8월 24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15	(정정청구) 학교법인 ○○○학원 ○○○대학교 ○○○○병원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노조위원장 병가 인정 못해... ○○○○병원-노조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3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병원과 노동조합 사이의 문제를 편파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병원, 노사 갈등 심화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4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16	(손배청구) 노○○ 對 경기도민일보
조 정 대 상	『해외출장 특정여행사 밀어주기』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동두천시의 해외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여행사의 점주라고 잘못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경기조정 118, 119	(각 정정청구) 인천남동경찰서 對 기호일보 ⁽¹¹⁸⁾ , 인터넷 기호일보 ⁽¹¹⁹⁾
조 정 대 상	『무전취식자 몰고 공무집행방해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8월 6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8월 6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경찰서가 절도 피해 신고 사건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고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9일자 2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9일자 알림면)

2015경기조정 120·121	(반론·손배청구) 장○○ 對 인터넷 인천일보
조 정 대 상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대부분 불기소』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형상의 호두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노무현 비하 호두과자 비난’ 누리꾼 대부분 불기소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알림 게시판면)

2015경기조정 122, 123	(각 손배청구) 고○○ 외 2인 對 인터넷 경인일보 ⁽¹²²⁾ , 뉴시스 경기남부 ⁽¹²³⁾
조 정 대 상	『‘몸쓸 손’ 女제자들 울린 교수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0일자 23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피해자인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면서 범행 장소, 범행 내용 등을 적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취하 (인터넷 경인일보/사유 : 후속보도) • 취하 (뉴시스 경기남부/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찜질방서 여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입건』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인일보 2015년 9월 4일자 전국 경기남부면)

2015경기조정 124·125	(정정·손배청구) 김○○ 對 광명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김모 시의원 불법 행위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8일자 경제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현직 ○○시의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신청인이 독단적으로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고 테니스장 용도를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경기조정 128·129	(정정·손배청구) 박○○ 對 데일리메일
조 정 대 상	『박○○ 부대변인, 장애인단체장 향해 “넌 죽어야 해, 다리(하나 더) 없어져라”』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인 신청인이 장애인단체장을 향해 욕설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박○○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장애인 비하발언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뉴스면)
2015경기조정 130·131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기호일보
조 정 대 상	『○○대학교, 김○○ ○○박물관장 일부 비위 사실 드러나 직위해제』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에 대한 ○○대 측의 일방적인 징계결정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 ○○박물관장, “학교 측의 직위해제는 부당… 법적대응”』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8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32·133	(정정·손배청구) (주)○○○○○○○○ 對 인터넷 용인시민신문
조 정 대 상	『용인 ○○주민, 업체, 시에 제출한 해명서도 허위』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주장에 대해 용인시에 제출한 해명서 내용이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34	(정정청구) 주식회사 ○○○산업 對 남동사람들
조 정 대 상	『○○대공원 ○○○○ 캠핑장』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7일자 1면)
신청인 주장	○○시가 민간 업자인 신청인 회사에게 공원시설인 야영장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이 잘못된 법률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기사수정보도 - 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일부 내용만 제재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려움)

2015경기조정 135·136, 137·138	(각 정정·손배청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對 연수신문 ^(135·136) ,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137·138)
조 정 대 상	『반대여론 무시 막무가내 아파트공사』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5년 9월 16일자 7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9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아파트 배관 설비 교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동 H아파트, 반대여론 무시 막무가내 아파트공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연수신문 2015년 10월 21일자 7면, 인터넷 시사신문 연수신문 9월 16일 사회면)

2015경기조정 139·140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여행사 외 1인 對 아시아뉴스통신
조 정 대 상	(1) 『항공권 싸게 드려요』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0일자 사회면) (2) 『‘가이드 때문에 망친 휴가’... ○○투어 이용에 ‘불만족’』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3) 『수백만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경찰 수사 나서』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항공권 구매를 대행한 개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을 보도하면서 구매대행자가 신청인 여행사 직원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300만원)
이 행 결 과	『‘항공권 싸게 드려요, 수백만 원 가로챈 ○○○여행사 구매대행’ 등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41	(정정청구) ○○범시민연대 對 인터넷 중부일보
조 정 대 상	『발전소 건립 지연으로 115억 손실』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5일자 01B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의 반대로 ○○, △△산업단지 내 열병합 발전소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중부일보 2015년 10월 23일자 3B면, 인터넷 중부일보 10월 23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42~144, 177~182, 184~217, 222~226, 231·232, 237~243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사회복지법인 ○○○ 對 인터넷 경기일보^(142~144), 인터넷 경양일보^(177~179),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180~182), 뉴시스^(186~188), 경기IN^(189~191), 경기중앙신문^(192~194), 경인투데이뉴스^(195~197), 미디어와이^(198~200), 인터넷 인천일보^(201~203), 인터넷 경기일보^(206~208),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215~217), 인터넷 경인종합일보^(224~226), 안산저널^(239~241),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215~217), 인터넷 경인종합일보^(224~226), 안산저널^(239~241) (정정·반론청구) e머니투데이^(184·185) (각 반론·손배청구) 인터넷 인천일보^(204·205), 한국장애인뉴스^(209·210) (각 정정·손배청구) 광주투데이^(211·212), 뉴스투데이24^(213·214), 인터넷 경인매일^(222·223), 인터넷 기호일보^(231·232), 뉴스타워^(237·238),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242·243)
조 정 대 상	- 인터넷 경기일보 : (1) 『[국감] 박수현 의원, ○○○ 설립허가 취소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정치일반면) (2) 『장애인 인권 유린·비리 얼룩… ○○○ 허가취소 마땅』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기일보 2015년 10월 6일자 정치일반면) - 인터넷 경양일보 : (1) 『비리로 얼룩진 ‘○○○’ 설립허가 취소 해야』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5일자 정치면) (2) 『경기도의회 행감, ○○○ 이사장 증인 신청』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9일자 정치면) -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 (1) 『[광주] 비리 복마전 ○○○ ‘유사비리 차단’』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일자 정치면) (2) 『[광주] KBS, "○○○ 정상화 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정치면) 외 22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인터넷 경기일보^(142·143·144)/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 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경양일보, 뉴시스/사유 :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 각 취하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경기중앙신문, 경인투데이뉴스, 인터넷 경기일보^(206~208), 인터넷 경인매일, 인터넷 경인종합일보, 뉴스타워, 안산저널, 대한장애인신문온뉴스/사유 : 정정 및 반론보도) • 각 취하 (미디어와이, 인터넷 인천일보, 인터넷 투데이광주하남/사유 : 반론보도) • 각 취하 (e머니투데이, 경기IN, 한국장애인뉴스^(209·210), 광주투데이, 뉴스투데이24, 인터넷기호일보/사유 : 자진취하) • 취하 (뉴스투데이24/사유 : 정정보도) • 취하 (인터넷 기호일보/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 인터넷 경기일보 : 『[국감]박수현 의원, ○○○ 설립허가 취소해야』 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초기화면) • 인터넷 경양일보 : 『○○○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뉴스면) • 인터넷 동부교차로저널 : 『○○○ 보도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9일자 정치면) • 뉴시스 : 『○○○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경기남부면) • 경기중앙신문 : 『‘○○○’ 보도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초기화면) 외 11개 매체
2015경기조정 145, 146	(각 손해청구) 박○○ 對 OBS경인TV ⁽¹⁴⁵⁾ , 인터넷 OBS경인TV ⁽¹⁴⁶⁾
조 정 대 상	OBS 뉴스M 프로그램 『인천경찰청, ‘살인사건 대응’ 미흡… 경찰 5명 주의·경고』 제하의 보도 (OBS경인TV 2015년 10월 12일자, 인터넷 OBS 뉴스M 10월 12일자 인천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세입자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오피스텔의 동과 호수 등을 공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손해배상 100만원, 부제소, 이행강제금)

2015경기조정 147·148, 170, 227, 228	(정정·반론청구) 부천시 對 부천매일 ^(147·148) (각 정정청구) 부천매일 ⁽¹⁷⁰⁾ , 콩나물신문 ⁽²²⁷⁾ , 인터넷 콩나물신문 ⁽²²⁸⁾
조 정 대 상	『영상단지 개발 사업자 공모 ‘法적 중차대한 절차 하자’ 제기』 제하의 기사 (부천매일 2015년 9월 24일자 사회면, 콩나물신문 신문 11월 25일 1면, 인터넷 콩나물신문 11월 25일 정치행정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부천시의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부천매일^(147·148)/사유 : 반론보도)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부천매일⁽¹⁷⁰⁾/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동의 후 보도) - 조정성립 (콩나물신문⁽²²⁷⁾/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조정성립 (인터넷 콩나물신문⁽²²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부천매일 : (1) 『[반론문] ‘영상단지 개발, 법적 하자있는 행정행위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초기화면) (2) 『‘오정동 군부대 이전한다더니 고강동에 군시설 추가 입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0일자 초기화면) - 콩나물신문 : 『〈“뒷걸음질 치는 부천시 체육진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3일자 1면, 인터넷 콩나물신문 2015년 1월 7일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49~152	(각 정정·손배청구) 함○○ 對 반월신문 ^(149·150) , 인터넷 반월신문 ^(151·152)
조 정 대 상	『○○○생활체육회 A연합회 B회장, 여성 사무국장... 성추행 사건 논란』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5년 10월 7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7일자 사회면) 『○○○생활체육회 A연합회 B회장 성추행 이어 여직원 폭행진단 4주... 연 130% 고리대금업 병행』 제하의 기사 (반월신문 2015년 10월 14일자 1면, 인터넷 반월신문 10월 14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여성 사무국장을 성추행하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57~160	(각 정정·손배청구) 현○○ 對 인천일보 ^(157·158) , 인터넷 인천일보 ^(159·160)
조 정 대 상	『비리 있었어도 ‘우리가 남이가’... ○○시 체육회 고위간부 반칙?』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1일자 16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1일자 뉴스면) 『이번엔 ○○시 체육회 고위간부 동문 ‘구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2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2일자 뉴스면) 『선거운동 돕고 ‘공고물 기대했나’』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2일자 16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2일자 뉴스면) 『(사설) “○○시 체육회의 인사청탁 잡음”』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3일자 11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3일자 뉴스면) 『가맹단체 갈등 해결방식 ‘원칙보다 학연’』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9월 3일자 16면, 인터넷 인천일보 9월 3일자 뉴스면) 외 8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 체육회 사무처장 재직 당시 산하 기관에 측근을 계약직에 채용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비리 있었어도 ‘우리가 남이가’... 체육회 고위간부 반칙?” 등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스포츠면,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20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62	(정정청구) ○○○○○○○2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對 경기일보
조 정 대 상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하자보수 업체 선정 방식 돌연 변경』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7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적법 절차없이 하자보수업체 선정 방식을 변경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못믿겠다! 입주민대표”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6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63, 164	(각 반론청구) 인천지방경찰청 對 기호일보 ⁽¹⁶³⁾ , 인터넷 기호일보 ⁽¹⁶⁴⁾
조 정 대 상	『그때 그때 달라요? 경찰 수사잣대 ‘도마위’… SNS 유포 ‘명예훼손’ 사건 두고 상반된 모습 논란』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9월 29일자 19면, 인터넷 기호일보 9월 2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인천지방경찰청이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건마다 잣대를 달리하여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그때 그때 달라요? 경찰 수사잣대 ‘도마 위’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기호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사회면, 인터넷 기호일보 11월 20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165, 166	(각 정정청구) 김학용 對 안성신문 ⁽¹⁶⁵⁾ , 인터넷 안성신문 ⁽¹⁶⁶⁾
조 정 대 상	『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도읍, 이장 임명도 충성』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5년 11월 11일자 1면, 인터넷 안성신문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안성시 공도읍 이장에 측근 인사가 임명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국회의원에 충성 외친 공도읍, 이장 임명도 충성?’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안성신문 2015년 11월 25일자 1면, 인터넷 안성신문 11월 20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167, 168	(각 정정청구) 안성경찰서 對 경기일보 ⁽¹⁶⁷⁾ , 인터넷 경기일보 ⁽¹⁶⁸⁾
조 정 대 상	『절도 신고했더니… “고소장 제출하라” 손 놓은 경찰』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11월 3일자 6면,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안성경찰서가 공사 장비 불법 운행과 철근 도난 등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알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경기일보 2015년 11월 16일자 10면, 인터넷 경기일보 11월 16일자 사람들면)

2015경기조정 169	(반론청구) 연태영 對 인터넷 수원일보
조 정 대 상	『‘부동산 대박’ 현실로... 연태영 땅 시세차익 무려 40억원』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시장 직분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71	(정정청구) 이○○ 對 인터넷 부천신문
조 정 대 상	• 『○○ 참여예산 ‘흔들’ 교육특위 L씨 갑질 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4일자 사회면) •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보고 안 된 ‘묻지마 예산’ 논란 커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1일자 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참여예산 시민위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재직하는 업체의 물품을 관내 학교에서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기조정 172~175	(각 정정·손배청구) 인천국제공항공사 對 인천일보 ^(172·173) , 인터넷 인천일보 ^(174·175)
조 정 대 상	『제발 저런 인천공항공사... 낮 뜨거운 추락』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0월 6일자 1면, 인터넷 인천일보 10월 6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터키 이스탄불 신공항 사업에 실적증명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2월 14일자 2면)

2015경기조정 176	(반론청구) 오○○ 對 인터넷 태권도신문
조 정 대 상	『최○○ ‘씩은 내 난다’며 국기원에 내용증명』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2일자 국내이슈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돈을 받고 월단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오 처장, 9가지 의혹 전혀 사실 아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5일자 국내이슈면)

2015경기조정 229·230	(정정·손배청구) 오○○ 對 TK TIMES
조 정 대 상	『[사설] 세상은 돌고 돈다. 태권도를 향한 외침』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6일자 태권도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대를 불명예 전역한 전력이 있고, ○○원의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사설] 세상은 돌고 돈다. 태권도를 향한 외침』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24일자 초기화면)

2015경기조정 233~236, 255·256	(추후·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웰빙코리아뉴스 ^(233·234) , 경찰투데이 ^(255·256) (추후·손배청구) 조○○ 외 4인 對 미디어리포트 ^(235·236)
조 정 대 상	• 웰빙코리아뉴스 : 『의혹 투성이 ○○○, 검찰수사 지지부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경기면) • 미디어리포트 : (1) 『○○○, 장애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간절한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5일 광주뉴스면) (2) 『광주시 ○○○, 특별회계감사 거부』 제하의 기사 (미디어리포트 2015년 2월 2일자 광주뉴스면) • 경찰투데이 : 『경기 광주 ○○○, 후원금 착복 등 횡령혐의로 사무국장, 임직원 등 12명 검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일자 경찰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장애인 복지시설 재직 중 횡령 공금유용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기각 (사유 : 신청인 당사자 부적격)

2015경기조정 246~249, 250~253	(각 정정·손배청구) 김○○ ^(246~249) , 민○○ ^(250~253) 對 인천일보 ^(246·247, 250·251) , 인터넷 인천일보 ^(248·249, 252·253)
조 정 대 상	『○○중 이번엔 몽둥이 체벌 체육부 담당교사가 부원 폭행』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5년 11월 10일자 19면, 인터넷 인천일보 11월 11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중학교 축구담당 체육교사인 신청인이 학부모에게 명절선물을 강요하고, 이유 없이 대회 출전을 금지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각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행강제금) • 취하 (각 손배청구/사유 : 기사수정 약속)
이 행 결 과	『○○중 체육교사 명절선물 요구 및 축구부 학생 폭행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인천일보 2016년 1월 18일자 사회면, 인터넷 인천일보 1월 18일자 사회면)

2015경기조정 254	(정정청구) 강화군 對 강화섬소식
조 정 대 상	『군수 일정에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강화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컷말 무성』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13면)
신청인 주장	강화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개최시간이 변경된 것이 군수 일정 때문이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군수 일정에 ‘반쪽 행사’로 전락한 강화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컷말 무성”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6년 1월 29일자 오피니언면)

2015경기조정 257~259	(정정·반론·손배청구) 한○○ 對 인터넷 시사인천
조 정 대 상	『현 집권 여당 텃밭 새정치 민주연합 존재감 미미』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14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나, 정치적 행보가 거의 없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강원〉

2015강원조정 1~8, 10~15	(각 정정·손배청구) 강원도 ○○의료원 對 뉴시스 강원 ^(1·2, 14·15) , 뉴스1 강원 ^(3·4, 10~13) , 강원일보 ^(5·6) , 인터넷 강원일보 ^(7·8)
조 정 대 상	• 뉴시스 강원 : (1) 『‘속초고성양양시민단체 ○○의료원, 도지사가 책임져야’』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0일자 사회면) (2) 『○○의료원 사태 일파만파... 함○○ 지부장 단식농성』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6일자 강원면) • 뉴스1 강원 : 『○○의료원장 퇴진문제 놓고 노사 갈등 여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9일자 강원면) • 강원일보 : 『일방적 규정 개정 중단』 제하의 기사 (강원일보 2015년 2월 5일자 사회면) • 인터넷 강원일보 : 『‘일방적 규정 개정 중단 보건의료노조 농성 돌입’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5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의료원 원장이 임직원 회의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취하 (뉴시스 강원/사유 : 반론보도) • 조정성립 (뉴스1 강원/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강원일보, 인터넷 강원일보/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뉴시스 강원 : 『○○의료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관련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0일자 전국 강원면) • 뉴스1 강원 : 『[○○의료원 사퇴 압박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8일자 강원면) • 강원일보 : 『의료원 흑자, 일시적 현상 아닌 지속 여부가 관건』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오피니언면, 인터넷 강원일보 3월 13일자 사설면)
2015강원조정 16~19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원주신문 ^(16·17) , 인터넷원주신문 ^(18·19)
조 정 대 상	『○○체육관 일부 운동기구, 심하게 훼손된 제품 비치 ‘말썽’』 제하의 기사 (원주신문 2015년 3월 23일자 사회일반면, 인터넷 원주신문 3월 2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원주시 ○○체육관에 중고 운동기구를 납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강원조정 20~23	(각 정정청구) ○○○○○생산자협회영농조합법인 對 강원도민일보 ⁽²⁰⁾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²¹⁾ , 강원일보 ⁽²²⁾ , 인터넷 강원일보 ⁽²³⁾
조 정 대 상	『봄 향기 가득한 개두름 맛보세요』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5년 4월 22일자 13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4월 22일자 강릉면, 강원일보 4월 22일자 22면, 인터넷 강원일보 4월 22일자 강원면)
신청인 주장	강릉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개두름이 전부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임에도, 특정 마을에서 생산되는 개두름만 산림청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이라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 강원도민일보 : 『‘강릉 개두름’ 농가 효자상품』 제하의 기사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2015년 4월 24일자 지역면) - 강원일보 : 『[강릉]강릉 개두름 봄나물 시장 평정』 제하의 기사 (인터넷 강원일보 2015년 5월 1일자 22면)

2015강원조정 24	(정정청구) ○○케이بل카(주) 對 MBC 강원영동-TV
조 정 대 상	8시 뉴스 프로그램 『○○케이블카 요금 인상 반발』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5일자)
신청인 주장	○○케이블카가 갑작스럽게 요금을 인상했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도 인색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고)

2015강원조정 25, 26	(각 반론청구) ○○○어린이집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G1뉴스820 프로그램 『어린이집 불신여전... “신뢰회복이 급선무”』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24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어린이집의 교사가 원아를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G1뉴스820 프로그램 『[반론보도문] 어린이집 아동학대 ‘무혐의’』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6일자)

2015강원조정 27, 28	(각 정정청구) ○○초등학교 對 강원도민일보 ⁽²⁷⁾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²⁸⁾
조 정 대 상	『지나친 공포감이 휴업사태 불렀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학교가 유언비어에 근거하여 메르스 관련 휴업을 결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피신청인 사과)

2015강원조정 29, 37, 40·41	(각 정정청구 ^(29, 37) , 정정·손배청구 ^(40·41)) 양구군 對 G1 강원민방-TV
조 정 대 상	뉴스820 프로그램 『차 없는 거리가 화재 무방비』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10일자)
신청인 주장	양구군이 2008년 조성한 차 없는 거리가 화재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820 프로그램 『“양구 차 없는 도로 보도” 관련 추가 보도문』 제하의 보도 (2015년 7월 30일자 뉴스면)

2015강원조정 30~33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강원도민일보 ^(30·31) ,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32·33)
조 정 대 상	『고교 교사가 여학생 성추행 의혹… 경찰 수사』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5년 9월 2일자 사회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9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사인 신청인이 여학생을 성추행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교 교사 여학생 성추행 의혹”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강원도민일보 2015년 9월 26일자 3면, 인터넷 강원도민일보 9월 26일자 사회면)

2015강원조정 34	(정정청구) 유승희 對 강원일보
조 정 대 상	『野 최고위 ‘막말·욕설’ 9일만에 또 충돌』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3일자 6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용득 최고위원과 막말 공방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9일자 6면)
2015강원조정 35, 36, 42	(각 정정청구) 신○○ 對 강원일보 ⁽³⁵⁾ , 인터넷 강원일보 ^(36, 42)
조 정 대 상	『말 안듣는다며 꼬집고 화장실 못가게 해』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7일자 사회면, 인터넷 강원일보 10월 2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유치원 원감인 신청인이 원생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강원조정 38·39	(반론·손배청구) ○○○예수교회 對 노컷뉴스
조 정 대 상	『○○○ 자식도 빼앗아 가고 폭행까지... 경찰수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2일자 강원면)
신청인 주장	○○○ 신도들이 신도인 딸을 찾기 위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부모를 집단 폭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신도 집단폭행’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8일자 강원영동면)

〈충북〉

2015충북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유)○○가스충전소 외 1인 對 동양일보 ^(1·2) , 인터넷 동양일보 ^(3·4)
조 정 대 상	『영동군의원 운영 가스충전소 ‘가짜가스’ 적발』 제하의 기사 (동양일보 2015년 1월 6일자 3면, 인터넷 동양일보 1월 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영동군의회 의원인 신청인이 부친이 운영하는 가스충전소가 직원의 실수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9, 10	(각 반론청구) 김○○ 對 충청매일 ⁽⁹⁾ , 인터넷 충청매일 ⁽¹⁰⁾
조 정 대 상	『성범죄 전력 불편한 시선 외면』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5년 1월 15일자 사회면, 인터넷 충청매일 1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인 신청인의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알려왔습니다] 1월 15일자 사회면 ‘성범죄 전력 불편한 시선 외면’ 보도에 대해 ○○시립무용단 김○○ 예술감독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충청매일 2015년 2월 11일자 2면, 인터넷 충청매일 2월 10일자 사회면)

2015충북조정 11·12	(반론·손배청구) 청주○○외과의원 對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조 정 대 상	『청주 한 외과병원서 의료사고… “마취 후 의식 잃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2일자 충북·세종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의원이 의료사고를 일으킨 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청주 한 외과병원서 의료사고… “마취 후 의식 잃어”』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0일자 충북·세종면)

2015충북조정 13, 14	(각 정정청구) 이○○ 對 충청리뷰 ⁽¹³⁾ , 충북인뉴스 ⁽¹⁴⁾
조 정 대 상	『최대 피해자는 농민, 파국 막는 건 대화 뿐』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5년 1월 30일자 사회면, 충북인뉴스 1월 27일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농협 조합장인 신청인이 “농협이 해산돼도 농민들에게 크게 불편할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노사 간 소통, 대화가 정답입니다』 제하의 기사 (충청리뷰 2015년 3월 6일자 10면, 충북인뉴스 3월 5일자 사회교육면)
2015충북조정 15, 16, 31	(각 정정청구) ○○○코리아(주) 對 세종데일리 ⁽¹⁵⁾ , 인터넷 충청일보 ⁽¹⁶⁾ ,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³¹⁾
조 정 대 상	• 세종데일리 : 『‘○○○’ 아무곳에나 설치가능?』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뉴스면) • 인터넷 충청일보 : 『놀이공원에서 하강스포츠시설 타던 어린이 추락해 사망』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일자 충북면) •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 : hcn뉴스 프로그램 『‘○○○’ 아무곳에나 설치가능?』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6일자)
신청인 주장	충북 보은 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어린이 추락사 관련 놀이기구가 신청인 회사가 설치 운영하는 놀이기구인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 각 취하 (세종데일리, 인터넷 현대HCN충북방송/사유 : 기사삭제) • 취하 (인터넷 충청일보/사유 : 후속보도)
이 행 결 과	『놀이공원에서 하강스포츠시설 타던 어린이 추락해 사망』 제하의 기사 (인터넷 충청일보 2015년 3월 5일자 보은면)
2015충북조정 17~26, 42~49	(각 정정·반론청구) 사회복지법인 ○○학원 對 청주KBS-1TV ^(17·18) , KBS미디어 ^(19·20, 45·46) ,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21·22) , 아시아뉴스통신(충북) ^(23·24) , 제천사랑뉴스 ^(25·26) , 타임뉴스 ^(48·49) (정정·반론·손배청구) 청주KBS-1TV ^(42·43·44) (정정청구) 아시아뉴스통신(충북) ⁽⁴⁷⁾
조 정 대 상	• 청주KBS-1TV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천시 ○○학원 의혹 - 내 돈을 찾아주세요』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 • KBS미디어 : 시사플러스 프로그램 『제천시 ○○학원 의혹』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1일자) •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 『국가인권위, 제천 모 사회복지법인 소속 특수학교·복지시설 조사』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전국면)

조 정 대 상	- 아시아뉴스통신(충북) : 『장애인 급여 모연한 행방 “내 돈을 찾아주세요”』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사회일반면) - 제천사랑뉴스 : 『사회복지법인 ○○학원, 장애우 근로급여 어디에?』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사회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복지법인이 기부금 횡령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불성립결정 (청주KBS-1TV, KBS미디어, 뉴스1코리아 세종충북) - 각 조정성립 (아시아뉴스통신(충북)^(23·24), 제천사랑뉴스/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조정성립 (아시아뉴스통신(충북)⁽⁴⁷⁾/내용 : 기사수정, 조건부보도, 부제소) - 조정성립 (타임뉴스/내용 : 조건부보도)
이 행 결 과	- 아시아뉴스통신(충북)^(23·24) : 『“사회복지법인 ○○학원”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3일자 사회일반면) - 제천사랑뉴스 : 『“사회복지법인 ○○학원” 보도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6일자 사회면) - 아시아뉴스통신(충북)⁽⁴⁷⁾ :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매관매직 흔적지우기… 폭행제보자 색출 혈안』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6일자 사회일반면) - 타임뉴스 : 불이행

2015충북조정 27~30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중원신문 ^(27·28) , 인터넷 중원신문 ^(29·30)
조 정 대 상	『충주시 공무원은 ‘갑’… ‘을’인 업체는 명든다!』 제하의 기사 (중원신문 2015년 3월 16일자 1면, 인터넷 중원신문 3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충주시 공무원인 신청인이 시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와 유착하고 향응을 받는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충주시 공무원은 ‘갑’… ‘을’인 업체는 명든다!”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중원신문 2015년 4월 13일자 1면, 인터넷 중원신문 4월 13일자 사회면)

2015충북조정 32~37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정○ 외 2인 對 충북일보 ^(32~34) , 인터넷 충북일보 ^(35~37)
조 정 대 상	『새 단장 첫 전시회에 대다수 작품 재탕, ○○○○○○○미술관 2015 기획전 가보니 ‘그들만의 리그’』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3월 23일자 3면, 인터넷 충북일보 3월 23일자 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미술관 2015 기획전에 타 전시회에 전시했던 작품들을 전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밝혀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4월 9일자 3면, 인터넷 충북일보 4월 8일자 공연·전시면)

2015충북조정 38~41	(각 정정·손배청구) 주식회사 ○○○○○○수련원 對 충청리뷰 ^(38·39) , 충북인뉴스 ^(40·41)
조 정 대 상	• 충청리뷰 : (1) 『전직 교장·교육감 측근 영입해 영업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 7면) (2) 『중·고생 수련활동 입찰 담합 정황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0일 5면) 외 2건 • 충북인뉴스 : (1) 『중·고생 수련활동 입찰 담합 정황 ‘충격’』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교육면) (2) 『학교장 영향력 줄이고 학부모 선택권 높여야』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교육면) (3) 『전직 교장·교육감 측근 영입해 영업 활동』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8일자 사회교육면)
신청인 주장	○○○○○○수련원이 리베이트 제공, 입찰 담합, 접대 등을 통해 초중고생 수련 활동을 독식한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50	(정정청구) 청주○○○ ○○○○○ 입주자대표회의 對 CJB-TV
조 정 대 상	CJB 7시 뉴스 프로그램 『허가 받은 경로당... 2년째 출입금지』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1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로당을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노인들의 경로당 출입을 방해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51~54	(각 정정·손배청구) 박○○ 對 중부매일 ^(51·52) , 인터넷 중부매일 ^(53·54)
조 정 대 상	(1) 『신임 ○○시립무용단 안무자 ‘불법 의혹’』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8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7일자 사회면) (2) 『단원에 ‘작품비 명목’ 금품수수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2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2일자 사회면) (3) 『시립무용단 잘못된 관행 뿌리 뽑아야』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3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3일자 사회면) (4) 『감독의 작품비 수수는 ‘검직금지 위반’』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5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5일자 사회면) (5) 『사전 내정설, 허술한 인사검증 도마위』 제하의 기사 (중부매일 2015년 5월 19일자 3면, 인터넷 중부매일 5월 1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시립무용단장인 신청인이 상임안무자 시절 무용대학 재학생과 단원들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55	(정정청구) 한국철도시설공단 對 인터넷 중부매일
조 정 대 상	(1)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2일자 정치종합면) (2)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3일자 사설면) (3) 『고객편의 뒷전인 철도공단의 제멋대로식 주차비』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6일자 취재수첩면)
신청인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윤추구에 혈안이 돼 오송역 주차장 요금을 과다 책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주차요금에 발목 잡힌 국가철도의 중심] 기사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2일자 사회종합면)

2015충북조정 56	(반론청구) 공주시 對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오시덕 공주시장 1년 성적표 ‘낙제점’』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0일자 9면)
신청인 주장	민선6기 공주시장의 1년 시정평가가 무원칙한 인사, 전략부재 등으로 낙제점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김○○ 對 충청리뷰
조 정 대 상	『경찰, 불법주차에 수감… 공권력 과잉논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9일자 19면)
신청인 주장	경찰공무원인 신청인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9일자 20면)

2015충북조정 59	(정정청구) (주)○○○투어 對 인터넷 충청일보
조 정 대 상	『여름 바캉스철 고갱님은 호갱님!』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사회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여행사가 고객 민원에 무성의하게 대응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충북조정 60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인터넷 충북일보
조 정 대 상	『신비주의 (주)○○○○○ 재정압박』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5일자 기업·과학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대규모 투자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충북조정 61·62	(정정·손배청구) 학교법인 ○○학원 對 뉴시스
조 정 대 상	(1) 『교과부 “분류는 평가지표 아냐”... ○○대 거짓말 ‘탄로’』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전국면) (2) 『부실대학평가 당연... ‘공룡’ ○○대 예산 ‘민망’』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4일자 전국면) (3) 『“구성원 탕” 낙제점 받은 ○○대, 또 책임전가』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6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2014년도 ○○대학교 적립금이 전년 대비 34억원 순증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대학교 적립금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3일자 전국면)
2015충북조정 63·64	(정정·손배청구) ○○○○○○○충연합회 외 1인 對 인터넷 충청매일
조 정 대 상	『CCTV 반대, 정치적 아동학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연합회 회장이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신청기간 도과)

2015충북조정 65~67	(각 정정청구) 김○○ 對 충북일보 ⁽⁶⁵⁾ , 인터넷 충북일보 ⁽⁶⁶⁾ , 뉴시스 ⁽⁶⁷⁾
조 정 대 상	- 충북일보 : 『김○○ 전 총장과 공판시간 비슷… 시간변경 요청할 것』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10일자 3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9일자 일반사회면) - 뉴시스 : 『배임 등 혐의 김○○ 전 ○○대 총장 19일 첫 공판』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9일자 일반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대학교 총장 재직시 교비를 법정 전입금으로 전용한 의혹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 충북일보 :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7일자 2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26일자 사회일반면) - 뉴시스 : 『‘○○대 교비전용, 초중고에 지급’ 관련 정정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30일자 일반 사회면)

2015충북조정 68·69	(정정·손배청구) 김○○ 외 1인 對 제천뉴스저널
조 정 대 상	(1) 『사이비 언론 대책 필요-공갈·협박·사가… 피해 ‘도(度) 넘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3일자 뉴스 일반면) (2) 『일간지 VS 인터넷언론-그 역설적 반비례』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5일자 뉴스일반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인터넷 신문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건축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충북조정 70, 71	(각 정정청구) ○○군의회 외 1인 對 충북일보 ⁽⁷⁰⁾ , 인터넷 충북일보 ⁽⁷¹⁾
조 정 대 상	『○○ 노인복지회관 신축 국비 ‘허공에’』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10월 29일자 4면, 인터넷 충북일보 10월 28일 지역면) 『박○○, 입지 흔들리나』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11월 9일자 6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8일 정치면) 『○○군 성급한 행보 ‘입방아’』 제하의 기사 (충북일보 2015년 11월 18일자 4면, 인터넷 충북일보 11월 17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군의회가 노인복지회관 신축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전북〉

2015전북조정 1·2	(정정·손배청구) 송○○ 對 익산 인터넷뉴스
조 정 대 상	『익산시청 출입기자, 박경철 시장에게 칼 꽃아 기자 본분 망각』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4일자 시사타치면)
신청인 주장	기자인 신청인이 익산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인터뷰 녹음내용을 검찰에 제공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사과보도, 기사삭제)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약속)
이 행 결 과	『익산 출입기자 관련 사과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30일자 초기화면)

2015전북조정 5~10, 17·18, 61~64, 71·72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5·6), 인터넷 새만금일보^(7·8), 전라매일^(9·10), 인터넷 전주일보^(17·18), 전주매일^(71·72) (각 추후청구) 전라매일⁽⁶¹⁾, 인터넷 전주일보⁽⁶²⁾, 인터넷 새만금일보⁽⁶³⁾, 인터넷 내외일보⁽⁶⁴⁾
조 정 대 상	(1) 『○○ 가든 운영 민간인, 수년 묵은 외상값 시비로 폭력과 전화고발로 가든 일부 철거』 제하의 기사 (인터넷 내외일보 2014년 11월 11일자 뉴스면) (2) 『고창 공무원, 역대보조금 편법수령 강력 수사촉구. 주민, 70대 모친 등 타인 명의로 대규모 수려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인터넷 내외일보 2014년 12월 8일자 뉴스면) (3) 『고창 보조금 편법수령 공무원, 대량의 토지 임대 의혹』 제하의 기사 (인터넷 내외일보 2015년 12월 27일자 뉴스면) 외 7개 매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식당 외상값 관련 시비로 폭행을 행사하고, 순수 농민에게 가야 할 보조금을 불법 수령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인터넷 내외일보⁽⁵⁾, 인터넷 새만금일보⁽⁷⁾, 전라매일⁽⁹⁾, 인터넷 전주일보⁽¹⁷⁾, 전주매일⁽⁷¹⁾/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인터넷 내외일보⁽⁶⁾, 인터넷 새만금일보⁽⁸⁾, 전라매일⁽¹⁰⁾, 인터넷 전주일보⁽¹⁸⁾, 전주매일⁽⁷²⁾/사유 : 보도약속) • 각 조정성립 (전라매일⁽⁶¹⁾, 인터넷 전주일보⁽⁶²⁾, 인터넷 새만금일보⁽⁶³⁾, 인터넷 내외일보⁽⁶⁴⁾/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 인터넷 내외일보 : 『전북 익산 고창군 공무원 K모씨』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3일자 지방색션면) • 인터넷 새만금일보 : 『‘고창 공무원 역대 보조금’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27일자 사회종합색션면) • 전라매일 : 『‘고창 공무원 甲질 비리’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3일자 3면) 외 2개 매체

2015전북조정 11, 14~16	(각 정정청구) ○○시니어클럽 對 새전북신문 ⁽¹¹⁾ , 인터넷 새전북신문 ⁽¹⁴⁾ , 네이버 ⁽¹⁵⁾ , 다음 ⁽¹⁶⁾
조 정 대 상	『○○시니어클럽 ‘봐주기 의혹’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5년 2월 28일자 8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2월 28일자 지역면, 네이버 2월 22일자 뉴스면, 다음 2월 22일자 뉴스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시니어클럽의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이 미흡하고 감독관청의 감사를 받지 않은 등 특혜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새전북신문, 인터넷 새전북신문/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네이버, 다음/사유 : 기사삭제)
이 행 결 과	『“○○시니어클럽” 정정 및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5년 3월 16일자 2면)

2015전북조정 13	(정정청구) 김○○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전복권 『불청객겨울황사... 건강관리비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3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전주천변에서 산책하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보도해서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피신청인 사과, 기사삭제, 부제소)

2015전북조정 19·20	(정정·손배청구) ○○고등학교 외 1인 對 전주KBS-1TV
조 정 대 상	• 뉴스9 프로그램 『‘반쪽’ 역학조사... 학생건강위협』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5일자) • 시사전북 맞수맞짱 프로그램 『학교급식 안전불감증 여전』 제하의 보도 (2015년 3월 7일자)
신청인 주장	○○고등학교 교장이 학생 집단설사 발생 관련 식중독 의심 신고를 취소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PR·후속보도, 피신청인 사과)

2015전북조정 21~24	(각 정정·손배청구) 유성엽 對 새전북신문 ^(21·22) , 인터넷 새전북신문 ^(23·24)
조 정 대 상	『새정치 전북도당 정체성 논란』 제하의 기사 (새전북신문 2015년 3월 12일자 3면, 인터넷 새전북신문 3월 11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연합 전북도당 위원장인 신청인이 국민모임 신당의 주축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과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전북조정 25~28	(정정·손배청구) 조○○ 외 1인 對 전라일보 ^(25·26) , 인터넷 전라일보 ^(27·28)
조 정 대 상	『선거개입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해야』 제하의 기사 (전라일보 2015년 3월 24일자 9면, 인터넷 전라일보 3월 24일자 정치면)
신청인 주장	○○군 ○○○○본부장인 신청인1이 군수선거에서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했고,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신청인 2가 현재 ○○○○본부 사무국장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각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 선거개입 민간단체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전라일보 2015년 4월 21일자 9면)

2015전북조정 29·30	(정정·손배청구) 김○○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1) 『교감 안한다고 공언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4일자 7면) (2) 『도교육청, 장학사 균등한 업무 배치 필요』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7면) (3) 『석연찮은 장학사 인사, 바로잡자』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6일자 11면) (4) 『교감안한다고 공언하더니』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4일자 1면)
신청인 주장	○○교육청 장학사인 신청인이 교감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일부 장학사가 교감임용에 탈락된 것이 신청인과 관계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전북조정 31~34, 46~51	(각 정정·손배청구) 익산시 對 전북일보 ^(31·32, 47·48, 50·51) , 인터넷 전북일보 ^(33·34) (각 정정청구) 전북일보 ^(46, 49)
조 정 대 상	(1) 『황등 노인복지회관 건립 논란』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6일자 8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5일자 사회면) (2) 『정작 익산 특산품은 ‘뒷전’』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13일자 8면) (3) 『익산으로 U턴 않겠다 파문 중국진출 13개 업체, 계약금까지도 포기』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19일자 8면) (4) 『백제문화 세계유산 등재 ‘전북 소외’』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21일자 1면) (5) 『익산시 수십억 손해배상 우려』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5월 27일자 8면)
신청인 주장	익산시의 약속 불이행으로 중국에서 익산으로 복귀하려던 주얼리 기업들이 공장 부지 계약을 포기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전북조정31~34/내용 : PR·후속보도 - 동의 후 보도) •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전북조정46, 2015전북조정47·48)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15전북조정49/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 조정성립 (2015전북조정50/내용 : PR·후속보도, 부제소) • 취하 (2015전북조정51/사유 : PR·후속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1) 『익산시가... (생략)』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27일자 8면) (2) 『익산시 황등 도서관 관련 항의 보도문』 제하의 기사 (인터넷 전북일보 2015년 4월 27일자 뉴스면) (3) 『익산 관광 마스터플랜 구축』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7월 8일자 8면) (4) 『익산 하수슬러지 시설 재검토』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11월 23일자 8면)

2015전북조정 35·36	(정정·손배청구) 이○○ 對 열린순창
조 정 대 상	『선거개입 민간단체 보조금 삭감해야 한다』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일자 22면)
신청인 주장	일간지 기자인 신청인의 기사에 대해 피신청인 신문에 기사형 광고로 게재한 반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하 (사유 : 의견 광고)

2015전북조정 37·38, 39·40	(각 정정·손배청구) (주)○○건설 對 전북일보 ^(37·38) , 인터넷 전북일보 ^(39·40)
조 정 대 상	(1)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상가 분양 의도적 낙찰가 올리기 의혹』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2일자 1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1일자 사회면) (2) 『전북혁신도시 ○○○○○○ ○○○ ○○○○○○ 아파트 상가, 이번엔 덤핑분양 의혹』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3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2일자 사회면) (3) 『○○건설 상가 분양 의혹 철저한 수사 마땅』 제하의 기사 (전북일보 2015년 4월 3일자 6면, 인터넷 전북일보 4월 2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분양한 아파트 상가 입찰에 개입하여 의도적으로 낙찰가를 올렸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전북조정 41·42	(정정·손배청구) 김○○ 對 전북매일신문
조 정 대 상	『○○군 노인요양원 ‘시끌’』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10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군 노인요양원의 운영을 맡은 이후 기존 원장을 나가라고 하는 등 막무가내식 행동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정정보도, PR·후속보도, 사과(문)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전북조정 43·44	(정정·손배청구) 변○○ 외 1인 對 익산제일뉴스
조 정 대 상	『익산 S고 여교사 “자살하고 싶다” 인권침해 ‘파장’』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고교 교장, 교감인 신청인들이 원로교사를 차별대우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이행강제금) • 취하 (손배청구/사유 : 보도 약속)
이 행 결 과	『‘익산 S고 여교사’ 관련 교장 교감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8일자 초기화면 상단)

2015전북조정 45	(정정청구) ○○면사무소 對 새전북신문
조 정 대 상	『닭 폐기물 대량 불법 매립파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1면)
신청인 주장	○○면사무소가 닭 폐기물 불법 매립 관련 민원에 대해 능장 대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12일자 2면)

2015전북조정 52	(정정청구) 한국○○○○(주) 對 전북일보
조 정 대 상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사업 부안지역 새 갈등요소 부상』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5일자 7면)
신청인 주장	한국○○○○이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정정보도)
이 행 결 과	『바로잡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2일자 2면)

2015전북조정 53, 54	(각 정정청구) 부안경찰서 對 전북중앙신문 ⁽⁵³⁾ ,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⁵⁴⁾
조 정 대 상	『군청 겨냥 무리한 단속? 부안경찰 위상 크게 추락』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신문 2015년 6월 8일자 9면, 인터넷 전북중앙신문 6월 8일자 뉴스-지역면)
신청인 주장	부안경찰서가 부안군청을 겨냥해 주정차 단속 등 무리한 단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사과(문)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부안경찰서 무리한 단속?’ 독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제하의 기사 (전북중앙일보 2015년 6월 29일자 지역면, 인터넷 전북중앙일보 6월 30일자 초기화면 팝업)

2015전북조정 55·56	(정정·손배청구) 전○○ 對 인터넷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1) 『○○문화관광형시장 사업 취소하라』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5일자 뉴스면) (2) 『○○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 관련 신·구 상인회 간 갈등 심화』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7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 ○○시장 문화관광형 사업단의 단장인 신청인이 점포 임대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 조정성립 (정정청구/내용 :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취하 (손배청구/사유 : 기사삭제)
2015전북조정 57·58	(정정·손배청구) (주)○○○○○○○ 對 전주일보
조 정 대 상	(1) 『새만금공사에 쓰겠다며 반출한 토사 ‘채취한 곳은 있는데 받은 곳은 없네’』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1면) (2) 『줄포 토석채취허가 내용 ‘공개해’』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9일자 15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업체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 외 지역으로 토석을 무단 반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전북조정 59·60	(정정·손배청구) 이○○ 對 뉴시스 전북
조 정 대 상	『부안서장 막말 논란 관련, 방법대 대원들에게 보내진 문자』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21일자 전북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경찰 협력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부안군 자율방범대를 해체해 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PR·후속보도, 피신청인 사과/유감표명, 기사삭제,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결정 후 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일자 지역면 부안섹션면)

2015전북조정 65~70	(각 정정·손배청구) 이상직 對 전주매일 ^(65·66) , 인터넷 전주매일 ^(67·68) , 국제뉴스(전북) ^(69·70)
조 정 대 상	『신청인이 벌금 전력 때문에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제하의 기사 (전주매일 2015년 9월 25일자 3면, 인터넷 전주매일 9월 25일자 전국/전북면) 외 1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지역구가 내년 총선에서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이라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기사수정)
이 행 결 과	『[전북총선 기획시리즈 3] 전주 완산을 선거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전북면)
2015전북조정 73·74	(정정·손배청구) 의료법인○○의료재단 對 전주매일
조 정 대 상	『전주 ○○요양병원 발암폐기물 방치』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발암폐기물을 방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전북조정 75, 76	(각 정정청구) 유○○ 對 한국일보
조 정 대 상	『군산시 “악성민원 더 이상 못 참아”』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21일자 호남 제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악성민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전북조정 77·78	(정정·손배청구) 강○○ 對 남원포유
조 정 대 상	『K 도의원, 만인의총 국가관리 미결정이라니...』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포토뉴스 및 사설면)
신청인 주장	전북도의원인 신청인이 ‘만인의 총’의 국가관리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만인의 총 국가관리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11월 22일자 초기화면)

〈경남〉

2015경남조정 1~4	(각 정정·손배청구) ○○시 태권도협회 외 1인 對 뉴스경남 ^(1·2) , 인터넷 뉴스경남 ^(3·4)
조 정 대 상	『○○시 태권도협회장 선거 규정 무시됐나?』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2012년 협회장 선출 당시 가맹단체 규정을 어기고 만장일치 박수로 협회장을 선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7	(손배청구) 방종근 對 인터넷 한남일보
조 정 대 상	『창원시 대원 3구역 주민들이 뿔났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7일자 창원면)
신청인 주장	시의원인 신청인이 직위를 이용해 창원 의창구 대원 3구역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8·9, 13~16, 19, 20	(정정·손배청구) 김○○ 對 MBC경남(진주, 창원) ^(8·9) (각 추후청구) 경남도민일보 ⁽¹³⁾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¹⁴⁾ , 한남일보 ⁽¹⁵⁾ , 인터넷 한남일보 ⁽¹⁶⁾ , 경남신문 ⁽¹⁹⁾ , 인터넷 경남신문 ⁽²⁰⁾
조 정 대 상	(1) 뉴스데스크 『젓은 오작동... 혈세낭비』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4년 10월 29일자) (2) 뉴스데스크 『선정과정 의혹수사』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4년 10월 30일자) (3) 뉴스데스크 『보조금 주고 나면 '그만'』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5년 10월 31일자) (4) 뉴스데스크 『전면교체... 검찰수사 촉구』 제하의 보도 (MBC경남 2015년 11월 6일자) 외 6개 매체
신청인 주장	○○시 개인택시 지부장인 신청인이 도심광역 교통정보시스템단말기 선정 및 구입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 조정불성립결정 (MBC경남(진주, 창원)) • 각 취하 (경남도민일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한남일보, 인터넷 한남일보, 경남신문, 인터넷 경남신문/사유 : 추후보도)

이행결과	- 경남도민일보 : 『○○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장 유티스 도입 횡령 의혹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7일자 사회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4월 17일자 법원·검찰·경찰면) - 한남일보 : 『○○개인택시지부 김 모 지부장, 무혐의 처분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15일자 2면) - 경남신문 : 『○○개인택시지부장, 무혐의 처분 받아』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4일자 5면, 인터넷 경남신문 4월 24일자 사회면)

2015경남조정 10	(정정청구) 경상남도 외 1인 對 MBC경남(진주, 창원)
조정대상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교육장들 흥지사 성토』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29일자)
신청인 주장	홍준표 경남 지사가 남해군 순방 과정에서 “모든 교육자들이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11·12	(정정·손배청구) (사)경남○○장애인복지회 ○○시지부 외 1인 對 창원KBS-1TV
조정대상	뉴스9 경남 프로그램 『장애인 분양권 부당이득 ‘기승’』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25일자)
신청인 주장	경남○○장애인복지회 ○○시지회 지부장이 장애인 아파트 분양권의 전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이득을 가로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5경남조정 17, 18	(각 손배청구) 김○○ 對 KBS-1TV
조정대상	〈뉴스7〉, 〈뉴스9〉, 〈뉴스라인〉 프로그램 『김해서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7명 수배, 캄보디아 근로자 집단 난투극… 20여 명 중경상』 제하의 보도 (2015년 2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식당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근로자들의 집단난투극을 보도하면서 식당 상호를 무단 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리결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21	(정정청구) 김○○ 對 인터넷 한려투데이
조 정 대 상	『“어촌계 돈은 내 주머니”… 전 어촌계장 공금 횡령 확인』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25일자 정치행정면)
신청인 주장	어촌계장이던 신청인이 어촌계 인근의 포장마차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통영 전 어촌계장 K씨, “30만 원 받은 사실 없다” 주장』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1일자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

2015경남조정 22	(정정청구) 대한○○○○○협회 對 인터넷 뉴스경남
조 정 대 상	(1) 『대한○○○○○협회 위탁 교육비 불만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9일자 종합면) (2) 『대한○○○○○협 ‘교육 위탁 특혜 논란’ 해법은?』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0일자 종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주택관리사 교육 및 교육비 징수를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대한○○○○○협회 교육 논란’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25일자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면)

2015경남조정 23	(반론청구) 박○○ 외 9인 對 인터넷 김해뉴스
조 정 대 상	(1) 『결론은 먹튀!』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금바다만평면) (2) 『내홍 시달리던 김해○○회 임원진 총사퇴… 갈등 증폭』 제하의 기사 (2015년 6월 10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김해○○회 임원들인 신청인들이 김해○○회 내홍사태에 대한 사과 없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사퇴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경남조정 24~27	(각 정정청구) 하동군 ○○면 對 하동군민신문 ⁽²⁴⁾ ,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²⁵⁾ , 한남일보 ⁽²⁶⁾ , 인터넷 한남일보 ⁽²⁷⁾
조 정 대 상	- 하동군민신문 :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에 부정 의혹제기 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5일자 1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2015년 7월 14일자 경제사회면) - 한남일보 : 『하동군 ○○면사무소 주차장조성사업 부정 의혹』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14일자 경제사회면, 인터넷 한남일보 2015년 7월 13일자 하동면)
신청인 주장	하동군 ○○면이 주차장 조성사업에 입찰한 특정 업체의 견적서 금액을 조작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조건부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면사무소, “주차장 조성사업, 적법하게 진행됐다” 주장』 제하의 기사 (하동군민신문 2015년 8월 24일자 2면, 인터넷 하동군민신문 8월 24일자 초기화면, 한남일보 8월 19일 2면, 인터넷 한남일보 8월 19일 홈페이지 초기화면 및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

2015경남조정 28, 29	(각 정정청구) 김○○ 對 한려투데이 ⁽²⁸⁾ , 인터넷 한려투데이 ⁽²⁹⁾
조 정 대 상	『오후 10시 30분 청년 모친은 왜 통곡했나?』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14일자 2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8월 18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의 부친이 독단적으로 어촌계를 운영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30~37	(각 정정·손배청구) 남해군 對 남해시대 ^(30·31, 34·35) , 남해타임즈(인터넷 남해시대) ^(32·33, 36·37)
조 정 대 상	『무성한 뒷말만 남긴 ‘비키니 앤 탭’』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5년 8월 11일자 3면, 남해타임즈 2015년 8월 12일 사회면) 『무산된 ‘비키니 앤 탭’ 후폭풍 거세』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5년 8월 18일자 3면, 남해타임즈 2015년 8월 18일 사회면) 『‘비키니 앤 탭’ 무산 후폭풍 본지와 남해군의 갈등으로 비화』 제하의 기사 (남해시대 2015년 8월 25일자 5면, 남해타임즈 2015년 8월 25일 자치면) 외 3건
신청인 주장	남해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비키니 앤 탭” 행사의 취소에 대한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38	(정정청구) 유대운 對 인터넷 경남일보
조 정 대 상	『[이○의 역학이야기] 꼴볼견 국정감사』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인) 신청인이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에게 모의 권총 격발시범을 보이려고 한 것에 대해 모욕적인 표현으로 비판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기각 (사유 : 사실적 주장이 아님)
2015경남조정 39, 40	(각 정정청구) 주식회사 ○○○○○ 對 경남매일 ⁽³⁹⁾ , 인터넷 경남매일 ⁽⁴⁰⁾
조 정 대 상	『29억 산 땅 42억 줬다 부풀려』 제하의 기사 (경남매일 2015년 9월 10일자 4면, 인터넷 경남매일 9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토지 보상가를 높게 받기 위해 토지 매입가를 부풀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성립 (내용 : 기사수정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김해 병동산단 토지보상 놓고 ‘논란’』 제하의 기사 (인터넷 경남매일 2015년 10월 8일자 사회면)
2015경남조정 41~44	(각 정정·손배청구) 김○○ 對 한려투데이 ^(41·42) , 인터넷 한려투데이 ^(43·44)
조 정 대 상	(1) 『본지 사진 무단 게재는 범죄행위』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2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자 오피니언면) (2) 『일부 인터넷언론 본지 사진 무단게재 물의』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3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언론사 소속 기자였던 신청인이 취재에서 제외되었던 사유가 회사 소유 사진을 타 언론사에 전달했기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45~48	(각 정정·손배청구) 유○○ 對 한려투데이 ^(45·46) , 인터넷 한려투데이 ^(47·48)
조 정 대 상	(1) 『본지 사진 무단 게재는 범죄행위』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2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 오피니언 초기화면) (2) 『일부 인터넷언론 본지 사진 무단 게재 물의』 제하의 기사 (한려투데이 2015년 8월 28일 3면, 인터넷 한려투데이 9월 1일자 사회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신청인이 타 언론사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경남조정 49, 50	(각 정정청구) 창원시 對 경남도민일보 ⁽⁴⁹⁾ ,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⁵⁰⁾
조 정 대 상	『창원 시내버스 태극기 달기 들쭉날쭉』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9월 18일자 4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9월 18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창원시가 시내버스에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태극기 부착위치를 통일 시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경남조정 51	(반론청구) 채○○ 對 굿데이뉴스
조 정 대 상	『‘카메라 훔쳤다’던 전직 기자, 결국 무혐의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8일자 오피니언 기사수첩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과 분쟁 중인 한려투데이에서 해고된 모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 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합의간주
이 행 결 과	『〈반론보도문〉 카메라 절취 고의성 없으나 무단 사용해 파손』 제하의 기사 (2015년 12월 4일자 홈페이지 원 조정대상기사 하단면)

2015경남조정 52	(반론청구) 한려투데이 주식회사 외 1인 對 블랙먼데이
조 정 대 상	(1) 『[김○○ 칼럼] 통영 ‘유력 주간지’의 낮 부끄러운 醜態』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30일자 오피니언면) (2) 『‘한려투데이’ 논란… ‘해고 기자’의 반격』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12일자 이슈면) (3) 『김○○ 기자, ‘한려투데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11일자 이슈면) (4) 『카메라 훔쳤다는 전직 K기자, 결국 무혐의』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9일자 경제/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과 분쟁 중인 한려투데이에서 해고된 모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 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보도약속)

2015경남조정 53~58	(각 정정·반론·손배청구) (주)○○테크 對 경남도민신문 ^(53~55)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56~58)
조 정 대 상	『진주시 내동면지역 텃밭가꾸기 사업 박차』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0월 20일자 5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0월 19일자 진주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회사가 진주시 내동면 텃밭가꾸기 사업에 민원을 제기했고, 진주시로부터 내동면 산업단지 조성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진주 내동면 텃밭 가꾸기 사업」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월 11일자 2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월 11일 진주면)

2015경남조정 59~62	(각 정정·손배청구) ○○새마을금고 외 1인 對 경남도민신문 ^(59·60) ,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61·62)
조 정 대 상	(1) 『직원 수당 횡령 논란 ‘사분오열’』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1월 10일자 1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1월 9일자 뉴스종합면) (2) 『치매진단 사실 은폐 의혹… B금고 거래회원 기만』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신문 2015년 11월 13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신문 11월 12일자 사회면) (3) 『진주 B새마을금고 불법행위 제보자 상경 시위』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11월 20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1월 19일 정치면) (4) 『사망자 명의로 담보대출 실행지시 있었다』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12월 2일자 3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2월 1일자 사회면) (5) 『“응답하라”… 새마을금고 감사 시스템은 먹통』 제하의 기사 (경남도민일보 2015년 12월 4일자 15면, 인터넷 경남도민일보 12월 3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횡령, 불법 대출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제주〉

2015제주조정 2, 3	(각 손해청구) 이○○ 對 한라일보 ⁽²⁾ , 인터넷 한라일보 ⁽³⁾
조 정 대 상	『막나가는 정책자문위원… 도의회 위상 추락』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5년 10월 15일자 4면, 인터넷 한라일보 10월 15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인 신청인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고, 동의 없이 사적 내용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2015제주조정 4·5	(정정·손배청구) 고○○ 對 아주뉴스
조 정 대 상	『○○○○○공사 간부 경찰조사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9일자 지방면)
신청인 주장	○○○○○공사 ○○○○부장인 신청인이 동북풍력발전단지 사업과 관련 브로커와 공모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불이행

2015제주조정 8, 9	(각 정정청구) 제주동부경찰서 對 제주매일 ⁽⁸⁾ , 인터넷 제주매일 ⁽⁹⁾
조 정 대 상	『공방혐의 ‘철창시민’ 알고보니 ‘불법구금’』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9일자 종합1면)
신청인 주장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구대가 도민을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고 불법 구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부제소 - 동의 후 보도)
이 행 결 과	『제주동부경찰서 ‘불법 구금’ 관련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제주매일 2015년 3월 6일자 1면, 인터넷 제주매일 3월 6일자 정치행정면)

2015제주조정 10·11	(정정·손배청구) 오○○ 對 미디어제주
조 정 대 상	『신변비관 20대 男 옥상에서 뛰어내려… 끝내 숨져』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16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들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정정보도, 사과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사과문 및 정정보도문]“신변비관 20대 男 옥상에서 뛰어내려… 끝내 숨져” 관련 사과 및 정정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2일자 사회면)

2015제주조정 12·13	(정정·손배청구) 손○○ 對 제주의소리
조 정 대 상	『“유병언 가방” 3개 추가 확보… ‘1번 가방’서 뭐가 나왔나?』 제하의 기사 (2014년 9월 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구원파 신도에게 유병언의 도피용 가방을 보관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기사삭제)

2015제주조정 14·15	(정정·손배청구) 백○○ 외 1인 對 제주불교신문
조 정 대 상	『○○○사 빗장 풀고 관음기도도랑으로 거둬낸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6일자 2면)
신청인 주장	마라도 ○○○사의 임시폐쇄가 신청인들간 마찰에서 비롯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제주조정 16	(손배청구) 허○○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9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해당 업주가 숙박고객을 성폭행』 제하의 보도 (2014년 12월 12일자)
신청인 주장	게스트하우스 업주가 고객을 성폭행한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여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조정불성립결정

2015제주조정 17·18	(정정·손배청구) 제주특별자치도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1) 뉴스9 프로그램 『입지선정 내부협의로 없었다』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2일자) (2) 뉴스9 프로그램 『‘제주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의 선정(가정)’』 제하의 보도 (2015년 6월 11일자)
신청인 주장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시첨단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내부검토를 부실하게 하고, 평가점수를 자의적으로 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정정보도 - 양당사자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 측은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측은 진실한 보도로 수용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

2015제주조정 19~22	(각 정정·손배청구) (사)제주○○○○회 외 1인 對 한라일보 ^(19·20) , 인터넷 한라일보 ^(21·22)
조 정 대 상	『‘택시표시등’ 놓고 ○○○○○회 내용』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5년 7월 16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2015년 7월 16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제주○○○○회가 택시표시등을 둘러싸고 내용에 휩싸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취하 (사유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택시표시등’ 놓고 ○○○○○회 내용 관련 반론 보도문』 제하의 기사 (한라일보 2015년 8월 7일자 사회면, 인터넷 한라일보 8월 7일자 사회면)

2015제주조정 23·24	(정정·손배청구) ○○○○사회복지관 외 1인 對 JIBS-TV
조 정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복지관 운영비리 의혹 잇따라』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0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사회복지관에서 운영비를 유용하여 양봉업을 하고, 보조금을 빼돌리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반론보도, PR·후속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JIBS 저녁뉴스 프로그램 『‘복지관 운영비리 의혹’ 관련 반론』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8일자)

2015제주조정 25	(정정청구) 강○○ 외 1인 對 제주MBC-TV
조 정 대 상	저녁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위험한 방파제』 제하의 보도 (2015년 8월 26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들이 방파제에서 추락한 것이 신청인들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조정성립 (내용 : PR·후속보도, 기사삭제, 부제소)
이 행 결 과	저녁8시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방파제 안전펜스 관리 소홀 공무원 입건』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14일자)
2015제주조정 26~29	(각 정정·손배청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외 1인 對 제주KBS-1TV ^(26·27) , KBS미디어 ^(28·29)
조 정 대 상	뉴스9 프로그램 『해양수산연구원 감사결과 사전로비?』 제하의 보도 (제주 KBS-1TV 2015년 7월 21일자, KBS미디어 7월 21일자 뉴스투데이 초기화면)
신청인 주장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감사 관련 기자 질문에 거짓 답변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 : 반론보도, 부제소 - 피신청인 이의신청/사유 : 신청인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제공)
2015제주조정 30·31	(정정·손배청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對 제주KBS-1TV
조 정 대 상	앵커의 현장 프로그램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아파트 건설, 왜?』 제하의 보도 외 3건 (2015년 9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센터가 공동주택용지 매각과 관련 비리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
처 리 결 과	취하 (사유 : 자진취하)
2015제주조정 32·33, 34	(정정·손배청구) (사)한국○○○협회 對 제주신문 ^(32·33) (정정청구) 인터넷 제주신문 ⁽³⁴⁾
조 정 대 상	『○○○ 도내 신문 발행부수 등 발표 ‘허위’』 제하의 기사 (제주신문 2015년 11월 30일자 메인면, 인터넷 제주신문 11월 29일자 뉴스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협회가 공표한 2014년도 제주지역 일간지 발행부수가 허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조정불성립결정

제2장 중재사건 전체 목록



2015서울중재 1, 2	(각 추후청구) 손○○ 외 1인 對 오마이뉴스 ⁽¹⁾ , 인터넷 한겨레 ⁽²⁾
중 재 대 상	• 오마이뉴스 : 『민간인 사찰 주역과 ○○○ 간부들의 ‘수상한 통화내역’ 원○○ 조사관, 보도국장 등과 통화… 노조 “불법사찰, 사실이었다”』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사회면) • 인터넷 한겨레 : 『○○○노조 “사측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모 방송사 간부인 신청인들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 행 결 과	• 오마이뉴스 : 『“불법사찰 공모” 손○○ ○○팀장, 전 보도국장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8월 10일자 메인면) • 인터넷 한겨레 : 『“불법사찰에 연루” ○○○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사회면)

2015서울중재 3·4	(추후·손배청구) 염○○ 對 한겨레
중 재 대 상	『○○○노조 “사측 불법사찰 터지자 원○○과 집중 통화”』 제하의 기사 (2012년 4월 9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 간부인 신청인이 노조에 대한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인터넷 한겨레 : 『“불법사찰에 연루” ○○○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제하의 기사 (2015년 9월 8일자 사회면)

2015서울중재 5·6	(정정·손배청구) 김○○ 對 YTN
중 재 대 상	뉴스만만 프로그램 『순천 아파트 인질극』 제하의 보도 (2015년 9월 1일자)
신청인 주장	신청인 아들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범인이 신청인과 내연관계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뉴스만만 프로그램 『‘순천 아파트 인질극’ 관련 반론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30일자)

2015광주중재 1~4	(각 정정·반론청구) 기독교복음침례회 對 인터넷 무등일보 ^(1·2) , 인터넷 광주일보 ^(3·4)
중 재 대 상	- 인터넷 무등일보 : 『“유병언씨 해남·목포 도주 단서”… 수색작업 확대』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0일자 사회면) - 인터넷 광주일보 : 『신도 많고 곳곳 측근 소유 땅… 밀항도 용이』 제하의 기사 (2014년 6월 11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유병언씨가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시설이나 신도 집 등에 숨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인터넷 무등일보 : 『반론보도문-기독교복음침례회, “작년 6월경 유병언 도주 조력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탐뉴스면) - 인터넷 광주일보 : 『‘구원파 신도, 유병언 도피 지원’ 관련 알려왔습니다』 제하의 기사 (2015년 2월 3일자 사회면)

2015광주중재 5~10	(각 정정·반론청구) 서○○ 對 전남인터넷신문 ^(5·6) , 호남매일 ^(7·8) , 프라임경제 ^(9·10)
중 재 대 상	- 전남인터넷신문 :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7일자 뉴스종합면) - 호남매일 : 『〈특별기고〉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21일자 및 11월 24일자 오피니언면) - 프라임경제 :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제하의 기사 (2014년 11월 17일자 오피니언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의 자격과 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 전남인터넷신문 :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사회면) - 호남매일 : 『〈특별기고〉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6일자 6면, 인터넷 호남매일 3월 16일자 오피니언면) - 프라임경제 : 『‘서○○이 죽어야 윤 시장이 산다’ 제하 기사, 정정·반론보도』 제하의 기사 (2015년 3월 11일자 오피니언면)

2015광주중재 11~13	(각 정정청구) 오○○ 對 전남일보 ⁽¹¹⁾ , 광주MBC-TV ⁽¹²⁾ , 연합뉴스 ⁽¹³⁾
중재대상	• 전남일보 : (1) 『○○○재단 이사장-직원 갈등 갈수록 격화 왜?』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사회면) (2) 『○○○기념재단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7일자 사설면) • 광주MBC-TV : (1)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기념재단 직원들 이사장 사퇴 촉구』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3일자) (2)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이사장 사퇴하라, ○○○기념재단 갈등 격화』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5일자) (3)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기념재단 직원들 이사회 앞서 침묵 시위』 제하의 보도 (2015년 1월 12일자) • 연합뉴스 : (1) 『이사장 고사, 계약직 해고… ○○○기념재단 20주년 흔들』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8일자 전국면) (2) 『○○○기념재단 직원 이사장 사퇴 촉구』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2일자 전국면) (3) 『○○○기념재단 직원들 “계약직 해고 철회·이사장 사퇴”』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6일자 전국면) (4) 『○○○기념재단 신임이사장에 차명석씨… ‘직원 해고’ 갈등 여전』 제하의 기사 (2015년 1월 12일자 전국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기념재단 이사장 재직시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리결과	• 중재결정 (전남일보/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 각 중재결정 (광주MBC-TV, 연합뉴스/내용 : 반론보도)
이행결과	• 전남일보 : 『“○○○기념재단 계약직 해고,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4월 23일자 사회면) • 광주MBC-TV : 뉴스투데이 프로그램 『“○○○재단 계약직 해고, 사실과 달라”』 제하의 보도 (2015년 4월 24일자, 인터넷 광주MBC 4월 24일자 사회면) • 연합뉴스 : 『오○○ 전 이사장 “○○○기념재단 계약직 해고,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5월 6일자 전국면)

2015광주중재 14~17	(각 정정·반론청구) ○○시 리통장단협의회 對 전남타임스 ^(14·15) , 인터넷 전남타임스 ^(16·17)
중 재 대 상	『○○시 일부 이장들 파렴치 행각 '경악'』 제하의 기사 (전남타임스 2015년 6월 3일자 1면, 인터넷 전남타임스 6월 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 단체 소속 일부 회원이 마을 주민을 성추행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처 리 결 과	각 중재결정 (내용 : 정정보도, 반론보도)
이 행 결 과	『“○○시 일부 이장들 파렴치행각” 사실과 달라』 제하의 기사 (2015년 7월 29일자 1면)

2015광주중재 18, 19	(각 추후청구) 장○○ 對 KBC-TV ⁽¹⁸⁾ , 인터넷 KBC-TV ⁽¹⁹⁾
중 재 대 상	8시 저녁종합뉴스 프로그램 『○○○○○특화시장 의혹 수사 착수』 제하의 보도 (KBC-TV 2013년 12월 13일자, 인터넷 KBC-TV 12월 13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 상가 불법 분양과 보조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이 행 결 과	KBC 저녁뉴스 프로그램 『광주고검, ○○특화시장 대표 고소 건 기각』 제하의 보도 (2015년 12월 21일자)

2015전북중재 1	(추후청구) 김○○ 對 인터넷 내외일보
중 재 대 상	(1) 『고창 공무원, 역대 보조금 편법수령 강력 수사촉구 주민, 70대 모친 등 타인 명의로 대규모 수령 의혹 제기』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18일자 사회면) (2) 『고창 보조금 편법 수령 공무원, 대량의 토지 임대 의혹』 제하의 기사 (2014년 12월 27일자 사회면)
신청인 주장	공무원인 신청인이 비닐하우스 설치 평수를 부풀려 국가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도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처 리 결 과	중재결정 (내용 : 추후보도, 부제소, 이행강제금)
이 행 결 과	『고창 공무원 보조금 불법 편취 추후보도문』 제하의 기사 (2015년 10월 23일자 뉴스면)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및 지역사무소 안내

서울

* 주 소 :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 대표전화 : 02) 397-3114
* 상담전화 : 02) 397-3000, 3010, 3100

* 홈페이지 : www.pac.or.kr
* 전자조정중재홈페이지 : people.pac.or.kr
* 블로그 : pacblog.kr
* 페이스북 : www.facebook.com/pacnews

지 역

부 산

(48223)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739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6층
☎ 051) 759-7083~4 / FAX 051) 759-7093

대 구

(4211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53) 763-0020~1 / FAX 053) 763-0242

광 주

(61687)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18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B동 5층
☎ 062) 676-0360~1 / FAX 062) 676-0362

대 전

(35309) 대전광역시 서구 도산로 45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빌딩 5층
☎ 042) 525-0778~9 / FAX 042) 525-0768

경 기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경기문화재단 8층
☎ 031) 211-9027, 9022 / FAX 031) 212-0223

강 원

(2427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6 무림빌딩 8층
☎ 033) 255-2878~9 / FAX 033) 255-2872

충 북

(28625)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64
엔젤 변호사빌딩 404호
☎ 043) 286-8083, 8081 / FAX 043) 286-8084

전 북

(55043)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전주상공회의소빌딩 303호
☎ 063) 288-0010, 0981 / FAX 063) 288-0980

경 남

(51457)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번길 5 보고빌딩 601호
☎ 055) 263-1787, 1780 / FAX 055) 263-1769

제 주

(63223) 제주도 제주시 남광복5길 6
현곡빌딩 4층
☎ 064) 722-3328, 3352 / FAX 064) 726-3201

2015년도 언론조정중재·시정권고 사례집

제작 2016년 4월 28일

발행 2016년 4월 30일

편저 언론중재위원회 교육본부 교육콘텐츠팀

발행기관 언론중재위원회

제작 알래스카인디고(주) 02) 2277-6777

- 이 책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국민과 언론을 이어주는 —

언론중재위원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전화: 02)397-3114 FAX: 02)397-3089

<http://www.pac.or.kr>